報恩郡古實錄

金 榮 振 編譯

報恩文化院

題字　平居 **金 善 基**

발 간 사

鄕土史 硏究에 貴重한 資料가 될「報恩郡古實錄」을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報恩郡古實錄」은 우리나라의 正史인 '三國史記'·'高麗史'·'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보은군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歷史에 나타난 우리고장의 모습을 照明한 것으로 鄕土史를 硏究하는 사람은 물론 고장 역사를 알아보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할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특히 '朝鮮王朝實錄'은 卷帙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정치·외교·군사·제도·법률·경제·산업·교통·통신·사회·풍속·미술·공예·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고 있어 '실록'에서 우리고장의 기록을 일일이 찾아 읽기는 그리 용이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실록'이 비록 지배층 위주의 관찰기록이라는 한계성이 있기는 하지만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려는 데 있어서는 기본이 되는 史籍으로 방대한 규모의 실록 중에서 보은에 관한 역사를 추출해 낸 이책자는 향토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될 것이며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고장 보은의 기록을 이제 다시 조명해 봄으로 지역 주민 모두에게 향토애를 함양하고 자긍심을 발양하는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이책을 엮어내기까지 어렵고 힘든 자료 발췌와 번역 작업을 해주신 金榮振 敎授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題字를 써주신 書藝家 平居 金善基 선생, 그리고 발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보은군 李香來 군수님 보은군의회 沈光弘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12월

보은문화원장 金 建 植

축 간 사

향토사의 발굴 · 조사 · 연구 · 전승 및 선양 등 지역문화진흥 사업 일환으로 보은문화원 주관으로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되어 있는 보은지역 관련 기록등을 종합 고찰하여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한글로 번역한 "보은 실록 자료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세계화 · 정보화 시대를 맞아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전통적 가치관의 혼돈과 함께 고장에 전하는 여러가지 풍습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또한 어떠한 풍습이 있는지 조차 알려줄 이와 이어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 이시대의 농촌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향토사료 수집 및 조사등의 사업을 펼쳐 우리지역 문화창달은 물론 향토애를 가꾸어 가는 보은 문화원에 대하여 군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발간된 "보은실록 자료집"을 통하여 문헌에 나타난 우리 지역에 관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등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서로 우리 고장에 대한 정체성을 찾는 소중한 자료로, 옛 선현들의 정신문화를 엿볼수 있는 자료로, 그리고 자라나는 후세에게 자긍심과 꿈을 심어주는 소중한 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함은 물론, 우리고장의 고귀한 향토자료로 잘 간직하고 보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지역의소중한 향토 사료를 알아볼 수 있도록 "보은실록 자료집" 발간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건식 원장님을 비롯한 편집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보 은 군 수

축 간 사

유구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보은의 과거 모습을 옹골차게 담아낸 '보은실록 자료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역 보은은 삼국시대의 지리적 요충지를 시작으로 근대의 동학운동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역사와 전통이 끊임없이 계승되어 온 고장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담아낸 '보은실록 자료집'은 우리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보은실록 자료집'이 널리 읽혀져, 보은을 바로 알고, 보은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이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은의 역사를 찾기 위해 많은노력을 기울여주신 보은문화원 김건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보은군의회 의장

축 간 사

우리가 역사를 알고 뿌리를 찾는 것은 사람의 근본을 아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말을 하고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보은지역의 실록사료를 조사하고 그 향토 사료집을 발간하여 우리의역사와 문화를 후손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 교육가족과 함께 축하를 드린다.

특히 우리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에게 역사와 그 뿌리를 알게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러한 때 보은문화원에서 보은지역의 향토 사료집을 발간하게 되어 청소년교육에 좋은 자료가 되리라 생각하며,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발자취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지역 문화유산 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보은의 문화와 역사를 체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던 이시기에 이와 같은 보은 향토 사료집이 정리되어 발간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보은의 역사는 태고때 부터라고 생각되나 그 역사기록은 삼국시대부터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에 이르기 까지 우리보은은 유유히 빛나고 있었다. 그러한 것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이를 찾아 정리한 것이 없어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이번에 향토사료집을 발간하므로써 우리 보은으로서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훌륭한 향토사료집을 토대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보은지역 군민, 특히 청소년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우리 조상들에 대한 많은 지식이 젊은이들에게 깊이 쌓였으면 한다.

끝으로 우리보은의 문화와 역사를 찾고자 오랜 시간 헌신적으로 보은 향토사료집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보은문화원 김건식원장님과 사료조사에 직접참여하신 김영진교수님 등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9년 12월

충청북도보은교육청 교육장 **고 웅 식**

목 차

◎ 삼국사기(三國史記)

□ 본기(本紀)

탈해왕(脫解王) …… 13
다루왕(多婁王) …… 13
벌휴왕(伐休王) …… 14
초고왕(肖古王) …… 15
자비왕(慈悲王) …… 15
소지왕(炤知王) …… 15
진흥왕(眞興王) …… 16
성 왕(聖 王) …… 16
진지왕(眞智王) …… 16
문무왕(文武王) …… 17
헌덕왕(憲德王) …… 17

□ 지리지(地理志)

삼년군(三年郡) …… 18
연산군(燕山君) …… 19

□ 제사지(祭祀志)

삼산오악(三山五嶽) 명산대천(名山大川)제사…… 19

□ 열전(列傳)

열기(裂起)…… 20

◎ 고려사(高麗史)

□ 본기(本紀)

태조(太祖)…… 25

명종(明宗)…… 25
충선왕(忠宣王)…… 25
공민왕(恭愍王) …… 25
우왕(禑王)…… 26

□ 지리지(地理志)
보령군(報令郡)…… 27
회인현(懷仁縣)…… 27

□ 병지(兵志)
참역(站驛)…… 27
마정(馬政)…… 28

□ 열전(列傳)
공직(龔直) …… 28
경종(景琮)…… 30
왕탱(王竀) …… 31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본기(本紀)
태종(太宗)…… 35
세종(世宗)…… 36
문종(文宗)…… 47
단종(端宗)…… 54
세조(世祖)…… 57
예종(睿宗)…… 63
성종(成宗)…… 63
연산군(燕山君)…… 77
중종(中宗)…… 79
인종(仁宗) …… 106

명종(明宗) …… 107
선조(宣祖) …… 130
광해군(光海君) …… 158
인조(仁祖) …… 172
효종(孝宗) …… 177
현종(顯宗) …… 178
숙종(肅宗) …… 182
경종(景宗) …… 189
영조(英祖) …… 192
정조(正祖) …… 249
순조(純祖) …… 259
헌종(憲宗) …… 261
고종(高宗) …… 262
순종(純宗) …… 273

□ 세종실록 지리지(世宗實錄 地理志)
보은현(報恩縣) …… 274
회인현(懷仁縣) …… 275

□ 평전(評傳)
홍윤성(洪允成) …… 276
성제원(成悌元) …… 278
성운(成運) …… 279

〔부록〕호구총수(戶口總數)

□ 보은현(報恩縣) …… 284
□ 회인현(懷仁縣) …… 287

※색인 …… 289

일러두기

1. 이 사료집은『삼국사기(三國史記)』『고려사(高麗史)』『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지금의 보은군인 옛날의 보은현(報恩縣)과 회인현(懷仁縣) 관련기사를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2. 이 사료집은『삼국사기(三國史記)』와『고려사(高麗史)』의 정사체(正史體)를 따라 편년체(編年體)인『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도 본기(本紀) 지(志) 전(傳)으로 나누었다.

4. 이 사료집의 본기(本紀)는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를 부치어 필요한 기사를 수록하였다.

5. 이 사료집의 번역은 다음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① 별칭 별호 등은 본명으로 통일하였다.
   ② 왕의 호칭은 2인칭이면 '전하(殿下)'로, 3인칭이면 '임금'으로 통일하였다.
   ③ 원뜻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현대어로 의역하였다.

6. 원문의 오자(誤字)와 보은군의 옛 지명(地名), 그리고 필요한 한자어(漢字語)는 각주(脚註)로 주석하였다.

7. 색인은 보은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명(地名) 인물(人物) 중요사건에 한정하여 가나다 순으로 작성하였다.

8. 부록으로『호구총수(戶口總數)』에서 보은현(報恩縣)과 회인현(懷仁縣)의 자료를 수록하였다.

????

三國史記

□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 인종(仁宗) 13년(1145) 김부식(金富軾)이 신라 · 고구려 · 백제의 역사를 중국의 정사체(正史體)에 따라 편찬한 책으로 내용은 신라본기(新羅本紀) 12권,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 10권, 백제본기(百濟本紀) 6권, 연표(年表) 3권, 지(志) 9권, 열전(列傳) 10권 합계 50권10책으로 되어 있다.

삼 국 사 기

◙ 본기(本紀)

□ 신라 탈해왕(脫解王) 8년(64) 8월

백제가 군사를 보내어 와산성(蛙山城)1)을 치더니 10월에 또 백제가 구양산(狗壤城)2)을 치므로 임금이 기병 2천명을 보내어 이를 역습하여 물리쳤다.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 백제 다루왕(多婁王) 37년 (64)

왕이 군사를 보내어 신라의 와산성(蛙山城)을 공격하여 이기지 못하고 군사를 옮기어 구양성(狗壤城)을 공격하니 신라가 기병 2천명을 풀어 부딪혀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다.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1〉

□ 신라 탈해왕(脫解王) 10년 (66)

백제가 와산성(蛙山城)3)을 처들어 와서 성을 빼앗고 군사 2백명을 두어 지키게 하였으나 얼마 아니되어 신라에서 이를 다시 빼앗았다.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 백제 다루왕(多婁王) 39년 (66)

신라의 와산성(蛙山城)을 쳐 빼앗고 2백명의 군사를 남기어 지키게 하였으나 얼마 안 가서 신라에게 패하고 말았다.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1〉

---

1) 지금의 보은군에 있던 산성〈동국여지승람 참조〉
2) 지금의 옥천군에 있던 산성으로 추정
3) 지금의 보은군에 있던 산성.〈동국여지승람 참조〉.

□ 신라 탈해왕(脫解王) 14년 (70)

백제가 와 침범하였다. 〈삼국사기 권 1 신라본기 1〉

□ 백제 다루왕(多婁王) 43년 (70) 8월

군사를 보내어 신라를 침범하였다. 〈삼국사기 권 23 백제본기 1〉

□ 신라 탈해왕(脫解王) 18년 (74) 8월

백제가 변방을 침략하므로 군사를 보내어 막았다.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1〉

□ 백제 다루왕(多婁王) 47년 (74) 8월

군사를 보내어 신라를 침범하였다. 〈삼국사기 권 23 백제본기 1〉

□ 신라 탈해왕(脫解王) 19년 (75) 10월

백제가 와산성(蛙山城)을 쳐 빼았았다. 〈삼국사기 권 1 신라본기 1〉

□ 백제 다루왕(多婁王) 48년 (75) 10월

다시 신라의 와산성(蛙山城)을 쳐 함락시켰다. 〈삼국사기 권 23 백제 본기 1〉

□ 신라 탈해왕(脫解王) 20년 (76) 9월

군사를 보내어 백제를 쳐 다시 와산성(蛙山城)을 찾아내고 백제에서 와 사는 자 2백여명을 다 죽였다. 〈삼국사기 권 1 신라본기 1〉

□ 백제 다루왕(多婁王) 49년 (76) 9월

와산성(蛙山城)이 도로 신라의 것이 되었다. 〈삼국사기 권 23 백제본기 1〉

□ 신라 벌휴왕(伐休王) 7년(190) 8월

백제가 신라의 서쪽 변경인 원산향(圓山鄕)[4]을 습격하고 또 부곡성(缶谷

4) 지금의 경북 예천군 용궁 또는 상주군 고성으로 추정

城)[5]으로 쳐들어와 포위함으로 구도(仇道)가 날랜 기병 5백명을 거느리고 나가 이를 공격하니 백제 군사들이 거짓으로 도망하였다. 구도가 그들의 계책을 모르고 이를 추격하여 와산(蛙山)[6]에 이르렀다가 백제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이것은 구도의 실책이므로 임금이 그의 관직을 강등하여 부곡성주(缶谷城主)로 삼고 그 대신 설지(薛支)를 좌군주(左軍主)로 임명하였다.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 백제 초고왕(肖古王) 25년(190) 8월

백제가 군사를 내어 신라의 서쪽 변경인 원산향(圓山鄕)[7]을 습격하고 부곡성(缶谷城)[8]을 포위하여 공격하였다. 이에 신라의 장군 구도(仇道)가 기병 5백명을 거느리고 이를 막았는데 백제의 군사가 거짓으로 후퇴하자 구도가 와산(蛙山)[9]까지 추격함으로 백제의 군사가 반격하여 크게 이겼다.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 신라 자비왕(慈悲王) 13년(470)

삼년산성(三年山城)[10]을 쌓았다[삼년(三年)이라 한 것은 성을 쌓기를 시작한지 3년만에 마쳤으므로 그렇게 이름한 것이다]〈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 3〉

□ 신라 소지왕(炤知王) 8년(486) 정월

이찬(伊飡)인 실죽(實竹)을 장군으로 삼고 일선(一善)지방[11]의 장정 3천명을 징발하여 삼년산성(三年山城)[12]과 굴산성(屈山城)[13]의 두 성을 고쳐 쌓았다.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 3〉

---

5) 지금의 경북 군위면 부계 또는 상주의 노음산 또는 충북 남쪽의 기곡 등으로 추정
6) 지금의 보은군에 있던 산성.〈동국여지승람 참조〉
7) 지금의 경북 예천군 용궁 또는 상주군 고성으로 추정
8) 지금의 경북 군위면 부계 또는 상주의 노음산 또는 충북 남쪽의 기곡등으로 추정
9) 지금의 보은군에 있던 산성.〈동국여지승람 참조〉
10) 지금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에 있는 산성. 조선시대에는 오정산성(烏頂山城)이라 했음 〈동국여지승람 참조〉
11) 지금의 경북 선산군

□ 신라 진흥왕(眞興王) 15년(554) 7월

백제의 왕 명농(明穠)〔성왕(聖王)〕이 가량(加良)과 더불어 관산성(管山城)[14]으로 쳐들어 오므로 관산성 군주(軍主)인 각간(角干) 우덕(于德)과 이찬(伊飡)인 탐지(耽知) 등이 마주 나가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하자 신주(新州)의 군주인 김무력(金武力)이 고을 병사를 이끌고 와서 교전하였는데 비장(裨將)인 삼년산군(三年山郡)[15]의 고간도도(高干都刀)가 급히 적을 공격하여 백제의 왕을 죽였다.

이에 신라의 모든 군사가 적을 격파하여 크게 승리하여 백제의 좌평(佐平) 4명, 사졸 2만9천6백명을 베어 죽이니 한 필의 말도 살아 돌아간 것이 없었다.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 백제 성왕(聖王) 32년 9554) 7월

왕이 신라를 빼앗을 양으로 친히 보 · 기병 5천 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狗川)에 당도하자 신라의 복병이 일어나므로 더불어 싸우다가 난병(亂兵)에게 해를 입고 돌아갔다. 시호(諡號)를 성왕(聖王)이라 하였다. 〈삼국사기 권 25 백제본기 4)

□ 신라 진지왕(眞智王) 4년(579) 2월

백제가 웅현성(熊峴城)[16]과 송술성(宋述城)[17]을 쌓아 산산성(蒜山城)18) 마지현성(麻知峴城)[19]내리서성(內利西城)[20]의 길을 막았다.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

12) 지금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에 있는 산성. 조선시대에는 오정산성(烏頂山城)이라 했음 〈동국여지승람 참조〉
13) 지금의 옥천군 청산
14) 지금의 옥천
15) 지금의 보은군
16) 지금의 보은 속리산 기슭에 있었음
17) 지금의 충북과 경북의 접경에 있었던 산성으로 추정
18) 지금의 경북 예천에 있었던 산성으로 추정
19) 지금의 전북 익산에 있었던 산성으로 추정
20) 지금의 경주 영주

□ 신라 문무왕(文武王) 2년(662) 2월 1일

김유신(金庾信) 등이 장새(獐塞)[21]에 이르니 평양(平壤)까지의 거리는 3만6천보(步)였다. 우선 보기감(步騎監) 열기(裂起)[22]등 15명을 당군(唐軍)의 진영으로 가게 하였는데 이 날 눈바람이 불고 몹시 추워 사람과 말이 많이 얼어 죽었다.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 신라 문무왕(文武王) 2년(662) 2월 1일

장새(獐塞)의 험한 곳에 이르자 마침 날씨가 몹시 추워 사람과 말이 지쳐서 종종 쓰러지기도 하였다. 이 때 김유신(金庾信)이 어깨를 벗어붙이고 말을 채찍질하여 앞으로 달려가니 여러 사람이 보고 힘을 다하여 달려가며 땀을 흘리면서 감히 춥다고 말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드디어 험한 곳을 지나 평양(平壤)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는데 김유신이 말하기를 "당나라 군사가 식량의 부족으로 고생이 극심하니 먼저 알려주어야 하겠다" 하고 보기감(步騎監) 열기(裂起)를 불러서 "내가 소년 때부터 그대와 함께 놀아서 그대의 지조와 절개를 잘 안다. 지금 소정방(蘇定方)에게 내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그대가 갈 수 있겠는가?" 하였다. 열기가 "내가 비록 불초하지만 외람되이 중군(中軍)의 직책에 있고 더구나 장군의 명령을 받음에 있어서리요. 죽는 날이 사는 해와 같겠습니다" 하였다. 드디어 장사 구근(仇近) 등 15명과 함께 평양으로 가서 소정방을 보고 말하기를 "김유신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군량을 운반하여 이미 가까운 곳에 왔다"하니 소정방이 기뻐하며 편지를 적어 사례하였다. 〈삼국사기 권41 열전 김유신 중〉

□ 신라 헌덕왕(憲德王)(822) 14년 3월

웅천주(熊川州) 도독(都督) 김헌창(金憲昌)이 그의 아버지 주원(周元)이 왕이 되지 못한 원한으로 반란을 이르켜 국호를 장안(長安)이라 하고 연호를 지어 경운원년(慶雲元年)이라 하고 무진주(武珍州) 완산주(完山州) 청주(菁州) 사벌주(沙伐州)의 네 도독(都督)을 위협하니 국원(國原) 서원

21) 지금의 황해도 수안
22) 보은현(報恩縣)의 명환(名宦)임 〈동국여지승람 참조〉

(西原) 금관(金官)의 사신(仕臣)과 여러 군현(郡縣)의 수령들이 따르게 하니 청주도독(菁州都督) 향영(向榮)은 몸을 빼어 추화군(推火郡)으로 달아났다.

임금은 장군 8명을 선정하여 왕도 경주의 주위를 지키게 한 후 군사를 출동하여 일길찬(一吉飡)인 장웅(張雄)이 먼저 나아가고 잡찬(迊飡) 위공(衛恭)과 파진찬(波珍飡) 제릉(悌凌)이 그 뒤를 잇고 이찬(伊飡) 균정(均貞), 잡찬 원웅(雄元), 대아찬(大阿飡) 우징(祐徵) 등이 좌군(左軍) 우군(右軍) 중군(中軍)을 지휘하게 하였다.

이 때 반란의 괴수 김헌창이 그의 장수를 시켜 요로에 자리를 잡고 관군을 기다렸다. 선발대로 나간 장웅이 도동현(道冬峴)[23]에서 반란군을 만나 이를 격파하고 후발대로 나간 위공과 제릉은 장웅의 군대와 합세하여 삼년산성(三年山城)[24]을 공격하여 반란군을 무찌르고 다시 군사를 속리산(俗離山)으로 보내어 반란군을 섬멸하였다.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10〉

▣ 지리지(地理志)

□ 상주(尙州)의 삼년군(三年郡)

○ 삼년군(三年郡)은 본래 신라의 삼년산군(三年山郡)인데 삼국통일 후 경덕왕이 삼년군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지금은[25] 보령군(保齡郡)이라 한다.

관할하는 영현(領縣)은 청천현과 기산현의 둘이다.

○ 청천현(靑川縣)은 본시 살매현(薩買縣)인데 삼국통일 후 경덕왕이 청천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지금도[26] 그대로 부르고 있다.

---

23) 지금의 경남 함안군 칠원

24) 지금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에 있는 산성. 조선시대에는 오정산성(烏頂山城)이라 했음 〈동국여지승람 참조〉

25) 『삼국사기(三國史記)』를 편찬한 고려시대를 말함

26) 『삼국사기(三國史記)』를 편찬한 고려시대를 말함

○ 기산현(耆山縣)은 본시 굴현(屈縣)인데 삼국통일 후 경덕왕이 기산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지금은[27] 청산현(靑山縣)이라 부른다. 〈삼국사기 권34 잡지3 지리1〉

□ 웅주(熊州)의 연산군(燕山郡)

○ 연산군(燕山郡)은 본래 백제의 일모산군(一牟山群)인데 삼국통일 후 경덕왕이 연산군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지금도[28] 그대로 부른다. 관할하는 영현(領縣)은 연기현과 매곡현의 둘이다.

○ 연기현(燕岐縣)은 본래 백제의 두잉지현(豆仍只縣)인데 삼국통일 후 경덕왕이 연기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지금도[29] 그대로 부른다.

○ 매곡현(昧谷縣)은 본래 백제의 미곡현(未谷縣)인데[30] 삼국통일 후 경덕왕이 매곡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지금은[31] 회인현(懷仁縣]이라 부른다. 〈삼국사기 권36 잡지5 지리3〉

▣ 제사지(祭祀志)

□ 삼산오악(三山五嶽) 명산대천(名山大川) 제사

3산(三山) 5악(五岳) 이하 명산대천(名山大川)을 나누어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로 지낸다.

○ 중사(中祀)의 사독제(四瀆祭)

속리악(俗離岳)[삼년산군(三年山郡)에 있다]

○ 소사(小祀)

가아악(嘉阿岳)[삼년산군(三年山郡)에 있다.]

〈삼국사기 권32 잡지1 제사〉

---

27) 『삼국사기(三國史記)』를 편찬한 고려시대를 말함
28) 『삼국사기(三國史記)』를 편찬한 고려시대를 말함
29) 『삼국사기(三國史記)』를 편찬한 고려시대를 말함
30) 『삼국사기(三國史記)』 권37 잡지6 지리4 백제
31) 『삼국사기(三國史記)』를 편찬한 고려시대를 말함

◙ 열전(列傳)

□ 열기(裂起)[32]

열기(裂起)는 신라사람이나 기록이 없어 그 가계(家系)와 성씨(姓氏)는 알 수 없다. 문무왕(文武王) 원년(661)에 당나라 고종(高宗)이 소정방(蘇定方)을 보내어 고구려를 정벌하여 평양성(平壤城)을 포위하고 함자도(含資道) 총관(摠管)인 유덕민(劉德敏)이 문무왕에게 식량을 평양성으로 보내달라고 청하였다. 이에 문무왕은 대각간(大角干)인 김유신(金庾信)에게 명하여 쌀 4천석과 벼 2만2천2백50섬을 수송하게 하였는데 장새(獐塞)[33]에 이르렀을 때 눈바람이 휘날리고 날씨가 몹시 추워 사람과 말이 많이 얼어 죽었다. 고구려사람들은 신라의 군사가 피로한 것을 알고 이를 공격하려고 하는 데 당나라 군영까지 거리가 3만여보(步)인데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이에 김유신이 소정방에게 글을 보내려 하였으나 마땅한 사람을 구하기 어려웠다.

이 때 열기가 보기감(步騎監)으로 김유신을 수행하였는데 나아가 말하기를 "제가 비록 노둔하고 부족하지만 가는 사람의 수효를 채우겠습니다" 하고 군사(軍師)인 구근(仇近) 등 15명과 함께 활과 칼을 가지고 말을 달려 나가니 고구려 사람들이 바라만 보고 능히 막지 못하였다. 이틀 만에 소정방에게 글을 전하니 당나라 군사들이 듣고 기뻐하여 회신을 주니 열기가 받아 또 이틀 만에 돌아왔다. 김유신이 그 용감함을 가상히 여겨 급찬(級飡) 벼슬을 주었다.

김유신이 돌아와 임금에게 아뢰기를 “열기와 구근은 천하의 용사입니다. 신이 주어진 권한으로 급찬의 관직을 주긴 하였으나 그 관직으로는 그 공로에 합당하지 아니하오니 사찬(沙飡)으로 올려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사찬 벼슬은 너무 높지 않은가?” 하였다. 김유신이 절하고 아뢰기를 “작위(爵位)와 녹봉(祿俸)은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오니 어찌 높다고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

32) 보은현(報恩縣)의 명환(名宦)임 〈동국여지승람 참조〉
33) 지금의 황해도 수안
34) 지금의 충북 보은군

후에 김유신의 아들 삼광(三光)이 정권을 잡았는데 열기가 찾아와서 군수(郡守)로 나가겠다고 요청하였는데 허락하지 않으니 열기가 기원사(祇園寺)의 중 순경(順憬)에게 말하기를 “나의 공이 큰 데 군수를 청하여도 보내주지 않으니 삼광이 아마도 아버지가 죽으니 나의 공을 잊은 것인가?” 하였다. 이 말을 순경이 삼광에게 전하니 삼광이 열기를 산년산군(三年山郡)[34] 지금의 충북 보은군 태수(太守)로 임명하였다. 〈삼국사기 권47 열전 7〉

高麗史

? ? ?

□ **고려사(高麗史)**

조선 세종(世宗) 24년(1442) 신개(申槪) 권제(權踶) 남수문(南秀文) 등이 고려시대 역사를 편찬하였으나 기술의 공정성을 잃었다하여 세종이 김종서(金宗瑞) 정인지(鄭麟趾) 이선제(李善齊) 정창손(鄭昌孫) 등으로 하여금 고치게 하여 문종(文宗) 1년(1451)에 완성한 책으로 내용은 세가(世家) 46권, 지(志) 39권, 연표(年表) 2권, 열전(列傳) 50권, 목록(目錄) 2권, 합계 139권 10책으로 되어 있다.

고 려 사

◙ 본기(本紀)

□ 태조(太祖) 11년(928) 7월 병진

임금이 친히 삼년산성(三年山城)[35]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드디어 청주(靑州)로 갔다. 〈고려사 권1 엽25〉

□ 명종(明宗) 16년(1186) 2월

눈비가 속리산(俗離山)에 내려 녹아서 물이 되었는데 그 빛이 핏빛과 같았다. 〈고려사 권53 엽56〉

□ 충선왕(忠宣王) 2년(1310) 9월 을유

왕정(王楨)을 회인군(懷仁君)으로 임명하여 중대광(重大匡)[36]으로 승진시켰다. 〈고려사 권33 엽37〉

■ 공민왕(恭愍王) 11년(1362) 8월 을유

임금이 상주(尙州)를 출발하였다. 〈고려사 권40 권10〉

□ 공민왕(恭愍王) 11년(1362) 8월 정해

임금이 속리사(俗離寺)에 가서 통도사(通度寺)가 보관했던 부처의 뼈 사리(舍利)와 가사(袈裟)를 가져왔다. 〈고려사 권40 엽10〉

---

35) 지금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에 있는 산성. 조선시대에는 오정산성(烏頂山城)이라 했음 〈동국여지승람 참조〉

36) 종1품의 문관(文官)

□ 공민왕(恭愍王) 11년(1362) 8월 무자

임금의 일행이 원암역(元岩驛)[37]에 머물렀다. 큰 비가 내려 호종하던 기관들의 장막이 떠내려가고 혹 죽은 사람도 있었다. 〈고려사 권40 엽10〉

□ 공민왕(恭愍王) 11년(1362) 8월 경인

임금이 옥주(沃州)[38]로 향하였으나 큰 물이 났으므로 사잇길로 들어서 보령현(報令縣)[39]에 머물렀다. 인근 군(郡)에 명령하여 배 10척을 만들게 하였다. 〈고려사 권40 엽10〉

□ 공민왕(恭愍王) 11년(1362) 8월 신묘

임금이 회인(懷仁)에 머물렀다. 〈고려사 권40 엽10〉

■ 공민왕(恭愍王) 11년(1362) 8월 임진

임금이 청주(淸州)에 도착하였다. 〈고려사 권40 엽10〉

□ 우왕(禑王) 9년(1383) 3월 기유

경상도안렴사(慶尙道按廉使) 여극인(呂克諲)이 하양(河陽) 영주(永州) 보령(報令)[40] 화령(化令) 하동(河東) 등지에 빈 터가 많으니 이것을 둔전(屯田)[41]으로 개간하여 군량에 보태자고 건의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이에 여극인은 주민들이 대대로 농사를 지어 온 토지 또는 밭갈이 소를 강탈하므로 주민들이 폐농을 하게 되어 원성이 많았다. 〈고려사 권135 엽3〉

37) 보은 남쪽 29리, 지금의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에 있렀음
38) 지금의 충북 옥천
39) 지금의 충북 보은군
40) 지금의 충북 보은
41) 지방에 주둔하는 군사의 식량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밭

▣ 지리지(地理志)

□ 상주목(尙州牧)의 보령군(報令郡)

보령군(報令郡)은 원래 신라의 삼년산군(三年山郡)인데 경덕왕은 삼년군(三年郡)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보령군(保齡郡)〔후에 또 다시 지금 명칭으로 고쳤다〕으로 고쳤고 현종 9년(1018)에 상주목 (尙州牧)에 소속시켰으며 명종 2년(1172)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이 군에 속리산(俗離山)〔신라 때 속리악(俗離岳)이라고 불렀고 나라에서 중사(中祀)로 제사하였다〕이 있다. 〈고려사 권57 엽20〉

□ 청주목(淸州牧)의 회인현(懷仁縣)

회인현(懷仁縣)은 원래 백제의 미곡현(未谷縣)인데 신라 경덕왕은 매곡(昧谷)으로 고쳐서 연산군(燕山郡)이 관할하는 현(縣)으로 만들었다. 고려 초에 지금 명칭으로 고쳤고 현종 9년(1018)에 청주목 (淸州牧)에 소속시켰으며 후에 회덕(懷德)의 감무(監務)로 하여금 겸임케 하였다가 우왕 9년(1383)에 따로 감무를 두었다. 〈고려사 권56 엽26〉

▣ 병지(兵志)

□ 참역(站驛)

경산부도(京山府道)는 25개의 역(驛)을 관할한다.

경산(京山)의 안언역(安堰驛) 답계역(踏溪驛), 고령(高令)의 안림역(安林驛), 팔거(八莒)의 수향역(水鄕驛) 연정역(緣情驛), 화원(花園)의 설화역(舌火驛), 가리(加利)의 무기역(茂淇驛), 금산(金山)의 금천역(金泉驛), 황간(黃間)의 속계역(屬溪驛), 지례(知禮)의 장곡역(長谷驛), 순양(順陽)의 양산역(陽山驛), 이산(利山)의 토현역(土峴驛), 안읍(安邑)의 이인역(利仁驛), 관성(管城)의 증약역(增若驛), 지례(知禮)의 작내역(作乃驛), 상주(尙州)의 낙양역(洛陽驛) 낙산역(洛山驛), 영동(永同)

의 회동역(會同驛), 보령(報令)의 원암역(猿岩驛)[42], 함림역(含林驛)[43], 어모(御侮)의 추풍역(秋風驛), 중모(中牟)의 상평역(常平驛), 선주(善州)의 안곡역(安谷驛), 화령(化令)의 장녕역(長寧驛), 개령(開令)의 부상역(扶桑驛) 〈고려사 권82 엽15〉

□ 마정(馬政)

목장(牧場)으로는 황주(黃州)의 용양(龍驤), 동주(洞州)의 농서(隴西), 백주(白州)의 은천(銀川), 개성(開城)의 양란(羊欄), 정주(貞州)의 좌목(左牧), 청주(淸州)의 회인(懷仁), 견주(見州)의 상자원(常慈院), 광주(廣州)의 섭호현(葉戶峴), 동주(東州)의 강음(江陰)에 있었다. 〈고려사 권82 엽24〉

▣ 열전(列傳)[44]

□ 공직(龔直)[44]

공직(龔直)은 연산군(燕山郡) 매곡현(昧谷縣) 지금의 보은군 회인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용감하고 지략이 있었다. 신라말기에 매곡현의 장군(將軍)으로 있었는데 당시 난리가 나서 백제를 섬기게 되었으나 견헌(甄萱)의 심복이 되어 큰아들 공직달(龔直達)[46]과 둘째아들 공금서(龔金舒) 및 딸 하나를 백제에 볼모로 두었다. 공직은 일찍이 백제에 예물을 바치러 갔다가 잔인무도한 것을 보고 큰 아들 공직달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 나라를 보니 사치함이 지나치니 나는 비록 심복으로 있지만 다시는 오고 싶지 않구나. 듣건대 '고려의 왕공(王公)[47]은 글과 지식은 족히 백성을 안정시킬 만하고 힘과 전략은 능히 난폭한 자를 억제할 수 있음으로 사방

42) 보은 남쪽 29리에 있던 원암역(元巖驛), 지금의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에 있었음
43) 함림산 아래, 지금의 보은군 보은읍 학림리에 있었읍
44) 회인현(懷仁縣)의 인물(人物)임 〈동국여지승람 참조〉
45) 지금의 보은군 회인
46) 회인현(懷仁縣)의 인물(人物)임 〈동국여지승람 참조〉
47) 고려의 태조 왕건(王建)을 지칭함

에서 그의 위엄을 두려워하고 그의 덕행을 따르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한다. 나는 그에게 귀순하려는데 너의 뜻을 어떠하냐?" 고 물으니 공직달은 대답하기를 "볼모로서 여기에 온 뒤 그들의 풍속을 보니 다만 부강함만 믿고 서로 다투어 교만하고 자랑하기에만 힘쓰니 어찌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버님이 현명한 군주에게로 귀순하여 우리 고을을 보존하고 편안케 하고자 하시니 어찌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우와 여동생과 함께 틈을 타서 고려(高麗)로 가겠습니다. 설사 거기로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버님이 명철하신 조처에 의하여 자손에게 경사가 미칠터이니 저는 비록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바라건대 아버님은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공직은 드디어 결심하고 고려 태조에게로 귀순하였다.

태조 15년(932)에 공직은 그의 아들 공영서(龔英舒)와 함께 태조에게 와서 말하기를 "저는 고을에 있을 때 오랫동안 좋은 정치에 대하여 듣고 비록 임금을 보좌할 역량은 없으나 신하된 직분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니 태조가 기뻐하였으며 그를 대상(大相)으로 임명하고 백성군(白城郡)을 녹읍으로 주고 말 세 마리와 채단을 하사하고 그 아들 공함서(龔咸舒)를 좌윤(佐尹)으로 임명하고 또 왕의 친척인 정조(正朝) 준행(俊行)의 딸을 공영서(龔英舒)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그대는 치세와 난세 그리고 흥성과 패망의 기미를 명확하게 관찰하고 나에게로 귀순하여 왔으니 나는 심히 가상히 생각한다. 그래서 왕족과 인척관계를 맺어 주어 나의 두터운 뜻을 보이는 것이니 그대는 더욱 심력을 다하여 변경을 잘 지켜서 우리 왕실의 울타리로 될지어다"라 하니 공직이 사례하고 이어 말하기를 "백제의 일모산군(一牟山郡)[48]은 저의 고을과 접경인데 제가 귀순한 까닭으로 백제에서 항상 침범하고 약탈하므로 백성들이 생업에 편안히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그곳을 공격 점령하여 저의 고을사람들로 하여금 약탈을 당하지 않고 오로지 농업과 양잠에 힘쓰도록 하여 귀화한 정성을 굳게 하고자 합니다." 하니 태조가 이를 허락하였다.

견훤은 공직이 항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공직의 아들 공직달과 공금서 및 딸을 옥에 잡아 가두고 뜨거운 쇠로 단근질을 하여 다리

48) 지금의 청원군 문의

근육을 끊으니 공직달은 죽었다.

백제가 멸망한 후 나주(羅州)에서 생포한 백제장군 구도(具道)의 아들 구단서(具端舒)를 공금서(龔金舒)와 교환하여 그 부모에게 돌려 보냈다. 22년(939)에 공직이 좌승(佐丞)으로 있다가 죽으니 태조가 신하을 보내 조문하고 정광(政匡) 벼슬을 추증하고 봉의(奉義)라는 시호를 내렸다. 공함서(龔咸舒)를 제사 지내는 자식으로 삼고 다시 사공(司空), 삼중대광(三重大匡) 벼슬을 추증하였다. 〈고려사 권92 엽20-21〉

□ 경종(景琮)[49]

순군리(徇軍吏) 임춘길(林春吉)은 청주(靑州)사람인데 같은 청주사람 배총규(裵悤規), 계천(季川)사람인 강길아차(康吉阿次), 매곡(昧谷)[50]사람인 경종(景琮)은 환선길(桓宣吉)과 함께 반역에 참여하였 다가 청주로 도망하려다 복지겸의 보고를 받은 태조(太祖)가 사람을 시켜 체포하여 신문하니 자백하여 모두 구속하였으나 오직 배 총규만은 음모가 누설되었음을 알고 도망하니 그 일당을 전부 죽이고자 하였다.

이 때 청주사람 현률(玄律)이 태조에게 말하기를 "매곡사람 경종의 누이가 바로 매곡성주(昧谷城主) 공직(龔直)의 아내이고 매곡성(昧谷城)은 대단히 견고해서 함락시키기 어렵고 또 적의 경계에 인접하였으니 만약 경종을 죽이면 공직이 반드시 배반할 것이니 용서해서 회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태조가 그 의견을 따르려 하였으나 마군대장군(馬軍大將軍)인 염상진(廉湘進)이 앞에 와서 말하기를 "신이 들으니 경종이 일찍이 마군(馬軍)인 기달(箕達)에게 말하기를 '내 누이의 어린 아들이 지금 서울에 있는데 그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애처로워 견디지 못하겠고 게다가 시국을 보니 어지러워서 반드시 모여 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으니 기회를 엿보다가 그 애를 데리고 도망쳐 돌아가야 하겠다'고 하였으니 경종이 모반한 것을 보니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라고 하였다. 태조가 크게 깨닫고 그를 죽이게 하였다. 〈고려사 권127 엽1-2〉

---

49) 고려사 열전 환선길(桓宣吉)에 기술된 인물임

50) 지금의 보은군 회인

□ 왕탱(王竀)

도생승통(道生僧統) 왕탱(王竀)[51]은 문종 24년(1070)에 중이 되라는 왕명을 받아 머리를 깎고 후에 속리사(俗離寺)에 거주하였다. 예종 7년(1112)에 어떤 자가 와서 "왕탱이 상서우승(尙書右丞)인 김인석(金仁碩), 전주목사(全州牧使)인 이여림(李汝霖)과 내통하여 반란을 도모한다"고 고발하니 임금이 왕탱을 거제현(巨濟縣)으로 귀양을 보내고 그의 일당인 이여림 김인석 그리고 전중소감(殿中少監)인 하언석(河彦碩), 형부상서(刑部尙書)인 임신행(任申幸), 대경(大卿)인 이중평(李仲平), 형부원외랑(刑部員外郎)인 이일숙(李日肅), 장군(將軍)인 김택신(金澤臣)과 송영한(宋英漢), 별장(別將)인 김유성(金有成), 지남원부사(知南原府事)인 이수(李綏), 영삭진사(寧朔鎭使)인 이일연(李日衍), 숭교사(崇敎寺)의 중인 자상(資尙) 및 김인석 이여림 임신행 하언석의 아들들을 먼 곳에 귀양보냈는데 자상은 귀양가던 중간에서 죽이고 얼마되지 않아 왕탱도 죽었다. 왕탱은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후하게 베푸니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그에게 빌붙었는데 결국 그 때문에 패가망신한 것이다. 〈고려사 권90 엽16〉

51) 문종(文宗)의 왕자임

朝鮮王朝實錄

?????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조선시대 각 왕대(王代)의 역사를 춘추관(春秋館)의 사관(史官)들이 편년체(編年體)로 기술한 책으로 제1대 태조(太祖)로부터 제25대 철종(哲宗) 472년간의 실록 1,893권 888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고종(高宗) 순종(純宗)의 실록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지시에 따라 이왕직(李王職)에서 편찬한 바 있으나 신빙성이 없는 기사가 많아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이라 하면 철종 때까지의 실록을 말하나 여기서는 순종실록까지를 포함시켰다.

조선왕조실록

▣ 본기(本紀)

□ 태종(太宗) 13년(1413) 9월 10일 병술

경상도에 예속되었던 옥주(沃州)[52] 보령(報令)[53] 황간(黃澗) 영동(永同) 청산(靑山)을 충청도에 옮겨 예속시켰다. 〈태종실록 권26엽26〉

□ 태종(太宗) 16년(1416) 5월 2일 계사

충청도 회인현(懷仁縣) 문의현(文義縣) 정산현(定山縣)에 서리가 내렸다. 〈태종실록 권31 엽31〉

□ 태종(太宗) 16년(1416) 8월 10일 기사

군(郡)과 현(縣)의 이름을 고치었다. 이조(吏曹)에서 소리가 서로 비슷한 각 고을의 이름을 고치도록 청하니 이에 청주(靑州)를 북청(北靑)이라 하고, 양주(襄州)를 양양(襄陽)이라 하고, 영산(寧山)은 예전 이름 그대로 천안(天安)이라 하고, 보성(甫城)은 예전 이름 그대로 진보(眞寶)라 하고, 보천(甫川)은 예전 이름 그대로 예천(醴泉)이라 하고, 횡천(橫川)을 횡성(橫城)이라 하고, 보령(報令)은 보은(報恩)이라 하였다. 〈태종실록 권32 엽11〉

52) 지금의 옥천
53) 지금의 보은

□ 세종(世宗) 1년(1419) 4월 9일 계미

김점(金漸)과 서선(徐選)이 더불어 새 관직을 받아[54] 궐내에 들어와 임명을 사례하였다.

김점이 서선을 만나 책망하는 말이 "너는 간사하고 불충하여 두 마음을 품은 자이니 오늘날 이 조정에 있을 수 없다." 하니 서선은 "그렇지 않다. 네가 도리어 남을 모함한 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하였다.

좌대언(左代言) 원숙(元肅)이 말하기를 "서선의 죄가 만약 국가에 관계된다면 명백히 이야기하라."고 하니 김점의 말이 "서선의 아들이 황희(黃喜)의 사위가 되었으니 어찌 오늘날 이 조정에 있을 수 있는가?" 하고 큰 소리로 꾸짖으며 조금도 꺼리는 바가 없었다. 그래서 서선과 김점은 다 같이 임금께 아뢰니 임금이 양편을 다 타일렀다.

처음 충청도 보은현(報恩縣) 아전이 예빈시(禮賓寺)에 바칠 쌀을 배에 싣고 한강에 당도하니 마침 사재감(司宰監) 서리(胥吏)가 개인 소유의 배를 청소하다가 이를 보고서 그 배를 빼앗고 쌀은 강가에 쌓아 놓았다. 김점은 양재역(良才驛)에서 역승(驛丞)과 함께 한강에 당도하여 그 까닭을 물으니 그 아전이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김점은 성내어 사재감 서리를 불러 꾸짖어 돌아가게 하고 역승을 시켜 사헌부(司憲府)에 고발하니 사헌부에서 경기감사(京畿監司)에게 공문을 보내어 역승이 감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고발한 죄를 추궁하게 하였다.

그 때 서선이 감사로 있어 역승을 가두고 심문하였는데 역승은 본시 의정부(議政府) 서리로 김점의 눈과 귀가 되었던 자이므로 김점이 원한을 품었다. 그래서 이번에 서로 부딪치게 된 것이었다. 〈세종실록 권3 엽30〉

□ 세종(世宗) 5년(1423) 6월 21일 경오

이조(吏曹)에서 보고하기를 "충청도 보은현(報恩縣)에 거주하는 백성이 6백12호가 되었으니 다른 곳의 예에 따라 교도(敎導)[55]를 두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권20 엽25〉

---

54) 김점(金漸)은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서선(徐選)은 한성부윤(漢城府尹)으로 임명되었다.

55) 교수관(敎授官)이 없는 향교(鄕校)에 생원(生員)이나 진사(進士)로 임명한 교관(敎官)

□ 세종(世宗) 6년(1424) 4월 5일 경술

예조(禮曹)에서 보고하기를 “불교는 선종(禪宗) 교종(敎宗) 둘 뿐이었는데 그 뒤에 정통과 방계가 각기 소업으로써 7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잘못 전하고 거짓을 이어받아 근원이 멀어짐에 따라 말단에서 더욱 갈라지니 실상 그 부처의 교리에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또 서울과 지방에 절을 세워 각 종파에 분속시켰는데 그 수효가 엄청나게 많으나 중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절을 비워두고 거처하는 자가 없으며 계속하여 수리하지 않으므로 점점 무너지고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계(曹溪) 천태(天台) 총남(摠南) 3종을 합쳐서 선종(禪 宗)으로, 화엄(華嚴) 자은(慈恩) 중신(中神) 시흥(始興) 4종을 합쳐서 교종(敎宗)으로 하고 서울과 지방에 중들이 거처할 만한 곳을 가려서 36개소의 절만 두어 선종과 교종에 분속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논밭을 넉넉하게 급여하고 거처하는 중의 인원을 정하며 무리지어 사는 규칙을 작성하여 불도(佛道)를 바르게 닦도록 할 것입니다. 이어 승록사(僧錄司)를 혁파하고 서울에 있는 흥천사(興天寺)를 선종도회소(禪宗都會所)로, 흥덕사(興德寺)를 교종도회소(敎宗都會所)로 하며 나이와 행동이 아울러 높은 중을 가려 뽑아 양종의 행수장무(行首掌務)를 삼아서 중들의 일을 살피게 하기를 청합니다.

이제 분속하려는 서울과 지방의 절과 기거하는 중의 정원과 급여할 논밭의 결수(結數)를 낱낱이 아룁니다. 교종에 소속된 절은 18개소이고 논밭은 3천7백결입니다.

교종에 속한 충청도 보은(報恩) 속리사(俗離寺)는 원래의 논밭이 60결인데 이번에 1백40결을 더 주고 거처하는 중의 수는 1백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권24 엽2-3〉

□ 세종(世宗) 6년(1424) 6월 25일 무진

호조참의(戶曹參議) 한유문(韓有紋)[56]을 강원감사(江原監司)로 임명하였다. 〈세종실록 권24 엽34〉

56) 보은현(報恩縣)에 우거(寓居)한 인물임 〈동국여지승람 참조〉

□ 세종(世宗) 7년(1425) 7월 25일 임진

호조참의(戶曹參議) 한유문(韓有紋)과 동지총제(同知摠制) 허권(許權)을 파직시켰다. 이는 사헌부(司憲府)에서 탄핵하였기 때문이었다.

한유문은 강원감사(江原監司)로 있다가 다시 호조참의로 전보되었는데 대궐에 나아가 임명을 사례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아직 사례하지 말라. 네가 좌의정(左議政) 이원(李原)에게 편지를 보내어 '낮은 벼슬 먼 시골 끝 강원도에서 임기가 만료되면 구제해 달라.' 했고 또 '빛이 나고 다시 빛이 날 것이라' 하였으니 그것은 재상(宰相)이 되어 전출되어 오기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 하였다.

한유문이 대궐로 들어오면서 내시(內侍)인 김용기(金龍奇)와 김맹(金孟)에게 꿇어 엎드려 이야기를 했으니 그 아첨함이 이러하였다. 〈세종실록 권29 엽9〉

□ 세종(世宗) 7년(1425) 7월 27일 갑오

장령(掌令) 임인산(林仁山)이 아뢰기를 "한유문(韓有紋)은 정승에게 뇌물을 바치어 국법을 어겼고 허권(許權)은 향을 받들면서 불경하였으므로 두 사람에게 죄를 줄 것을 이미 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윤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3품 이상의 관원에게 죄를 줄 때는 너그러운 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내 두 사람에게 어찌 추호라도 개인적인 배려가 있겠느냐?" 하였다.

임인산이 다시 아뢰기를 "한유문은 한 도의 감사(監司)로 자신이 먼저 법을 어겨 자자(刺字)[57]하는 죄에 해당하고 허권은 실정이 불경죄에 접촉되니 두 사람을 사헌부(司憲府)에 내려 법대로 죄를 주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파직한 것만으로 충분하니 더 이상 죄 주기를 다시는 청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권29 엽9〉

57) 옛날 중국에서 죄인의 얼굴이나 팔뚝에 죄명을 찍어 넣는 일을 뜻하나 여기서는 죄인명단에 수록을 말함

□ 세종(世宗) 8년(1426) 3월 4일 무술

사헌부(司憲府)에서 보고하기를 “김도련(金道練)은 지방의 미천한 인물이며 또한 자식이 있는 사람으로 자기가 소송한 노비를 각처의 권력가에게 증여하였습니다. 그의 본심을 캐어보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제 힘으로는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세력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그것을 인연으로 승소판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정상이 명백하오니 앞에 제시된 증여한 노비는 마땅히 모두 관가에 소속시켜야 할 것이오나 노비 중에는 양민도 있고 천민도 있을 것이므로 다시 관가의 판결을 받아서 양민인지 천민인지 알기 어려운 것은 담당한 관원으로 하여금 판결을 내리게 하고 그 증여를 받은 우의정(右議政) 정탁(鄭擢),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 조견(趙狷), 공조참의(工曹參議) 조숭덕(曺崇德)은 이미 죽었으며 우의정(右議政) 조연(趙涓)은 15명을 받았고 곡산부원군(谷山府院君) 연사종(延嗣宗)은 10명을 받았고 병조판서(兵曹判書) 조말생(趙末生)은 24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증여를 받은 것이 비록 사면을 내리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부려먹고 있으니 용서할 수 있는 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조연과 연사종은 모두 공신으로서 부귀가 극진한데도 그의 욕심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공공연히 증여를 받았으니 마음이 청렴하지 못하여 대신의 처신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조말생은 갑오년[58]에 형방(刑房) 대언(代言)으로 있으면서 노비에 대한 소송문제를 도맡아서 왕명을 출납하였는데 그 때에 김도련이 변정도감(辨正都監)에 소송할 때에 조말생이 뒤에서 몰래 그를 조종하였고 또 그를 위하여 청탁하여 주었으며 판결을 받은 뒤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임인년[59]에 김도련이 또 김득경(金得卿)에게 소송을 당했는데 이 때에 조말생이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있었는데 권력을 잡은 대신으로서 또 증여를 받고 소송을 판결하는 관리로 하여금 어물어물하며 판결을 내려주지 아니하게 하여 억울하게 하였으며 또 김도련의 아들에게 좋은 관직인 대부(隊副)[60]를 시켜주었으니 기

58) 태종 14년(1414)
59) 세종 4년(1422)

탄없이 욕심을 부릴뿐만 아니라 재상의 체통에 합당하지 못하오니 바라옵건대 모두 법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어 뒷 사람에게 경계가 되게 하소서. 그 때의 형조참의(刑曹參議) 박고(朴翱)와 방장정랑(房掌正郎) 김영(金寧)은 세력이 두려워서 여러 해가 지나도록 미루며 판결하지 아니하였으며 마음이 아첨스러워서 법관으로서의 취지에 어그러집니다. 바라옵건대 아울러 법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어 관리의 기풍을 바로잡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대언(代言) 등에게 이르기를 "대신으로서 이러한 일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다.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으니 작은 문제가 아니다. 조연은 수상이 되었고 조말생에게는 그를 중하게 기대하던 것이 판서(判書)로 있을 때 뿐 아니라 대언(代言)으로 있을 때부터 태종(太宗)께서도 신임하셨고 나도 신임하기를 다른 신하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이제 마침내 이러하였으니 이는 옛적 정치가 잘 되던 세상에서는 절대로 없었던 일이다. 대체로 위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가 있으면 곧 대신이 보고 감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 나 자신에게 관계된 문제다."하고 곧 명을 내리어 조연은 황해도 수안(遂安)에, 연사종은 강원도 인제(麟蹄)에 죄인으로 머물게 하고 조말생은 임명장을 회수하고 충청도 회인(懷仁)에 죄인으로 머물게 하고 조연과 연사종은 공신이므로 특별히 감면하였다. 〈세종실록 권31 엽24〉

□ 세종(世宗) 8년(1426) 3월 23일 정사

평양소윤(平壤少尹) 차유(車有), 회인현감(懷仁縣監) 서간(徐簡), 기천현감(基川縣監) 이양검(李養儉) 등이 부임인사를 하니 임금이 불러 이르기를 "근래에 기후가 순조롭지 못하여 내가 매우 걱정 되는 바이니 그대들은 나의 지극한 심정을 받들어 그대들의 할 일을 삼가하라. 또한 평양의 백성은 농사일에 상당히 게으르다. 아무리 비가 순조롭게 잘 오더라도 사람의 노력이 부족하면 농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대들은 가서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권31 엽31〉

60) 무반(武班) 잡직(雜職)인 종9품의 관직

□ 세종(世宗) 8년(1426) 8월 26일 정해

한유문(韓有紋)을 이조참의(吏曹參議)로 복직시켰다. 〈세종실록 권33 엽13〉

□ 세종(世宗) 8년(1426) 10월 29일 기축

형조(刑曹)에서 보고하기를 "보은선군(報恩船軍) 손어화(孫於火)가 그 호수(戶首)[61] 김후(金厚)를 때려 죽였사오니 형벌이 목을 베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권34엽5〉

□ 세종(世宗) 9년(1427) 10월 7일 신유

한유문(韓有紋)을 전주부윤(全州府尹)으로 임명하였다. 〈세종실록 권38 엽1〉

□ 세종(世宗) 10년(1428) 2월 30일 임오

의금부(義禁府)에서 보고하기를 "김맹성(金孟誠) 김종서(金宗瑞) 양질(楊秩) 윤수미(尹須彌) 김연지(金連枝) 등[62]의 말이 왕거(王琚)의 일가가 쓴 쌀을 징수하지 말아 달라고 임금에게 아뢴 것은 안망지(安望之)의 아내 허씨(許氏)가 손자의 외가집 사람으로 왕씨의 노비와 재산과 전답을 온전히 얻었으니 만족해야 할 것인데도 왕씨의 일가가 원주인의 장례비와 원당(願堂)[63]을 조성하는데 쓴 곡식까지 아울러 징수하고자 하니 인정과 도리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여겨 사사로인 사용한 곡식을 모두 징수하지 말라고 한 것은 실로 양질이 맨 먼저 주창하고 의논이 합해져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잘못을 알고도 죄를 지은 양질이 주범이니 곤장 1백대를 치고 김맹성 김종서 윤수미 김연지는 종범이니 곤장 90대를 치고 모두 임명장을 회수하고 수군(水軍)에 충원하여 영구히 벼슬을 주지마시고 김소남(金召南)

61) 땅 8결 단위로 공물(供物)과 부세(賦稅)를 바치는 책임자

62) 형조참판(刑曹參判) 김맹성(金孟誠), 전농윤(典農尹) 김종서(金宗瑞), 전 장령(掌令) 양질(楊秩) 윤수미(尹須彌), 도관정랑(都官正郎) 김연지(金連枝) 등은 대원(臺員)으로 있을 때 왕거(王琚)의 아내 일가들이 나누어 쓴 쌀을 추징하지 않고 이리저리 말을 꾸며 대어 임금을 속인 죄로 의금부(義禁府)에 구속되어 있었음.

63) 죽은 이의 명복을 비는 건물

은 사촌 처형인 양질의 말을 듣고 김종서에게 전하였으니 곤장 70대를 치소서."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김소남은 보고한 대로 시행하게 하고 양질은 속장(贖杖)[64] 보상(補償)할 수 있는 곤장 1백대에 지방에 머물게 하고 김종서와 윤수미는 속장 80대에 처하게 하고 임명장은 회수하지 말도록 하고 김맹성과 김연지는 모두 공신(功臣)의 아들이므로 다만 관직만 파면하게 하였다.

이에 양질을 회인현(懷仁縣)으로 귀양을 보내었다. 〈세종실록 권 39 엽 24〉

□ 세종(世宗) 11년(1429) 10월 10일 계미

양전경차관(量田敬差官)을 충청도의 공주(公州) 한산(韓山) 괴산(槐山) 보은(報恩) 정산(定山) 홍주(洪州) 진천(鎭川) 등 고을에 나누어 보냈다. 대개 논밭 1만결에 경차관(敬差官) 한 사람씩을 보내었다. 〈세종실록 권 46 엽1〉

□ 세종(世宗) 11년(1429) 11월 11일 계축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청하옵건대 영험이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고 영구히 혁파하였거나 제사 올리는 장소를 모르는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에서 행하는 악(岳) 독(瀆) 산(山) 천(川)의 제사용품 기준에 따라 국고의 쌀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제사 뒤에 감사(監司)가 예조에 공문을 보내는 것을 변하지 않는 법규로 삼게 하소서.

충청도는 공주의 웅진연소(熊津衍所), 충주의 양진연소(楊津淵所), 회인의 매곡성(昧谷城), 서천의 웅진명소(熊津溟所), 진천의 태령산(胎靈山), 대흥의 대잠도(大岑島), 문의의 양성(壤城), 덕산의 가야갑(伽倻岬)이 그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권46 엽8〉

□ 세종(世宗) 13년(1431) 2월 26일 신유

회인현감(懷仁縣監) 신대홍(辛帶紅)이 부임인사를 하니 임금이 불러 이

64) 보상(補償)할 수 있는 곤장

르기를 “충청도가 농사를 낭패하여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법으로 금하는 바를 범하기 쉬울 것이니 마땅히 형벌 쓰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며 또 일반 서민들은 절기의 빠르고 늦음을 모르는 법이니 농사의 권장과 독려를 부지런히 하여 농사철을 잃지 않도록 하라. 수령의 직책이란 부지런하고 또 근신하는 것이 제일이니라.” 하였다. 〈세종실록 권51 엽20〉

□ 세종(世宗) 14년(1432) 11월 6일 신유

한유문(韓有紋)을 중추원(中樞院) 부사(副使)로 임명하였다. 〈세종실록 권58 엽13〉

□ 세종(世宗) 15년(1433) 8월 9일 기축

충청도도사(忠淸道都事) 조주(趙注), 영춘현감(永春縣監) 민달손(閔達孫), 보은현감(報恩縣監) 우흥범(禹興範)이 부임인사를 하니 임금이 불러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그 지방이 일찍이 가물었고 늦게는 큰물이 져서 곡식들이 손상되었다 하니 백성들의 생계가 염려스럽다. 그대들은 마땅히 내 뜻을 마음에 새겨 백성의 목숨을 구제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권61 엽23〉

□ 세종(世宗) 18년(1436) 10월 14일 병자

전 중추원(中樞院) 부사(副使) 한유문(韓有紋)이 사망하니 임금이 조문하고 부의를 보냈다. 〈세종실록 권75 엽5〉

□ 세종(世宗) 19년(1437) 3월 13일 계묘

예조(禮曹)에서 여러 도의 순심별감(巡審別監)의 보고서에 의거하여 악(嶽) 해(海) 독(瀆) 산천(山川)의 단묘(壇廟)와 위패의 제도를 상정하기를 회인현(懷仁縣)의 매곡성묘(昧谷城廟)에 모신 신위(神位)의 위판을 ‘매곡성지신(昧谷城之神)’이라 쓰게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권76 엽25〉

□ 세종(世宗) 21년(1439) 5월 7일 갑인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충청도 회인현(懷仁縣)에 사는 강도범 김석로(金石老) 김중(金衆) 등을 법률에 의하여 목을 베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권85 엽27〉

□ 세종(世宗) 21년(1439) 11월 2일 병오

충청도 보은현(報恩縣)에서 지진이 발생하였다. 〈세종실록 권87 엽12〉

□ 세종(世宗) 23년(1441) 9월 12일 을사

충청도 공주(公州) 연기(燕岐) 정산(定山) 서천(舒川) 은진(恩津) 문의(文義) 회인(懷仁) 대흥(大興) 회덕(懷德) 신창(新昌) 아산(牙山) 온양(溫陽) 목천(木川) 홍산(鴻山) 진잠(鎭岑) 부여(扶餘) 이산(尼山) 여산(礪山) 임천(林川) 연산(連山) 고을에 지진이 발생하였다. 〈세종실록 권93 엽28〉

□ 세종(世宗) 24년(1442) 2월 20일 신해

충청도 회인(懷仁) 문의(文義) 연산(連山) 진잠(鎭岑) 연기(燕岐) 은진(恩津) 부여(扶餘) 이산(尼山) 공주(公州) 회덕(懷德) 홍산(鴻山) 고을에 지진이 발생하였다. 〈세종실록 권95 엽21〉

□ 세종(世宗) 25년(1445) 1월 2일 무오

지기장현사(知機張縣事) 이효상(李孝常), 지면천군사(知沔川郡事) 김숙지(金叔篪), 보은현감(報恩縣監) 최청강(崔淸江)이 부임인사를 하니 임금이 불러 이르기를 "너희들이 부임지에 가거든 모두 형벌을 삼가고 백성을 사랑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권99 엽1〉

□ 세종(世宗) 26년(1446) 4월 23일 임인

병조판서(兵曹判書) 정연(鄭淵)이 아뢰기를 "신이 충청도 청안(淸安) 고을에 가니 남녀 30여명이 모두 나물을 캐고 있으므로 신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을 시켜서 살펴보니 모두 나물만 먹은 빛이 있었습니다.

또 지인(知印)이 서울에서 와서 말하기를, '나물을 캐는 백성들이 들판을 덮고 있으며 대개 나물만 먹은 빛이 있다.' 하오니 신은 백성들의 굶주림이 염려됩니다. 바라옵건대 그 가까운 곳에 사람을 보내 살피게 하고 한

두 수령에게 죄를 주면 이 소문을 들은 수령들은 정성껏 백성을 구휼하지 않은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혹시 내가 여기에 오래 머물고[65] 있는 까닭이 아닌가? 빨리 사람을 보내어 조사하게 하라." 하였다.

즉시 진무(鎭撫) 김유율(金有栗)을 청안(淸安) 괴산(槐山) 연풍(延豊) 충주(忠州) 음성(陰城) 등지로, 진무 박대손(朴大孫)을 문의(文義) 회덕(懷德) 보은(報恩) 연산(連山) 청산(靑山) 등지로, 진무 박충서(朴忠恕)를 연기(燕妓) 공주(公州) 정산(定山) 부여(扶餘) 홍산(鴻山) 등지로, 지인(知印) 박창선(朴彰善)을 죽산(竹山) 목천(木川) 안성(安城) 음죽(陰竹) 전의(全義)로 보내어 조사케 하였다. 〈세종실록 권104 엽5〉

□ 세종(世宗) 27년(1445) 7월 13일 을유

의정부(議政府)에서 호조(戶曹)의 보고에 의거하여 여쭙기를…

공수전(公須田)[66]은 지금 대로(大路) 중로(中路) 소로(小路)로 나누어 유수부(留守府) 대도호부(大都護府) 목관(牧官)의 대로는 30결, 중로는 25결, 도호부(都護府) 지관(知官)의 대로는 25결, 중로는 15결, 소로는 10결을 나누어 직급하고, 각 고을 안의 공수전은 모두 다 폐지하고 함길도(咸吉道) 평안도(平安道)를 제외한 여섯 도의 주(州) 부(府) 군(郡) 현(縣)을 대로(大路) 중로(中路) 소로(小路)로 나누는데…

남양(南陽) 강화(江華) 여흥(驪興) 이천(利川) 순천(順天) 연안(延安) 삼척(三陟) 양양(襄陽) 철원(鐵元) 영해(寧海) 순흥(順興) 장흥(長興) 풍덕(풍德) 안산(安山) 인천(仁川) 안성(安城) 삭녕(朔寧) 양근(楊根) 임천(林川) 청풍(淸風) 태안(泰安) 한산(韓山) 서천(舒川)면천(沔川) 서산(瑞山) 익산(益山) 진도(珍島) 금산(錦山) 진산(珍山) 김제(金堤) 곡산(谷山) 안악(安岳) 수안(遂安) 풍천(豊川) 배천(白川) 평해(平海) 통천(通川) 정선(旌善) 고성(高城) 간성(杆城) 영월(寧越) 평창(平昌) 함양(咸陽) 초계(草溪) 예천(醴川) 흥해(興海) 청송(靑松) 곤양(昆陽) 보성(寶城) 낙안(樂安) 영광(靈光) 부평(富平) 양천(陽川) 김포(金浦) 장단(長湍) 지평(砥平) 적

65) 세종이 신병 치료차 청주 초수리(椒水里), 지금의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에 머물고 있었음
66) 역(驛)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하여 나라에서 지급한 논밭

성(積城) 연천(漣川) 천녕(川寧) 교동(喬桐) 임진(臨津) 교하(交河) 임강(臨江) 마전(麻田) 음죽(陰竹) 양성(陽城) 가평(加平) 통진(通津) 홍산(鴻山)제천(堤川) 평택(平澤) 회인(懷仁) 정산(定山) 청양(靑陽) 청안(淸安) 회덕(懷德) 진잠(鎭岑) 부여(扶餘) 석성(石成) 비인(庇仁) 남포(藍浦) 결성(結城) 보령(保寧) 당진(唐津) 영춘(永春) 보은(報恩) 청산(靑山) 목천(木川) 용담·(龍潭) 연산(連山) 임피(臨陂) 만경(萬頃) 능성(綾城) 광양(光陽) 용안(龍安) 함열(咸悅) 부안(扶安) 함평(咸平) 옥과(玉果) 고산(高山) 옥구(沃溝) 흥덕(興德) 고창(高敞) 무장(茂長) 무안(務安) 구례(求禮) 곡성(谷城) 운봉(雲峰) 장수(長水) 진안(鎭安) 무주(茂朱) 동복(同福) 화순(和順) 흥양(興陽) 신은(新恩) 옹진(甕津) 문화(文化) 우봉(牛峰) 장련(長連) 신천(信川) 송화(松禾) 장연(長淵) 강령(康翎) 강음(江陰) 토산(兎山) 은율(殷栗) 울진(蔚珍) 흡곡(歙谷) 이천(伊川) 평강(平康) 홍천(洪川) 횡성(橫城) 양구(楊口) 인제(麟蹄) 안협(安峽) 영덕(盈德) 고성(固城) 거제(巨濟) 남해(南海) 거창(居昌) 의령(宜寧) 하양(河陽) 용궁(龍宮) 봉화(奉化) 청하(淸河) 칠원(漆原) 진해(鎭海) 하동(河東) 인동(仁同) 진보(眞寶) 지례(知禮) 안음(安陰) 현풍(玄風) 산음(山陰) 단성(丹城) 비안(比安) 예안(禮安) 영일(迎日) 장기(長鬐) 창녕(昌寧) 사천(泗川) 기장(機長) 대흥(大興) 낭천(狼川) 덕산(德山) 아산(牙山)은 소로로 하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권109 엽4-5〉

□ 세종(世宗) 30년(1448) 12월 22일 갑술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보은(報恩)의 죄수 내은동(內隱同)은 세번 절도를 범하였으니 형률에 의거하여 교수형에 처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권122 엽17〉

□ 문종(文宗) 죽위년(1450) 6월 22일 갑오

임금이 충청감사(忠淸監司) 권극화(權克和)에게 분부하기를 “중 신미(信眉)가 보은현(報恩縣) 땅에 복천사(福泉寺)를 고쳐 지으니 단청(丹靑)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적당히 갖추어 주어라.” 하였다. 〈문종실록 권2 엽14〉

□ 문종(文宗) 즉위년(1450) 9월 19일 경신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건의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군기감(軍器監)에서 염초(焰焇)[67]를 구워 내는 방법으로 먼저 각 도에 도회(都會)를 두고 일정한 장소를 정하였습니다. 다만 도회가 있는 고을만 해마다 폐해를 받을 뿐 아니라 소속된 군과 현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무릇 염초에 소용되는 흙과 준비해 두었다가 쓰는 여러 물건을 운반할 때에는 온 경내가 떠들석하여 백성에게 끼친 폐해가 많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각기 그 부근 지방의 도회를 나누어 두고 해마다 봄 가을에 한 도(道)의 1도회에서 염초를 구워내게 하고 한 차례 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번갈아 가면서 쉬도록 하도록 하소서…

청주(淸州)를 1도회로 삼아서 문의(文義) 회덕(懷德) 청안(靑安) 연기(燕岐) 전의(全義) 목천(木川) 옥천(沃川) 영동(永同) 황간(黃澗) 청산(靑山) 회인(懷仁) 보은(報恩) 직산(稷山) 천안(天安)을 여기에 소속시키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권3 엽42〉

□ 문종(文宗) 즉위년(1450) 10월 30일 경자

사간원(司諫院)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 최항(崔恒) 등이 상소하기를 "이제 우리 주상 전하께서 큰 기업을 이어받아 지키고 그 천명에 새로 복종하니 나라 운명의 성하고 쇠함과 천심과 민심이 이합하는 기틀은 오늘날의 전하의 정치에 있으니 바야흐로 조심하고 삼가고 정신을 가다듬어 나쁜 것을 다 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민들은 눈을 씻고 유신의 교화를 크게 기대하는데 부처를 섬기는 폐단이 날로 성하여 번지니 많은 신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실망합니다. 전후에 감히 아뢰는 자가 서로 잇달았으나 전하께서는 처음부터 들을 생각이 없으니 이것이 인정을 떨쳐버리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저 부처의 가르침은 천지를 외면하고 윤리를 끊어버리니 어찌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 일념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생각건대 불교의 설법이 크고 넓고 높고 오묘하여 사람을 유혹하기에 쉬울 뿐만 아니라 복을 구하고 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귀천없이 한 마음인데 극락(極樂)과 지

67) 화약(火藥)

옥(地獄), 인과응보설(因果應報說)[68]은 사람을 유혹하는데 교묘합니다. 그러므로 역대의 어리석고 지혜로 운 임금들이 모두 그 노예가 되어서 그 아버지도 없고 임금도 없는 가르침으로 하여금 세상을 속이고 백성들을 좀먹게 하여 집과 나라가 패망하게 되어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69] 이것은 본보기가 분명하니 전하의 밝은 예지로써 불교가 사특하고 망령됨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더구나 전하께서는 세종(世宗)과 소헌왕후(昭憲王后)가 편찮았을 때 부지런히 부처에게 지극한 정성을 기우렸으나 털끝만한 보답이 없었으니 그 허망함을 환하게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무망함을 알고도 숭배하고 믿으려 하시니 신들은 그것이 옳은지를 알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매양 이르기를 '선대를 명복을 빌기 위함이니 차마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나 마음으로 그 허망함을 알아서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비록 날마다 명복을 빈다 해도 무엇이 보탬이 되겠습니까? 전하의 마음에 인과응보설을 위하고 그 이치를 수용하려는 생각이 없는데도 이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전하께서 세종대왕과 소헌왕후를 애도하던 처음에 불상을 만들고 불경을 베껴 쓰며 절을 짓고 중들을 공양하는 등 이미 그 정성을 다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인과응보설을 따른다 해도 명복을 비는 정성으로는 충분합니다. 지졸곡제(卒哭祭)[70] 한지도 오래 되었으니, 다만 정치에 부지런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여 선왕의 뜻을 계승하는 효도를 다하기에 힘써야 마땅한데 어찌 숭신을 더욱 지극히 하고 장황하게 힘써 우리 백성들의 힘을 쏟게 하는 것도 불사(佛事) 때문이요, 백성들의 재산을 축내는 것도 불사 때문이니 절에 바치는 것이 번거롭고 걷는 것이 많아 나라의 재정이 탕진되어도 그만두지 않으시겠습니까?

공물(貢物)의 방납(防納)[71]을 금지하는 것은 『육전(六典)』에 실려 있는 참으로 좋은 법인데 지금 각도의 잡공(雜貢)을 모조리 중들에게 방납하도록 허락합니다. 지난번에 수령이 여러 번 중의 일로 처벌을 받은 뒤로 중의 무리들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리라 믿고 방납을 거두는 날이면 중

68) 사람이 과거에 지은 인업(因業)의 선악(善惡))에 따라 미래에 과보(果報)가 온다는 불교이론
69) 고려시대를 말한 것임
70) 사람이 죽은지 석달만에 지내는 제사
71) 공물(貢物)을 대신 내주고 나중에 2배로 징수하는 일

들이 무리를 이루어 주(州) 군(郡)에 출입하면서 부엉이가 날개를 펴듯이 활개를 치면서 방자하게 굴지만 감사와 수령은 이를 봉명사신(奉命使臣)[72]처럼 대우하니 접대하는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또 수납할 때도 멋대로 값을 올리거나 배로 물리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채찍질을 하면서 그들이 바라는대로 해야만 그만둡니다. 만약 지지(紙地) 전칠(全漆) 청밀(淸蜜)·지율(芝栗) 같은 물건은 이전에 수령이 거의 준비하였기 때문에 폐단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았으나 지금은 다 방납시키니 백성들의 재물을 손상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원통하여 울부짖는 소리가 마을과 거리에 드높은데 이것이 무슨 공덕입니까? 가령 방납이 설사 백성들을 이롭게 하더라도 조종조(祖宗朝)에서 제정한 『육전』은 가벼이 고칠 수 없는데 백성들을 괴롭히는 고질이 되었어도 『육전』의 규정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불가한 것의 하나입니다.

위에서 좋아하면 아래에서 심해지는데 머리를 깎는 것이 날로 늘어갑니다. 근래 종실(宗室) 귀척(貴戚)이 다투어 불교를 숭상하여 부녀자가 절에 오르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 분명하게 있지만 공주(公主) 부인(夫人) 가운데 먼 절에 가는 자가 있습니다. 대저 국법의 시행은 반드시 전하의 주변에서 먼저 시행하는데 지금은 주변에서 먼저 국법을 어기니 다른 사람을 어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듣건대 충청도 보은현(報恩縣)에 창건하는 복천사(福泉寺)는 지극히 사치하고 화려하다 하는데 그 재목과 기와를 옮기고 단청을 마련하는 것은 모조리 백성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연전에 방납한 뜸값으로 내는 쌀을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옮겨 바치게 하여 그 폐단이 심히 컸습니다. 전하께서 오늘날 불교를 위하는 조치가 오직 복을 빌기 위한 것이라면 불당을 짓는 것이 하나라도 적지 아니할 것이요, 백 개라도 많지 아니할 것입니다. 근래 서울에 진관사(津寬寺) 대자암(大慈庵)과 같은 두 절을 창건하였는데 또 어찌 지방에 절을 짓는데 급급하여 신중히 심의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힘을 수고롭게 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손상시켜 백성들의 원망을 사겠습니까?" 하였다,

72) 임근의 명을 받들고 온 신하

상소가 들어가니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과 좌승지(左承旨) 정이한(鄭而漢)을 불러 조목에 따라서 질문하고 이어서 사간원 관원에게 분부하기를 "복천사(福泉寺)의 재목과 기와를 옮기고 그리고 뜸값으로 대납한 일은 내가 알지 못하니 그것을 밝히는 책임은 유사(有司)에게 있다. 오직 단청에 들어간 자료만은 내가 처음에 그것이 충청도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 일러준 것이다." 하였다. 〈문종 실록 권4 엽40-41〉

□ 문종(文宗) 즉위년(1450) 11월 1일 신축

대사헌(大司憲) 안완경(安完慶)이 아뢰기를 "충청도의 백성들이 복천사(福泉寺)를 중창하는 재목과 기와를 옮기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일이 실로 많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또한 내가 아직 듣지 못한 것인데 과연 그러한가? 안평대군(安平大君)이 세종(世宗)을 극락으로 천도하기 위하여 사재를 내어 이 절을 개창하므로 나는 백성들의 피해가 있는 줄 모르고 단청의 도구를 주게 하였다. 그러나 이미 창건한 절이니 철거하여 허물 수는 없다. 백성들이 재목과 기와를 옮기는 일은 진실로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문종실록 권4 엽42〉

□ 문종(文宗) 즉위년(1450) 11월 4일 갑진

장령(掌令) 하위지(河緯地)가 아뢰기를 "진관사(津寬寺) 대자암(大慈庵)의 간사승(幹事僧)이 방납(防納)[73]으로 받을 공물을 대납하기 위하여 주(州) 군(郡)을 돌아다니면서 폐단을 여러 가지로 일으킵니다. 그 중 충청도가 더욱 심한데 보은(報恩)에 복천사(福泉寺)를 짓기 때문에 충청도 전체가 피해를 보니 청컨대 이를 금지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조그마한 일인데 의정부(議政府)와 사헌부(司憲府)에서 그 폐단을 지나치게 말하는구나. 그 절 짓는 것은 나도 알고 있으며 그것을 금지하지 않는 까닭은 이미 일찍이 말하였다." 하였다. 〈문종실록 권4 엽43-44〉

73) 공물(貢物)을 대신 내주고 나중에 2배로 징수하는 일

□ 문종(文宗) 1년(1451) 5월 3일 경자

충청도 옥천(沃川) 영동(永同) 황간(黃澗) 청산(靑山) 보은(報恩) 등 고을에 사는 백성들이 진정하기를 "우리 고을의 공세(貢稅)를 앙암창(仰巖倉)[74]으로 바치는데 길이 멀고 또 사람과 화물을 조사하는 관(關)이 있어 왕래하는 사람과 말이 모두 피곤합니다. 청컨대 각각 거리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충주(忠州) 괴산(槐山)의 공세는 앙암창으로 바치게 하고 우리 고을의 공세는 금천창(金遷倉)[75]으로 바치게 하여 큰 폐단을 없게 하소서."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 내려 보내니 모두 의논하여 아뢰기를 "호조(戶曹)로 하여금 편리한가 불편한가를 널리 알아 본 뒤에 다시 의논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권7 엽 22-23〉

□ 문종(文宗) 1년(1451) 6월 19일 병술

충청도 회인(懷仁)과 전라도 무주(茂朱) 장수(長水) 고을사람들이 일찍이 임금에게 건의하여 이웃 고을의 견아상입(犬牙相入)[76] 한 땅을 갈라서 제 고을에 붙여 주기를 원했는데 이 때에 이르러 의정부(議政府)에서 호조(戶曹)의 공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우참찬(右參贊) 안숭선(安崇善)이 홀로 "신이 일찍이 견아상입한 토지가 고르지 않아 민폐가 아주 심하다는 연유를 아뢰었으나 조정의 의논이 사안을 시행되기 어려우니 풍년이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여 드디어 그만두고 시행하지 않으므로 신은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세종(世宗) 때 신의 아버지 안순(安純)이 충청도진휼사(忠淸道賑恤使)가 되어 견아상입의 폐단을 아뢰었는데 분부하시기를 '조각조각으로 넘어들어간 땅은 각도의 감사(監司)가 순행할 때 자세히 살펴서 아뢰라.' 하여 많이 개정하였습니다. 만약 따로 조정에서 근무하는 신하를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서 일시에 거행하게 한다면 일이 커서 시행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풍년이 되기를 기다린 뒤에 하는 것이 옳겠으나 만약 감사가

74) 충주 서쪽 50리에 있었음
75) 충주 서쪽 15리. 지금의 충주시 주덕면 신양리에 있었음
76) 개의 위아래 이빨처럼 들쑥날쑥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뜻함

순행할 때 조금씩 살펴서 개정한다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민폐가 아주 심한데도 늦추어 시행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다 분하고 원통해합니다. 엎드려 임금님의 결재를 바랍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안숭선의 의논도 옳으니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하니 모두 말하기를 "안숭선의 의논은 옳습니다. 그러나 앞서 갈라 붙이지 않았을 때에 별로 큰 폐단이 없었고 또 한번 그 꼬투리를 열면 고소하는 자가 벌떼처럼 일어나 비록 그 말하는 바에 따라 모조리 개정하더라도 전과 같은 폐단이 있을 것이니 마침내 더 유익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의 의논과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하였다. 〈문종실록 권8 엽16〉

□ 문종(文宗) 1년(1451) 9월 5일 경자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이 왕명을 받고 속리산(俗離山) 복천사(福泉寺)로 갔다. 그곳에 중 신미(信眉)가 살고 있어 세종(世宗)이 이 중을 위하여 중창하도록 하였는데[77] 그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가서 보도록 한 것이다. 〈문종실록 권9 엽24〉

□ 문종(文宗) 1년(1451) 9월 7일 임인

정사(政事)를 보았다. 조정 신하들이 물러가자 박팽년(朴彭年)이 다시 들어가 아뢰기를…

"안평대군(安平大君)이 충청도 보은현(報恩縣)에 있는 복천사(福泉寺)로 갔는데 앞서 들으니 충청도 각 고을에서 안평대군의 행차를 미리 기다리고 있다고 하기에 허망한 말이라 하였더니 과연 오늘에 행차가 있게 되니 각 고을에서 그 폐해를 받는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지난번에 복천사를 중창할 때 재목과 기와를 전전해 운반하느라고 도내가 떠들석하였습니다. 이제 또 대군의 행차가 있어 도내의 수령들이 서

77) 수양대군(首陽大君)과 안평대군(安平大君)이 신미(信眉)를 매우 믿고 좋아하여 항상 신미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무릎을 꿇어 절하며 예절을 다하여 공양하였다고 함 〈세종실록 권116 엽25 참조〉

로 앞을 다투어 달려가곤 하니 그 대접하는 폐단을 어찌 다 말씀하겠습니까? 모름지기 속히 되돌아 오도록 명령하시고 만일 불사를 행하거든 아울러 금지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안평대군이 사사로운 일로 가까운 곳에 출입하는 것이 정당한 도리에 무슨 방해가 되겠느냐? 당초에는 역마(驛馬)를 주려고도 하였지만 그 폐단이 있을 것이 우려되어 하지 않았다. 며칠 안으로 돌아올 것이고 또한 절에서 행사하는 일이 아니고 잠시 수륙재(水陸齋)[78]를 설행하는 것뿐이다." 하였다. 〈문종실록 권9 엽29〉

□ 문종(文宗) 1년(1451) 9월 13일 무신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이맹영(李孟英)이 아뢰기를…

"안평대군(安平大君)이 복천사(福泉寺)에 갔을 때 불상을 주조하여 승려들로 하여금 메어가게 하였는데 지나가는 고을의 수령들이 다투어 떡 과일 돈 물건을 바쳤다 하니 청컨대 수령을 탄핵케 하고 대군도 역시 급히 소환하여야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안평대군은 이미 소환하였다. 당초 내려갈 때 내가 감사에게 분부하여 주(州) 군(郡)으로 하여금 도와 주도록 한것이니 수령들을 탄핵할 수는 없다." 하였다.

이맹영이 또 아뢰기를 "안평대군이 가는 길에 관아에서 대접하는 것은 이미 분부가 있어 그랬다고 하여도 과일과 베 등의 물품을 거두어 피해를 준 것은 어찌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관아에서 대접하라고 명령하였으니 수령들이 다행히 철 따라 나는 음식을 갖추어 주었다 한들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하니 이맹영이 다시 아뢰기를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하였다. 〈문종실록 권9 엽34〉

□ 문종(文宗) 1년(1451) 10월 8일 계유

우헌납(右獻納) 조원희(趙元禧)가 아뢰기를 "임금의 친족들이 법을 어기는 것은 서둘러 단속하여야 합니다. 지난 날에는 수양대군(首陽大君)이

78) 바다와 육지에 있는 영혼에게 올리는 불교의식

사헌부(司憲府)에서 본적지로 돌려보내는 중의 가쇄(枷鎖)[79]를 마음대로 풀어 주었고 오늘날에는 안평대군(安平大君)이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충청도 보은현(報恩縣) 복천사(福泉寺)로 가서 민폐를 일으키는 일이 많으며 또 향연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작은 것을 단속하지 않으면 장차 더 커진 것을 단속할 수 없고 오늘 금하지 않는다면 뒷날에 반드시 큰 불법에 이를 것이니 죄를 주지 않으면 법을 폐지하게 될 것이요 죄를 준다면 은혜를 상하게 될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화를 내어 말하기를 "추종자들이 얼마인가? 분수에 지나쳤는가? 향연을 받았다니 사실 그러한가? 어디에서 향연을 하였는가?" 하고 두세 번 힐책하여 물었다.

조원희가 우물주물하면서 대답하기를 "추종자의 숫자는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민간에서 모두 말하기를 '많이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또 남의 접대를 받는 것도 옳지 않으니 감사와 수령으로 어찌와서 접대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양대군이 가쇄를 풀어 준 것이 어찌 큰 불법이겠느냐? 칼을 풀어 준 그 이튿날 즉시 와서 아뢰기를 '무슨 뜻이 있어 풀어 준 것이 아니고 길에서 칼을 쓴 중을 만나 불쌍하여 풀어 준 것 뿐입니다.' 하였으니 어찌 큰일이라고 하겠는가? 안평대군이 복천사(福泉寺)에 가겠다고 나에게 청하였으므로 내가 그것을 허락하였고 이어서 충청도에 분부하여 초료(草料)[80]와 음식을 주라고 하였다. 수륙재(水陸齋)[81]를 지낼 때에 혹은 백성들에게 다과와 음식, 그리고 중에게 시주하는 물건과 돈을 받은 것이 어찌 큰불법이라고 단속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소리 높여 힐책하니 조원희가 두려워하며 물러갔다. 〈문종실록 권10 엽5〉

□ 단종(端宗) 즉위년(1452) 10월 26일 갑인

충청도의 옥천(沃川) 은진(恩津) 이산(尼山) 회인(懷仁) 문의(文義) 회덕(懷德) 석성(石城) 보은(報恩) 고을에 지진이 발생하니 나라에서 향과 축문을 내려 해괴제(解怪祭)[82]를 지내게 하였다. 〈단종실록 권4 엽8〉

79) 죄인의 목에 씌운 칼과 발목에 채운 쇠사슬
80) 특정관원이 지방으로 갈 때 관아로부터 받는 일정한 공급(供給) 종인(從人) 마필(馬匹)
81) 바다와 육지에 있는 영혼에게 올리는 불교의식

□ 단종(端宗) 1년(1453) 6월 9일 갑오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공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여러 도의 도회소(都會所)에서 만드는 군기(軍器)의 일정한 수가 없어서 감련관(監鍊官)이 하는데 따라서 그것을 만들고 있음으로 혹은 지나치게 많아 폐단이 백성들에게 미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옥천도회소(沃川都會所)에서 옥천(沃川)과 청주(淸州) 보은(報恩) 문의(文義) 영동(永同) 회덕(懷德) 전의(全義) 목천(木川) 청안(淸安) 연기(燕岐) 황간(黃澗) 청산(靑山) 회인(懷仁)의 13개 고을이 갑옷 4부, 투구 4정, 활 20장, 화살 활집 나도통아(羅鞜筒兒) 각각 20부를…

만들도록 그 수를 정하니 감사(監司)로 하여금 군기감(軍器監)에서 마련한 규정과 방식을 상고하여 여러 고을과 도회소(都會所)에 나누어 정하고 법률에 의하여 만들게 하소서,

만약 견고하고 치밀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공장(工匠)과 해당 관리와 만드는 것을 감독하는 수령과 감련관을 아울러 법률에 의하여 죄를 주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권6 엽40〉

□ 단종(端宗) 1년(1453) 11월 4일 병진

충청감사(忠淸監司) 민건(閔騫)에게 분부하기를 "보은현(報恩縣)의 죄수 김귀원(金貴元) 정성직(鄭成直) 양철(梁哲)과 중 형묵(亨墨) 신성(信成)을 석방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권9 엽4〉

□ 단종(端宗) 1년(1453) 11월 26일 무인

좌사간(左司諫) 성삼문(成三問) 등이 상소하기를…

의정부(議政府) 계목(啓目)[83] 안평대군 이용(李瑢)의 반역을 모의한 구체적인 조목(條目)을 보면 그 죄명이 황보인(皇甫仁) 등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르기를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의 심복 아무아무개를 병조(兵曹)로 삼고 군기감(軍器監)을 삼았다' 하고 또 이르기를

82) 기이한 일이 무사히 지나가도록 비는 제사

83) 안평대군 이용(李瑢)의 반역을 모의한 구체적인 조목(條目)

'안평대군 이용이 정분(鄭笨)에게 뇌물을 후하게 주기 위하여 밤을 틈타 서로 만났으며 정분도 분선공감(分繕工監)의 재목과 기와를 안평대군 이용에게 준 것이 헤아릴 수 없고 또 이명민(李命敏)으로 하여금 안평대군 이용의 청을 들어주게 한 것이 무지하게 많다.'고 하였으니 황보인 등과 무슨 일이 다릅니까?…

지금 예빈시(禮賓寺) 권지직장(權知直長) 심치경(沈致敬)이 그 관원인 신수담(辛壽聃)의 아버지 참판 신석조(辛碩祖)가 일찍이 민신(閔伸)과 함께 모의하였다고 고발하고 보은현(報恩縣) 사람은 그 고을의 현감 이수산(李壽山)이 안평대군 이용의 무리에 붙었다고 고소하였으니 계목의 항목에 두 사람이 고발한 내용을 법으로 마땅히 밝혀내야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두 사람의 고발한 일은 반드시 물으시어 그 진실을 밝히시면 그르고 옳음이 저절로 가려져서 남을 헐뜯는 일이 없어지고 인심이 편안하여질 것이오니 그렇게 되면 매우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상소문을 궁중에 두고 승정원(承政院)에 내려 보내지 않았다. 〈단종실록 권9 엽25〉

□ 단종(端宗) 1년(1453) 12월 9일 신묘

충청도의 문의(文義) 옥천(沃川) 진잠(鎭岑) 회인(懷仁) 회덕(懷德) 청주(淸州) 은진(恩津) 연산(連山)에 지진이 벌생하니 나라에서 향과 축문을 내려 해괴제(解怪祭)[84]를 지내게 하였다. 〈단종실록 권9 엽33〉

□ 단종(端宗) 2년(1454) 4월 26일 정미

헌납(獻納) 조효문(曹孝門)이 사간원(司諫院)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고성군사(高城郡事) 허수(許銖), 보안역승(保安驛丞) 김사의 (金思義), 보은현감(報恩縣監) 이수산(李壽山), 청주판관(淸州判官) 구인문(具仁文)을 잇달아 잡아왔는데 그들이 비록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족도 따라오고 마부로 따라온 사람도 반드시 많을 것이므로 농사일을 방해할까 두렵습니다. 감사(監司)가 이미 고을을 맡고 있으니 청컨대 세종조(世宗

84) 기이한 일이 무사히 지나가도록 비는 제사

朝)의 예에 따라 감사로 하여금 죄를 다스려 보고하게 하소서."하였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수령들의 일은 마땅히 대신들과 의논해 보겠다." 하였다. 〈단종실록 권11 엽5-6〉

□ 단종(端宗) 2년(1454) 10월 4일 임오

충청도 보은현(報恩縣)에 지진이 발생하여 나라에서 향과 축문을 내려서 해괴제(解怪祭)를 지내게 하였다. 〈단종실록 권12 엽14〉

□ 세조(世祖) 1년(1455) 9월 11일 계미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각 도의 바닷가 요새지에는 진(鎭)을 설치하고 진장(鎭將)을 두어 그 방어를 견고히 하고 있으나 내륙의 주(州)와 현(縣)에는 아직 진을 설치하지 않아서 만약 외적이 침입하여 변진(邊鎭)이 이를 막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마구 들어와 사람이 없는 곳을 밟는 것처럼 될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내륙에도 적당히 요량하여 거진(巨鎭)을 설치하고 근방의 여러 고을을 중익(中翼) 좌익(左翼) 우익(右翼)에 분속시키도록 하소서. 그 익(翼)을 나눌 여러 고을과 절목(節目)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주도(淸州道)는 그 중익을 청주(淸州) 진천(鎭川) 문의(文義) 연기(燕岐) 회인(懷仁) 보은(報恩) 청안(淸安)으로 하고, 좌익은 옥천(沃川) 황간(黃澗) 영동(永同) 청산(靑山)으로 하며, 우익은 천안(天安) 온양(溫陽) 전의(全義) 평택(平澤) 아산(牙山) 목천(木川) 직산(稷山)으로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권2 엽22〉

□ 세조(世祖) 3년(1457) 10월 20일 경술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이제 분부를 받들어 여러 도의 중익(中翼) 좌익(左翼) 우익(右翼)을 폐지하고 요량하여 거진(巨鎭)을 설치하고 여기에 소속될 모든 고을을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청주진(淸州鎭)에는 진천(鎭川) 문의(文義) 회인(懷仁) 보은(報恩) 청산(靑山) 황간(黃澗) 영동(永同) 옥천(沃川) 청안(淸安)을 속하게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권9 엽24〉

□ 세조(世祖) 5년(1459) 8월 4일 계축

충청도의 보은(報恩) 회인(懷仁) 괴산(槐山) 청안(淸安) 청주(淸州) 연기(燕岐) 문의(文義) 옥천(沃川) 청산(靑山) 은진(恩津) 석성(石城)에 지진이 발생하니 나라에서 향과 축문을 내려서 해괴제(解怪祭)[85]를 지내게 하였다.〈세조실록 권17 엽10〉

□ 세조(世祖) 6년(1460) 2월 5일 임자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여러 도의 여러 역(驛)에 역승(驛丞)을 폐지하고 그 대신 찰방(察訪)을 두어 한 도(道), 두 도(道), 세 도(道), 네 도(道)를 묶어서 하나의 도(道)로 하였으나 길이 너무 멀어서 때때로 순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역마(驛馬)를 타고 왕래하는 사람도 한 도(道)라고 생각하여 멀고 가까움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여러 날을 달려 가다가 사람과 말이 모두 피곤해지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일신도(日新道) 소관인 공주(公州)의 일신역(日新驛) 광정역(廣程驛) 유구역(唯鳩驛) 단평역(丹平驛) 경천역(敬天驛) 연산현(連山縣)의 평천역(平川驛) 증약도(增若道)의 소관인 옥천군(沃川郡)의 증약역(增若驛) 가화역(加禾驛) 토목역(土木驛) 순양역(順陽驛) 화인역(化仁驛) 회덕현(懷德縣)의 전민역(田民驛) 영동현(永同縣)의 회동역(會同驛), 보은현(報恩縣)의 원암역(原巖驛)[86] 함림역(含林驛)[87], 황간현(黃澗縣)의 신흥역(新興驛)과 율봉도(栗峯道)의 소관인 연기현(燕岐縣)의 금사역(金沙驛) 총 22역(驛)을 합하여 한 도(道)로 하고, 성환도(成歡道)라 칭하여 증약도찰방(增若道察訪)으로써 이를 맡아 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세조실록 권19 엽13〉

□ 세조(世祖) 8년(1462) 8월 5일 정묘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먼저 여러 도의 참역(站驛)에 있던 역승(驛丞)을 폐지하고 각각 그 인근을 통합하여 하나의 길을 만들어서 찰방(察訪)을 두었으나 관할하는 역(驛)이 많고 길이 멀리 떨어져서 찰방이

85) 기이한 일이 무사히 지나가도록 비는 제사
86) 지금의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에 있었음
87) 지금의 보은군 보은읍 학림리에 있었음

두루 살피기 어려우므로 역로(驛路)가 조잡하니 이제 다시 조사하여 대로(大路) 중로(中路) 소로(小路) 및 멀고 가까움에 따라 이전의 역승을 각 역로에 파견하여 1찰방마다 역승 1명을 더 두게 하소서. 삼가 율봉역(栗峯驛) 쌍수역(雙樹驛) 저산역(猪山驛) 장양역(長楊驛) 태랑역(台郎驛) 시화역(時化驛) 증약역(曾若驛) 가화역(嘉禾驛) 토파역(土破驛) 순양역(順陽驛) 화인역(化仁驛) 전민역(田民驛) 덕류역(德留驛) 회동역(會洞驛) 신흥역(新興驛) 함림역(含林驛)[88] 원암역(原巖驛)[89] 이상 17역은 율봉도 찰방(栗峯道察訪)으로 하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권29 엽1-3〉

□ 세조(世祖) 9년(1463) 6월 20일 무인

성균관(成均館) 유생 최유숙(崔有淑)이 사리(舍利) 3매를 바치고 말하기를 "충청도 보은현(報恩縣) 속리사(俗離寺) 주승 혜등(惠登)이 죽어서 분신한 사리와 아울러 두골(頭骨)을 바칩니다."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삼가 살피건데 세종(世宗) 때 성균관(成均館) 생원 이영산(李永山) 등이 상소하여 불교의 해로움을 적극 말하였는데 이제 최유숙이 사리를 바치니 배우는 사람의 소행이 서 로 어긋나고 모순되니 어찌하겠습니까? 아아 사람이 세상의 이치를 간구하여 보는 것이 이와 같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세조실록 권30 엽33-34〉

□ 세조(世祖) 10년(1464) 2월 26일 기유

임금이 탄 수레가 청주(淸州)를 떠나 저녁에 회인현(懷仁縣)에 머물렀다.〈세조실록 권32 엽25〉

□ 세조(世祖) 10년(1464) 2월 27일 경술

임금이 탄 수레가 보은현(報恩縣) 동평(東平)을 지나서 저녁에 병풍송(屛風松)[90]에 머물렀다. 중 신미(信眉)가 와서 뵙고 떡 1백50동이를 바치니

88) 지금의 보은군 보은읍 학림리에 있었음
89) 지금의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에 있었음
90) 『동국여지승람』에는 '병풍연(屛風淵)'이라 하고 그 위치를 보은에서 동쪽 25리 속리산(俗離山) 아래에 있다고 하였음

임금이 호종하는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세조실록 권32 엽25〉

□ 세조(世祖) 10년(1464) 2월 28일 신해

임금이 속리사(俗離寺)와 복천사(福泉寺)에 행차하였다. 복천사에 쌀 3백섬, 종 30명, 논밭 2백결을, 속리사에 쌀과 콩을 아울러 30섬을 하사하고 신시(申時)[91]에 행궁(行宮)으로 돌아왔다. 〈세조실록 권32 엽26〉

□ 세조(世祖) 10년(1464) 3월 21일 갑술

임금이 궁궐로 돌아왔다. 서울에 머물러 있던 여러 관원들이 축하행사를 하니 특별사면을 발표하였다. 그 교지(敎旨)에 이르기를 "순수(巡狩)[92]라는 것은 제왕의 성대한 행사요, 상서(祥瑞)[93]란 지극한 복덕의 꽃다운 향기이다. 내가 부덕한 몸으로 외람되게 영도(靈圖)[94]를 받았고 백성을 자식같이 사랑하는 정사를 아직 베풀지 못하였는데 해마다 풍년을 맞는 경사를 여러 번 얻었으니 스스로 미덥지 아니하여 다만 공손히 삼가함을 더할 따름이다.

복천사(福泉寺)에 이르기 전날에는 속리산(俗離山)에서 밝은 빛이 쏟아졌고 행궁(行宮)에 나아갈 때에는 사리분신(舍利分身)이 있었고 신비스런 물이 솟아올랐으니 이는 실로 예천(醴泉)[95]이다. 온 세상이 경사를 같이 하고 멀고 가까운 곳이 다 함께 칭송하니 마땅히 천휴(天休)[96]를 넓히어 백성과 더불어 다시 시작하겠다.

이 달 21일 새벽 이전에 대역을 모반한 자, 반역을 도모한 자, 자손으로서 조부모나 부모를 죽이려고 도모한 자, 처첩으로서 지아비를 죽이려고 도모한 자, 노비로서 주인을 도모한 자, 고의로 살인을 도모한 자, 고독(蠱毒)[97] 염매(魘魅)[98]를 한 자, 다만 군령을 범한 자와 강도를 제외하고

91) 오후 3시반에서 4시반 사이
92) 임금이 나라 안을 두루 보살피며 돌아다님
93) 복덕이 생길 조짐
94) 임금의 자리
95) 중국에서 태평성대(太平聖代)에만 단 물이 솟는다는 샘
96) 하늘의 칭찬
97) 독을 음식에 넣어서 병을 일으키게 하는 일
98) 멀쩡한 사람의 혼을 빼놓거나 미치게 하는 일

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형벌이 결정하였거나 아직 결정하지 아니하였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용서하고 감히 특별사면령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소하는 자는 그 죄로써 처벌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명령하니 모두 알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권32 엽36〉

□ 세조(世祖) 11년(1465) 1월 19일 정묘

충청도경차관(忠淸道敬差官) 김달전(金達全)이 아뢰기를 "신이 여러 고을을 순행하여 굶주림으로 집을 떠난 백성들의 가구수를 조사하였더니 부여(扶餘) 60호, 홍산(鴻山) 30호, 정산(定山) 28호, 덕산(德山) 10호, 예산(禮山) 8호, 충주(忠州) 25호, 청풍(淸風) 34호, 영춘(永春) 13호, 단양(丹陽) 15호, 연풍(延豊) 17호, 괴산(槐山) 24호, 보은(報恩) 12호, 회인(懷仁) 54호, 문의(文義) 24호, 청주(淸州) 20호, 청안(淸安) 30호, 음성(陰城) 14호였습니다.

모두가 농사의 시기를 잃어 살기가 어려운 까닭으로 집을 비우고 떠돌게 된 것인데도 수령들이 구휼하지 않았습니다. 수령들이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도리에서 어긋났으니 청컨대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권35 엽5〉

□ 세조(世祖) 12년(1466) 4월 18일 무오

김수경(金守經)을 사헌부(司憲府)의 행장령(行掌令)[99]으로 삼았다.

김수경은 중 신미(信眉)의 아우인데 문장이나 무예에 뛰어난 재주도 없고 불교를 신봉하여 이름만 속인이지 행동은 중이며 어미와 아내가 모두 여승이 되었다.

신미는 임금이 불교를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자주 편지를 보내어 아우와 조카가 벼슬에 오르는 것을 맘대로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김수경이 보은현감(報恩縣監)에서 지나치게 높은 벼슬로 임명되니 사람들이 따르는 덕망에 맞지 아니하여 물의가 자자하였다.[100] 〈세조실록 권38 엽36〉

99) 품계가 낮은 관원으로 임명된 장령(掌令)

□ 세조(世祖) 12년(1466) 7월 12일 신사

병조(兵曹)에서 군기(軍器)를 상정하여 아뢰기를

보은(報恩)에서 향각궁(鄕角弓) 36장, 마전(磨箭)과 통전(筒箭) 각각 18부, 장창(長槍) 15자루, 중창(中槍) 21자루, 환도(還刀) 36자루, 궁현(弓弦) 72개, 철갑(鐵甲) 2벌, 대쟁(大錚) 1개, 중쟁(中錚)과 소쟁(小錚) 각각 2개, 고(鼓) 2개, 대각(大角)과 소각(小角) 각각 2개

회인(懷仁)에서 향각궁(鄕角弓) 17장, 마전(磨箭) 9부 통전(筒箭) 8부, 장창(長槍) 7자루, 중창(中槍) 10자루, 환도(還刀) 17자루, 궁현(弓弦) 34개

이상의 군기(軍器)는 1년에 한 번 제조하는데, 기모(旗髦)는 2년에 한 번 제조합니다. 상부에 바치는 수량 외에는 모두 거진(巨鎭)에 간수해 두고, 갑옷과 투구, 징과 고각은 거진(巨鎭)에서만 제조하여 바치게 하소서." 하였다. 〈세조실록 권39 엽24〉

□ 세조(世祖) 12년(1466) 9월 11일 기묘

호조(戶曹)에서 복천사(福泉寺) 중 성우(省愚)의 진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복천사의 논밭 2백결 중에 여러 관사(官司)에 상납하는 세미두(稅米豆)를 생산하는 논밭은 군자감(軍資監)에 환속시키고 그 나머지 논밭만 복천사에서 세를 받는 일은 청컨대 진정서에 따라 조사하여 계산하고 대궐 안에서 행하는 수륙사(水陸社)[101] 의 예로 세미두를 전부 수납하는 일은 복천사가 나라에서 행하는 수륙사가 아니므로 청컨대 들어주지 마소서."하니 분부하기를 "세미 두까지 그 절에 속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권39 엽38〉

■ 세조(世祖) 12년(1466) 11월 7일 을해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신면(申沔)과 좌승지(左承旨) 윤필상(尹弼商)을

100) 성종 4년 2월 김수경을 청주목사로 임명하니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김수경은 녹사(錄事) 출신으로 다른 재능이 없는데, 그 형인 중 신미(伸眉)가 임금의 총애받는데 기대서 지위가 당상(堂上)에 이르렀으니, 주목(州牧)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그가 어리석고 용렬하다는 것을 알면서, 굳이 논집(論執)하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아깝다." 하였다.

101) 바다와 육지에 있는 영혼에게 올리는 불교의식

불러 내전(內殿)에 들어오게 하여 금지한 왕령을 어긴 수령들의 죄를 의논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권40 엽13〉

□ 세조(世祖) 12년(1466) 11월 10일 무인

임금이 형조(刑曹)에 분부하기를 금지한 왕명을 어긴 "회인현감(懷仁縣監) 성계성(成繼姓)을 파면하라." 하였다.[102] 〈세조실록 권40 엽14〉

□ 예종(睿宗) 1년(1469) 2월 3일 무자

임금이 의금부(義禁府)에 분부하기를 "난신(亂臣) 강순(康純)[103]의 나이 어린 서삼촌 조카 민산이(閔山伊)를 보은(報恩)에 사는 어미내은이(內隱伊)에게 보석시켰다가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 안치하라." 하였다. 〈예종실록 권3 엽18-19〉

□ 성종(成宗) 1년(1470) 2월 30일 기묘

병조(兵曹)에서 아뢰어 정병(正兵)을…

보은현(報恩縣)의 정원은 6백88명인데 6백50명으로, 회인현(懷仁縣)의 정원은 1백88명인데 1백50명으로 하였다. 〈성종실록 권3 엽24〉

□ 성종(成宗) 1년(1470) 9월 1일 병자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충청도의 청안(淸安) 진천(鎭川) 청산(靑山) 보은(報恩) 옥천(沃川) 황간(黃澗) 영동(永同) 음성(陰城) 고을은 모두 가흥창(可興倉)[104]에서 멀지 않은데, 경기도에 이포창(梨浦倉)[105]을 설치하여 청안(淸安) 진천(鎭川)의 전세(田稅)를 거두고 또 우만창(宇萬倉)[106]

102) 성계성(成繼性)은 성녕대군(誠寧大君) 이종(李褣)의 인척으로 공신(功臣) 대우를 받았다. 그리하여 세종 때 남부녹사(南部錄事)로 국상(國喪)을 당하여 오영(吳永)의 기생첩 만환래(萬喚來)와 간통한 죄로 의금부의 조사를 받았지만 왕명으로 석방된 바 있고 세조 때 회인현감으로 임명되었다가 불미스런 일로 파면되었지만 2년 뒤에 다시 옥천군수로 임명되었다.

103) 유자광(柳子光)의 무고로 체포된 남이(南怡)가 고문에 못이겨 영의정(領議政) 강순(康純)과 공모했다고 말하여 남이와 함께 반역죄로 사형을 당하여 난신이 되었다. 그러나 순조 18년(1818) 누명이 풀리고 복관(復官)되었다.

104) 지금의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에 있었던 조창(漕倉)

105) 경기도 여주 동쪽 25리 여강(驪江) 상류에 있었음

106) 경기도 여주 서쪽 34리 여강(驪江) 하류에 있었음

을 설치하여 청산(靑山) 이하 여섯 고을의 전세를 거두게 하니 이는 창고의 설치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수납을 감독하는 서장관(書狀官)과 경차관(敬差官)의 잦은 왕래로 역로에 폐단이 있습니다.
청컨대 이포창과 우만창을 폐지하고 이상 여덟 고을의 전세를 모두 가흥창에서 수납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권7 엽7〉

□ 성종(成宗) 1년(1470) 9월 19일 갑오

형조(刑曹)에서 세 차례 조사하여 아뢰기를
보은(報恩) 죄수 양인(良人) 천근중(千斤重)과 사노 막금(莫金) 및 옥천(沃川) 죄수 사노 신용(申龍)이 김의원(金義源)의 집을 약탈해 강도질한 죄는 즉시 목을 베는 형벌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권7 엽26〉

□ 성종(成宗) 2년(1471) 12월 26일 계사

사헌부(司憲府)에서 보고하기를
회인현감(懷仁縣監) 박운손(朴雲孫)은 어리석고 추잡하며 행실이 좋지 않아 백성을 다스림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파직 시켰다.[107] 〈성종실록 권13 엽27〉

□ 성종(成宗) 3년(1472) 2월 1일 무진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지난 경인년[108]에 개정한 정병(正兵)의 정원을…
보은현(報恩縣)은 6백88명에서 38명을 줄여 6백50명으로 정하였으나 이제 70명을 더 줄여 5백80명으로…
회인현(懷仁縣)은 1백88명에서 38명을 줄여 1백50명으로 정하였으나 이제 50명을 더줄여 1백명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권15 엽2〉

107) 성종 5년(1474) 4월에 임명장을 되돌려 받았다.
108) 성종 5년(1474) 4월에 임명장을 되돌려 받았다.

□ 성종(成宗) 4년(1473) 4월 15일 을해

임금이 병조(兵曹)에 분부하기를 “충청도 보은현(報恩縣) 복천사(福泉寺)에 내려간 중 신미(信眉)와 학열(學悅)에게 타고 갈 말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권29 엽5〉

□ 성종(成宗) 4년(1473) 4월 19일 기묘

사간(司諫) 박숭질(朴崇質) 등이 간단한 상소문을 올려 아뢰기를 “신들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역참(驛站)을 설치한 것은 본래 지방의 물정을 보고하고 군사의 사정을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미(信眉)와 학열(學悅)의 두 중이 명분도 없이 역마(驛馬)를 타고 다니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내린 분부를 거두시어 깨끗하고 밝은 정치에 누가 되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선왕(先王)께서 공경히 대접하던 중인데 역마를 주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권29 엽6〉

□ 성종(成宗) 4년(1473) 10월 2일 경신

대사간(大司諫) 정괄(鄭佸) 등이 상소하기를…

불교는 본래 오랑캐의 한 법으로 군신(君臣)과 부자(父子)의 윤리를 알지 못하고 농사를 짓지 않고도 밥 먹고 누에를 치지 않고도 옷 입으며 그 인연(夤緣)[109]의 말로써 세상사람을 미혹시키니 바로 나라를 좀먹는 해충이므로 반드시 물리쳐 없애버려만 천하와 국가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태종(太宗)께서 그 해독을 깊이 통촉하시어 절의 노비와 논밭을 모두 혁파하고 요사하고 더러움을 금하고 바른 도리를 밝히어 국가의 만대를 위하는 생각이 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중의 무리가 점점 늘어나면서 횡포가 심하고 재물이 정승(政丞) 판서(判書)와 비슷하고 세력은 능히 사람을 움직이는 자가 있으며 자기들의 세력이 강함을 믿고 남의 제방을 빼앗는 자가 있으며 민간에 드나들면서 음탕하고 방자하여 풍속을 어지럽게 하는 자가 있으며 어물(魚物)과 소금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자

109) 권세있는 연줄을 타서 입신출세를 구함

가 있으며 남의 아내나 첩을 빼앗는 자가 있으며 남의 소송을 대신 맡아서 받드시 승소하게 해준다고 약속하는 자가 있으며 떼를 지어 몽둥이를 들고 수령(守令)을 위협하는 자가 있어서 모든 일이 중에 관계되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감히 누구도 말하지 못하니 여기에 이르러 가위 마음이 아픕니다.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이래로 옛 제왕(帝王)의 학문을 강구해 밝히시고 바른 정치를 넓히시어 간사하고 망령된 무리가 저절로 사라져 없어졌으나 그래도 없어지지 않은 것이 여덟 가지 있습니다.

근래에 연달아 흉년이 들어 나라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급하지 않은 비용은 모두 줄이고 있는데 원각사(圓覺寺) 내불당(內佛堂) 복세암(福世菴)에 지급하는 용품이 그 하나입니다.

군사는 본래 왕실을 호위하는 것인데 서울에 있는 모든 절을 궁궐처럼 정병(正兵)으로 하여금 문을 지키게 하는 것이 그 둘입니다.

강원도는 땅이 메마르고 백성이 적어 조세(租稅)의 수입이 매우 적어 여러 고을의 군수곡(軍需穀) 1백섬을 채우지 못하여 걱정하는 바가 큰 데 조세로 거둔 쌀을 '세헌(歲獻)'이란 이름으로 모두 금강산(金剛山)의 여러 절에 나누어 주는데 강원도 백성들의 피고름을 쓸데 없는 중에게 버리는 것이 그 셋입니다.

지방에 절이 너무 많아서 있던 것을 더러 없앴는데 요즈음 와서 절과 탑을 수리하거나 창건하는 일이 계속되어서 백성을 괴롭게 하고 재물을 손상시키는 것이 그 넷입니다.

역마(驛馬)는 나라의 명령을 보내고 지방의 보고를 올리기 위한 것인데 중들이 오갈 때 역마를 타도록 허락하여 역로(驛路)를 번거롭게 하는 것이 그 다섯입니다.

청정과욕(淸淨寡欲)[110]이 불교의 도리인데 큰 절의 세력있는 중이 곡물로 이자놀이하면서 세력으로 이용하고 기세를 부리어 서민을 괴롭히는 것이 그 여섯입니다.

근래에 군영에서 도망하고 부역을 피하여 머리를 깎고 중이 된 자가 몇 천명 또는 몇 만명이 되는지 알 수 없는데 군인과 농민이 이 때문에 줄어

110) 티없이 깨끗하게 살면서 욕심을 내지 않는 것

들고 앉아서 먹는 자가 많은 것이 그 일곱입니다.
중의 아우나 조카로 용렬하고 못난 무리가 요행을 인연으로 지방에서는 큰 고을이나 부유한 고을의 수령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조정의 좋은 자리를 얻어가지고 있으면서 직무는 태만하고 백성을 못살게 구는 것이 그 여덟입니다.
무릇 이 여덟 가지는 모두 나라의 큰 폐단이니 원컨대 이제부터 중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없애고 사찰의 문을 지키는 파수군을 없애며 세헌하는 쌀을 없애고 중의 친족에게 준 관직은 모두 빼앗고 절은 창건하지 말고 중들이 역마 타는 것을 허락하지 말며 중들이 이자놀이하는 곡물을 회수하여 국방비로 전용하며 나이 40세 이하로 도첩(度牒)[111]이 없는 중은 다 환속시켜서 군인으로 보충도록 하소서." 하였다.
이에 임금이 사간원에 묻기를 "재산의 넉넉함이 정승 판서와 같으면서 남의 제방을 빼앗은 자가 누구이며, 여염집에 드나들면서 음탕하고 방자한 자가 누구이며, 남의 아내와 첩을 빼앗고 어물과 소금을 파는 자가 누구이며, 서울 안 여러 절 가운데 군사가 문을 지키는 곳이 어느 절이며, 이른바 역마를 탄다는 자가 누구이며, 아우나 조카가 관직에 널려 있다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말하라." 하였다.
정언(正言) 이계통(李季通)이 대답하기를 "문을 파수하는 절은 원각사(圓覺寺) 내불당(內佛堂)이고, 역마를 타고 다니는 자는 신미(信眉)와 학열(學悅)이며, 서울과 지방에 널려 있다는 것은 김수경 (金守經)[112] 김수화(金守和)[113] 김민(金旼)[114] 김영추(金永錘)[115]의 무리입니다. 그 밖에 재산의 넉넉함이 재상과 같다는 등의 일은 모두 이미 지나간 일인데 다만 옛 폐단을 일일이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절의 문을 파수하는 것은 선왕조(先王朝) 때부터 이미 그러하였던 것이고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니며, 만일 맡겨서 부릴 일이 있으면 비록 중일지라도 역마를 타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아우나

111) 나라에서 중이 되려는 사람에게 일정한 보상을 받고 내 준 허가증
112) 신미(信眉)의 아우
113) 신미(信眉)의 아우
114) 신미(信眉)의 조카
115) 학조(學祖)의 아우

조카가 만일 어질다면 어찌 중의 친족이라고 쓰지아니할 것인가? 재산의 넉넉함이 재상과 같다는 등의 말은 비록 이왕에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임금 앞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일일이 써 가지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이계통이 대답하기를 "학열(學悅)이 지난 날에 강릉(江陵)의 제방을 점령하여 고을 백성들의 소송을 일으켰으니 이것은 남의 제방을 빼앗은 것입니다. 신미(信眉) 학열(學悅) 정심(正心) 설준(雪俊)의 무리가 수만의 재물을 축적하였고 여러 큰 절의 호화스러운 중은 대개 이와 같으니 이는 부유함이 재상과 같은 것입니다. 음탕하고 물고기 소금을 판매하는 중은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이제 낱낱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예전에 있었던 것이어서 이제 낱낱이 들 수없단 말인가? 말하지 아니함은 잘못이다. 제방은 세조(世祖)께서 하사한 것이고 학열이 스스로 점령한 것이 아니다." 하고 명하여 술을 먹여서 보내게 하였다. 〈성종실록 권35 엽7〉 9집 64면

□ 성종(成宗) 6년(1475) 2월 8일 정해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난신(亂臣)[116]에 연좌된 사람으로 나이가 어렸던 자가 이제 나이가 찼으니…

민서(閔敍)의 서조카 민제동(閔梯同)은 보은(報恩)에서 노역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권52 엽9〉

□ 성종(成宗) 6년(1475) 9월 8일 갑인

인산부원군(仁山府院君) 홍윤성(洪允成)이 사망하니 조정에서 조회(朝會)를 중지하고 조문과 제사 그리고 장례 지내기를 국장(國葬)의 예와 같이 하였다. 〈성종실록 권59 엽4-5〉

□ 성종(成宗) 6년(1475) 9월 25일 신미

임금이 호조(戶曹)에 분부하기를 "충청도의 진천(鎭川) 옥천(沃川) 의 전

116) 유자광(柳子光)의 무고로 체포된 남이(南怡)가 고문에 못이겨 공모했다고 말하여 남이와 함께 반역죄로 사형을 당한 영의정(領議政) 강순(康純)을 말함

세(田稅)는 모두 가흥창(可興倉)[117]으로 납부하고 청주(淸州) 문의(文義) 진잠(鎭岑) 회인(懷仁) 회덕(懷德)의 전세(田稅)는 공세 곶이[貢稅串][118]로 납부하게 하였으나 이제 거리를 살펴보니 앞의 다섯 고을은 모두 가흥창(可興倉)과 거리가 가까우니 앞으로는 가흥창으로 납부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권 59 엽36〉

□ 성종(成宗) 10년(1479) 10월 15일 정유

보은(報恩)의 정병(正兵) 박막동(朴莫同)이 길가에서 굶주림을 아뢰니 임금이 동저고리와 쌀을 하사하였다. 〈성종실록 권109 엽4〉

□ 성종(成宗) 10년(1479) 윤10월 1일 계축

임금이 충청감사(忠淸監司)에게 분부하기를 "보은(報恩)에 살고 있는 김조양(金朝陽)[119]에게 군장(軍裝)과 마필(馬匹)을 갖추게 하여 빨리 역마(驛馬)를 주어서 서울로 올려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권110 엽1〉

□ 성종(成宗) 11년(1480) 1월 25일 병오

진주목사(晋州牧使) 신말주(申末舟), 숙천부사(肅川府使) 김사원(金嗣源), 보은현감(報恩縣監) 이질(李質), 청양현감(靑陽縣監) 김맹성(金孟誠), 포천현감(抱川縣監) 권민(權敏)이 부임인사를 하니 임금이 불러 이르기를 "수령의 임무는 칠사(七事)[120]에 있지만 그러나 소송은 지체시킬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살피고 지적할 것이니 만약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죄를 다스려 용서하지 않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권113 엽13〉

117) 지금의 충주군 기금면 가흥리에 있었음
118) 지금의 충남 아산군 인주면 공세리에 있었음
119) 김조양은 태안군수(泰安郡守)로 제직 중 군기를 연마하지 않은 죄로 파직되어 보은에 죄인으로 머물고 있었다.
120) 수령이 지켜야 할 7가지 덕목. 즉 농사성(農事盛) 호구증(戶口增) 학교흥(學校興) 군정수(軍政修) 부역균(賦役均) 사송간(詞訟簡) 간활식(姦猾息)

□ 성종(成宗) 11년(1480) 1월 26일 정미

고원군수(高原郡守) 한척(韓陟), 영덕현령(盈德縣令) 금휘(琴徽), 정주판관(定州判官) 이희(李熙), 금성현령(金城縣令) 한승필(韓承弼), 회인현감(懷仁縣監) 정윤(鄭倫)이 부임인사를 하니 임금이 불러 이르기를 "그대들은 어떻게 고을을 다스리겠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마땅히 법을 받들어 백성을 사랑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법을 받들겠다고 말하지만 물러가서 말한 바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을 속이는 것이니 각기 삼가서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권113 엽13〉

□ 성종(成宗) 12년(1481) 7월 7일 경진

충청감사(忠淸監司)가 보고하기를 "공주(公州) 회인(懷仁) 문의(文義) 고을에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권131 엽 4〉

□ 성종(成宗) 18년(1487) 1월 23일 갑자

사간원(司諫院) 대사간 김수손(金首孫) 등이 상소하기를 . . . . .

삼가 듣건대 옛 사람의 말에 이르기를 '불교의 피해는 양주(楊朱)[121]와 묵적(墨翟)[122]보다 심하다.'고 하였으며 예로부터 현인군자는 깊이 막고 힘써 분변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는 진실로 전하께서 통촉하시는 것인데 어찌 신의 말을 기다리겠습니까? 우선 이 나라를 좀먹는 것 그 하나를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에서 1년에 중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보면 개경사(開慶寺)에 소금 53섬 5말, 회암사(檜巖寺)에 소금 60섬, 진관사(津寬寺)와 장의사(莊義寺)에 소금 20섬, 정업사(淨業寺)와 정인사(正因寺)는 소금 60섬, 연경사(衍慶寺)와 복천사(福泉寺)에 소금 93섬 5말, 숭효사(崇孝寺)와 보은사(報恩寺)에 소금 50섬, 각림사(覺林寺) 대자사(大慈寺) 용문사(龍門寺)에 소금 1백20섬, 내불당(內佛堂)에 소금 5섬. 말장 5섬5말, 쌀 31섬2말,

121) 노자(老子)의 무위독선설(無爲獨善說)에 따라서 염세적 인생관을 세우고 쾌락주의를 주장한 중국 전국시대의 학자로 존칭하여 양자(楊子)라 함.

122) 형식 계급 사욕을 타파하고 사회겸애(社會兼愛)를 주장한 중국 춘추전국시대 학자로 존칭하여 묵자(墨子)라 함.

삼베 8필, 면포 10필, 봉선사(奉先 寺)에 소금 1백섬, 말장 6섬5말, 콩 48섬, 쌀 48섬, 삼베 10필, 무명 20필, 원각사(圓覺寺)에 소금 10섬, 말장 6섬5마, 콩 48섬, 삼베 10필, 무명 20필, 연굴암(演窟菴) 복세암(福世菴)에 소금 10섬6 말, 말장 5섬, 쌀 27섬6말두 양종(兩宗)에 소금 40섬이고 선승(選僧)하는 해는 쌀이 30섬, 콩이 30섬이니 1년의 소비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외적을 방어하면 무슨 적인들 이기지 못하겠으며 이것으로 성을 지키면 어느 성인들 튼튼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휼하는데 쓴다면 수십만의 춥고 굶주린 백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며 오랑캐를 대접하는데 쓴다면 수십 년간의 청구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의 기름과 피를 짜서 쓸데없는 곳에다 버리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성종실록 권199 엽20〉

□ 성종(成宗) 18년(1487) 9월 11일 정미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분부하기를 "조종조(祖宗朝)에서 금은불상(金銀佛像)을 비밀리 금강산(金剛山)의 사자암(獅子庵)에 두고 금50여냥과 은 5 · 6백냥을 썼다.

최근에 내시를 보내어 살펴보니 불상이 없어지고 다만 그 옥대(玉臺)만 풀 숲 사이에 버려져 있었다. 내 생각으로는 지난 날 복천사(福泉寺)에서 부처를 훔친 것을 알린 자가 반드시 이 일도 알 듯하니 의금부(義禁府)를 시켜서 체포케 하고 경력(經歷) 강숙회(姜叔淮)를 진산(珍山)에 보내어 알린 사람 오을미(吾乙未)를 잡아 도사(都事) 안해(安該)와 함께 진도(珍島)로 가서 그 무리인 박은손(朴恩孫)을 체포하고 또 도사(都事) 윤여림(尹汝霖)을 시켜 도적질한 중 지경(知冏)을 체포하도록 하라."하였다. 〈성종실록 권207 엽5〉

□ 성종(成宗) 18년(1487) 9월 25일 신유

우부승지(右副承旨) 김극검(金克檢)이 아뢰기를 "이제 지경(智冏)이라는 자를 가까운 일가와 네 이웃 사람에게 보였더니 다들 지경이 아니고 그 형이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지경이 아니라도 우선 가두라. 또 여러 도(道)에 지

시하여 지경을 포상을 내걸어 체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권207 엽9〉

□ 성종(成宗) 18년(1487) 12월 22일 정해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도망간 중 지경(智冏)이 종 자근동(者斤同) 박은손(朴銀孫) 오을미(吾乙味) 소동(召同)과 무리를 이루어서 복천사(福泉寺)와 유점사(楡岾寺)의 금은불상(金銀佛像)과 여러 물건을 도둑질하였고 박은손(朴銀孫) 박귀원(朴貴元) 도청(道淸) 말산(末山)과 무리를 이루어서 고려의 정릉(正陵)[123]을 파 가지고 보물을 가지려고 하였는데 비록 꺼내지는 못하였지만 관곽(棺槨)[124]을 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대저 비록 미워할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적으면 큰 벌을 줄 수 없고 비록 미워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범죄가 크면 가볍게 결단할 수 없는 것이다. 옛날 성현이 이르기를, '과실로 저지른 범죄는 아무리 커도 용서하고 믿는데가 있어 재차 죄 짓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박귀원 등의 범죄는 어부(御府)[125]의 재물을 도둑질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 마땅히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이미 전국에 사면령을 내렸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가할 수 없으니 전가사변(全家徙邊)[126]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전하의 의견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권210 엽19〉

□ 성종(成宗) 19년(1488) 7월 29일 경인

사헌부(司憲府)에서 수개경차관(修改敬差官) 정이휘(鄭以揮) 김영서(金永瑞) 정건(鄭健) 조치(趙峙)가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여러번 교체하기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영돈녕(領敦寧) 이상의 관원과 의논하게 하였다.

123) 경기도 개풍군 중서면에 있는 고려 공민왕(恭愍王)의 비(妣) 노국공주(魯國公主)의 무덤
124) 사람의 시체를 넣은 널과 덧널
125) 임금의 물건을 넣어두는 곳간
126)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북쪽 변방으로 옮겨 살게하는 형벌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정이휘 김영서 정건은 그 사람됨을 알지못하지만 조치는 어려서 신과 같이 공부하였고 또 한 마을에 살았는데 공자(孔子)와 맹자(孟子)의 가르침에 익숙하고 일찍이 찰방(察訪) 보은현감(報恩縣監)과 또 군자주부(軍資主簿)를 지냈으며 그 뒤 물러난지 거의 10년인데 벼슬을 역임한 것은 비록 적더라도 요즘의 일을 익숙하게 아는 것은 바로 그의 장점입니다. 추쇄(推刷)[127]와 재상(災傷)[128] 등의 일은 담당할 만합니다.”하였다.

이극배(李克培)가 의논하기를 “일의 전말을 이들이 다 아는데 만약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일이 반드시 어긋날 것입니다. 농사의 피해를 먼저 살펴서 전하에게 보고하게 한 뒤에 추쇄하는 일을 다스리게 하면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司憲府)의 관원을 불러서 여러 재상의 의논을 보이며 말하기를 “여러 의논이 이와 같으니 내가 시험하려고 한다.” 하였다. 〈성종실록 권218 엽18-19〉

□ 성종(成宗) 19년(1488) 8월 1일 임진

임금이 의금부(義禁府)에 분부하기를 “중 지경(智冏)이 정릉(正陵)[129]을 도굴하였고 또 사자암(獅子庵) 복천사(福泉寺) 유점사(楡岾寺)의 금은불상(金銀佛像)을 훔쳤다고 하니 죄를 다스려 아뢰라.” 하였다. 〈성종실록 권219 엽1〉

□ 성종(成宗) 21년(1490) 8월 5일 을유

병조판서(兵曹判書) 이극돈(李克墩)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번상(番上)[130]한 충청도 보은(報恩)의 정병(正兵) 김영산(金永山)이 요사스러운 말로 사람을 미혹시키자 도성 안의 양반집 부녀자들이 다투어 점을 치니 그가 가는 곳마다 무리를 이룹니다. 혹 병조판서(兵曹判書)가 청해 와서

127) 부역(賦役)이나 군역(軍役)을 기피한 사람. 또는 자기의 상전(上典)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지방으로 몸을 피한 노비(奴婢) 등을 찾아 내어 본 고장으로 돌려보내는 일
128) 천재(天災)로 인하여 농사에 입는 피해
129) 경기도 개풍군 중서면에 있는 고려 공민왕(恭愍王)의 비(妣) 노국공주(魯國公主)의 무덤
130) 지방의 군사가 차출되어 서울 군영(軍營)에서 복무하는 일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자는 병조(兵曹)에서 군졸을 모두 통솔하기 때문에 동요될 것을 두려워하여 데리고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사로이 군졸을 불러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병조의 정3품 이상의 관원도 할 수 없는 것이거늘 하물며 요사한 말로 사람을 미혹시키는 자이겠습니까? 죄가 법전에 있는 까닭으로 감히 아룁니다."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그 요사한 말은 어떤 것이냐?"하니 이극돈이 대답하기를 "귀신이 공중에 있어 능히 이미 지난 일을 말할 수 있다[131]고 칭탁하니 양반집 부녀자들이 그것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여자무당이라 해도 법으로 성 안에 있을 수 없거늘 하물며 남자무당이겠는가? 성 밖으로 내치어 성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함이 어떠하냐?" 하니 이극돈이 말하기를 "수군(水軍)으로 보내면 서울에 올 수가 없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미혹시키는 자이니 서울과 지방이 무엇이 다르겠느냐? 번상을 하더라도 성밖의 일을 시키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를 찾아서 점을 치는 자는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금지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권243 엽 2〉

■ 성종(成宗) 22년(1491) 4월 18일 계해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활 쏘는 것을 보았다.

여러 재상을 앞으로 나아오도록 명하고 분부하기를 "근래에 우리나라가 북쪽 오랑캐에게 치욕을 당한 것은 정도에 지나치다. 그래서 그 치욕을 씻지 않을 수 없으므로 오는 10월에서 1월 사이에 군사를 일으키려 한다. 군대는 어제 2만명으로 정하였으니 이제 도원수(都元帥)를 정하여 방책을 조치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이 대답하기를 "오랑캐의 죄를 물으시려는 거사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북쪽지방은 매우 추우므로 남쪽 사람들이 추위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1월에는 겹옷을 많이 껴입어야 하므로 몸을 움직이는데 재빠르지 않습니다. 신이 서정(西征)[132]하였을 때

131)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을 공창무(空唱巫) 일명 명도(明圖)라고 한다.

132) 세종(世宗) 때 서북 야인(野人)을 물리친 일

는 다행히 따뜻한 날씨를 만나 패배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10월인 경우는 추위가 심하지 않으니 거사할 만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도원수는 누구를 임명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였다.

윤필상이 말하기를 "신 등은 늙었습니다. 허종(許琮)은 젊어서부터 북쪽 지방을 드나들었으므로 형세와 오랑캐의 실정을 자세히 알고 있으니 원수의 임무는 허종이 아니면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허종을 도원수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권252 엽11〉

□ 성종(成宗) 22년(1491) 7월 4일 무인

임금이 충청감사(忠淸監司) 홍흥(洪興)과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조숙기(曹淑沂)에게 분부하기를 . . . .

내가 기업(基業)을 계승함으로부터 문교(文敎)를 크게 밝혔으니, 어찌 군사를 일으키고 군대를 동원하여 오로지 무력시위만 과시하려고 하겠는가? 중국과 교린(交隣)하고 사대(事大)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였으며 우리 국경에 인접해 있는 오랑캐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은혜와 신의로써 무마했는데 북쪽 오랑캐가 은혜와 신의를 저버리고서 지난 해 우리의 무이보(撫夷堡)[133]를 침범하였다.

그러나 좀도둑은 대적할 것이 못된다고 생각하여 내버려 두고 그 죄를 묻지 않았는데 금년에 또 조산보(造山堡)를 침범하여 우리의 진장(鎭將)을 살해하고 우리의 백성을 죽이고 우리의 가축을 빼앗아갔다.[134]

그리하여 변방의 사람들이 밤낮으로 이를 갈면서 모두가 한 번 군사를 일으켜 나라의 위엄과 기세를 잠시 보이기를 생각하고 있으니 내가 생각하건대 이같이 하는데도 토벌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하는 것이다. 우리의 당당한 군대의 위세로써 어찌 보잘 것 없는 오랑캐에게 굴욕받는 것을 견딜 수가 있겠는가? 마땅히 죄를 묻는 군대를 일으켜 법을

133) 경흥 동쪽 26리 함경북도 경흥군 경흥면 고성동에 있었던 오랑캐를 다스리던 곳.

134) 성종 22년 1월 올적합(兀狄哈)이 1천여명을 이끌고 조산보(造山堡)에 침입하여 군사 3병을 죽이고 만호(萬戶) 및 군사 26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성중(城中)의 남녀 7명과 말 5마리, 소 11마리를 노략질하고 이 소식을 들은 경흥부사(慶興府使) 나사종(羅嗣宗)이 군사를 거느리고 오랑캐의 땅으로 들어가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

어긴 자에게 대한 형벌을 빨리 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허종(許琮)을 도원수(都元帥)로 삼고, 성준(成俊)과 이계동(李季仝)을 부원수(副元帥)로 삼아 금년 10월에 군사 2만명을 거느리고 바로 그 소굴을 공격하여 무찔러 없애버리고야 말겠다. 지금 병부(兵符)를 보내니,
공주(公州) 회덕(懷德) 황간(黃澗) 영동(永同) 청산(靑山) 옥천(沃川) 연기(燕岐) 청주(淸州) 문의(文義) 연풍(延豊) 괴산(槐山) 청안(淸安) 보은(報恩) 회인(懷仁) 진천(鎭川) 고을의 군사는 8월 20일에 길을 떠나서 9월 22일에 길성(吉城)에 도착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권255 엽4〉

□ 성종(成宗) 22년(1491) 9월 13일 병술

헌납(獻納) 정탁(鄭鐸)이 아뢰기를 "충청도(忠淸道) 복천사(福泉寺)[135]에 공양하는 부영창(扶餘倉)의 소금 40섬을 해마다 봄가을에 백성으로 하여금 옮기게 하니 백성들이 심히 괴로워합니다. 선왕조(先王朝)에 중 신미(信眉)가 이 절에 있어 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만 신미가 이미 죽었는데도 그 폐단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 청컨대 혁파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절에서 혁파할 만한 일이 어찌 이것뿐이겠느냐? 조종조(祖宗朝)에서 설치한 것이라서 차마 갑자기 혁파하지 못하는 것 뿐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권257 엽10〉

□ 성종(成宗) 22년(1491) 10월 4일 정미

헌납(獻納) 정탁(鄭鐸)이 아뢰기를 "복천사(福泉寺)에 해마다 주는 소금은 백성들로 하여금 옮기게 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굽는 것은 본래 백성을 위한 것으로 비록 중들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만 스스로 가져가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절의 일에서 고칠 것이 많다. 그러나 조종조(祖宗朝)의 일이므로 감히 서둘러 고치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성종실록 권258 엽3〉

135) 원문의 福川寺는 福泉寺의 오자가 분명하여 여기서 바로 잡았다.

□ 성종(成宗) 23년(1492) 11월 11일 무인

우승지(右承旨) 조위(曹偉)가 아뢰기를 “여러 고을의 산성(山城)은 평상시에는 비록 소용이 없는 것 같으나 만약 사변이 있다면 피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충청도 보은현(報恩縣)에 산성이 있어 이름을 ‘삼년성(三年城)’이라고 하는데 신라와 백제가 여기를 국경으로 삼았고 전설에 3년동안 성을 쌓았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관아에서 거리가 5리인데 성 가운데는 넓고 밖은 험하며 또 완전하고 튼튼합니다.”하였다. 〈성종실록 권271 엽7〉

□ 성종(成宗) 24년(1493) 12월 20일 경진

특진관(特進官) 홍흥(洪興)이 아뢰기를 “신이 충청감사(忠淸監司)로 있을 때 보은현(報恩縣) 속리사(俗離寺)의 중이 속리사의 전세(田稅)를 거두면서 함부로 외람된 짓을 행하여 신이 잡아 심문하려고 그 일의 내용을 갖추어 보고하였는데 도망하여 숨고 나타나지 아니하니 중의 무리가 국법을 업신여기는 것이 매우 심합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형전(刑典)에 중을 가두지 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중들이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이에 이르렀으니 『경국대전』의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일로 속리사(俗離寺)의 주지를 혁파한다면 다른 절의 주지들도 반드시 스스로 근신할 것입니다.” 하였다.

정언(正言) 이세인(李世仁)이 아뢰기를 “중의 무리를 사대부의 예로 대접할 수는 없으니 청컨대 충청감사(忠淸監司)로 하여금 아뢰지 말고 조치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 하나가 함부로 외람된 짓을 하였다하여 갑자기 『경국대전』을 고치는 것이 옳겠는가? 법을 받드는 자가 그 도리를 다하는데 달려 있을 뿐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권285 엽10-11〉

□ 연산군(燕山君) 3년(1497) 7월 14일 계축

충청도 옥천(沃川) 회인(懷仁) 영동(永同) 보은(報恩) 문의(文義) 청산(靑山) 황간(黃澗)에 지진이 발생하였다. 〈연산군일기 권25 엽25〉

□ 연산군(燕山君) 8년(1502) 12월 7일 을사

충청도 청주(淸州) 옥천(沃川) 문의(文義) 회인(懷仁) 보은(報恩) 청안(淸安) 연풍(延豊) 음성(陰城) 진천(鎭川) 전의(全義) 연기(燕岐) 고을에 지진이 발생하였다. 〈연산군일기 권47 엽15〉

□ 연산군(燕山君) 9년(1503) 6월 12일 정미

충청도 홍주(洪州) 청주(淸州) 충주(忠州) 공주(公州) 면천(沔川) 천안(天安) 온양(溫陽) 태안(泰安) 문의(文義) 당진(唐津) 진천(鎭川) 목천(木川) 평택(平澤) 직산(稷山) 신창(新昌) 전의(全義) 연기(燕岐) 해미(海美) 회인(懷仁) 보은(報恩) 예산(禮山) 음성(陰城) 청안 (淸安) 진잠(鎭岑) 회덕(懷德) 제천(堤川)에 지진이 발생하였다.〈연산군일기 권50 엽2〉

□ 연산군(燕山君) 9년(1503) 8월 23일 정사

충청도 충주(忠州) 제천(堤川) 정산(定山) 진천(鎭川) 청안(淸安) 아산(牙山) 괴산(槐山) 결성(結城) 태안(泰安) 이산(尼山) 회인(懷仁) 면천(沔川) 임천(林川) 직산(稷山) 보령(保寧) 보은(報恩) 공주(公州) 연산(連山) 진잠(鎭岑) 회덕(懷德) 문의(文義) 천안(天安) 홍주(洪州) 예산(禮山) 덕산(德山) 음성(陰城) 남포(藍浦) 신창(新昌) 청주(淸州) 연기(燕岐) 평택(平澤) 서산(瑞山) 청풍(淸風) 당진(唐津) 옥천(沃川) 해미(海美) 전의(全義) 목천(木川) 청산(靑山)고을에 지진이 발생하였다. 〈연산군일기 권50 엽17〉

□ 연산군(燕山君) 10년(1504) 4월 7일 무술

임금이 분부하기를 "부수찬(副修撰) 이사균(李思鈞)은 곤장 60대를 때려 보은(報恩)에 죄인으로 머물게 하라."[136] 하였다. 〈연산군일기 권52 엽30〉

□ 연산군(燕山君) 11년(1505) 11월 1일 임오

보은(報恩) 사는 남자무당 김영산(金永山)이 스스로 "귀신이 내 몸에 붙

136)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廢妃) 윤씨(尹氏)의 복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한 죄임

어 있어 그릇에 가득히 채워둔 물도 절로 마르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승지(承旨)들이 그를 불러 시험해 보라." 하니 승지 윤순(尹珣) 김준손(金俊孫) 윤장(尹璋)이 김영산을 불러 보고는 아뢰기를 "김영산의 술법이 맞지 않고 한갓 요망하고 허탄한짓만 하였을 뿐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그를 밀위청(密威廳)[137]에 내려 곤장을 치면서 심문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권60 엽7〉

■ 중종(中宗) 2년(1507) 3월 20일 무진

임금이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책문(策問)[138] 제목을 내고 독권관(讀券官)인 우의정(右議政) 유순정(柳順汀) 등이 생원(生員) 김정(金淨) 등 36인을 뽑았다. 〈중종실록 권2 엽43〉

□ 중종(中宗) 2년(1507) 6월 2일 갑술

충청감사(忠淸監司) 손주(孫澍)가 보고하기를 . . . . .
"보은현감(報恩縣監) 정인겸(鄭仁謙)은 백성에게 임하기를 간략하게 하여 마음을 다해 돌보고 사랑하여 백성이 그 혜택을 입어 고향을 등지고 떠도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하였다. 〈중종실록 권3 엽15〉 .

■ 중종(中宗) 2년(1507) 8월 26일 정유

선릉행행(宣陵行幸)의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졌는데 전 우림위(羽林衛) 노영손(盧永孫)이 승정원(承政院)에 이르러 하원현감(河源縣監) 이찬(李纘)이 반역을 모의하였다고 고발하였다. 〈중종실록 권3 엽55-56〉

□ 중종(中宗) 2년(1507) 8월 28일 기해

금릉현감(金陵縣監) 김산(金山)이 진술하기를,
"신과 하원현감(河源縣監) 이찬(李纘)은 나이가 같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언제인가 이웃에 사는 봉사(奉事) 유의정

137) 연산군 때 의금부(義禁府)의 이름
138) 문과(文科) 시험의 하나. 주로 정책(政策)에 관한 문제를 출제함

(俞義貞)이 말에서 떨어져 기분이 좋지 않아서 술을 마시러 같은 이웃의 생원 신희철(申希哲)과 함께 신의 집에 왔었는데 하원현감 이찬도 와서 잡담을 하였을 뿐 곧 헤여졌습니다. 하원현감 이찬은 그 동서인 보은현감(報恩縣監) 연구령(延九齡)의 집에 간다고 나갔고 그 때 황수억(黃守億) 손준(孫浚) 등도 역시 신의 집에 왔다가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갔을 뿐 달리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다."하였다. 곤장을 치면서 심문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권3 엽66〉

□ 중종(中宗) 2년(1507) 8월 29일 경자

전 보은현감(報恩縣監) 연구령(延九齡)이 진술하기를,

"신이 듣기로는 하원현감(河源縣監) 이찬(李纘)은 성종(成宗)의 국상(國喪) 때 아녀자 일로 죄를 받아 패상안(敗常案)[139]에 기록되었으므로 항상 불초한 자로 여겨왔습니다.

지난 기미년[140]에 하원현감 이찬이 신의 처제에게 장가를 들려고 종부시(宗簿寺)에 청원하기에 신이 장모에게 말하기를 '행동이 경박한 사람이라 사위를 삼기는 좋지 않습니다.' 하였는데 석 달동안 가두어 놓고 독촉하는 바람에 할 수 없어 사위를 삼았습니다.

하원현감 이찬은 신이 장모에게 사위를 삼지 못하게 하였다는 말을 듣고 신을 향해서는 매양 불평을 말했습니다. 하원현감 이찬이 이로 말미암아 서울로 올라올 때에도 신과 화합하여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금년 7월에 하원현감 이찬이 서울에 이르러 신이 보은현감(報恩縣監)에 임명되었다는 말을 듣고 신을 찾아왔으나 손님들이 많이 와서 얼굴만 보았을 뿐 말을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찾아왔으나 역시 손님이 많아 서로 보기만 하고 그냥 갔을 뿐입니다. 만일 들은 말이 있다면 신이 어찌 꺼리어 숨기겠습니까?" 하였다. 곤장을 치면서 심문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권2 엽70-71〉

139) 죄를 받은 관원의 명단
140) 연산군 5년(1499)

■ 중종(中宗) 2년(1507) 8월 29일 경자

전 하원현감 이찬(李纘)이 다시 진술하기를,

"신이 이과(李顆)의 말을 듣고 이 달 26일, 선릉행행(宣陵行幸) 때에 반역을 모의하여 좌의정(左議政)과 우의정(右議政)을 제거하고 견성군(甄城君)을 추대하려고 했는데 동지들을 미처 모으지 못하여 일을 이루지 못하고 탄로가 났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죄인들을 이미 다 심문하여서 다시 물을 필요가 없겠으니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옳겠다."고 하였다. 〈중종실록 권2 엽71〉

□ 중종(中宗) 2년(1507) 10월 14일 갑신

충청감사(忠淸監司)가 백성을 잘 다스린 수령으로 보고한 보은현감(報恩縣監) 정인겸(鄭仁謙)[141] 등에게 차등을 두어 비단을 하사하였다. 〈중종실록 권4 엽31〉

□ 중종(中宗) 3년(1508) 1월 26일 갑자

민원(閔愿)을 사간원(司諫院)의 헌납(獻納)으로, 김정(金淨) 김식(金湜)을 사간원(司諫院)의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중종실록 권5 엽 15〉

□ 중종(中宗) 3년(1508) 1월 28일 병인

정언(正言) 김정(金淨)이 아뢰기를 "대사간(大司諫) 남율(南慄)은 본디 술병이 있어 사람들이 명성을 가볍게 여기니 사간원의 장관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신이 밖에 있을 적에 이 일을 들었는데 지금 사간원에 같이 근무하게 되니 서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관직을 바꾸라."고 분부하였다. 〈중종실록 권5 엽16〉

□ 중종(中宗) 3년(1508) 4월 17일 갑신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이 상의하여 전날 일에 대하여 아뢰고 또 아뢰기를,

"죽은 참의(參議) 심인(沈潾)의 아내 이씨(李氏)의 종이 보낸 고소장에 이

141) 중종 2년 6월2일 충청감사(忠淸監司) 손주(孫澍)의 보고에 따른 포상임

르기를 '연창부원군(延昌府院君) 김감(金勘)이 연산군 때 권세를 믿고 그 주인의 집을 빼앗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대부가 할 짓이 아닙니다. 김감은 삼공(三公)[142]이 아니기 때문에 진작 여쭙지 못했지만 속히 그 관직을 파면하기를 청합니다.

민효증(閔孝曾)은 성질이 간사하고 아첨하며 잔혹한 사람인데도 의금부(義禁府)의 판사(判事)가 되었고 정광세(鄭光世)는 번거롭고 외람되며 정직하지 못한데도 형조판서(刑曹判書)가 되었으니 교체하시기를 청합니다.

정언(正言) 김정(金淨)은 작년 8~9월 사이에 병든 아비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대궐에 들어왔고 보은현감(報恩縣監) 연구령(延九齡)도 대궐에 와서 부임인사를 하였는데 내시(內侍) 성윤(成胤)이 연구령과 김정을 경회루(慶會樓) 남문으로 끌고 가 술을 권하면서 연구령에게 말하기를 '모든 일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수가 많다. 전날 민번(閔蕃)이 회덕현감(懷德縣監)의 수망(首望)[143]으로 추천되었는데 민번이 가려고 하지 않으므로 내가 전하에게 아뢰기를 「민번이 현재 가례도감(嘉禮都監) 낭관(郎官)으로 있으니 회덕현감으로 결정되더라도 반드시 다시 옮겨올 것입니다」하여 마침내 강희신(姜熙臣)이 회덕현감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민번이 보은현감의 후보에 올라 있었고 그가 그것을 하고 싶어 나에게 부탁했으나 내가 응하지 않고 회덕현감을 시키라고 했으니 다시 아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후에 후보명단을 아뢰게 되어 전하께서 "연구령이 어떤 사람이냐?' 고 묻기에 내가 '문신(文臣)으로서 쓸모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아뢰어 마침내 그대가 결정되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보은현감은 그간 다 문신이었으니 전하께서 그런 분부는 안 하셨겠지만 바깥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찌 의심을 두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내시 성윤의 죄를 다스리고 또 민번이 내시에게 아부한 죄도 함께 다스리소서." 하였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성윤과 민번은 다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심문하고 그 밖의 일은 모두 허락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권5 엽53〉

142)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

143) 관원을 임명할 때 이조(吏曹) 병조(兵曹)가 올리는 후보자 3인 중의 첫 번째 후보

□ 중종(中宗) 5년(1510) 3월 6일 신유

홍문관(弘文館) 교리(校理) 김정(金淨)이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봉양하기를 상소하니 임금이 분부하기를 "고향 근처에 수령자리가 비는대로 임명해 보내라." 하였다. 〈중종실록 권10 엽55〉

□ 중종(中宗) 6년(1511) 12월 4일 경진

홍문관(弘文館)에서 왕명을 받들어 '계심잠(戒心箴)'을 지어 올리니 임금이 신용개(申用漑)와 박열(朴說)에게 명하여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차례를 정하게 하고 '계심잠'을 지은 김정(金淨) 등에게 녹피(鹿皮)와 각궁(角弓)을 차등있게 하사하였다. 〈중종실록 권14 엽 50〉

□ 중종(中宗) 10년(1515) 8월 7일 신유

창화군수(昌化郡守) 이장손(李長孫), 보은현감(報恩縣監) 이극창(李克昌), 보령현감(報寧縣監) 이팽조(李彭祖), 연산현감(連山縣監) 이사창(李嗣昌), 예산현감(禮山縣監) 이계창(李繼昌), 무진군수(茂珍郡守) 이종손(李終孫) 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은 삼가 선원(璿源)[144]의 일파로서 의리상 마땅히 나라와 더불어 편안함과 근심을 같이 하여야 하므로 귀로 들은 바가 있고 눈으로 본 바가 있고 마음에 의심하는 바가 있으면 마땅히 정성을 다하여 전하에게 진달하여야 하거늘 하물며 국가의 대례(大禮)를 빠뜨리고 거행하지 않음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위를 넘어 말하는 것은 신들에게 죄가 되는 것이나 신들은 전하와 성이 다른 관원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묵묵히 있을 수 없습니다.

신들이 듣건대 종묘(宗廟) 제도에 조(祖)는 공(功)이 있고 종(宗)은 덕(德)이 있는 것임은 삼대(三代)의 법도인데, 후세에 이르러 신하로서는 차마 분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형세가 분변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나라를 세운 임금은 조(祖)라 일컫고 왕통(王統)을 계승한 임금은 공덕의 많고 적음과 재위기간의 길고 짧음을 논하지 않고 모두 종(宗)이라 하였는데 당(唐) 송(宋) 이후로 일찍이 이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조상께서도 또한 옛 제도에 따라 강헌대왕(康獻大王)[145]은 조라 일컫고 공정대왕

144) 조선시대 왕족(王族)

(恭定大王)[146]으로부터 이하는 종이라 일컫지 않음이 없었으되 공정대왕(恭靖大王)[147]만은 홀로 묘호(廟號)[148]가 없으니, 대례(大禮)를 빠뜨린 것이 이보다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들은 삼가 보건대 공정대왕은 강헌대왕의 왕비가 낳은 아들로 왕위를 계승하셨고 즉위하신지 3년 만에 공정대왕을 책봉하여 세자로 삼았으며 그 해 겨울에 공정대왕에게 왕위를 물려 주시매 공정대왕이 존호를 올려 인문공예상왕(仁文恭睿上王)이라 하셨습니다. 승하하심에 이르러서는 공정(恭定) 장헌(莊獻)[149] 두 대왕께서 애통하시고 추모하심이 지극하시어 상례와 장례의 예를 다하셨고 중국에 시호를 청하니 태종황제(太宗皇帝)가 공정(恭靖)이라 시호를 내리셨으며, 장헌대왕이 또 존호를 더하시어 온인공용순효대왕(溫仁恭勇順孝大王)이라 하셨습니다. 이로 보면 공정대왕(恭靖大王)의 전후 종시의 사적이 한결같이 정(正)에서 나왔는데 홀로 그 묘호만을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공정대왕(恭靖大王)께서 재임기간이 오래지 않고 별로 공덕이 없으셨다고 이른다면 옳지 못합니다. 공정대왕(恭靖大王)께서는 공이 있는 이를 높이시고 덕이 있는 이에게 양보하셔서 왕위를 물려주시어 임금의 자리를 진명지주(眞命之主)[150]에게 돌아가게 하셨으니 이는 공덕이 없으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하루를 왕위에 계셨더라도 진실로 한 나라의 임금이니 자손이 되고 신민된 자는 마땅히 받드는 예를 극진히 하여야 하고 조금이라도 구별을 두어서는 안되는 것인데 하물며 공정대왕께서는 임금의 자리를 양위 받아 국사를 돌보심이 합하여 십 수년이어서 온 나라 백성이 오래 섬겼음에리까!

공정대왕께서 이미 공정대왕의 세자가 되셔서 양위를 받아 왕통을 계승하셨으니 공정대왕으로부터 이후의 자손은 모두 공정대왕(恭靖大王)의 자손인 것입니다. 자손이 되어 조상을 받드는 예에 한가지라도 빠뜨림이

145) 태조(太祖)의 왕호
146) 태종(太宗)의 왕호
147) 정종(定宗)의 묘호
148) 임금의 시호(諡號)
149) 세종(世宗)의 왕호
150) 하늘의 뜻을 받아 난세를 평정하고 통일하는 어진 임금

있다면 성조(聖朝)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공정대왕(恭靖大王)께서 공정대왕(恭定大王)에게 선위하셨으니 그 뒤에 왕통을 잇고 제사를 받드는 자는 모두 공정대왕의 자손인데 공정대왕 이후 추봉(追奉)[151]을 극진하게 하면서 공정대왕에게만 그 묘호를 빠뜨렸으니 조종은 마찬가지인데 예를 빠뜨리면 천만세 뒤에 또 의논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신들은 듣건대, 양도대왕(襄悼大王)[152] 때에 일찍이 공정대왕(恭靖大王)의 묘호를 올리는 일을 조정에 내려 의논하게 하시니 조정의 의논이 모아져 곧 희종(熙宗)으로 묘호를 정하고 세조대왕(世祖大王) 부묘(祔廟) 때를 기다려서 함께 거행하려고 하였는데 신민이 불행하여 팔음(八音)[153]이 문득 그쳤으며, 수삼년 사이에 잇달아 국상(國喪)을 만나 국가에 연고가 많았으므로 그럭저럭 지금에 이르렀으니 이같은 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전하께서 중흥하시어 그 일이 중지됐으나 모든 예전(禮典)에서 실행되지 않는 잘못을 거행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소릉(昭陵)을 복구한 것[154]은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기쁘게 여깁니다. 신들은 생각건대 공정대왕(恭靖大王)의 묘호도 이 뒤를 따라 거행되리라 여겨 목을 늘이고 발돋움하며 바랐으나 해가 여러 번 바뀌어도 전하께서는 말씀이 없고 아래서는 건의함이 없습니다. 신들은 외람되이 종실(宗室)에 소속되었고 더욱이 공정대왕(恭靖大王)의 후손으로서 차마 입을 봉하지 못하여 감히 전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신들은 삼가 생각하건대 공정대왕(恭靖大王) 문종대왕(文宗大王)은 모두 전하의 조상이십니다.

전하께서 이미 현덕왕후(顯德王后)[155]에 대하여는 추복의 예를 다하시면서 어찌하여 공정대왕(恭靖大王)에 대하여서만은 추존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공정대왕(恭靖大王)을 종(宗)으로 일컫는 의례는 양도대왕 때에 모두 이미 의논을 정하여 사책(史策)에 분명히 실려 있으니 지금은 빠

151) 죽은 사람에게 관직과 작위를 내리는 것
152) 예종(睿宗)의 왕호
153) 팔음은 쇠 돌 실 대 박 흙 가죽 나무로 만든 악기를 뜻하나, 여기서는 팔음의 조화 즉 안정된 질서를 말함
154) 문종의 왕비이고 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玄德王后)의 무덤을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면서 강가로 내다버린 것을 중종이 복구한 일
155) 문종의 왕비이고 단종의 생모의 존호

른 시일 안에 특별히 거행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고금의 제도를 상고하시고 양도대왕의 뜻을 유념하시어 공정대왕(恭靖大王)의 묘호를 추상(追上)하셔서 육종(六宗)과 똑같게 하시면 비단 신민의 바람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종묘사직의 아름다움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보고 승정원(承政院)에 묻기를 “이는 곧 공정대왕(恭靖大王)의 묘호를 올리지 않은 데 대한 일이다. 세종 때 마땅히 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예종 때 희종(熙宗)으로 묘호를 하려고 하였으면서도 중지한 것은 어째서인가? 성종(成宗)께서 이를 하지 않은 것은 또 어째서인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중종실록 권22 엽52-53〉

□ 중종(中宗) 10년(1515) 8월 24일 무인

임금이 담양부사(潭陽府使) 박상(朴祥)을 남평(南平)에, 순창군수(淳昌郡守) 김정(金淨)을 보은(報恩)에 도배(徒配)[156]하라“ 하였다.[157] 〈중종실록 권22 엽66〉

□ 중종(中宗) 11년(1516) 2월 30일 신사

충청도 문의(文義) 회인(懷仁) 회덕(懷德) 고을에 지진이 발생하였다. 〈중종실록 권24 엽19〉

□ 중종(中宗) 11년(1516) 11월 13일 경인

김정(金淨)과 박상(朴祥)을 사면하여 복직하도록 하였다. 〈중종실록 권26 엽64〉

□ 중종(中宗) 12년(1517) 윤12월 13일 갑신

김정(金淨)을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삼았다. 〈중종실록 권31 엽30〉

---

156) 2 · 3년간 복역시키는 도형(徒刑)을 한 뒤에 다시 유배시키는 형벌

157) 중종 10년 8월 8일 폐비(廢妃) 신씨(愼氏)의 복위를 간청하는 봉사(封事)를 올린 죄로 받은 처벌임.

□ 중종(中宗) 12년(1517) 윤12월 13일 갑신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동부승지(同副承旨) 김정(金淨)이 보은(報恩)에 있는데 전에 부제학(副提學)이 되었을 때도 전하의 뜻을 충청도에 내려 올라오라고 하였으나 오지 않았으니 다시 서울로 올라오라는 왕명을 내리시길 청합니다."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분부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김정은 학문이 풍부하여 이 때 부제학에서 승지(承旨)가 되었는데 그 동배들은 모두 김정이 대간(臺諫)을 할 사람이지 승지는 알맞는 직책이 아니라고 하였다〕〈중종실록 권31 엽30〉

□ 중종(中宗) 12년(1517) 윤12월 18일 기축

지사(知事) 장순손(鄭順孫)이 아뢰기를 "성균관(成均館)에 행차하시 던 날〔지난 가을 문묘(文廟)에 참배한 뒤에 성균관(成均館)에 밭1백결을 하사하였다〕하사하신 학전(學田) 1백결은 바로 복천사(福泉寺)에 소속된 땅입니다. 전하의 은혜가 지극히 중하여 만세에 이르도록 길이 힘을 입게 되겠사오나 경작시킬 만한 사람이 없으니 특별히 하사하신 의미가 없습니다. 복천사의 노비로 논밭을 경작하던 자가 인근지역에 많이 있으니 그 노비를 찾아내어 하사하면 만세토록 은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논밭이 있더라도 경작할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노비를 찾아내어 베풀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중종실록 권31 엽33〉

□ 중종(中宗) 12년(1517) 윤12월 21일 임진

참찬관(參贊官) 김정(金淨)이 아뢰기를 "신이 노산군(魯山君)[158]의 숙의(淑儀) 권씨(權氏)가 보은(報恩) 땅에 죄인으로 머물고 있는 것을 보니 금년에 매우 늙고 궁곤한데 다른 고을로 옮겨져 형편이 보통사람만도 못하게 되었으니 보은현감(報恩縣監)으로 하여금 방문케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158) 단종(端宗)이 세조(世祖)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강봉(降封)된 칭호

임금이 이르기를 “그것은 내가 전에 듣지 못한 일이다. 방문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중종실록 권31 엽37〉

□ 중종(中宗) 12년(1517) 윤12월 21일 임진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분부하기를 “보은(報恩)에 죄인으로 머물고 있는 노산군(魯山君)의 숙의(淑儀) 권씨(權氏)가 그지없이 궁곤하여 스스로 생활할 수 없다는데 충청도에 공문을 보내어 보은현감으로 하여금 방문하게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권31 엽37〉

□ 중종(中宗) 13년(1518) 3월 5일 갑진

임금이 분부하기를 “복천사(福泉寺)의 노비 80명을 성균관(成均館)에 주라.” 하였다. 〈중종실록 권32 엽21〉

□ 중종(中宗) 13년(1518) 7월 22일 기미

보은현감(報恩縣監) 박훈(朴薰)을 지평(持平)의 후보자로 추천하였다.

참판(參判) 김정(金淨)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어버이를 위해 지방의 수령을 원하여 나갔으니 교체해서는 안 됩니다.”하니 판서(判書) 이장곤(李長坤)이 말하기를 “어찌 그것을 따지겠소. 의정부(議政府)에서 그 인물이 매우 합당하다고 하여 천거하였으니 모름지기 추천해야 합니다.”하였다. 〈중종실록 권34 엽17〉

□ 중종(中宗) 14년(1519) 2월 14일 무인

집의(執義) 박수문(朴守紋)이 아뢰기를 “본궁(本宮)의 별좌(別坐)석명창(石命昌)이 내수사(內需司)의 문서를 위조하여 지난해 10월에 전라도로 가서 복천사(福泉寺)의 논밭과 기물을 그 절에 돌려주려고 하였으며 보은현(報恩縣)에서 폐단을 일으켰으니 범한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헌부(司憲府)가 조사하여 공문서 위조사기죄로 법률에 따라 처벌을 아뢰니 분부하시길 그의 공적으로 1등급을 낮추어 곤장을 돈으로 갚게 하였으니 이는 너무 가벼운 것같습니다. 어떻게 잘못을 그렇게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공적으로 죄의 등급을 낮추는 것은 관례이고 또 어리

석은 자의 소행이니 더 논할 것도 없다." 하였다. 〈중종실록 권35 엽29〉

□ 중종(中宗) 14년(1519) 2월 15일 기묘

부제학(副提學) 김정(金淨)이 어머니가 병을 앓는다는 이유로 사직하니 임금이 사직하지 말고 수시로 가서 뵈라고 명하고 이어 충청감사(忠淸監司)에게 김정의 늙은 어머니를 위하여 계속 음식을 제공하도록 분부하였다. 〔김정의 어머니는 보은현(報恩縣)에 살고 있었다〕 〈중종실록 권35 엽30〉

□ 중종(中宗) 14년(1519) 4월 10일 계유

참찬관(參贊官) 조광조(趙光祖)가 아뢰기를,

듣건대 근래 석명창(石命昌)[159]이라는 자가 범한 죄를 끝까지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내전(內殿)[160]과 관계된 일이 자못 많았으므로 가벼운 죄로 처벌하였다고 합니다. 또 이 무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오직 내전의 뜻을 순종하는데 힘쓰는 것 뿐인데 일일이 열거하여 논할 수 없으므로 버려두고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청컨대 더 이상 널리 퍼지지 않도록 미리 그 근원을 막으소서. 신이 이를 아뢰는 까닭은 전하께서 이 뜻을 아시고 어버이를 받드는 의리에 어긋남이 없기를 바라서입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권35 엽63〉

□ 중종(中宗) 14년(1519) 11월 15일 을사

임금이 의금부(義禁府)에 분부하기를 "조광조(趙光祖) 김정(金淨) 김식(金湜) 김구(金絿) 등은 서로 붕당을 맺고서 저희에게 붙는 자는 천거하고 저희와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하여 명성과 위세로 서로 의지하여 권세가 있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후진을 유인하여 언행의 과격함이 버릇이 되게 하여 국론과 조정을 날로 글러가게 하였으나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게 된 일과 윤자임(尹自任) 박세희(朴世熹) 박훈(朴薰) 기준(奇遵) 등의 언행이 고격한 논의에 해당한 일들을 심문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권37 엽16〉

---

159) 공문서를 위조하여 복천사(福泉寺) 땅과 기물을 되돌려 주려고 했던 인물 〈중종 14년 2월 14일 실록 참조〉

160) 왕비(王妃)의 존칭

□ 중종(中宗) 14년(1519) 11월 21일 신해

임금이 의정부(義政府)에 분부하기를 "아 내가 덕을 밝히지 못하면서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뜻만 간절하므로 인물을 알아보는 명철함이 없어 사람을 쓰거나 버릴 때에 착오가 많았으니 매우 부끄럽다.

요전에 조광조(趙光祖) 김정(金淨) 김식(金湜) 김구(金絿) 윤자임(尹自任) 기준(奇遵) 박세희(朴世熹) 박훈(朴薰) 등이 함께 시종(侍從)으로 있으면서 성리학(性理學)을 아침 저녁으로 강론하기를 권하기에 내가 그들의 사람됨이 내 정치를 도와 이룩하는 데에 참여 할 만하다고 생각하여 좋은 벼슬을 가려서 주고 직급도 순서를 뛰어 올려주어 몇 해가 안 되어 모두 높은 관직과 주요한 직책의 서열에 발탁하였으니 내가 대우를 부족하게 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 조광조 등이 서로 결탁하여 저희에게 붙는 자는 천거하고 저희와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해서 명성과 권세로 서로 의지하여 권세가 있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조종(祖宗)의 법은 지킨 것이 없고 노련하고 익숙한 사람들의 말은 채택할 것이 없다하며 후진을 유인하여 언행의 과격함이 버릇이 되게 하고 일을 의논할 때도 조금만 이의를 제기하면 반드시 극심한 말로 배척하여 꺾어서 저희를 따르게까지 하였다. 그래서 국론이 전도되고 정사가 날로 잘못되어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속으로 울분을 품었으나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이 두려워서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다. 이제 그들이 한 짓을 살펴보면 정치를 문란하게 만든 것이 된다. 일의 상이 이미 드러났으므로 끝내 용서할 수 없으니 법률에 비추어 죄를 다스려서 여러 관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마당하다. 다만 전일 가까이 있었던 신하였음를 생각해서 죄를 줄여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 등은 먼 지방에 안치(安置)[161]하고 윤자임 기준 박세희 박훈 등은 중도부처(中途付處)[162] 한다. 각각 죄에 따라 벌을 주는 것이니 이것을 내가 그만둘 수 있겠는가! 서울과 지방에 고루 포고하여 모두가 내 뜻을 알게 하라." 하였다.[163] 〈중종실록 권37 엽32〉

161) 유배지에 가두어 두는 형벌
162) 지정한 곳에 머물게 하는 형벌
163) 이 때 김정(金淨)은 충청도 금산(錦山)에 안치되었음

□ 중종(中宗) 14년(1519) 11월 25일 을묘

보은현(報恩縣)에 지진이 발생하여 가옥이 흔들렸다. 〈중종실록 권 37 엽33〉

□ 중종(中宗) 14년(1519) 12월 15일 을해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이 또다시 김안국(金安國) 등 12인〔김안국 유운(柳雲) 유인숙(柳仁淑) 조광좌(趙廣佐) 윤광령(尹光齡) 송호지(宋好智) 송호례(宋好禮) 김광복(金光復) 이충건(李忠楗) 조언경(曹彦卿) 권장(權檣)〕을 더 기록하여 아뢰기를 "조광조(趙光祖)의 무리는 전에 아뢴 2 · 3인뿐이 아닙니다. 이번에 보고하는 사람들의 죄는 전에 아뢴 사람들과 경중을 비교하면 무거운 것은 보이고 가벼운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유운은 술수가 많고 정직하지 않아서 쉽게 헤아릴 수 없는 자입니다. 전에 충청감사(忠淸監司)로 있을 때 보은현감(報恩縣監) 송호례(宋好禮) 황간현감(黃澗縣監) 최운(崔澐)이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이전부터 서로 벗하며 지낸 까닭으로 칭찬해 아뢰어 포상을 받게까지 하였으니 그 마음이 이처럼 바르지 않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권37 엽58〉

□ 중종(中宗) 14년(1519) 12월 15일 병자

임금이 이르기를 "전 보은현감(報恩縣監) 송호례(宋好禮) 등의 임명장을 모두 회수하여 없애라." 하였다. 〈중종실록 권37 엽63〉

□ 중종(中宗) 14년(1519) 12월 16일 병자

임금이 분부하기를 "지난번 조광조(趙光祖) 김정(金淨) 김식(金湜)김구(金絿) 윤자임(尹自任) 기준(奇遵) 박세희(朴世熹) 박훈(朴薰)등이 서로 한 패가 되어 자기에게 붙는 자는 천거하고 자기와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하여 명성과 권세로 서로 의지하고 권세있고 중요한 관직을 차지하고서 후진을 이끌어 언행이 과격함이 버릇이 되어 국론이 전도되고 정사를 날로 잘못되게 하였으나 조정에 있는 신하가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으니 그 죄가 너무 크다. 군왕의 법으로 다스린다면 본디 정해진 법률로 죄를 다스려야 하나 특별히 낮추어 안치(安

置)[164]하거나 중도부처(中途付處)[165] 한다. 대저 죄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데 벌은 경중이 없이 하나의 죄목과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에 어그러지므로 대신들과 경중을 상의하여 조광조는 사사(賜死)[166]하고 김정 김식 김구는 외진 섬에 안치하고 윤자임 기준 박세희 박훈은 먼 국경에 안치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대간이 조광조의 무리를 논하되 마치 물이 더욱 깊어가듯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일을 날마다 드러내어 사약을 내려 죽이기에 이르렀다. 임금이 즉위한 뒤로는 대간이 죄를 논하여 가혹하게 벌을 주려고 해도 임금은 반드시 가볍게 낮추게 하였으며 임금의 뜻으로 죽인 자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대간도 조광조를 사사하라고 청을 하지 않았는데 갑짜기 이런 분부를 하였으니 여론의 실재가 무엇인지를 짐작해서 이렇게 지시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지난 날 임금을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고 하루에 세 번씩 만났으니 정이 부자처럼 아주 가까울 터인데도 하루 아침에 변고가 일어나자 용서없이 엄하게 다스렸고 조광조를 죽인 것도 임금의 결단에서 나왔다. 조금도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지난 날 도타이 사랑하던 일에 비하면 마치 다른 임금에게서 나온 일 같다〕〈중종실록 권37 엽63-67〉

□ 중종(中宗) 15년(1520) 1월 14일 계묘

의금부(義禁府) 도사(都事) 황세헌(黃世獻)이 아뢰기를 "신이 금산(錦山)에 안치시킨 김정(金淨)의 유배지를 옮기는 일 때문에 금산에 이르니 김정이 어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함부로 어미가 있는 보은(報恩) 집으로 갔다가 다음날 돌아와서 신고하였습니다."하였다.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분부하기를 "안치된 사람은 출입할 수 없는 법인데 김정이 마음대로 제 집에 들렀으니 자못 법을 두려워하는 뜻이 없는 것이다. 금산군수(錦山郡守) 정웅(鄭熊)은 잡아다가 심문하고 김정과 그를 지킨 자들을 충청감사(忠淸監司)로 하여금 심문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권38 엽11〉

---

164) 유배지에 가두어 두는 형벌
165) 지정한 곳에 머물게 하는 형벌
166) 죄인에게 사약(賜藥)을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벌

■ 중종(中宗) 15년(1520) 4월 16일 계유

이신(李信)이라는 자가 대궐 문에 불쑥 들어와 승지(承旨)를 크게 불러 변고를 알리겠다며 임금 뵙기를 청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임금에게 아뢰니 분부하기를 "승지(承旨) 승전색(承傳色) 등이 사람들을 물리고서 물어서 아뢰는 것이 마땅하다." 하매 승지 등이 물어보니 김식(金湜)의 도피에 관한 일이었다.

〔**사신은 논한다.** 김식이 일찍이 이신을 장횡거(張橫渠)[167]에 비겨 성심으로 믿고 제 집에서 기르길 마치 제 아들처럼 대우하였다 하니 김식이 사람을 알아보는 식견이 없었음을 또한 알 만하다. 또 김식이 달아나 있을 때에 김대유(金大有)의 집에 의탁하였으나 김대유가 그의 큰 의리를 책망하여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신(史臣)은 또 논한다.**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오직 조광조(趙 光祖)만 태연하게 죽음을 당했고 다른 사람들은 도망하여 숨었거나 반역으로 죽었는데 김식도 이신을 팔았으므로 남의 웃음거리가 되었다〕〈중종실록 권39 엽13-14〉

□ 중종(中宗) 15년(1520) 4월 16일 계유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영의정(領議政) 김전(金詮), 좌의정(左議政) 남곤(南袞), 우의정(右議政) 이유청(李有淸), 의금부(義禁府)의 당상관인 권균(權均), 심정(沈貞), 손주(孫澍), 이행(李荇)을 부르니 대궐에 들어가 임금을 뵈었다.

이신(李信)이 말하기를 "신은 낙안(樂安)의 관아 종입니다. 젊어서 부터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향산(香山)에 들어갔습니다. 정축년[168]에 식량을 구걸하러 산에서 나와 삼각산(三角山)의 중흥사(中興寺)에 붙여 있었습니다.

김식(金湜)이 중을 가엾이 여긴다는 말을 듣고 가보니 김식이 제자에게 『근사록(近思錄)』을 강론하는 중이었는데 곧 저의 신원을 묻고는 저에게 환속하여 수업하라고 권하고 흙집을 짓고 거기에 살게 하고 『대학(大學)』

167) 북송(北宋)의 유학자인 장재(張載)의 별호
168) 중종 12년(1517)

을 가르쳤습니다. 『대학』을 다 읽고 그 집에서 나와 상주(尙州)의 절로 간 것은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11월에 김식 등이 죄를 받아 선산(善山)으로 귀양 온다는 말을 듣고 곧 개령(開寧)에 있는 도범룡(都泛龍)의 집에 갔더니 도범룡이 '오늘쯤 상전이 올 것이다.'〔도범룡은 숭선정(崇善正)의 종이며 김식의 아들인 김덕순(金德純)은 숭선정의 사위이다〕하기에 신이 가보니 김식이 이미 도착했는데 저를 보고 매우 기뻐하고 곧 밥을 먹이고는 저를 데리고 선산으로 돌아가 하루 묵었다가 저를 서울 어머니 집에 보내면서 '잡된 말은 하지 말고 다만 우리 어머니의 안부를 알아보고 사촌 매부 박인성(朴仁誠)을 만나 서울 소식을 묻고서 빨리 돌아오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신이 김식의 서울 집에 이르러 그 어머니의 안부를 묻고 또 박인성을 만났더니 기별 두 장을 써 주었다가 문득 도로 빼앗고 말하기를 "사촌 심풍(沈豊)이 가지고 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과 심풍이 함께 충주 사는 손(孫) 충순위(忠順衛) 집에 갔더니 한 말쯤 되는 식량을 주고 저희를 선산으로 보냈습니다. 가다가 조령(鳥嶺)에 이르러 숭선정의 종 작동(鵲同)을 만났는데, 저에게 부탁하기를 '김식이 그저께 이미 도망하였으니 너는 들어가지 말라.'하였습니다. 신이 그 말을 듣고 도로 상주에 있는 김세온(金世溫)의 집에 이르니 그 마을에 사는 유생 김윤종(金胤宗)이 말하기를 '김식은 이미 도망하였는데 잘한 일이다. 너는 박세희(朴世熹)가 붙여 사는 집에 가야 할 것이다. 박세희가 너를 보고자 한다.' 하기에 신이 김윤종과 함께 박세희가 붙여 사는 곳에 갔었고 또 보은(報恩)의 왕래원(王來院)[169]에서 만났는데 그 때는 박세희가 평안도로 귀양살이를 옮겨간 때였습니다. 박세희가 말하기를 '김윤종이 늘 나에게 도망하라고 권하였고 나는 실로 용감하고 건실하나 만약에 또 도망하면 전하께서 반드시 놀라실 것이니 나는 죽더라도 결코 도망할 수 없다. 그러나 너는 나를 데리고 가도록 하라.' 하였으나 신의 생각에는 '내가 그의 종붙이가 아닌데 어찌 고생을 무릅쓰고 가겠느냐.'고 여겨져서 드디어 물러왔습니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이신(李信)은 김식(金湜)이 도망한 정상을 극진하

169) 보은 구봉산 아래 지금의 보은군 마로면 관기에 있었음

게 헐뜯었으므로 임금의 노여움이 바야흐로 심한데 남곤 심정의 무리가 곁에서 넌지시 부추겨 큰 화가 선비들에게 널리 퍼지게 하였으니 말한다면 답답한 일이라 하겠다] 〈중종실록 권39 엽14-17〉

□ 중종(中宗) 15년(1520) 4월 20일 정축

이신(李信)을 다시 심문하니 진술하기를,

마전(麻田) 나루를 건너 정금원(鄭金院)에 들어가 자고 11일에 이천부(利川府)의 이름 모를 역원(驛院)에 이르고 12일에 음죽(陰竹) 천미천(天彌川) 가에 있는 폐원(廢院)에서 자고 13일에 가흥창(可 興倉)의 관사에서 자고 14일에 속리산(俗離山)으로 향하였습니다.

가다가 금천(金遷)에 이르러 앉아서 생각하기를 '당초에 김식을 따라 도망한 까닭은 김식이 중이 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따라 다니는 사람이 되어 옛적의 일을 듣기를 바랐기 때문인데 김식이 번번이 미치고 어리석고 도리에 어그러지는 일로 밤낮으로 꾀므로 내가 승락하는 체하였으나 속으로는 한심하게 여겨왔으며 이번에 이렇게까지 낭패하게 되었으니 조만간 망신할 것이다.' 하고 드디어 서울로 돌아오기로 뜻을 결정하였습니다. 음죽을 지나 여주(驪州)의 이름 모를 사람의 집에 갔더니 거동이 황당하다 하여 거절당하였으므로 밥을 굶고 산 기슭에서 자고 15일에 서울로 들어와 아버지 이름이 이연동(李延同)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자고 16일에 고발하였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권39 엽23〉

□ 중종(中宗) 15년(1520) 5월 12일 기해

김정(金淨)이 옥중에서 상소하기를 "신은 본디 어리석은데 외람되게 중책을 맡았으나 물러가기를 바랬는데 윤허받지 못하였고 또 홀어머니가 노쇠한 것을 생각하여 분수에 맞게 물러가서 간소한 음식이나마 봉양하기만을 생각하였으나 위로 전하의 은혜를 생각하여 머뭇거리고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번에도 죄를 범하고도 은혜를 입어 귀양갔으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죄를 지은 것을 모르고 지나치게 상심하여 드디어 큰 병이 나자 바삐 알려왔고 신의 생각에도 '한 번 만나서 영결하지 못하면 이승과 저승에서 애통하기가 얼마나 지극하랴' 싶어 보은(報恩)으로 달려가서 살피고 손을 잡고 서로 작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돌아오다가

길에서 도사(都事)가 일찍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당장 달려서 금산(錦山)에 도착하였습니다.

신이 도피하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매우 억울합니다. 대저 도피란 신하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며 신이 도피하지 않았음은 심문서에도 상세하게 있거니와 임상좌(林上左) 등이 책임질 것을 두려워하여 헛된 말을 꾸민 것입니다. 대저 도피하는 자는 반드시 형적을 숨겨야 하는 것인데 어찌 아침에 뚜렷이 지키는 사람을 시켜 금산현감에게 보고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신이 아침에 나가 한두사람을 본 것이 아니니 밝힐 수 있습니다. 대저 도피하는 자는 반드시 샛길로 빨리 달리는 것인데 어찌 3일동안 제 고향으로 가는 큰 길 30리쯤 되는 곳에서 머물며 쫓는 자에게 잡히기를 기다리는 자가 있겠습니까? 신이 멀리 제주도로 귀양갔다가 다행히 이제 의금부(義禁府)에 나와 진술서를 올리게 되니 전하의 하늘같은 은혜가 지극히 큰데 전하의 밝은 지혜 아래 어찌 억울한 정상을 길이 덮어두고 아뢰지 않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삼가 요약하여 아룁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권39 엽39-40〉

□ 중종(中宗) 15년(1520) 11월 4일 무오

장령(掌令) 서후(徐厚)가 아뢰기를 "김정(金淨)은 대간(臺諫)으로 있을 적에 30여명을 죽였고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있을 적에는 그 배의 숫자를 죽였으니 그는 신불해(申不害)[170]와 한비(韓非)[171]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책에 거짓 명성만을 기록한 채 그 실상을 빠뜨린다면 후세 사람들이 '김정은 어진 사람이었는데도 죄를 주어 귀양을 보내 쫓아냈다.'고 여길까 염려스럽습니다."하였다.

참찬관(參贊官) 최세절(崔世節)이 아뢰기를 "신도 듣건대 김옹(金顒)의 처가가 금산군(金山郡)에 있는데 보은현(報恩縣)과 이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옹이 일찍이 소에다 서책을 싣고 자신도 소를 탄 채 김정의 집을 왕래하면서 김정과 깊은 교분을 맺었기 때문에 현량과(賢良科)[172]

170) 중국 전국시대의 정치가.
171) 중국 전국시대 한(韓)의 왕족
172) 중종(中宗) 때 조광조(趙光祖)의 건의로 실시한 과거(科擧)

에 천거된 것이고 그의 실행을 살펴보면 하나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합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권41 엽2〉

□ 중종(中宗) 16년(1521) 10월 11일 기축

관상감(觀象監) 판관(判官) 송사련(宋祀連)과 학생 정상(鄭瑞)이 변란을 고발하자 승정원(承政院)이 임금에게 보고하니 분부하기를 "자세히 물어보아 아뢰라." 하였다.

정상이 아뢰기를 "신이 종친인 이정숙(李正叔)과 함께 신의 집으로 가서는 이정숙에게 말하기를 '내일 전송하는 모임에 나리도 가려고 하느냐?' 고 하니 이정숙이 '가겠다.'고 했으며 이 때 안처겸(安處 謙)의 종이 와서 신들을 부르기에 신이 이정숙과 안당(安瑭)의 집으로 갔더니 안처겸 안처함(安處諴) 송사련(宋祀連) 안형(安珩) 등이 함께 행랑에 앉았다가 안처겸이 안처함에게 이르기를 '만일 칼이 있다면 내가 마땅히 자결하겠고 너도 마땅히 자결해야 한다.'하였습니다.

안처함이 빙긋이 웃자 안처겸이 '너는 딴마음을 먹으면서 감히 웃느냐?' 고 했습니다. 신이 나오려 하자 안처겸이 신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방안에 앉아 이정숙과 함께 이야기할 때 안처겸이 '안형의 무리를 한 곳에 진을 치게 하고 우리들은 다른 곳에 진을 치고서 내가 그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기색을 보면 따르게 되는지 안따르겠는지를 틀림없이 알게 된다.' 하였고 이어 조정의 어지러움을 말하다가 '통곡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안처겸이 또한 '우리집 밑에 담장을 쌓은 빈 집이 있으니 운집한 무사들을 그 집으로 몰아넣어 놓고 이어 임금의 전교(傳敎)를 손을 씻고 펴서 읽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네들이 칼을 차고 무기를 들고서 담장 밑에 빙 둘러 들어와 호응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기록하고 불응하는 사람은 그 머리를 쳐서 서로 끌고 거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튿날 또 안당의 집에 가니 권전(權磌)이 이미 와 있었는데 권전이 안처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아버지를 모시고 시골에 내려가면 그 일을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안처겸이 '마땅히 속리산(俗離山)에서 한 말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이 드디어 권전과 함께 신의 집으로 돌아오자 권전이 신에게 말하기를 '나와 자네는 몸은 비록 둘이지만 마음은 곧 하나이네 내가 정언(正言)로 있을 때 상소하니 임금이 '이는 고금에 없

는 사람이다」하고 이어 복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었네. 비록 내가 얼굴은 초라하지만 글과 계략은 남보다 낫다네. 유용근(柳庸謹) 박세희(朴世憙)를 장수감이라하나 이들은 모두 부족한 사람이네. 만일 그들이 저쪽 장수가 되고 내가 이쪽 장수가 된다면 마땅히 사로잡아 오겠네.' 했습니다. 또 '자네는 새벽이나 저녁이면 와서 마땅히 처자에게 가보아야 하고 설혹 일이 생기더라도 단지 자신만 당하고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게 해야 하네. 비록 안처겸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남아 있으면 뒤에 반드시 거사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고 안처겸이 비록 고향에 내려가더라도 만일 거사한 것을 듣게 되면 며칠내로 걸어서라도 오게 될 것이네.' 했습니다.

신이 안당의 집으로 가니 안처겸이 그 아버지를 모시고 떠났으므로 신이 한강으로 뒤쫓아 갔으나 이미 강을 건너 저쪽 강 가에 앉았기에 안처겸과 울며 작별했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권43 엽6〉

□ 중종(中宗) 17년(1522) 7월 24일 무진

충청도 보은(報恩)과 회인(懷仁)에 지진이 발생하였다. 〈중종실록 권45 엽49〉

□ 중종(中宗) 17년(1522) 8월13일 병술

충청도의 청주(淸州) 공주(公州) 회덕(懷德) 회인(懷仁) 청산(靑山)옥천(沃川) 보은(報恩)에 지진이 발생하였고 또 연기(燕岐) 문의(文義)에도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소리가 우뢰와 같았고 지붕의 기와가 흔들렸다. 〈중종실록 권45 엽61〉

□ 중종(中宗) 18년(1523) 1월 3일 을사

충청도 보은현(報恩縣)에 지진이 발생하여 집들이 흔들렸다. 〈중종실록 권46 엽47〉

□ 중종(中宗) 19년(1524) 4월 5일 기해

충청도 보은현(報恩縣)에 지진이 발생하였다. 〈중종실록 권50 엽37〉

□ 중종(中宗) 19년(1524) 11월25일 을유

충청도 문의(文義) 회인(懷仁) 고을에서 천둥하고 번개쳤다. 〈중종실록 권52 엽37〉

□ 중종(中宗) 19년(1524) 11월 30일 경인

충청도 보은(報恩) 청산(靑山) 회인(懷仁) 고을에 천둥이 있었다. 〈중종실록 권52 엽1〉

□ 중종(中宗) 21년(1526) 3월 4일 정해

충청감사(忠淸監司) 이환(李芄)이 보고하기를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홍주(洪州) 36명, 연산(連山) 48명, 해미(海美) 59명, 진잠(鎭岑) 21명, 보령(保寧) 52명, 부여(扶餘) 82명, 공주(公州) 52명, 연기(燕岐) 27명, 석성(石城) 27명, 보은(報恩) 40명, 서은진(西恩津) 39명, 덕산(德山) 33명, 충주(忠州) 50명입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권56 엽56〉

□ 중종(中宗) 21년(1526) 12월 1일 기유

충청도 보은(報恩)에 지진이 발생하였고 회덕(懷德)에는 천둥을 쳤다. 〈중종실록 권58 엽1〉

□ 중종(中宗) 22년(1527) 2월 26일 계유

충청도 회인현(懷仁縣)에 전염병이 돌았다. 〈중종실록 권58 엽21〉

□ 중종(中宗) 22년(1527) 5월 4일 경진

충청도 회인(懷仁) 연풍(延豊) 문의(文義) 회덕(懷德)에 전염병이 돌았다. 〈중종실록 권59 엽1〉

□ 중종(中宗) 23년(1528) 2월 26일 무진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진사 하억수(河億水)의 아내 이씨(李氏)가 질투하여 여종 복비(福非)를 살해하였는데 칼날 자국이 많았습니다. 그 일을 잘 아는 여종을 잡아다 심문하니 이씨가 질투가 나서 종 석을이(石乙伊)를 시켜 때려 죽였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씨는 양반집 부인이고 종실

(宗室)[173]의 여자라 형조(刑曹)에서 심문하기가 곤란하여 감히 아룁니다. 그리고 종 석을이를 심문하려고 잡으로 갔을 때 이씨의 아버지인 회인현감(懷仁縣監) 이정(李楨)이 그 종을 숨기고 내주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잡아가지 않느냐?' 하니 그 잘못이 극심합니다. 이때문에 그 종을 잡아오지 못하였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이 일은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심문하게 해야 한다. 전에 양반집 부녀자는 간통한 일 이외에는 의금부로 하여금 심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논이 있었으나 질투하는 일은 의금부로 하여금 심문하게 한 적도 있었다. 그러니 즉시 심문하라. 회인현감도 아울러 의금부에 내려 심문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권60 엽54-55〉

□ 중종(中宗) 23년(1528) 2월 28일 경오

임금이 하억수(河億水) 아내 말정(末貞)의 진술서를 내리면서 "이 진술은 단지 피고만 심문하면서 고문할 것을 청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 당초 형조(刑曹)의 조사에서 '복비(福非)를 살해한 일은 양반 집 종이 질투로 살해하였다.' 하였고 검시해 보니 '칼로 잔혹하게 살해되었다.' 하였는데 이런 내용으로 다시 심문한 후에 고문을 청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권60 엽56〉

□ 중종(中宗) 23년(1528) 2월 28일 경오

하억수(河億水)의 아내 말정(末貞)의 진술서를 내리면서 이르기를 "그의 종 복비(福非)를 칼로 잔혹하게 살해하였다고 말정이 이미 자백하였으므로 형벌수준을 청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형벌을 정하지 말고 언제 무슨 혐의로 무슨 칼로 누구를 시켜 어디에서 찔러 죽게 하였는지의 과정을 아울러 추가로 조사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권60 엽58〉

□ 중종(中宗) 23년(1528) 2월 29일 신미

임금이 회인현감(懷仁縣監) 이정(李楨)의 아들 이창국(李昌國)이 올린 글을 사헌부(司憲府)에 내리면서 "그의 아버지 이정이 항상 미친 병을 앓는

173) 임금과 가까운 일가

까닭에 요망하고 망명스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아버지의 죄를 벗기고자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말은 자기 아버지를 비방하고 헐뜯는 것에 가까우니 사리와 체면이 매우 부당하다. 마땅히 조사해야 할 것이니 의금부(義禁府)에 이르라." 하였다. 〈중종실록 권60 엽59〉

□ 중종(中宗) 23년(1528) 2월 29일 신미

임금이 의금부(義禁府)에 하억수(河億水) 처 말정(末貞)에 관한 진술서를 내리면서 이르기를 "회인현감(懷仁縣監) 이정(李楨)의 아들 이창국(李昌國)이 상소하면서 상인(喪人)이라 하였는데 이창국이 말정(末貞)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라면 말정 역시 상인이다. 복비(福非)가 비록 자기의 여종이라 해도 상인으로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더욱 부당한 일이다. 만약 어머니의 거상(居喪) 중에 있다면 상인으로서 사람을 죽인 사연을 아울러 진술서에 넣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권60 엽 60〉

□ 중종(中宗) 23년(1528) 3월 2일 계유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부인이 질투로 죄를 받은 전례를 상고하였더니 신수린(申壽麟)의 아내 아기(阿只)가 투기한 죄 때문에 홑옷을 입혀 곤장 1백대를 친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신수린 아내의 경우는 혹독한 형벌로 사람을 죽였는데 반하여 하억수(河億水)의 처는 쇠칼로 사람을 살해하였으니 사건의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그런 끼닭으로 이번 일을 전례에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말정(末貞)의 종이 올린 소견서에 '주인 이씨(李氏)가 현재 임신중이므로 지금에 형을 집행하게 되면 생명을 잃을까 두렵다.' 하여 즉시 의녀(醫女)를 시켜 진맥하게 했더니 임신한 지가 지금 8개월이나 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혹독한 형벌로 사람을 죽인 것과 쇠칼로 사람을 살해한 일은 그 죄가 다를 수 없는 데도 의금부에서 전례에 적용할 수 없다 하니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말정 역시 홑옷을 입혀서 곤장형을 집행시킴이 마땅하다. 다만 '임신한 지 8개월이 되었다.' 하니 지금 곤장을 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오래 구금시켜 놓을 수도 없다. 부인은 도망할 이유

가 만무하니 보증인을 세워 방면 하였다가 해산한 날로부터 1백일이 지난 뒤에 곤장형을 집행하도록 하라. 또 말정이 질투 때문에 쇠칼로 여종을 살해하였으니 이 일은 유교(儒敎)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사건이다.
그리고 그 남편인 진사 하억수는 참으로 무식한 자에게 견줄 수 없는데도 능히 자신의 집을 다스리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더구나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임신까지 시켰으니 그 일 또한 옳은 것이 아니다. 하억수는 내 뜻을 받들어 조사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권60 엽60-61〉

□ 중종(中宗) 25년(1530) 6월 2일 경신

충청도 청주(淸州) 연기(燕岐) 회덕(懷德) 보은(報恩)에 지진이 발생하여 집이 약간씩 흔들렸다. 〈중종실록 권68 엽38〉

□ 중종(中宗) 26년(1531) 5월 16일 기해

충청도 충주(忠州) 보은(報恩) 청안(淸安) 청풍(淸風)에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렸다. 〈중종실록 권70 엽57〉

□ 중종(中宗) 27년(1532) 4월 15일 계사

충청도 면천(沔川) 보은(報恩)에 우박이 떨어졌다. 〈중종실록 권73 엽1〉

□ 중종(中宗) 27년(1532) 4월 24일 임인

충청도 면천(沔川)과 보은(報恩) 고을에 또 우박이 떨어졌다. 〈중종실록 권73 엽2〉

□ 중종(中宗) 37년(1542) 6월 22일 신축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회인현감(懷仁縣監) 최경린(崔景麟)은 남의 논밭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지금 사헌부에 고소를 당했는 데 그 문건을 보니 마음씀이 매우 간사스럽고 못 되었으니 파직하소서."하니 임금이 "아뢴대로 하라."하였다. 〈중종실록 권98 엽60〉

□ 중종(中宗) 38년(1543) 4월 15일 기축

충청도 옥천(沃川) 문의(文義) 보은(報恩)에 지진이 발생했다. 〈중종실록

권100 엽51〉

□ 중종(中宗) 38년(1543) 4월 16일 경인

충청도 보은현(報恩縣)에 지진이 발생했다. 〈중종실록 권100 엽53〉

□ 중종(中宗) 38년(1543) 7월 20일 계해

검토관(檢討官) 김인후(金麟厚)가 아뢰기를 "근래 이를 데 없는 소인(小人)〔심정(沈貞) 이항(李沆)을 가리킨다〕으로 죽어도 죄가 남을 자는 다 복직되고 한 때 잘못한 일은 있더라도 그 본심은 나라를 속이지 않은 자〔조광조(趙光祖) 김식(金湜) 김정(金淨) 기준(奇遵) 윤자임(尹自任) 한충(韓忠)을 가리킨다〕는 임금의 은전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은전을 입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숭상하던 글〔『소학(小學)』『향약(鄕約)』 등의 글을 가리킨다〕까지도 모두 폐기하고 쓰지 않으니 매우 온편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권101 엽10〉

□ 중종(中宗) 39년(1544) 2월 3일 임신

충청도 석성(石城) 진잠(鎭岑) 옥천(沃川) 문의(文義) 공주(公州) 진천(鎭川) 전의(全義) 청안(淸安) 청산(靑山) 청주(淸州) 연기(燕岐) 연산(連山) 영동(永同) 보은(報恩) 회인(懷仁) 괴산(槐山) 회덕(懷德) 목천(木川) 청풍(淸風) 단양(丹陽) 연풍(延豊) 음성(陰城)에 같은 날 지진이 발생하였다. 〈중종실록 권102 엽1〉

□ 중종(中宗) 39년(1544) 3월 22일 경신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성균관(成均館)은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니 그 소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직강(直講) 정웅(鄭熊)은 인물이 탐오하고 비루하여 하는 짓이 패려하므로 선비들에게 용납되지 못한 지 오래되어〔기묘년[174]에 김정(金淨)이 금산(錦山)으로 귀양갔을 때 정웅이 금산군수(錦山郡守) 였는데 김정이 보은(報恩)에 있는 그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도록 요청하니 정웅이 허락하

174) 중종(中宗) 14년(1519) 기묘사화(己卯士禍)

고 조금 있다가 귀양지를 옮기라는 명령을 받은 도사(都事)가 금산에 오자 김정이 도피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사형을 받게 하였다〕소임에 합당하지 못하니 교체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권102 엽40〉

□ 중종(中宗) 39년(1544) 4월 19일 정해

임금이 충청감사(忠淸監司) 정만종(鄭萬鍾)의 보고서를 승정원(承政院)에 내리면서 분부하기를 "이 보고서를 보니 각 고을에 전염병이 똑같이 번진다고 했다. 의원을 각 고을에 두루 보낼 수 없으니 서울에 있는 중국 약재를 따로 내려보낼 것을 예조(禮曹)에 이르라." 하였다.

〔충청감사가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도에 전염병이 번져 이산현(尼山縣)에서는 남녀 도합 40여명이 죽고 1백31명인이 앓고 있으며 보은현(報恩縣)에서는 남녀 도합 14인이 죽고 앓고 있는 사람이 1백66명이며 청주(淸州)에서는 남녀 도합 1백63명이 죽고 1백77명이 앓고 있는데 석성(石城)에 사는 의원 서휘(徐徽)를 보내어 치료하고 있습니다"〕 〈중종실록 권102 엽68〉

□ 중종(中宗) 39년(1544) 5월 29일 병인

성균관(成均館) 생원 신백령(辛百齡) 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조광조(趙光祖)의 일에 대하여 이미 그의 본심을 모두 드러 내어 말했으니 김정(金淨) 기준(奇遵)의 일에 대하여 또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과 기준의 사람됨이 비록 조광조에게 미치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뜻한 바나 행동한 바는 대개는 또한 같았습니다. 군신 사이의 큰 뜻은 진실로 이미 익숙하게 강구하여 밝혀 왔었기에 반드시 도피란 의리가 아닌 이름에 자신을 빠트리는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인데 당시의 그 고을 원들이 교묘한 말로 몰래 권세를 가진 간악한 신하를 도와〔김정(金淨)이 금산(錦山)으로 귀양갔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보은(報恩)에 있으므로 김정이 만나 보려고 하자 금산군수 정웅(鄭熊)이 처음에는 허락해 놓고 도피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사형을 받게 하였다. 또 기준은 아산(牙山)으로 귀양가 있다가 한 번은 술이 취하여 어머니를 사모하는 지극한 감정을 견

디지 못하여 말을 타고 절반쯤 가다가 돌아왔는데 아산현감(牙山縣監) 배철중(裵哲中)이 역시 도피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사형을 받게 하였다〕 권세를 가진 간악한 신하들이 그대로 죄를 구성하게 되었으니 어찌 지하에서 원통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결판이 날 즈음에 차마 서로 놓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모자간의 지극한 인정인 것인데 그 정을 어찌 빼앗아 버릴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유독 충성과 효성은 똑같은 것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신들은 지위도 없고 책임도 없는 몸으로 계책을 아뢰고 일을 말하여 분수에 넘치는 짓을 했기에 죄를 면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만 그러나 마침 전하께서 신하들의 좋은 의견을 구하는 때를 만나 마음 속에 간절한 충정을 그만둘 수 없기에 감히 평소 초야에서 듣던 공론을 이제 말씀을 드려 전하께서 깨우치시는 자료가 되게 하려고 거리낌없이 다 말씀드리느라고 말이 지루하게 된 것도 알아 차리지 못했습니다.“〔진사 한지원(韓智源)이 지은 것이다〕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조광조의 일은 전에도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다만 조광조를 어찌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경솔하게 고칠수 없다는 뜻을 이미 전에 말한 사람에게도 답했으니 너희들도 반드시 들었을 것이므로 지금 하나하나 들어 답하지 않는다. 조광조의 일도 그러한데 하물며 김정과 기준의 일은 말할 것이 있겠는가?”

〔**사신(史臣)은 논한다.** 성균관의 생원 신백령 등이 조광조는 죄가 없다는 뜻으로 상소하였는데 조정의 의논이 그와 같았기 때문에 사림들의 뜻 역시 그와 같았던 것이니 조광조가 못된 마음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 일이요 또한 시운이 그에게 돌아왔음을 점칠수 있는 일이었다〕

〔**또 논한다.** 김안로(金安老)를 사형시킨 후 기묘년에 물리침을 당한 사람들이 모두 다시 쓰여지고 그 때의 바른 정치를 조금 고찰하고 제정하여 시행하려 하므로 후진 사람들이 자못 본받음이 있어서 필연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도 조광조 등이 그 때의 우두머리로 아직도 복직되지 못하였다. 온 조정이 사실을 거론하였지만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고 성균관 유생들이 또한 글을 올려 호소하며 여러 날을 대궐 앞에 엎드려 상소했는데도 끝내 임금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 이 때까지 임금의

의혹이 풀리지 않았고 대신들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많으므로 유림들도 모두 들어주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중종실록 권103 엽32-38〉

□ 인종(仁宗) 1년(1545) 3월 13일 을해

성균관(成均館)의 진사 박근(朴謹) 등이 상소하기를

아아, 당시의 선비로서 죄 없이 억울하게 화를 당한 사람이 이루셀 수 없으나 김정(金淨) 기준(奇遵)의 죽음이 가장 억울합니다. 김정 기준은 다 조광조(趙光祖)와 뜻이 같고 도리가 맞으므로 힘을 합하여 정치를 도왔는데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면서 김정은 금산(錦山)으로 귀양가고 기준은 아산(牙山)으로 귀양갔습니다.

김정은 마음속으로 반드시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한 번 어머니를 만나 영원히 이별하기 위하여 금산현감(錦山縣監)에게 말미를 허락받아 보은(報恩)으로 그 어머니를 보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것을 도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의 어머니는 멀리 무장(茂長)에 있었으므로 가는 것이 여의하지 못하여 고개에 올라 구름을 바라보면서 옛사람이 척호지사(陟岵之思)[175]로 산에 올라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뜻을 펴고는 잠시 뒤에 돌아왔는데 이것을 도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신하가 참으로 도피하려고 했다면 어찌 스스로 돌아올 리가 있겠습니까? 두 고을의 수령은 남곤(南袞) 심정(沈貞)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죄를 꾸며서 무고하였고 심정 남곤은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멋대로 말하기를 '김정 기준은 걸핏하면 옛 사람을 본 받는다고 스스로 말하였는데 마침내는 임금의 어명을 업신 여겼으니 그 무리의 소행이 대개 이러하다.' 하면서 이것으로써 조광조(趙光祖)의 흠을 잡기에 이르렀으며 심한 자는 법을 어겼다는 죄명을 조광조에게 씌워 임금의 총명을 가렸으니 통탄스러움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인종실록 권1 엽66-67〉

175) 효자가 부역으로 먼곳에 가서 숲이 무성한 산에 올라가 고향의 부모를 그리는 정을 읊은 일 〈시경(詩經) 척호편(陟岵篇) 참조〉 이 고사로 타향에 있는 자식이 고향의 부모를 그리워 하는 것을 뜻함

□ 명종(明宗) 2년(1547) 6월 24일 계묘

충청감사(忠淸監司) 김익수(金益壽)가 여러 고을의 수재상황을 보고하기를

"보은(報恩)은 가옥이 떠내려갔고 논밭에 모래가 덮여 도저히 가을 수확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수해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니 어떻게 조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였다. 〈명종실록 권5 엽85〉

□ 명종(明宗) 3년(1548) 3월 21일 병신

임금이 충청감사(忠淸監司) 나세찬(羅世纘)의 보고서를 승정원(承政院)에 내려 보내면서 이르기를 "각 고을 백성들 중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많아서 진천(鎭川)은 정월 20일 이후에 죽은 남녀가 5백 60명이고 지금 누워 앓고 있는 자가 9백 89명이라 한다. 지금 배고품으로 어려운 때 수령들이 두루 구휼하지 못하여 굶어 죽은 것이다. 어찌 모두가 전염병으로 죽은 것이겠는가? 별도로 감사(監司)에게 지시하여 도사(都事)에게 사실대로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 하도록 하라. 또 다른 도에도 만일 전염병이 번지는 곳이 있으면 도사에게 살피게 하여 할 일을 아울러 지시하라." 하였다.

충청감사 나세찬의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염병이 극성스럽게 번져서 청주(淸州)는 정월 이후로 죽은 사람이 남녀 모두 31명이고 지금 누워 앓는 사람이 19명입니다. 온양(溫陽)은 정월 이후로 죽은 사람이 남녀 모두 70명이고 지금 누워 앓는 사람이 93명입니다. 진천(鎭川)은 정월 이후로 죽은 사람이 남녀 모두 5백60명이고 지금 누워 앓는 사람이 9백 89명입니다. 회인(懷仁)은 2월 이후 죽은 사람이 남녀 모두 10명이고 지금 누워 앓는 사람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이 때에 큰 흉년을 만나 백성들이 굶어 죽어서 시체가 구렁에 뒹구는 일이 곳곳마다 모두 그러하였다. 그러니 어찌 모두 열병으로 죽은 것이겠는가?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나세찬의 보고로 말미암아 분부하기를 '죽은 사람이 과연 모두 열병으로 죽었고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는가? 만일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면 이는 하급관리가 감사(監司)를 속인 것이고 또 감사가

임금을 속인 것이다. 감사는 분명히 조사하여 사실대로 다시 아뢰어라.' 하였으니 충청감사 나세찬이 이 지시를 보고서 어찌 부끄러움을 몰랐겠는가?

임금이 굶주린 백성을 살리려는 뜻이 지극한데도 한 사람도 본받아 받드는 관원이 없으니 참으로 탄식할 일이다〕〈명종실록 권 7 엽45〉

□ 명종(明宗) 3년(1548) 6월 23일 병인

승정원(承政院)에서 보은(報恩)사람 김승필(金承弼)이 올린 상소를 가지고 아뢰기를 "상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고 글자 줄이 일정하지 못하여 잘못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하는 일은 상소로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상소로 하였으니 좀 미열한 것 같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상소를 보니 과연 미열하다. 그러나 이미 상소를 하였으니 지명하는 대신(大臣)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조사하라." 하였다. 〈명종실록 권8 엽13〉

□ 명종(明宗) 3년(1548) 6월 23일 병인

영의정(領議政) 홍언필(洪彦弼), 좌의정(左議政) 윤인경(尹仁鏡)이 임금의 부름을 받고 대궐로 들어왔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보은(報恩)사람 김승필(金承弼)이 올린 상소문은 비록 이해하지 못할 곳이 있으나 국가에 관계되는 일이라 피고인을 심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좌의정 윤인경이 아뢰기를 "이 상소를 보니 유인숙(柳仁淑)[176]의 사돈〔인아(姻婭)[177]를 말한다〕김숴(金淬)가 박문기(朴文起)에게서 좋은 말을 산 것을 보고 반역을 도모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그런 것입니다. 대개 간사한 소인배들은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고발하는 사례가 자못 많습니다. 이는 곧 을사년[178]의 일인데 지금에 와서 고발하니 근거가 잘못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일에 관계되는 것이니 신의 생각에는 이 상

176) 명종의 즉위를 반대하여 계림군(桂林君)을 옹립하려 했다는 윤원형(尹元衡)의 탄핵을 받아 무장 (茂長)에 유배되었다가 사사(賜死)됨

177) 사돈을 인(姻)이라 하고 동서를 아(婭)라 하는데 여기서는 사위의 아버지를 말함

178) 인종(仁宗) 1년(1545)

소를 충청감사(忠淸監司)에게 보내어 그로 하여금 심문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길 일이 국가에 관계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부득이 심문해야 한다면 사건의 연루자가 몹시 많을 것입니다. 그 말의 진위를 분명히 알지도 못하면서 지방의 많은 사건의 연루자들을 다 잡아들여 조사한다면 소요스러울 것 같으니 김쉬를 우선 잡아다 심문하고 사건의 연루자는 그 고을에 가두었다가 의문사항이 있을 때마다 불러서 심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이 일이 사실답지 못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와 같이 국가에 관계되는 일을 미열한 말이라 하여 버려두게 되면 다른 날 실제로 반역을 모의하는 사건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고발하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옳던 그르던 간에 심문을 하면 저절로 그 허실이 판명될 것이다. 김쉬를 우선 잡아들여 심문하라." 하였다.

〔상소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유인숙의 연좌죄(緣坐罪)가 그 자손에게만 미치고 그와 연루된 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니 신의 마음에 극히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을의 부자인 김쉬는 곧 유인숙의 사돈입니다. 인종대왕(仁宗大王)께서 별세하신 후 옥천(沃川)에 사는 박문기가 소유한 색깔 좋고 잘 달리는 큰 말을 비싼값으로 사서 타고 그의 외손자 박현능(朴賢能) 등과 서울에 가서 여러 날 머물렀습니다. 유인숙이 처벌될 때 김쉬는 도망쳐 그 집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필시 까닭이 있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려면 사건의 연루자인 김옥환(金玉還) 박영광(朴永光) 김세형(金世亨) 주인정(周仁貞) 제우신(諸虞信) 정계종(鄭戒宗) 박원욱(朴元郁) 김수은(金守恩) 등을 심문하소서.

더구나 그 집 여종의 남편 배석(裵石)이 말하기를 '우리 상전들은 무쌍한 복을 타고 났다. 유서방(柳書房) 편지에 박현능은 빨리 상경하라 하여 상전들이 상경하였다. 유인숙이 처벌을 받을 때 박현능은 도망쳐서 지금까지 무사하다.'고 하였습니다. 끝까지 심문하여 죄를 다스려 후세 사람들을 징계하소서〕 〈명종실록 권8 엽13〉

□ 명종(明宗) 3년(1548) 7월 7일 경진

의금부(義禁府)에서 윤결(尹潔) 김쉬(金淬) 등의 죄인을 심문한 조서를

가지고 아뢰기를 “윤결은 한 차례 곤장을 치면서 심문하였지만 승복하지 않으니 심문을 더하소서. 김쉬는 진술하기를 ‘계사년[179]에 충순위(忠順衛)의 당번으로 상경하였고 갑오년[180]에는 늙었다 해서 면제되었다. 그 후로는 건습병(蹇濕病)을 얻어 한 번도 상경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김쉬가 반란을 모의한 정상을 김승필(金承弼)에게 꾸짖어 물었더니 ‘김쉬가 일이 발각되자 도망간 일은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는데 함께 모의한 것으로 의심하여 상소했을 뿐이지 반역을 모의한 형상을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다.’ 하였으며 그가 내세운 사건의 연루자들도 모두 김쉬에게 빚을 얻어 쓰고 갚지 못한 혐의가 있는 자들입니다.

또 김쉬가 진술한 말 가운데 김승필이 김쉬에게 절간(折簡)[181]을 보내 ‘가는 무명 6통, 소 3마리, 잡곡 약간 등의 물품을 지금 만약주지 않는다면 상경하여 상소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합니다. 만약 그 쪽지를 보면 대강을 알 수 있겠는데 아뢰지 않고 먼저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른바 중방(中房) 김필영(金弼永)은 방첩(幇貼)으로 병오년[182]에 승호포수(陞戶砲手)[183]로 상경했다 하고 또 상소를 쓴 자 역시 김승필의 일가사람으로 김쉬에게 빚을 얻으면서 밭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갚지 않은 자이니 비록 지방에 있는 사건의 연루자를 심문하지 않더라고 일의 상황은 분명한 듯 합니다.”하였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윤결의 일은 아뢴대로 하라. 김승필의 진술한 말을 보니 매우 엉성하다. 그 쪽지를 들여서 보아야겠다.” 하였다. 〈명종실록 권8 엽25〉

□ 명종(明宗) 3년(1548) 7월 8일 신사

윤결(尹潔)을 두 차례 고문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김승필(金承弼)을 두 차례 고문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명종실록 권8 엽25〉

---

179) 중종(中宗) 28년(1533)
180) 중종(中宗) 29년(1534)
181) 한 장의 종이를 둘로 접은 편지
182) 명종(明宗) 1년(1546)
183) 해마다 각 도의 향군(鄕軍)으로 뽑혀 훈련도감(訓練都監) 정군(正軍) 포수가 된 병졸

□ 명종(明宗) 3년(1548) 7월 9일 임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김승필(金承弼)이 승복하였으니 형벌의 수준을 정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그렇게 하라. 다만 김승필은 남의 말을 듣고 의심한 나머지 상소하였다 하니 매우 미열한 자이다.” 하였다. 또 의금부가 바로 목을 베고 재산을 몰수하는 것으로 형벌을 정하니 분부하기를 “무고죄(誣告罪)는 모반(謀叛)과는 차이가 있다. 큰 죄는 면할 수 없지만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그만두도록 하라.” 하였다. 〈명종실록 권8 엽25-26〉

□ 명종(明宗) 3년(1548) 7월 10일 계미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반란한 역적은 천지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고 귀신과 사람도 함께 분노하는 것이므로 무고한 자를 반좌(反坐)[184] 시키는 법률 역시 역적을 다스리는 것처럼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김승필(金承弼)이 혐의를 품고 무고한 정상은 사람들이 통분해 하는 바이니 결코 어리석은 자라고 하여 그 죄를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에 의거하여 재산을 몰수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김승필이 처음에 남의 말을 듣고는 못난 생각에 유인숙(柳仁淑)의 사돈이므로 의심스럽다고 여겨서 상소한 것이다. 선왕(先王) 때인들 모두 정해진 법률대로 죄를 주었겠는가? 고칠 필요가 없다.” 하였다. 〈명종실록 권8 엽26〉

□ 명종(明宗) 3년(1548) 7월 11일 갑신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국가의 대법은 마땅히 일정하게 지켜 고칠 수 없는 것인데 어찌 한 때의 사정 때문에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법률을 한번 올려 쓰거나 낮춰 쓰면 나중에 생기는 폐단을 막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김승필(金承弼)의 상소에 따라 사건을 조사했으나 증거가 없었습

184) 위증(僞證)이나 무고(誣告)를 한 자에게 피해자가 받은 피해만큼 형벌을 주는 일

니다. 이미 거짓으로 무고한 정상을 알아냈으면 그 죄에 정한 법률이 있으므로 그 죄를 낮출 수 없는데 임금께서 김승필이 어리석다 하여 재산 몰수를 탕감하라 하셨습니다. 사건이 반역을 모의한 것인지 아닌지가 관계된 바가 큰데 어찌 어리석다 하여 정해진 처벌을 가볍게 탕감할 수 있겠습니까? 법률에 의거하여 재산을 몰수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이미 큰 죄를 주었으니 재산을 몰수할 것까지 없다." 하였다. 〈명종실록 권8 엽26〉

□ 명종(明宗) 3년(1548) 7월 11일 갑신

보은(報恩)사람 김승필(金承弼)을 무고죄로 당현(唐峴)에서 목을 베였다. 〈명종실록 권8 엽26〉

■ 명종(明宗) 5년(1550) 8월 4일 을축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유신현(維新縣)의 전 현감 이치(李致)가 재임할 때 역적들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1천여명을 모으려 하였습니다. 이에 그 한 패인 최대수(崔大受)가 동조자의 이름을 열거한 회문(回文)[185]을 돌리려다가 사건이 발각되어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그 해 가을에 어떤 사람이 그 회문을 취득하여 서울에 와서 고발하려고 했는데 회문에 적힌 사람의 아들이 길에서 고발하려던 사람을 잡아 이치에게 고소했습니다.
이치는 즉시 감사(監司) 이해(李瀣)에게 보고하고 크게 곤장을 쳤는데 한 차례 고문하면서 심문하니 죽었습니다.
역적들의 노비 논밭 가옥 재물을 몰수할 때 이치는 유신현감(維新縣監)으로 차사원(差使員)이 몰수할 즈음에 몰수하는 것을 도리어 노엽게 여기는 기색을 말과 얼굴에 나타내어 과반이나 누락되게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품은 생각들이 모두 이와 같으니 흉악하고 간특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치를 잡아다가 이해와 함께 끝까지 심문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 〈명종실록 권10 엽66〉

185) 여러 사람이 차례로 돌려 보도록 쓴 글

□ 명종(明宗) 5년(1550) 8월 6일 정묘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이치(李致)를 이미 잡아왔는데 그 죄가 매우 중하니 삼성교좌(三省交坐)[186]로 심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아뢴대로 하라”고 분부하였다. 상인(喪人) 이치(李致)기 진술하기를

“처음에 회인현감(懷仁縣監) 이은려(李殷礪)가 차사원(差使員)으로 유신현(維新縣)에 도착하여 20여일간 머물렀는데 감사(監司)가 회인의 관원과 함께 추쇄[187]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회인현의 관원이 시키는 업무를 많이 담당하여 반역한 무리의 재산을 몰수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감사가 현감으로 하여금 동참하게 한 것이라고 여기고서 단지 시키는 업무만 열심히 담당했을 뿐 저는 추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디. 〈명종실록 권10 엽68〉

□ 명종(明宗) 5년(1550) 8월 17일 무인

승지(承旨) 박충원(朴忠元)이 위관(委官)[188]의 자격으로 아뢰기를 “전 회인현감(懷仁縣監) 이은려(李殷礪)의 진술에 ‘당시 감사가 단지 죄인의 노비 논밭 처첩 자녀만을 몰수하라고 명하였지 그 손자를 추쇄하라는 명령은 없었다. 이른바 최흡(崔洽)의 자녀가 5명이라고 한 것은 그의 친자녀가 아니라 그의 손자입니다. 그러므로 몰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형조(刑曹)에 내린 전하의 분부를 살펴보니 ‘죄인의 노비 논밭 처첩 자녀를 몰수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감사(監司)가 차사원(差使員)을 정해 보낼 때의 공문에도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이은려는 형조의 공문을 근거로 하여 몰수했기 때문에 그 손자를 몰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청풍군수(淸風郡守)는 의금부(義禁府)의 공문에 따라 그 연좌인들을 모두 추쇄하여 장례원(掌隷院)에 보고하여 형벌을 정했으므로 누락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형조에 내린 지시를 공문을 보낼 때 미진하였기 때문에 이같이 된 것이지 이은려가 스스로 한 일은 아닌 것 같습

186) 의정부(議政府) 사헌부(司憲府) 의금부(義禁府)의 관원이 교대로 삼강오륜(三綱五倫)을 범한 죄인을 심문하는 일

187) 부역(賦役)이나 군역(軍役)을 기피한 사람. 또는 자기의 상전(上典)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지방으로 몸을 피한 노비(奴婢) 등을 찾아 내어 본 고장으로 돌려보내는 일

188) 중요한 죄인을 심문할 때 의정대신(議政大臣) 중에서 임시로 임명한 심문관

니다."하였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알았다. 이은려를 심문하지 말고 석방하라." 하였다. 〈명종실록 권10 엽73〉

□ 명종(明宗) 6년(1551) 6월 23일 경진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회덕현(懷德縣)과 회인현(懷仁縣)은 극도로 손상되고 퇴폐하여 개인집만도 못한데 만약 지금 구제하지 아니하면 영구히 없어지는 고을이 될 것입니다. 예안현(禮安縣)의 예에 따라 현감(縣監)이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모두 문관(文官)[189]으로 임명하여 보내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이 때 크게 간악한 사람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탐욕스럽고 더럽고 흐린 정치를 자행하여 매관(賣官)을 일삼으면서 금품을 뜯는 무리로 백성 다스리는 관원으로 충당했다. 그리하여 전조(銓曹)[190]를 맡은 자는 머리를 굽히고 명령을 듣는 모습이 마치 서리(胥吏)와 같아서 청탁 편지를 보낸 자의 지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 차례로 추천하고 사람의 어질고 어리석음은 묻지 않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옛날 부유하던 고을마저 다 피폐되었는데 하물며 회덕 회인이 본래부터 피폐한 고을이던 곳이었겠는가?〕〈명종실록 권11 엽56〉

□ 명종(明宗) 8년(1553) 2월 29일 병자

시강관(侍講官) 임내신(任鼐臣)이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청홍도 복천사(福泉寺)[191] 에 어떤 내시(內侍)가 산원(算員)을 거느리고 내사(內使)라 지칭하면서 살고 있는 백성들의 전답을 절의 소유지라하고 또 백성들의 소와 말을 다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주(星州)의 중이 영산(靈山)으로 가서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백성들이 절의 밭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다고 칭탁하며 무리를 모아 온갖 수단으로 백성을 괴롭히므로 백성들이 원망하며 통곡한다고 합니다.

---

189) 대과(大科)에 급제한 관원

190) 문무관(文武官)을 전형하는 이조(吏曹)와 병조(兵曹)

191) 원문의 복천사(福川寺)는 복천사(福泉寺)의 오자로 분명하여 여기서 바로 잡았음.

또 각 도로 내려간 내시들이 겉으로는 중을 추쇄[192]한다 하면서 중들에게 종이를 거두어 각 고을에서 말을 동원하여 수송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중화군수(中和郡守) 김덕룡(金德龍)이 조사를 받은 뒤로는〔내시를 박대했다고 조사를 명하였다〕지방에서 내시의 접대에 추호라도 잘못이 있을세라 온갖 정성을 다하므로 내시와 중들이 방자해져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이런 일들을 각별히 죄인을 심문하여 실상을 파악한 뒤에야 중간에서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없어 민심도 좋아질 것입니다."하였다. 〈명종실록 권14 엽16〉

□ 명종(明宗) 8년(1553) 3월 5일 신사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최근에 내시(內侍)들이 꺼리김 없이 방자하여 공무(公務)를 빙자해서 사욕을 채우느라 하지 않는 짓이 없으니 온 나라 사람이 통분해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지금 경연관(經筵官)이 경상도에서 피해를 끼친 내시의 일을 아뢰자 전하께서 먼저 파직하고 뒤에 조사하라고 특명하였으니 이와 같은 분명한 단안에 어느 누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듣기로는 내시 5~6명이 공문도 없이 내려가서 각 고을을 출입하며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아도 매를 치므로 도내가 떠들썩하여 그 폐가 경주(慶州)의 도적보다 심하다 합니다. 감사(監司)에게 지시하시어 시끄럽게 폐를 일으킨 자의 죄를 끝까지 다스리도 록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내시들의 일은 공론이 이와 같으므로 내시부(內侍府)로 하여금 아뢰도록 하겠다." 하였다. 〈명종실록 권14 엽19〉

□ 명종(明宗) 8년(1553) 3월 5일 신사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나라에서 절에 하사한 논밭을 환수하면서 내시(內侍)와 내수사(內需司)의 관원이 온갖 방법으로 폐해를 일으키고 백성들의 논밭까지 함부로 뺏았으며 하지 않는 짓이 없어 전하의 밝은 정치에 누를 끼치고 있으므로 분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192) 부역(賦役)이나 군역(軍役)을 기피한 사람. 또는 자기의 상전(上典)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지방으로 몸을 피한 노비(奴婢) 등을 찾아 내어 본 고장으로 돌려보내는 일

최근에 복천사(福泉寺)와 적산사(積山寺) 두 절의 논밭을 환수한 차지내관(次知內官)을 전하께서 먼저 파직한 다음 조사하라고 하셨으니 보고 듣는 사람들이 어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관이 내지(內旨)[193]를 받들고 가서 제멋대로 방자하게 함부로 폐해를 일으킴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만약 일벌백계(一罰百戒)[194]하지 않는다면 기강을 세워 내시가 방자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의금부(義禁府)에 내리시어 끝까지 조사하여 법에 따라 죄를 주소서."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폐해를 일으킨 내시를 먼저 파직한 다음에 조사하라고 하였으니 경계를 보이기에 충분하다. 또 간관(諫官)이 아뢴대로 감사(監司)에게 지시할 것이니 옥에 가두고 조사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그 뒤에도 여러 번 아뢰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명종실록 권14 엽19〉

□ 명종(明宗) 8년(1553) 5월 6일 신해

성제원(成悌元)을 군기시(軍器寺) 주부(主簿)로 삼았다.

〔성제원은 사람됨이 세상 밖을 방랑하여 인간세상을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 스스로 술과 시에 취하고 노래하는 것을 흥취로 삼았고 가슴 속이 활달하여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았다. 나중에 보은현감(報恩縣監)이 되었을 때 정치에는 청렴 간결함을 숭상하고 백성들을 가르쳐서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급선무로 삼았으므로 다스림이 제일이었다고 한다〕〈명종실록 권14 엽50〉

□ 명종(明宗) 8년(1553) 6월 26일 신축

성제원(成悌元)을 보은현감(報恩縣監)으로 임명하였다. 〈명종실록 권14 엽74〉

□ 명종(明宗) 10년(1555) 5월 1일 갑오

청홍도의 보은(報恩) 옥천(沃川) 면천(沔川) 회인(懷仁)에 천둥 번개가 크게 치고 비와 우박이 섞이어 내렸는데 큰 것은 새알만하고 작은 것은 개

193) 왕비(王妃)의 지시

194) 한 사람이나 한 가지 죄목을 엄하게 처벌하여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 일

암만하였으며, 2~3치쯤 쌓였고 나뭇잎이 모두 떨어지고 날던 새들이 다 쳤다. 〈명종실록 권18 엽28〉

□ 명종(明宗) 10년(1555) 윤11월 20일 신사

밤에 달무리가 희미하게 졌다. 청홍도의 문의(文義) 회인(懷仁)에 천둥이 쳤다. 〈명종실록 권19 엽49〉

□ 명종(明宗) 11년(1556) 4월 22일 경술

청홍도의 청산(靑山) 보은(報恩)에 비와 우박이 섞여 내렸는데 크기가 개암만하였다. 〈명종실록 권20 엽36〉

□ 명종(明宗) 11년(1556) 4월 25일 계축

청홍도 보은(報恩) 제천(堤川) 청풍(淸風) 영동(永同) 연풍(延豊) 황간(黃澗)에 비와 우박이 내렸는데 새알만한 것도 있었다. 〈명종실록 권20 엽36〉

□ 명종(明宗) 14년(1559) 5월 18일 기축

전 보은현감(報恩縣監) 성제원(成悌元)이 사망하였다. 〈명종실록 권25 엽39〉

□ 명종(明宗) 14년(1559) 6월 18일 무오

청홍도 보은(報恩)에서 세 사람이 벼락 맞아 죽었다. 〈명종실록 권25 엽47〉

□ 명종(明宗) 18년(1563) 8월 23일 기사

청홍감사(淸洪監司) 박충원(朴忠元)이 보고하기를 "감시도회(監試都會)[195]를 보은현(報恩縣)에 설시했었는데 유생들이 처음에는 과거의 제목을 고쳤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나중에는 시관(試官)을 꾸짖고 욕하며 사람을 마구 치고 과장(科場)을 걷어치우는 등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195) 생원(生員) 진사(進士)가 되기 위한 소과(小科)의 초시(初試)

이렇게 못되고 사나운 과거를 보러온 선비들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유교의 기풍이 땅에 떨어질 뿐 아니라 나라의 기강마저 늘어질 것이니 그 버릇을 길러서는 안되겠습니다. 조정의 관원을 보내어 조사하여 통렬히 다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이 보고를 보니 극히 놀랍고 해괴하다. 지금 인심이 어찌 이렇게까지 되었단 말인가? 잡아다가 통렬히 다스릴것을 삼공(三公)[196] 영부사(領府事) 예조(禮曹)와 의논토록 하라." 하였다. 〈명종실록 권29 엽59〉

□ 명종(明宗) 18년(1563) 9월 4일 기묘

임금이 분부하기를 "근래에 청홍도 보은(報恩)에서 유생들이 저지른 소행을 보고 몹시 놀라 추고경차관(推考敬差官)을 내려보냈는데 이제 또 전라감사(全羅監司)의 보고를 보니 이 또한 큰 변이다. 인심의 포악함이 이 지경이란 말인가? 어찌 과장(科場)에서 사람을 죽도록 구타하고 군복까지 입는 일이 있단 말인가? 나라가 나라꼴이 아니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는 실로 보통의 예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마땅히 엄하게 나라의 위엄을 보여야 할 것이니 속히 예조(禮曹)에서 의논토록 하라. 근년에 오면서 인심이 흉포해져 나라의 위엄이 행해지지 않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짓이 마치 오랑캐들과 같다. 위에서 아무리 기강을 떨쳐 세우고자 해도 아래에서 받들지 못하니 이 또한 온당치 못한 일이다. 이 일도 아울러 예조에 이르라." 하였다. 〈명종실록 권29 엽60〉

□ 명종(明宗) 20년(1565) 6월 29일 갑오

청홍도 보은(報恩)에서 어떤 여인이 벼락에 맞아 죽었다. 〈명종실록 권31 엽43〉

□ 명종(明宗) 21년(1566) 5월 23일 계축

임금이 분부하기를 "내 일찍이 종친(宗親)이 못 배운 것을 한탄해 왔기 때문에 어제 스승을 가려서 가르치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는데 다시 깊이

196)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

생각해 보니 이제 새로운 예를 만드는 것이 옳지 못하다. 다만 6조(六條)[197]를 구비한 사람을 이조(吏曹)에서 가려 재량대로 쓰도록 하여 인재가 떨쳐 일어나도록 권장하라."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1조(條)만 구비한 사람을 찾아도 해당되는 사람이 적은데 하물며 6조를 다 구비한 사람이 있겠는가? 이러한 조건으로 온 나라에서 구하였으나 역시 많이 얻지 못하고 여섯 사람〔조식(曺植) 이항(李恒) 성운(成運) 남언경(南彦經) 한수(韓脩) 김범(金範)〕을 구하여 추천하였는데 여기에 뽑힌 사람들이 과연 능히 6조를 다 구비하였단 말인가?〕 〈명종실록 권31 엽77〉

□ 명종(明宗) 21년(1566) 6월 16일 을해

임금이 분부하기를 "올 봄에 구휼을 잘한 수령으로서 보은현감(報恩縣監) 황징(黃憕) 등에게 우리나라 옷감 한 벌씩을 하사하라." 하였다.〔진휼사(賑恤使) 홍섬(洪暹)이 일찍이 그 종사 관(從事官)의 말에 따라 보고하여 포상한 것이다〕 〈명종실록 권 33 엽4〉

□ 명종(明宗) 21년(1566) 6월 21일 경진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생원 진사 중에서 6조(六條)가 구비된 사람을 이조에서 네 대신과 의논하여 4~5인을 뽑아 권면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전일에 계셨습니다.

전 참봉 성운(成運)〔자는 건숙(健叔)으로 진사에 합격하였으며 성수침(成守琛)의 종제다. 인품이 온화하고 단아하며 도량이 넓어서 다른 사람과 마찰이 없었고 남의 잘못을 말하지 않았다. 중년에는 어머니를 위하여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어머니가 별세하자 결국 그만 두었다. 보은현(報恩縣)에 거주하면서 산수를 즐기고 가야금과 책, 그리고 시와 술을 즐기면서 소일하였으며 물건을 얻고 주는데는 의리를 지켰고 관아에 출입하지 않아 온 고을사람이 모두 그를 추앙하였다. 그가 참봉에 임명되었을 적에는 대궐에 들어가 사은만 하고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을 천거하니 임금이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 〈명종실록 권33 엽5〉

197)현인(賢人)이 갖추어야 할 여섯가지 덕목(德目)

□ 명종(明宗) 21년(1566) 7월 19일 무신

이조판서(吏曹判書) 민기(閔箕), 참판(參判) 정종영(鄭宗榮), 참의(參議) 박응남(朴應男)이 아뢰기를 "전날의 분부에서 '왕손(王孫) 중에 가르칠 만한 자가 있으니 생원 진사 중에서 경서(經書)에 밝고 행실(行實)을 닦고 곧고 착하고 순정하고 부지런하고 노성하고 온화한 자를 이조(吏曹)와 예조(禮曹)가 대신과 의논하여 골라서 스승으로 정하라.' 하시더니 또 전례가 없는 일이라 하여 중지시키고 다만 이조로 하여금 물색해서 쓰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6조가 구비된다면 바로 재덕을 겸비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본시 얻기 어렵고 만일 여론에서 쓸 만한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골라 써야 하겠습니다만 단 전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일이라서 여느 때 성균관(成均館)에서 공천(公薦)하는 것〔나라의 법전에 '생원 중에서 재주와 행실이 뛰어난데 여러 번 과거를 보았으나 합격되지 못한 자를 천거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성균관이 지금도 시행하여 이를 '공천'이라 하는데 근래에는 선비들의 풍습이 늘어져서 더러는 권세가의 연줄로 벼슬을 얻기도 한다〕과는 다릅니다.

이전에 경연관(經筵官)이 아뢴 성수침(成守琛) 이희안(李希顔) 조식(曺植) 성제원(成悌元)〔자는 자경(子敬)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성품이 활달하고 출중하게 호탕하고 영매하여 사람들에게 추중을 받았다. 그러나 속절에 구애되지 않고 꽤 세상을 얕보고 불공스럽게 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의 중심에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으며 효도와 우애는 천성적으로 타고난 것이었다. 친상(親喪)을 당해서는 예절을 다하였고 어머니가 죽어 재산을 분배할 때에는 자기 몫을 모두 형제들에게 돌리고 거침없이 표연하게 돌아다니며 산수를 아주 좋아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유발승(有髮僧)[198]'이라 하였다. 보은현감(報恩縣監)에 임명되니 잘 다스린다는 명성이 있었다〕 조욱(趙昱) 등 다섯 사람은 세상을 잊고 조용하게 즐기는 선비로 추천하여 6품에 임명되었으니 마땅히 이 예에 따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전날 여섯 사람〔이항(李恒) 등〕을 적어 아뢸 때에 미처 다 자세하게 아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을 매양 6조가 구비된 것으로 칭호하

198)머리를 기른 중

게 되니 단지 이들이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론에서도 그 제도를 온당치 못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6조를 다 갖춘 사람'이라는 이름을 고쳐 다만 '경학에 밝고 행실을 닦은 사람'이라는 두 조목만을 가지고 전하의 뜻을 받들게 하소서."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6조(六條)을 깆춘 사람으로 말하면 당초 임금의 분부를 범연한 것으로 여겨 기록하여 아뢴 사람이 모두 한때 유명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실력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뒤에 그들에 대한 임금의 대우가 극진하고 공론에서는 또한 그들이 6조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조(吏曹)의 말이 이와 같이 된 것이다.

대저 6조를 갖춘 사람은 바로 성현(聖賢)에서 한 등급 낮은 사람인데 천하를 통틀어 구하더라도 쉽게 구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경서(經書)에 밝고 행실(行實)을 닦은 것만 본다 해도 그 다음의 네 조목(條目) 역시 자동적으로 그 속에 들어 있으니 이름은 비록 약해졌다 하지만 실상은 동일한 것이다. 대개 사람에 따라 그 행실을 살피지 않고 먼저 이름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구했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공론이 있게 된 것이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아뢴 뜻이 온당하다. 지금 같은 말세에서 6조가 구비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만일 이름과 실상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잘못된 일이 될 것이니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 〈명종실록 권33 엽12-13〉

□ 명종(明宗) 21년(1566) 7월 26일 을묘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진사 성운(成運)이 병을 얻어서 곧 바로 올라오지 못한다 합니다. 이는 바로 특별히 부른 사람이니 약을 보내주어 치료하여 올라오게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부를 기다립니다." 하였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내 병이 쾌차하지 못하여 정신이 혼매하므로 이 일을 말하려고 하다가 미처 말하지 못하였는데 아뢴 뜻이 온당하다. 상당한 약을 지어 보내어 조리할 것을 감사(監司)와 성운에게 알려라. 그리고 병중에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지급할 것도 아울러 감사에게 알려라." 하였다. 〈명종실록 권33 엽15〉

□ 명종(明宗) 21년(1566) 8월 16일 갑술

대사헌(大司憲) 박순(朴淳)이 아뢰기를 "최근 경서(經書)에 밝고 행실(行實)을 닦은 사람을 일제히 모이게 해서 동시에 만나 보려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나이 60~70이 넘은 노쇠한 사람도 있으므로 꼭 동시에 만나보려고 하신다면 질병과 사고가 꼭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려우니 정무를 보실 때 부름에 따라 달려온 선후에 따라 만나 보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운(成運)이 이미 역말을 타고 서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초야의 사람이 현재 임명된 관직도 없이 여관에 머물고 있으니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자고로 어진이를 좋아하는 임금은 반드시 어진이를 기르는 성의가 있었으니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적당함을 헤아려서 지방관원의 급료를 지급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아뢴 뜻이 다 온당하다. 경서에 밝고 행실을 닦은 사람은 이미 벼슬을 주기도 하고 이미 역말을 타고 올라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달아 만나 보기는 마땅치 않고 왕릉에 참배하기 전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성운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일은 내 일찍이 하고 싶었던 것인데 새 규례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참작할 것이다." 하였다.

그리고 승정원(承政院)에 분부하기를 "대사헌이 조강(朝講)[199]에서 아뢴 성운에게 급료를 지급하라는 일은 지당하고 매우 나의 뜻에 부합되니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적당히 헤아려서 지급케 하라." 하였다.

〔성운은 이 때 나이가 70이었는데 청렴하고 기개가 있었으며 의리가 아닌 일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 이 때에 비록 나와서 임금의 은혜에 사은하기는 하였으나 노인의 병을 핑계하여 상소를 올리고는 지레 떠나버리고 끝내 관직에 부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의 거취가 바른 도리라 하고 여섯 사람 중에서 으뜸이라고 일컬었다.

○ 호조(戶曹)에서 7품의 봉급을 지급하였고 이 날 별도로 중인(中人)을 성운(成運) 집에 보내 임금이 드시는 음식을 특별히 하사하고 사례하지 말도록 명했다.〔음식의 가짓수는 평시 삼공(三公)[200]에게 하사하는 규칙

199) 아침에 하는 경서(經書)의 강론

200)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

을 기준했는데 오히려 그보다 많았다〕〈명종실록 권33 엽22-23〉

□ 명종(明宗) 21년(1566) 8월 28일 병술

성운(成運)을 통례원(通禮院) 인의(引儀)로 임명하였다. 〈명종실록 권33 엽28〉

□ 명종(明宗) 21년(1566) 9월 3일 경인

성운(成運)을 의영고(義盈庫) 주부(主簿)로 임명하였다. 〈명종실록 권33 엽29〉

□ 명종(明宗) 21년(1566) 9월 10일 정유

성운(成運)을 조지서(造紙署) 사지(司紙)로 임명하였다. 〈명종실록 권33 엽43〉

□ 명종(明宗) 21년(1566) 9월 12일 기해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장원(掌苑) 한수(韓脩), 사축(司畜) 이항(李恒), 지평현감(砥平縣監) 남언경(南彦經), 언양현감(彦陽縣監) 임훈(林薰)을 불러 보았다.〔이에 앞서 이조(吏曹)에 명하여 세상을 잊고 조용하게 즐기는 선비와 경서(經書)에 밝고 행실(行實)을 닦고 식견이 넓고 도리가 바른 사람을 천거하도록 하니 이조(吏曹)는 한수 등 4인과 성운(成運) 김범(金範)을 추천하였는데 이 때에 와서 임금이 불러 나라를 다스리는 바른 도리를 물었더니 각각 옛 성인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대답하였으나 그 말들이 조리 가 없고 유창하지는 못하였다.

〔성운(成運)은 병으로 대궐에 들어오지 않았다〕〈명종실록 권33 엽43〉

□ 명종(明宗) 21년(1566) 9월 19일 병오

사지(司紙) 성운(成運)이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어진 사람을 구하는 일보다 우선할 것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어진 사람을 얻는 일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어진 사람을 구해 얻어서 관직에 임명하여 일을 맡긴다면 나라가 이롭고 백성들이 복스러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결과가 될 것이고 어진 사람을 구하나 어진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서 어질지 않은 사람을 어진 사람으로 여겨서 잘못 쓴다면 반드시 임금을 속이는 지경에 이를 것이니 그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임금은 반드시 정밀히 감별하고 신중하게 선택함으로써 어질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어진 사람의 이름을 훔치고 어진 사람의 지위를 차지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근자에 전하께서는 어진 사람을 좋아하시는 마음으로 선비 약간명을 구하여 경서(經書)에 밝고 행실(行實)을 닦은 이라는 이름을 붙이셨는데 신도 그 속에 끼었습니다. 무릇 경서에 밝고 행실을 닦음이란 학문이 이루어지고 덕이 높은 사람을 일컫는 것이니 이는 옛날에 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은 얻기가 드문 것인데 하물며 이 시대에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신이 감히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실력은 자신이 잘 아는데 어떻게 전하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신은 타고난 품성이 우매하고 재주도 아둔하여 어릴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예 큰 뜻을 품은 일이 없었고 학문도 겨우 과문(科文)[201]이나 익혀서 단지 영달만 도모하였는데 그나마도 병들어 제대로 힘쓰지 못하여 문장도 지저분하므로 과거 담당관에게 내보였으나 열에 하나도 채택된 일이 없었습니다. 경서에는 더욱 조예가 없어서 소탈하기 그지없습니다. 혼자서 깊이 생각하고 묵묵히 깨달은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스승과 벗과도 강습하고 토론을 한 경험도 없습니다. 때로 혹 글을 읽기는 하나 겨우 문장을 떼어서 읽을 정도요 의미와 이치의 자세한 깊이나 성인이 완곡하게 비유한 오묘한 의미는 모두 통달하여 깨친 바가 없는데 하물며 정력을 기울여 실제 체험하는 자신을 위한 수양공부를 하였겠습니까? 학문을 연구하여 밝히지 못하였는데 행실이 어찌 닦여질 수 있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에 경건하게 몸을 지니고 자신의 잘잘못을 반성해 살피는 일도 아예 없고 사물을 접하는 자리에서는 이치를 따르는 정대한 행실을 드러내 보인 적도 없습니다. 평소의 처신이 거의 예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하여 방자한 행실에 편함을 느끼고 옛 사람의 교훈과 바른 법도의 말로써 몸을 지키지 않았으니 자신을 돌아보면 한 가지도 좋은 태도가 없었습니다.

201) 과거(科擧)에 출제되는 여러가지 문체(文體)의 글

더구나 금년에는 나이 80에 접어들어서 숨이 차고 뭇병이 쇠약한 틈을 타서 총공략을 하므로 10일에 8~9일은 항시 병상에서 삽니다. 때로는 한기와 열기가 교전을 하여 수기(水氣)와 화기(火氣)가 서로 발작하니 통증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죽기를 빌어도 죽지는 않고 살은 빠지고 뼈만 남아 귀신모양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두 다리가 쇠약하여 땅을 디딜 힘이 없어서 걸으면 곧 자빠지므로 남이 붙들어 일으킵니다. 귀는 완전히 먹어서 파리소리와 우뢰소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때로 남과 대화할 적에는 단지 상대편의 혀 움직이는 것만 볼 뿐이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남이 혹 무슨 일을 나에게 물을 때에는 반드시 귀에 대고 크게 말하는데 오히려 그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게 됩니다.

대저 사람 몸뚱이가 용역되는 바에 있어서는 오직 귀가 가장 큰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듣고 일을 처리하는 마당에서 귀로 들은 다음에야 마음으로 결정해서 일을 알맞도록 처리하게 되는데 지금 귓병이 이 지경이어서 듣지도 알지도 못하여 마치 허수아비와 같은데 이런 사람을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학문과 행실이 형편없고 병으로 말하면 몸이 바짝 말라서 거의 다 죽을 지경이므로 쓸모없는 폐인이 된 지 이미 오래인데 전하께서 특별히 비상한 어명을 내리어 대궐에 불러들이셨는가 하면 많은 물품들을 하사하여 전하의 마음을 표시하셨으며 지금 또 벼슬을 내리여 6품직에 앉히시니 이는 전하께서 지나치게 어진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어질지 못한 사람을 얻어 어진 사람으로 착각하고 임용하시니 신은 적격자가 아니면서 어진 사람의 이름과 지위를 훔쳐 몸에 더하니 위로는 하늘이 부끄럽고 아래로는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밤중에 고요히 생각할 때 어떻게 마음을 진정시키며 대낮에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낯을 들겠습니까?

처음 신을 부르시던 날 어떤 사람이 신에게 '몸은 노쇠하고 병에 걸렸으니 이런 이유로써 임금에게 알리는 것이 의리상 옳은 일이다.' 하였지만 신은 신하가 임금의 부름을 받으면 수레에 멍에를 맬 겨를도 없이 바삐 달려가는 법이니 병든 몸을 끌고 대궐에 들어갔다가 청원을 들어주시면 물러 나오는 것이 신하의 예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머리

에 난 종기도 이미 낫고 날씨도 약간 서늘하므로 말을 유유히 몰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서울에 이르렀더니 쇠약한 힘이 다하여 노독이 생겼는가 하면 정신은 아찔하고 몸은 나른하며 손과 다리가 뒤틀리고 머리는 멍하고 눈은 흐리며 현기증으로 깨어나기 어려운 상태이며 종일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며 게다가 복통까지 겹쳐서 설사를 하고 허리와 어깨가 뻣뻣합니다. 병의 뿌리가 깊게 내려서 아침 저녁으로 꼭 이런 증상이 일어나니 큰 병이 발생한다면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신은 자식도 없고 친척도 적으며 가난하고 못생긴 사내종 몇 놈만있을 뿐 장정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객지에서 죽게 된다면 천리 머나먼 길에 누가 있어 시체를 싸다가 선산에 묻어 주겠습니까? 반드시 다른 산에 버려져서 영원히 불귀의 귀신이 될 터이니 신은 비통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갖춰 호소하여 우러러 전하를 번거롭게 하니 불쌍히 여기시고 시골로 돌려보내어 편안히 지내며 신병을 치료하여 실낱같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 어찌 생명을 살리는 지극한 인자함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깊고 두터운 성은을 받았으므로 전하를 위하여 힘을 기울이고 사려를 다하여 만분의 일이라도 갚으려고 생각하였으나 병 든 몸이 이 지경이어서 직책을 맡을 힘이 없기에 지레 사직하고 돌아가려 하니 신의 죄 또한 큽니다. 집에 거적을 깔고 엎디어서 엄벌이 이르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글월로 답하기를 "상소의 사연을 보니 절박한 사정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임금이 어진 사람을 쓰는 데는 먼저 나이 많은 사람부터 쓰는 것이 마땅하다. 내 비록 불민하나 어찌 감히 물러감을 허락하겠는가? 만일 경서에 밝고 행실을 닦은 사람의 반열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조정 여론이 어찌 한 마디 말도 없었겠는가? 편리한대로 내려가되 굳이 관직은 사직하지는 말라." 하였다.〔임금의 편지를 그대로 성운에게 주어 보냈다〕

〈명종실록 권33 엽47-48〉

□ 명종(明宗) 21년(1566) 9월 24일 신해

사지(司紙) 성운(成運)이 상소하기를 "전번에 신이 병세가 심하여 벼슬에 있을 수 없으므로 상소하여 사정을 갖추어 올렸으나 전하께서 들어주시

지 않으므로 끝내 허락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우러러 하소하여 전하를 번거롭게 하겠습니다.

신이 쇠잔한 몸으로 천리길을 달려오고 보니 기력이 고갈되어 드디어 노독이 발생하였습니다. 욕지기가 나고 목이 막히며 정신이 혼매하여 취한 것도 같고 깬 것도 같았습니다. 의원을 찾아가 물었으나 모두들 '맥병(脈病)은 치료하기 어려워 좋은 약을 쓴다 하더라도 효험을 보지 못한다.' 합니다. 병이 난 지가 지금 열흘이나 반달이 넘었는데 온갖 증세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들으니 방술(方術)을 적은 책에 '약보(藥補)가 식보(食補)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합니다. 신은 일찍이 이 말을 옳게 여겨왔기 때문에 때로는 억지로 밥을 먹어보기도 하나 먹은 즉시 토해 버립니다. 신은 나이가 이미 많은 데다 또 이런 병까지 겹쳤으니 죽음이 아침에 있지 않으면 저녁에 있을까 두렵습니다.

신이 시골에 있을 땐 해마다 겨울만 당하면 깊숙한 방에 들어앉아서 사방 창문을 꽉 닫고 단지 문 하나만 내놓아 아침 저녁으로 밥상을 받을 뿐이며 아무리 뜰 같은 가까운 땅에도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해 3월 날씨가 화창할 때에 가서야 비로소 밖에 나가곤 하였습니다. 지금 신은 남의 집을 빌어 사는데 벽 등이 완전치 못하고 부엌에는 나무가 떨어졌으므로 긴 밤을 이불을 안고 있자니 찬 기운이 뼈에 스며듭니다. 이 때문에 병이 날로 심해지나 능히 낫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신은 산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편합니다. 시체로 돌아간다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니 가난한 살림이라 그마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아직 죽기 전에 산 사람으로 돌아가 집에 이르러서 죽을 것입니다. 설령 반드시 집에는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근처의 다른 집에서 죽는 다면 두 마리의 소에 멍에 맨 수레에다가 끄는 사람 6~7명만 동원한다면 실어갈 수 있고 가난한 살림이라 해도 그 정도 비용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급히 서둘러 기구를 마련하고 종놈을 단속시켜 환자를 붙들고 떠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유를 전하께 알리고 엎드려 전하의 어명을 기다립니다.

신은 불초한 사람으로 외람되이 성은을 산더미처럼 받았는데 우러러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한 벼슬을 삼가 지키고 성의를 다해 공직에 종

사하여 맹세코 전하를 속이거나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마음먹는 것이 신의 구구한 소원이었는데 병이 뜻을 빼앗아서 끝내 벼슬에 있지 못하게 만드니 대궐 뜰을 연연히 바라보며 차마 속히 물러가지 못합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하였다. 〔조식(曺植)이 이 상소를 보고 '신병이 무슨 관계가 있기에 임금에게 아뢰는가?' 하였다〕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분부하기를 "내의(內醫)[202]를 성운(成運)의 집에 보내어 병을 살펴보고 아뢰게 하라." 하였다. 〈명종실록 권33 엽49〉

□ 명종(明宗) 21년(1566) 9월 24일 신해

내의(內醫)가 성운(成運)의 병을 살펴보고 오니 승정원(承政院)에 분부하기를 "내의원(內醫院)으로 하여금 상당한 약을 지어서 성운(成運)에게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이어 성운의 상소에 답하기를 "상소의 사연을 여러 번 보니 정상을 알 만하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갑자기 시골로 돌아가기를 청원하니 내 마음이 서운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지금 약을 보내니 잘 치료해 가지고 가야 한다. 꼭 시골로 내려가야 할 것은 아니니 허락하지 않는다." 하였다. 〈명종실록 권33 엽49〉

□ 명종(明宗) 21년(1566) 10월 4일 신유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분부하기를 "전날 만나 보려고 할 때 참석하지 못한 성운(成運) 조식(曺植) 김범(金範)을 오는 초이렛날 만나 보고자 하니 성운 등에게 사고가 있는지를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성운은 본디 병이 있어서 겨울만 되면 문밖을 나가지 못하는데 얼마전 여관에서 병이 나 전하께서 보내준 약을 먹었으나 차도가 없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 죽고 싶다고 하여 고향으로 싣고 갔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알았다" 하였다. 〈명종실록 권33 엽52〉

□ 명종(明宗) 21년(1566) 10월 7일 갑자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상서원(尙瑞院) 판관(判官) 조식(曺植)

202) 내의원(內醫院)에 근무하는 의원(醫員)

과 옥과현감(玉果縣監) 김범(金範)을 불러들여 만나보았다.

〔임금이 만나 본 뒤에 이조(吏曹)에게 헤아려 승진시키라는 명령에 따라 조식을 판관(判官)으로, 이항(李恒)을 군수(郡守)로, 한수(韓脩)를 현감(縣監)으로 삼았고 그 외의 사람에게는 모두 6품의 관직을 주었다.

그런데 조식은 사양하지 않고 돌아갔고 이항과 임훈(林薰)은 모두 병을 칭탁하고 벼슬을 버리고 갔다. 사람들은 모두들 상관에게 업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버리고 갔다고 여겼다.

성운(成運)은 노련하고 성숙하다고 일컬어졌으며 고장 사람들에게 매우 존경을 받았는데 늙고 병들었음을 이유로 관직을 사양하고 돌아갔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간신이 제거된 뒤에는 해가 다시 중천에 뜬 것 같아 음산한 기운이 모두 사그라들고 밝고 따뜻한 햇살이 자라나서 초야의 선비들을 불러 모아 사정전으로 불러 마음을 열고 성의를 다해 접대하니 어진 사람을 좋아하고 착한 일을 즐거워하는 임금의 본심이 여기에서 드러났다.〕〈명종실록 권33 엽54-56〉

□ 명종(明宗) 21년(1566) 10월 21일 무인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사지(司紙) 성운(成運)과 상서원(尙瑞院) 판관(判官) 조식(曺植)이 이미 모두 고향으로 내려갔으니 교체해야 하는지 분부를 기다립니다." 하니 임금이 "교체하지 말라"고 하였다.

〔성운(成運)은 병이 심하여 다시 상소를 올린 후에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갔다〕〈명종실록 권33 엽59〉

□ 명종(明宗) 21년(1566) 12월 2일 무자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상서원(尙瑞院) 판관(判官) 조식(曺植)과 사지(司紙) 성운(成運)〔천성이 자연스러웠고 또한 학식도 있었다〕은 고향으로 내려간 지 오래됩니다. 이제 도목정사(都目政事)[203]로 마땅히 그 빈 자리를 채워야겠으니 아울러 교체하소서."하니 임금이 분부하기를 "조식과 성운을 한가한 직책으로 옮기라." 하였다.

이조에서 다시 아뢰기를 "상서원 판관 및 사지는 모두 한가한 직책인데

203) 매년 6월과 12월에 모든 관원의 근무평가에 따라 승진 또는 좌천시키는 일

분부를 그렇게 하시니 지금 잉임(仍任)[204] 시킨다면 포폄(褒貶)[205]의 등급을 정하기가 어렵게 되므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임금이 "우선 관직을 바꾸라" 하였다. 〈명종실록 권33 엽80〉

□ 선조(宣祖) 즉위년(1567) 10월 5일 병술

임금이 처사(處士)[206] 조식(曺植) 성운(成運) 그리고 전 군수 이항(李恒) 등을 불렀으나 모두 오지 않았다.〔조식은 삼가(三嘉)에, 성운은 보은(報恩)에, 이항은 태인(泰仁)에 살고 있었다〕〈선조수정실록 권1 엽7〉

□ 선조(宣祖) 즉위년(1567) 11월 17일 무진

전한(典翰) 기대승(奇大升)이 아뢰기를,

"옛날 사람이 어진 사람을 등용하지 못한 이유와 정성껏 찾으면 어진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하께서 알고 계시니 온 나라 백성들의 복입니다. 지난번에 이황(李滉) 이항(李恒) 조식(曺植)을 올라오라는 글월을 내리신 것은 그것이 비록 선왕의 뜻이었다고 하나 전하께서 계승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니 이 이상 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황(李滉)과 이항(李恒)은 신이 보아서 알고 있고 조식(曺植)은 신이 보지 않아 모르지만 일찍이 벗들을 통해 그 사람에 대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성운(成運) 역시 세상을 잊고 조용하게 즐기는 선비로 명종(明宗) 때 임금의 부름을 받들고 올라 왔다가 병으로 사직하고 물러갔는데 나이가 이미 70여세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들은 것이 없으나 대개 명성과 이익를 탐내지 않고 스스로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권1 엽12〉〈선조수정실록 권1 엽7-8〉

□ 선조(宣祖) 1년(1568) 1월 27일 정축

임금이 비망기(備忘記)[207] 로 지시하기를 "임금과 신하 사이는 실로 부

204) 임기가 만료된 관원을 그 교체하지 않고 유임시키는 것
205) 지방관원의 근무 평가, 평가가 좋으면 최(最), 보통이면 중(中), 나쁘면 전(殿)이라 하여 일명 전최(殿最)라 함
206) 세상을 등지고 초야에 은거한 선비
207) 임금이 명령을 적어서 승지(承旨)에게 전하는 문서

자와 같으니 만났을 때 너무 부복(俯伏)[208]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비록 수렴청정(垂簾聽政)[209] 하는 때라도 발 안에서 발 밖의 사람을 내다보지 않으니 별로 부복하지 않아도 된다.

어진 사람을 높이고 간언(諫言)을 받아들이는 것은 제왕의 미덕이니 다시 조식(曺植)을 부르고 아울러 성운(成運)도 부르라." 하였다. 〈선조실록 권2 엽3〉

□ 선조(宣祖) 2년(1569) 8월 1일 임인

성운(成運)에게 상서원 판관(尙瑞院判官)을 임명하고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 〈선조수정실록 권3 엽10〉

□ 선조(宣祖) 6년(1573) 1월 1일 임오

흰 무지개가 해를 가로 지르니 임금이 관부에 공문을 내려 신하의 바른 말을 구하고 성운(成運)과 이항(李恒)을 불러 역마를 타고 올라오게 하여 장차 재앙을 해소할 계책을 물으려고 하였으나 모두 사양하고 오지 않았다. 〈선조수정실록 권7 엽1〉

□ 선조(宣祖) 6년(1573) 1월 26일 정미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하늘의 이변을 두려워하여 덕을 닦고 일을 바루어 꾸중에 답하시고 다른 일을 할 겨를없이 시골에 숨어있는 선비를 불러 마땅이 할 일을 하지 않는 허물을 물으려 하시니 신들은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전 도사(都事) 성운(成運)과 부정(副正) 이항(李恒)은 시골에 숨어 살면서 글을 읽고 뜻을 지켜 학술과 덕행이 본디 선비들의 본보기가 되는데 초야에서 헛되이 늙으니 어찌 밝은 시대의 유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운 이항에게 특별히 서찰을 내리고 정성으로 불러서 역마를 타고 올라오게 하여 재변을 삼가 답하는 실질을 다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권7 엽5〉

---

208) 고개를 숙이고 엎드림

209) 임금이 나이가 어려 등극하였을 때 왕대비(王大妃)가 발을 쳐놓고 정사(政事)를 돌보는 것,

□ 선조(宣祖) 6년(1573) 6월 25일 계유

사간원(司諫院) 대사간(大司諫) 이산해(李山海) 등이 아뢰기를 "충청감사(忠淸監司) 이충작(李忠綽)은 성운(成運)에게 보내는 전하의 명령서를 역졸이 길에서 잃었을 때 곧 아뢰지 않고 감사에게 보낸 지시서를 사사로이 보냈으니 파직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이충작은 사사로운 정황이 없었으니 다만 교체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권7 엽25〉

□ 선조(宣祖) 6년(1573) 8월 1일 무신

성운(成運) 한수(韓修) 남언경(南彦經)에게 모두 3품직의 관직을 임명하였는데 차례를 무시한 특별한 임명이었다. 〈선조수정실록 권7 엽2〉

□ 선조(宣祖) 6년(1573) 10월 1일 무신

다시 성운(成運)을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 임금이 성운의 집이 가난하여 겨울옷이 없다는 말을 듣고 옷감 한 벌을 하사하였다. 〈선조수정실록 권7 엽5〉

□ 선조(宣祖) 6년(1573) 11월 2일 무인

동지사(同知事) 유희춘(柳希春)이 아뢰기를 "남곤(南袞) 심정(沈貞) 등이 임금을 속이고 함부로 형벌한 죄를 논하기를 "대저 도피라 것을 옛 사람이 풀이하기를 '도피는 죽음을 피한다는 말과 같다.'하였으니 이는 죽을 목숨을 말하는 것이지 임금의 명령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도 '무릇 죄를 짓고 달아난 자는 본래의 죄값에 2등을 더하여 처벌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죄를 짓고 도피한 자는 그 죄가 가중되지만 본디 죄가 없는 자는 도피한 죄만 있을 뿐 중대한 죄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김정(金淨)은 기묘년[210]에 형조판서(刑曹判書)로서 사화(士禍)를 당하여 금산(錦山)으로 귀양을 갔는데 금산은 김정의 고향인 보은(報恩)에서 겨우 하룻길이었으므로 늙은 어머니를 만나 보겠다고 군수(郡守) 정응(鄭

210) 중종(中宗) 14년(1519)

熊)에게 말하고 또 정웅도 허락하였습니다. 그날 귀양지 옮기기 위해 도사(都事)가 금산에 왔기 때문에 곧 사람을 보내어 김정을 불러 돌아 왔는데 권세를 쥔 간신이 이 사실을 듣고서 김정이 도피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정웅을 잡아다 심문하니 정웅이 그 위세에 눌려 뜻을 맞추느라고 몰랐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정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마침내 도피라 하여 제주도(濟州島)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신사년[211]에 안처겸(安處謙)이 대신을 제거하려다가 일이 발각되어 달아나자 다시 김정과 기준(奇遵)을 다시 형벌을 정하였으나 법률에 규정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본국을 배반하고 몰래 다른 지방으로 갔다는 것으로 죄를 만들었으니 그 지나치게 억울한 것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위에서는 하정(河珽)이 부당하게 사형을 받고도 오래도록 풀지 못한 억울함을 더욱 가엾게 여기시어 쾌히 은전을 베푸소서."하고 또 좌의정(左議政) 박순(朴淳)도 하정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극력 말하였고 대관(臺官)이 마지막에 다시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하정의 일은 의논하여 조치 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권6 엽〉

□ 선조(宣祖) 6년(1573) 11월 26일 임인

임금이 집의(執義) 신응시(辛應時)에게 답하기를 "지난번에 성운(成運)이 첫 번째로 추천되었는데 그는 진실로 어진 사람이다. 그러나 나이가 많고 병들어서 올라오기 어렵다고 하니 존경으로 대우하여 여러 가지 나랏일을 묻는 것은 괜찮겠지만 대관(臺官)에 임명하여 임지에 나아가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헛된 이름을 높일 뿐 그 실상이 없어 허위의 풍습을 더욱 조장하는 것이 될 것 같다. 경학에 밝고 행실이 곧아 벼슬할 만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한 사람만을 추천한 것은 독단하여 임명하는 것과 같으니 이것도 조짐을 자라게 할 수 없는 것 중의 한가지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권7 엽59〉

□ 선조(宣祖) 11년(1578) 5월 2일 임자

성운(成運)을 사재정(司宰正)으로 임명하였다. 〈선조실록 권12 엽8〉

211) 중종(中宗) 16년(1521)

□ 선조(宣祖) 11년(1578) 6월 1일 신사

처사(處士)[212] 성운(成運)에게 쌀을 하사하고 또 매를 하사하였다. 임금은 끝까지 벼슬을 사양한 그의 풍도와 절개를 고상하게 여겨 이번에 특별한 뜻으로 쌀을 하사하고 또 나이가 많아 나물반찬만 먹기가 어려울 것으로 여겨 매를 하사하여 고기반찬을 마련하도록한 것인데 성운이 상소하여 사양하고 사례하였다. 〈선조수정실록 권12 엽12〉

□ 선조(宣祖) 12년(1579) 5월 1일 을사

처사(處士) 성운(成運)이 사망하였다.[213] 〈선조수정실록 권13 엽 7〉

□ 선조(宣祖) 12년(1579) 7월 1일 을사

예관(禮官)이 성운(成運)에게 증직하는 일을 의논하였는데 임금이 노수신(盧守愼)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조식(曺植) 이항(李恒) 성운은 같은 시대의 어진 선비이지만 인품에 있어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조식은 뜻과 기개가 높고 식견이 고매해서 비록 성현(聖賢)의 글이라 하더라도 만족하지 않게 여겼으므로 조금 병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운은 온아(溫雅)하고 간묵(簡默)하며 초연히 세상일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겸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지켰으므로 한 세상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항은 몸을 단속하되 성현으로 법을 삼고 글을 읽되 사서(四書)[214]로 근본을 삼았으며 사람을 인도하되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선무를 삼았기 때문에 학자들에게 많은 공이 있으니 덕을 숨기고 사는 사람 중 혹 편벽된 곳이 있는 자와는 같지 않습니다. 조식에게는 이미 증직을 해 주었으니 이제 먼저 이항에게 증직하고 다음에 성운에게 증직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수정실록 권13 엽12〉

□ 선조(宣祖) 12년(1579) 12월 6일 정축

징사(徵士)[215] 성운(成運)이 사망하였다. 〔지난 5월 14일 경오날 일이다〕

---

212) 세상을 등지고 초야에 은거한 선비
213) 『선조실록』에는 5월14일로 기록되어 있음
214) 『논어(論語)』『맹자(孟子)』『중용(中庸)』『대학(大學)』
215) 임금이 명성을 듣고 부른 선비

216) 〈선조실록 권13 엽8〉

□ 선조(宣祖) 13년(1580) 6월 7일 을사

대곡처사(大谷處士)[217] 성운(成運)이 사망하였다.[218] 〈선조실록 권14 엽8〉

□ 선조(宣祖) 16년(1583) 5월 26일 정미

전라도(全羅道)의 10읍을 제비뽑아 호조(戶曹)의 낭청(郎廳)을 보내어 창곡(倉穀)의 부정이 있나 없나를 조사한 결과

충청도(忠淸道) 회인현감(懷仁縣監)을 파직하였다. 〈선조실록 권17 엽15〉

□ 선조(宣祖) 16년(1583) 10월 1일 기유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보은현감(報恩縣監) 조헌(趙憲)은 어리석고 망령된 자로 각박하게 일을 처리해 백성들이 많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파직시키소서."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앞서 이 사람이 백성을 잘 다스린다고 들었다. 허락하지 않는다." 하였다.

조헌은 여러 번 고을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강직하고 과감하여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아니하였다. 지평(持平) 송순(宋純)이 조헌을 미워하고 꺼려하여 논박하였는데 관리와 백성들은 마치 친척을 잃을 것처럼 그를 사모하였다. 〈선조수정실록 권17 엽51〉

□ 선조(宣祖) 16년(1583) 10월 13일 신유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보은현감(報恩縣監) 조헌(趙憲)이 어리석고 각박하기까지 하여 백성들이 많이 흩어지고 있다니 파직시키소서." 하였다.

임금이 대답하기를 "나는 전에 그 사람이 백성을 잘 다스린다는 말을 들었다. 허락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권17 엽50〉

---

216) 『선조수정실록』에는 5월1일로 수정되어 있음

217) 대곡(大谷)은 성운의 호

218) 『선조실록』에 성운의 사망기사는 12년 5월 1일과 13년 6월 7일에 중복되어 있는데 13년의 기사는 잘못된 기사임.

□ 선조(宣祖) 19년(1586) 10월 1일 임술

조헌(趙憲)을 공주(公州)의 주학제독관(州學提督官)으로 삼았다. 조헌이 상소하여 교육정책의 폐단을 논하면서 요즘 일어난 시사문제에 대하여 극력 아뢰었다. 그 상소에,

"사화(士禍)가 흑심하였기 때문에 기미를 아는 선비들은 모두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조심하였습니다. 성수침(成守琛)은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있을 것을 알고 성시(城市)에 숨었고 성운(成運)은 동기 간의 슬픔을 당하고서 보은(報恩)에 숨었으며 이황은 동기가 화를 입은 것을 상심하여 예안(禮安)으로 물러갔고 임억령(林億齡)은 아우 임백령(林百齡)이 어진 이를 해치는 것을 보고 놀라 지방에서 세상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또한 서경덕(徐敬德)이 화담(花潭)에 은둔한 것과 김인후(金麟厚)가 벼슬에 뜻을 끊은 것과 조식(曹植) 이항(李恒)이 바닷가에 숨어서 살았던 것 등은 모두 을사사화(乙巳士禍)가 격분시킨 것입니다.

신은 김우옹(金宇顒)과 같은 해 급제하여 함께 중학(中學)의 전적(典籍)이 되었는데 정여립(鄭汝立)은 그 때 훈도(訓導)로 있었습니다. 이에 모두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의 문하에 들어간 것을 기쁘게 여겼는데 유생을 뽑아 가르치자는 약속을 겨우 정하고 나서 곧 자리를 옮기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도 늘 그를 선량한 사람이라 생각하였고 또 이발(李潑) 이길(李洁)과 교분이 더욱 깊었던 것은 다만 그들이 이이와 성혼을 독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거없는 논의가 크게 일어나자 이발이 신에게 이이가 정철(鄭澈)을 천거한 일은 그르다고 누차 말하였는데 신은 이미 정철의 처사가 하늘과 땅의 신령에게 대해서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직접 보아 알았기 때문에 구차하게 따를 수 없었고 또 상소하여 이이의 처지가 외롭고 위태로운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뒤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보은현감(報恩縣監)으로 보내주기를 청하였는데 최영경(崔永慶)이 아침에 지나가면서 이이를 나무라고 김우옹이 저녁에 들러서 이이를 조롱하기에 신도 비로소 의심이 생겨 속으로 '최영경은 초야에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고 김우옹은 나가고 들어옴이 단정하고 분명한 선비이니 기롱하고 꾸짖는데는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 홍문관(弘文館)이 번갈아 가며 공

박하자 전하께서 진노하시고 하도낙서(河圖洛書)[219]의 곧은 논의가 승정원(承政院)에서 오랫동안 지체되고 성혼의 정직한 말도 사사로이 편당을 비호한다고 지목하는가 하면 오히려 허봉(許篈)이 현인을 해치려는 상소에 대하여는 그것이 전하를 기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음에 미쳐서야 소인들이 얽히고 결합되어 얼음을 숯으로 만들고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수작임을 알았습니다. 만일 전하께서 도깨비 같은 무리들의 정상을 잘살피지 않았더라면 남곤(南袞)이 저질렀던 일이 다시 이 무리들에게서 재현되어 충신과 현인이 짓밟혀도 세상에서 애석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수정실록 권20 엽2-3〉

□ 선조(宣祖) 24년(1591) 2월 6일 계유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회인현감(懷仁縣監) 심헌(沈巘)은 집안에서 하는 언행이 예의에 벗어나 수령의 직책에 합당하지 않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권25 엽5〉

■ 선조(宣祖) 25년(1592) 3월 14일

평수길(平秀吉)[220] 이 명나라를 공격하는 길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수가(平秀家)등 36명의 장수에게 군사 20만명을 나누어 거느리게 하고 대마도주(對馬島主) 평의지(平義智)와 평조신(平調信) 행장(行長) 현소(玄蘇)를 향도로 삼아 4 · 5만척의 배로 바다를 건너 13일 새벽에 우리나라에 상륙하여 임진왜란(壬辰倭亂)을 이르켰다. 〈선조수정실록 권26 엽1-2〉

□ 선조(宣祖) 25년(1592) 6월 2일 경신

의병장(義兵將) 조헌(趙憲)과 의승(義僧) 영규(靈圭)가 금산(錦山)의 왜적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전사하였다.

선비 박사진(朴士振) 김선복(金善復) 복응길(卜應吉) 신경일(申慶一) 서

219) 주역(周易) 이론의 기본적인 『하도(河圖)』와 『낙서(洛書)』.
여기서는 이 세상의 본질적인 이치를 뜻함

220) 풍신수길(豊臣秀吉)

응시(徐應時) 윤여익(尹汝翼)[221] 김성원(金聲遠)[222] 박혼(朴渾) 조경남(趙敬男) 고명원(高明遠) 강몽조(姜夢祖)는 모두 조헌의 문인으로 종군하였다가 이 때 함께 전사하였다. 〈중종수정실록 권 26 엽32〉

□ 선조(宣祖) 26년(1593) 6월 5일 무자

중국 명나라에서 우리나라 조정으로 문서를 보내왔는데 그 대략에 "조선의 팔도 중에 어느 도 어느 읍을 왜병(倭兵)이 점거하였고 어느 도는 침범을 당하였으며 어느 도는 아직 침범을 받지 않았고 어느 곳 어느 도는 전혀 경내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하는 사실을 세세히 갖추어 기록하여 보내라." 하였는데 회신하기를

"충청도는 충주(忠州) 청주(淸州) 등 진(鎭)과 청풍(淸風) 단양(丹陽) 괴산(槐山) 등 군(郡)과 문의(文義) 제천(堤川) 회덕(懷德) 연풍(延豊) 음성(陰城) 청안(淸安) 진천(鎭川) 영춘(永春) 보은(報恩) 영동(永同) 황간(黃澗) 등 현(縣)은 모두 분탕을 겪고 또한 점거를 당하였던 곳도 있으며 공주(公州) 홍주(洪州) 등 진과 임천(林川) 태안(泰安) 한산(韓山) 서천(舒川) 면천(沔川) 천안(天安) 서산(瑞山) 옥천(沃川) 온양(溫陽) 등의 군과 홍산(鴻山) 덕산(德山) 평택(平澤) 직산(稷山) 정산(定山) 청양(靑陽) 은진(恩津) 회인(懷仁) 진잠(鎭岑) 연산(連山) 이산(尼山) 대흥(大興) 부여(扶餘) 석성(石城) 비인(庇仁) 남포(藍浦) 결성(結城) 보령(保寧) 해미(海美) 당진(唐津) 신창(新昌) 예산(禮山) 목천(木川) 전의(全義) 연기(燕岐) 청산(靑山) 아산(牙山) 등 현은 적이 아직 경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권39 엽7〉

□ 선조(宣祖) 26년(1593) 6월 6일 기축

여러 진영(陣營)에서의 승리하고 노획한 결과를 명나라 조정에 문서로 보냈는데

"한명윤(韓明胤) 등이 적암(赤巖)[223] 등지에 진영을 설치하고 의승(義僧) 법정(法正) 등과 합세하여 왜병 44명의 목을 베였다고 하였다." 하였다.

---

221) 윤여익(尹汝翼)의 충신각이 지금 보은군 마로면 한중리에 있음.
222) 김성원(金聲遠)의 정려각이 지금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에 있음.
223) 지금의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에 있는 새목이고개

〈선조실록 권39 엽10〉

□ 선조(宣祖) 26년(1593) 윤11월 4일 갑신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듣건대 도내에 좀도둑이 많이 일어 그 수효가 날로 많아져서 낮에도 저자를 공격하여 약탈하면서도 조금도 꺼리지 않는다 합니다. 이것은 굶주린 백성이 먹을 것을 얻을 길이 없어 이러한 것이니이 널리 불러 달래서 군대에 편입하여 살길을 열어주고 참으로 도둑이 되어 사람 죽이는 것을 꺼리지 않는 자는 엄하게 잡아 없애서 그 싹을 끊도록 따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케 하소서.

특히 충청도의 형세가 가장 긴요하니 단양(丹陽) 제천(堤川) 청풍(淸風) 영춘(永春)의 군사는 오로지 죽령(竹嶺)을 막고 충주(忠州) 연풍(延豊) 괴산(槐山) 음성(陰城)의 군사는 조령(鳥嶺)을 막으며 청주(淸州) 보은(報恩)의 군사는 추풍령(秋風嶺)과 적암(赤巖)을 막되 평시에 담력과 지략으로 이름난 사람을 장수로 하여 미리 조치하는데 지형이 좁고 막힌 데를 조사하여 군사를 나누어 지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권45 엽13-14〉

□ 선조(宣祖) 27년(1594) 1월 1일 경진

역적 송유진(宋儒眞)을 사형하였다.

송유진은 본래 서울 서족(庶族) 출신의 무뢰배로서 천안(天安)과 직산(稷山) 사이에 출몰하며 도적질을 하였는데 점점 방자해져 서울의 수비가 허술한 것을 보고는 결국 반역을 모의할 마음을 갖게 되었다. 여러 도적들을 속여 유인하고 자칭 의병대장이라 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오직 군량과 기구를 모을 뿐이다.' 하였다. 그를 따르는 자가 매우 많아 지리산(智異山) 속리산(俗離山) 광덕산(廣德山) 청계산(淸溪山) 등 여러 산골짜기에 분포 된 자가 2천여명이었다.

송유진은 여러 도적과 더불어 1월 10일에 군사를 동원하여 아산(牙山) 평택(平澤) 지방의 병기를 빼앗아 가지고 서울로 쳐들어가 기로 약속한 다음 먼저 전주분조(全州分朝)에 글을 보내었는데 임금을 모욕하는 말이 매우 흉악하고 참담하였다.

충청병사(忠淸兵使) 변양걸(邊良傑)이 이 소식을 듣고 군사를 거느리고 온양(溫陽)에 머물러서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역적의 괴수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였다. 그 때 마침 진천(鎭川)의 무사(武士) 김응룡(金應龍)을 포섭하여 그의 계략을 쓰게 되었다.

김응룡의 일가인 홍각(洪殼)이란 자는 역적의 심복으로 종사관(從事官)이라고 불렀다. 김응룡이 그를 자기 집으로 유인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위협해서 그 실상을 다 파악한 다음 그를 협박하여 송유진을 초청하니 송유진이 수십 인을 거느리고 왔다. 이에 김응룡이 역사(力士) 홍우(洪瑀) 등과 함께 그를 포박하였는데 충청병사가 그를 옥에 가두고 조정에 알렸다.

역적들을 대궐 뜰에 끌어다가 심문하니 송유진 및 모든 도당들이다 자백하였으므로 그들을 처형하고 공을 세운 자들에게 상을 베풀었다. 〈선조수정실록 권28 엽〉

□ 선조(宣祖) 27년(1594) 1월 24일 계묘

임금이 행궁(行宮)의 편전으로 나아가 죄인을 직접 심문하였다.

여러 대신이 자리를 잡자 대포를 쏘도록 명하고 대신에게 이르기를 "미리 심문할 말을 적어 죄인이 뜰로 들어오면 곧바로 심문하도록 하라." 하니 영의정(領議政) 유성룡(柳成龍)이 드디어 심문할 말을 적어 먼저 죄인 송유진(宋儒眞)을 심문하였다. 송유진은 30세였다.

그가 진술하기를 "전하께서 직접 내려보시니 소신이 어찌 감히 반역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겠습니까? 같이 모의한 사람은 많습니다만 역적들이 모여 있는 곳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도(右道)의 두목은 바로 이산겸(李山謙)인데 얼굴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해 3월 하는 일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천안(天安)에서 옛 친구 홍근(洪瑾)을 만나 그에게 의지하여 있으면서 아이들을 모아 학장(學長)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10월 4일 밤, 어떤 사람 셋이서 활을 매고 패랭이를 쓰고 들어와서는 지난 날의 이진사(李進士)로 지금은 호조정랑(戶曹正郎)이라고 자칭하면서 나를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소신을 천안의 가을원(加乙院)으로 끌고 가서는 '너는 우리들에 대한 소식을 못 들었는가? 내가 속리산(俗離山)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편지 한

장을 주며 '너를 무리의 모집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임명하는 사령서이다.' 하였습니다. 그 뒤 임실(任實)로 도망하여 갔다가 11월에 직산(稷山)으로 돌아와서 다시 홍근을 만났더니 홍근이 '네가 반역을 모의하는데 참여하였으니 무단히 도망가면 우리 가문은 멸족이 된다.' 하였습니다.

노일개(盧一凱)가 '우리 아버지가 천안군수(天安郡守)였기 때문에 천안에 인재가 없다는 것은 내가 일찍부터 알고 있는 바이다.'라고하고 격문(檄文)은 이산겸(李山謙)의 글이라고 하였으며 11월의 체문(帖文)[224]은 바로 홍근이 군사를 일으킬 적에 쓰던 것이고 기타 이름 없는 통유문(通諭文)에 쓰인 도장은 속리산(俗離山)의 도적이 쓰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군도목(軍都目)[225]은 내가 썼습니다만 체문은 내가 서명한 것이 아닙니다. 송유진은 가을원(加乙院)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주면서 속리산(俗離山)에서 왔다고 하더라고만 말하였습니다. 저들은 평상시 서로 부를 때에 백동(白同)은 황동(黃銅)이라 부르고 대동(大同)은 소동(小同)이라고 불렀으나 명부에는 그 이름을 바로 썼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역적의 두목은 내가 심문하겠으나 그 나머지는 어찌 다 직접 심문할 수 있겠는가? 그 가운데 적장이라고 하는 자를 먼저 들여보내어 심문케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권47 엽19〉

□ 선조(宣祖) 27년(1594) 6월 15일 임술

임금이 경상 · 전라 · 충청도의 감사(監司)와 병사(兵使)에게 분부하기를 "최근에 도적이 봉기하여 경상좌도와 우도, 그리고 충청도 속리산(俗離山) 등지에 천 명 또는 백 명씩 무리지어 수시로 출몰하면서 약탈하는데 이제 순변사(巡邊使) 이일(李鎰)의 보고를 보니 호남의 도적도 보통 절도에 비할 바가 아니다.

대체로 도적을 없애는 방법은 먼저 그 무리들을 서로 떨어지게 하는 것과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 주는데 있다. 대체로 도적은 소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다 못해 일시 살 궁리를 찾는 것에 지

224) 고을 수령이 향교(鄕校)의 유생들을 훈계하는 글

225) 한자(漢字)의 뜻을 무시하고 한자의 음(音)과 훈(訓)을 따서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을 적는 법 예를 들어 '괭이'를 '廣耳'로 표기한 것

나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나라에서 이와 같은 지시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 무리들이 솔깃한 마음을 가질 것이고 게다가 서로 자기를 고발할까 우려하여 자기들끼리 의심한 나머지 함께 모이지 못할 것이다.

옛날에 도적을 잘 다스린 자는 대개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소문에 따라 행적을 추적하여 혐의만 가지고 그대로 사로잡아 소탕할 계획을 세운다면 가는 곳마다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여 서로 단결하고 깊이 숨을 것이며 민심은 더욱 소란하여 난동을 부릴 생각을 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다.

그대들은 방문(榜文)을 만들어 다음과 같이 여러 방법으로 널리 효유하라. '비록 도적의 무리이더라도 같은 패거리를 사로잡거나 목을 베어 오는 자는 죄를 면해 줄뿐 아니라 즉시 조정에 보고하여 포상한다. 향리(鄕吏)는 부역을 면제해 주고 천인(賤人)은 양인으로 신분을 올려주고 양민(良人)은 금군(禁軍)을 삼으며 양반품관(兩班品官)은 관직에 임명하고 서자(庶子)와 그 자손은 적자(嫡子)와 차별하지 않는다. 만약 두목의 목을 베어 바치거나 설사 힘이 모자라 목을 베지는 못했어도 도적의 동태와 은거한 장소를 관군에게 알려 사로 잡도록 하는 자는 특별히 우등으로 포상한다.' 하라. 이와 같이 공표하였는데도 여전히 태도를 바꾸지 않는 자는 참으로 흉악한 백성으로서 스스로 죽을 죄에 빠져드는 것이니 비록 용서를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엄중히 쳐서 사로잡고 낱낱이 섬멸하여 백성의 피해를 없애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권52 엽16-17〉

□ 선조(宣祖) 27년(1594) 10월 9일 계축

충청순찰사(忠淸巡察使) 윤승훈(尹承勳)이 보고하기를 "신이 순찰하여 조령(鳥嶺)에 도착하여 직접 관(關)을 설치하는 곳을 살펴보니 고개 남쪽으로 10리 남짓되는 곳에 응암(鷹巖)이라는 곳이 있는데 1백길이나 깎아지른 듯하고 동남쪽이 모두 층층 절벽이며 그 사이로 길이 하나 있는데 말을 타고는 두 사람이 함께 지날 수 없었습니다. 파절장(把截將) 신충원(辛忠元)이 백성을 모집하여 성을 쌓고 시냇물을 끌어다가 참(塹)을 만들었는데 공역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그 형세가 중국의 산해관(山海關)이라도 이보다 나을 수 없을 정도로 한 사람이 관을 지키면 만 사람도 열 수 없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이러한 기묘한게 험준한 곳

을 버려서 적병으로 하여금 무인지경처럼 들어오게 하여 필경에는 장병들이 달천(達川)에서 고기밥이 되게 하였으니 너무나도 작전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지난 일은 다시 말할 것이 없고 이제 만일 용맹스런 장수를 얻어 굳센 병사 수백 명으로 이 관령(關嶺)을 지키게 하고 다시 많은 군사로 추풍령(秋風嶺)과 적암(赤巖) 등을 오로지 방어하게 한 다면 적병이 옛날처럼 유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령(竹嶺)의 험하기가 조령보다는 못하지만 관(關)을 설치하여 적을 막을 만합니다. 응암의 성을 쌓은 다음에 신충원으로 하여금 또 그 일을 관장하도록 하고 싶으나 물자와 인력이 다하여 쉽게 시행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권56 엽15-16〉

□ 선조(宣祖) 28년(1595) 1월 22일 을미

영사(領事) 유성룡(柳成龍)이 아뢰기를 . . . .

우리나라 청산(靑山)과 보은(報恩) 사이에 있는 큰 산에서는 다 은(銀)이 생산됩니다. 전번에 도감(都監)사람이 이덕형(李德馨)이 보는 곳에서 제련하였는데 바로 좋은 은이었습니다. 만일 캐기만 한다면 중국 산동(山東)이나 중강(中江)에다 팔아서 군량을 장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권59 엽15〉

□ 선조(宣祖) 28년(1595) 6월 24일 을축

충청감사(忠淸監司) 윤승훈(尹承勳)이 보낸 보고의 대략에

"보은현감(報恩縣監)이 보고하기를 보은향교(報恩鄕校)에 모신 5성8현(五聖八賢)[226]의 위판을 임진왜란 초에 독 속에 담아 삼년산 서원(三年山書院)[227] 뒤에 묻어 두었는데 이제 난리가 조금 평정되었고 서원 안에 있는 김정(金淨)과 성운(成運)의 사당과 재실이 온전하니 위판을 그곳으로 옮겨 봉안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226) 향교 대성전(大成殿)에 모신 중국의 다섯 성인과 여덟 현인(賢人).

227) 명종(明宗) 4년(1549)에 보은 삼년산성 안에 세운 서원. 광해군(光海君) 2년(1610) 상현서원(象賢書院)으로 사액을 받고 광해군(光海君) 4년 (1612)에 보은 장안면 서원리로 이전하였음

예조(禮曹)에서 의견을 보내오길 “보고한대로 축문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고 옮겨 봉안하게 하소서.” 하였다. 〈선조실록 권64 엽30-31〉

■ 선조(宣祖) 28년(1595) 6월 11일 임자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재능이 수령이 될 만한 자를 천거하여 국가가 파격적으로 등용하는 것은 적임자를 선발하고자 해서입니다. 지난번에 비변사(備邊司)에서 천거한 바는 혼잡스런 폐단이 있어 물정이 매우 온당치 않게 여기시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다시 헤아려서 가려 뽑게 하여 미진한 뜻이 없게 하소서.

〔당시 재주가 수령이 될 만하다고 하여 선발된 자는 나덕준(羅德峻) 장현광(張顯光) 등 30인인데 남인(南人)[228]이 대부분이고 간혹 학생으로 발탁된 자도 있었다. 모두 유성룡(柳成龍)이 전적으로 추천한 것인데 혼잡스럽다는 비평이 있어 물의가 비등하였다〕〈선조실록 권64 엽13〉

□ 선조(宣祖) 28년(1595) 6월 25일 병인

사포서(司圃署) 별제(別提) 나덕준(羅德峻)을 보은현감(報恩縣監)으로 임명하였다. 〔재주가 수령이 될 만한 인물에 뽑혀 6품에 승진된 것이다〕〈선조실록 권64 엽31〉

□ 선조(宣祖) 28년(1595) 6월 29일 경인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보은현감(報恩縣監) 나덕준(羅德峻)은 마음씀이나 행위가 경솔하고 추잡함을 면치 못하여 세도가의 집에 드나들며 청탁하는 부끄러움이 많고 법정에 서서 송사를 벌린 허물이 있는데도 파격적으로 특채하는 반열에 끼었으므로 여론이 해괴하게 여기는 이가 많습니다. 교체하라 명하소서.”하니 임금이 따랐다. 〈선조실록 권64 엽35〉

□ 선조(宣祖) 28년(1595) 7월 2일 계유

장현광(張顯光)을 보은현감(報恩縣監)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권65 엽11〉

228) 이산해(李山海)를 중심으로 한 북인(北人)과 대립한 유성룡(柳成龍)을 중심으로 한 당파

□ 선조(宣祖) 28년(1595) 9월 13일 임오

접대도감(接待都監)이 아뢰기를 “명나라 유격(遊擊)[229] 호대수(胡大受)가 15일에 강원도에 가려고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이 은(銀) 캐는 일에 대해 조용히 언급하고 또 ‘우리나라는 은을 캐려고 해도 되지 않으니 아마도 이곳은 본디 광물이 생산되는 곳이 적은 것 같다. 이전에 송경략(宋經略)도 광장(鑛長)을 보내어 은을 캐려고 하였으나 끝내 캐지 못하였다.’ 하였더니 호대수가 종이 하나를 꺼내어 보이는데 그것은 곧 우리나라 광산지명을 기록한 것으로 평안도의 강계(江界) 창성(昌城) 양책(良策), 황해도의 서흥(瑞興)과 개성부(開城府), 강원도의 춘천(春川) 이천(伊川) 원주(原州) 주천(酒泉), 충청도의 보은(報恩) 연풍(延豊) 청풍(淸風), 함경도의 안변(安邊) 문천(文川) 단천(端川) 고을이 모두 그 안에 있었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은광을 개발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간혹 한두 곳에서 은맥(銀脈)을 찾아 여러 달 공력을 들여도 은 수삼냥을 만들지 못하니 이로써 보면 은철(銀鐵)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답하고 물러났는데 해 질녘에 호대수가 다시 와서 신에게 또 은 캐는 일에 대해서 말하기에 신이 ‘만일 땅 속의 보물을 캐어 지금 나라의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나라도 원하는 바이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이미 한 집안이니 진실로 은을 캘만한 곳이 있으면 무엇이 혐의쩍고 두려워서 캐지 않겠는가?’ 하고 진심으로 간절히 말하는 것처럼 속여 그의 의사를 탐지하였더니 호유격이 즉시 또 서첩(書帖) 하나를 보내 왔는데 그의 본심은 은캐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듯하고 또 외방교사(外方敎師)[230] 들을 파견하여 은광을 개발하려는 듯하여 후일의 큰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그 서첩을 아울러 보고합니다.”하니 임금이 “알았다‘ 하였다. 〈선조실록 권67 엽 11-12〉

229)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군사를 훈련시키려고 파견된 명나라 연병교사(鍊兵敎師)
230) 지방에 파견한 명나라 연병교사(鍊兵敎師)

■ 선조(宣祖) 28년(1595) 11월 1일 기사

충청감사(忠淸監司) 윤승훈(尹承勳)이 보고하기를 “청주목사(淸州牧使) 이암(李巖)의 보고에 의하면 청주에 사는 곽희정(郭希貞) 곽응수(郭應水)의 고발에 ‘청주 서강 밖에 거주하는 학생 이성남(李成男)이 강효남(姜孝男) 신여옥(申汝沃) 한담(韓淡) 이경상(李景詳) 및 청안(淸安)에 거주하는 전대로(全大老) 진천(鎭川)에 거주하는 남응신(南應信), 회덕(懷德)에 거주하는 박생원(朴生員)이라 부르는 사람 등과 모반하였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의금부(義禁 府)에 내려 잡아오게 하였다. 〈선조실록 69 엽2〉

□ 선조(宣祖) 28년(1595) 11월 9일 정축

박중선(朴仲宣)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대대로 보은(報恩)에 살다가 임진년[231]에 왜적을 피해 홍주(洪州)로 가서 오늘날까지 빌어 먹었습니다. 금년 2월 상소를 올리러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청주(淸州) 정좌산(正坐山)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집에 묵었는데 곧 양반인 한담(韓淡)의 집이었습니다. 한담은 병으로 나와보지 않고 밥을 지어주어 먹고는 양곡 두어 되를 얻었습니다. 이성남(李成男)이란 사람이 서울 올라가는 유생이 왔다는 말을 듣고는 와보고 양곡을 주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상소를 올리고 4일간 유숙한 뒤 도로 내려가다가 청주 무릉정(茂陵亭)에 이르러 곽란이 걸려 월로동에 갔더니 인가가 불에 타버리고 오직 서울사람 조덕보(趙德輔)의 움막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숙하기를 부탁하였더니 조덕보가 ‘이 마을에 인가가 있다.’ 하므로 그곳에 가 걸식하였는데 바로 강효남(姜孝男)의 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또 신여옥(申汝沃)의 집으로 가 얻어 먹고 회인(懷仁)으로 향하였습니다. 깨끗한 쌀을 얻어 제사를 지내려고 무릉정으로 가는데 마을 길에서 한담 이성남을 만났는데 그들이 ‘우리들은 강효남의 집으로 가는 길이니 그대도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하여 마침내 강효남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본디 술을 마시지 못하여 오직 두어 잔만 마시고 헤여졌습니다.

신은 본디 몹시 곤궁하여 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의 집 북쪽에 진(陣)

231) 선조(宣祖) 25년(1592) 임진왜란 때

을 친다는 일은 매우 허황한 것입니다. 새 도읍의 풍수지리를 보았다는 등의 일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선조실록 권69 엽9-10〉

□ 선조(宣祖) 28년(1595) 11월 23일 신묘

추국청(推鞫廳)에서 아뢰기를 “죄인 만종(萬從)이 붙잡혀 와 즉각심문하였더니 진술한 것이 이와 같아 단서가 나타남이 별로 없었습니다. 녹두밭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상전이 운운한 말 및 백마강(白馬江)에 신도(新都)를 정하고 속리산(俗離山)으로 피란하고 회인(懷仁)에 진을 치는 등의 말을 다시 심문하여도 바로 진술하지 않으니 곽응수(郭應水)와 대질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따랐다.

만종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5월에 도망하였다가 12월에 상전의 집에 들어오니, 우봉(牛峰) 땅 노비의 공물로 거두어 온 소가 농사짓는 데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한흡(韓洽)의 집에 무역하여 썼습니다. 곽응수가 뒤따라 와서 고기를 얻지 못하고 빈 손으로 가면서 ‘금년에 고기가 귀함을 알겠다.’ 하였습니다. 상전의 집에서 술을 마신 일은 상전이 ‘왜란이 이와 같으니 인생을 믿을 것이 못된다.’ 하고 드디어 일가붙이를 모아 간간이 술을 마셨습니다. 곽응수가 진술한 변란이 일어난다느니 풍운을 일으킨다느니 하는 등의 말이나 백마강 등지의 형세와 장수가 전라도에 있다는 일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쇤네가 9월에 메밀을 타작한 것은 확실하나 곽응수는 애당초 오지 않았었으니 청주를 먼저 공격한다는 등의 말은 쇤네가 참여하여 들을 리가 만무합니다. 쇤네가 도망한 일은 뜻밖에 사람이 잡으러 왔을 때에 저처럼 어리석은 겁장이가 어찌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선조실록 권69 엽25〉

■ 선조(宣祖) 28년(1595) 12월 1일 기해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의금부(義禁府)에 내린 분부를 보건대 이성남(李成男)은 사헌부로 하여금 심문케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석방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속된 사람을 특별히 석방하는 은전을 입었으니 누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이성남은 비록 요상한 말로 대중을 현혹시킨 죄가 있기는 하나 모반할 죄상을 증거할 단서가 없으니 곽희정(郭希貞) 부자가 반역으로 고발한 것

은 무고입니다. 이제 만일 완전 석방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후일의 폐단이 있을 것이니 다시 심문하여 그 죄를 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권70 엽1〉

□ 선조(宣祖) 28년(1595) 12월 11일 기유

보은(報恩) 평택(平澤) 남포(藍浦)에 천둥 번개가 크게 쳐 여름철과 같다고 충청감사(忠淸監司) 박홍로(朴弘老)가 보고하였다. 〈선조실록 권70 엽13〉

□ 선조(宣祖) 29년(1596) 1월 24일 신묘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금년 봄이 가장 걱정되는데 충청(忠淸) 경상(慶尙) 전라(全羅) 세 도의 군대를 나누고 장수를 정하여 요충지를 지키는 일은 도체찰사(都體察使)가 필시 이미 조처해 두었을 것입니다. 다만 신들이 멀리서 헤아리는 계책을 말씀드리면 조령(鳥嶺)과 죽령(竹嶺)은 비록 충주목사(忠州牧使) 김명윤(金明胤)과 단양군수(丹陽郡守) 서희신(徐希信)이 있다해도 그들만 믿고 우려하지 않아도 될 곳이 아닙니다. 지난 임진년[232]에 죽령에는 유극량(劉克良)을 보냈고 조령에는 많은 군사가 있었는데도 방어에 차질이 생겼는데 하물며 오늘날에 있어서는 더할 것입니다. 특별히 방어사(防禦使) 한 사람을 보내 두 영(營)의 수비를 강화하고 김명윤 서희신 신충원(申忠元) 등 여러 사람이 지휘하며 또 군사를 나누고 약속을 정하여 죽령은 단양(丹陽) 청풍(淸風) 영춘(永春) 제천(堤川) 및 경상도 풍기(豊基)의 군사가 지키고 조령은 연풍(延豊) 충주(忠州) 괴산(槐山) 음성(陰城)의 군사가 지키며 병사(兵使)는 적암(赤巖)[233]과 추풍령(秋風嶺) 사이에 머물면서 황간(黃澗)과 보은(報恩)의 길목을 수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신록 권71 엽33〉

232) 선조(宣祖) 25년(1592)
233) 지금의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에 있는 새목이고개

□ 선조(宣祖) 29년(1596) 3월 21일 무자

임금이 충청감사(忠淸監司)의 보고를 받고 승정원(承政院)에 분부하기를 "보은현감(報恩縣監) 장현광(張顯光)은 다른 사람과 달리 6품으로 발탁하여 특별히 임용한 사람인데 감히 관직을 버렸다. 그렇다면 그는 애초 임지에 부임하지 말았어야 하는데도 지금 관직을 버렸으니 자못 신하의 도리가 없다. 잡아다가 죄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권73 엽19〉

□ 선조(宣祖) 29년(1596) 3월 25일 임진

검토관(檢討官) 김홍미(金弘微)가 아뢰기를

"전 보은현감(報恩縣監) 장현광(張顯光)은 본래 가문의 행실이 있고 『주역(周易)』에 정통하며 임진왜란 후에 음식과 옷을 남에게 요청한 일도 없는 참된 선비입니다. 전하의 은혜가 융숭하여 6품으로 승격하였는데도 태연스레 관직을 버린 것은 참으로 잘못입니다. 그러나 만약 체포하여 심문까지 한다면 선비를 대접하는 도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였다.

또 좌의정(左議政) 김응남(金應南)이 아뢰기를 "장현광은 졸렬한 선비입니다. 일찍이 보은현감(報恩縣監)으로 있을 때 백성을 사랑해 준 일은 비록 지극하나 일을 주선함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비변사(備邊司)에서 관직을 바꾸려 하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임지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으니 관직이 마음에 안 들어서 피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장현광의 학문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졸렬하다는 것 역시 알지 못한다. 다만 국법은 지엄한 것이다. 그가 만약 벼슬에 뜻이 없다면 애당초 부임하지 말았어야 하고 이미 몸을 바쳤으면 어려운 때를 당하여 관직을 버리고 갈 수 없는 것이다. 의금부(義禁府)에서 범죄를 다스리는 일은 지중한 것이다. 이미 의금부에 잡아 오라고 지시하였는데 중도에 석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잡아온 다음에 석방하여도 늦지 않다." 하였다.[234] 〈선조실록 권73 엽24〉

234) 장현광은 선조 35년 3월 학행(學行)이 있고 바른 도를 지키는 성비라는 이유로 거창현감(居昌縣監)에 임명되었다.

□ 선조(宣祖) 29년(1596) 11월 9일 신축

승정원(承政院)에서 비변사(備邊司)의 말에 따라 아뢰기를 "왜적의 형세는 완급을 미리 헤아릴 수는 없으나 만약 전라도로 처들어 온다면 그 형세가 조금 느릴 것이고 서울 직통로로 처들어 온다면 그 형세가 매우 빠를 것입니다. 임진년에 조령(鳥嶺)의 요새지를 잃어서 큰 일이 위급하게 되었으니 이제 뜻밖의 근심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청도의 속오군(束伍軍)[235]은 거의 6천명인데 이전에 이시발(李時發)이 좌영(左營)을 거느리고 병사(兵使) 이시언(李時言)이 우영(右營)을 거느렸는데 이제 이시발이 다시 군사를 거느리게 되었으니 이시발의 군사를 조령과 죽령(竹嶺)의 요충지에 나누어 병사를 숨겨두고 소식을 전달하게 하고 이시언은 청주(淸州)와 추풍령(秋風嶺) 적암(赤巖)의 길에 병력을 주둔하고 막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아뢴대로 하라. 이시발이 금방 그 직책을 맡았으므로 늦어서 일에 미치지 못할까 매우 염려스럽다." 하였다. 〈선조실록 권82 엽25〉

■ 선조(宣祖) 30년(1597) 1월 13일 갑진

왜장 가등청정(加藤淸正)이 1백50여척의 배에 군사를 싣고 우리나라 다대포(多大浦)에 상륙하여 정유재란(丁酉再亂)을 이르켰다. 〈선조수정실록 권31 엽2〉

□ 선조(宣祖) 30년(1597) 9월 18일 을사

충청감사(忠淸監司) 정윤우(丁允祐)가 보고하기를 "병사(兵使) 이시언(李時言)의 보고에 '왜적이 보은(報恩) 직산(稷山) 등지를 침범하여 진을 치고서 중국병사와 대치해 있고 내포(內浦)에도 왜적이 잔뜩 찼는데 병사가 거느린 장졸들은 모두 좌도(左道)로 피난하여 수풀 사이에 숨어버렸으므로 불러 모을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변방의 정보를 알 수 없고 또 수령이 간 곳도 알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권92 엽23〉

235) 임진왜란 때 천인(賤人)과 양인(良人)으로 구성한 지방군대. 평시에는 군포(軍布)를 바치게 하고 유사시에만 동원하여 훈련을 시켰음

□ 선조(宣祖) 31년(1598) 3월 1일 병술

충청도 보은현(報恩縣) 성족리(聲足里)[236]에 사는 유학 김덕민(金德民)의 아내 신씨(申氏)는 정유재란(丁酉再亂)[237]때에 남편과 시부모를 따라 산속으로 피난하였다가 뜻하지 않게 왜적을 만나 시부모가 모두 살해당하였다.

신씨는 남편의 첩과 함께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왜적이 그의 나이가 어린 것을 보고 함께 묶어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신씨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첩에게 말하기를 '나의 뜻은 이미 정해졌다.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너는 꼭 죽을 필요가 없으니 우선은 그대로 따라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도모하라.' 하고 칼을 빼어 들고 소리를 높여 왜적을 꾸짖기를 '내가 어찌 감히 너를 따라가 살겠는가? 속히 나를 죽여라.' 하며 오른손으로는 칼을 잡고 왼손으로는 나무를 휘어잡고는 소리를 더욱 매섭게 질렀다. 그러자 왜적이 노하여 그의 오른쪽 어깨를 치자 땅에 쓰러져 죽었다.

그의 여종 연지(燕之)가 주인 아기를 업고서 곁에 숨어 있다가 주인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나와 끌어안자 적이 아울러 살해하였다. 그 첩이 마침내 적중에서 도망하여 돌아와 그 전말을 이야기 하였는데 그 절개에 탄복하여 흐느낌을 멈추지 못하였다.

이 절개와 의리의 상황을 조정에 알리자 정문(旌門)하고[238] 복호(復戶)하였다.〔신씨는 바로 도승지(都承旨) 신식(申湜)의 딸이다〕 〈선조실록 권98 엽1〉

□ 선조(宣祖) 31년(1598) 7월 10일

충청감사(忠淸監司) 김신원(金信元)이 아뢰기를 "보은현(報恩縣)에서는 임진년[239] 왜적이 쳐들어왔을 때 교생 정경추(鄭景樞) 임대성(任大成) 김수익(金受益) 박득상(朴得祥) 등이 향교를 떠나지 않 고 지키면서 오성팔현(五聖八賢)[240]의 위판을 직접 땅을 파고 깨끗한 곳에 묻어서 마침내

236) 지금의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237) 선조 20년(1597) 1월에 한번 패한 왜군이 다시 차들어 온 난리
238) 김덕민(金德民)의 처 신씨(申氏)의 정문은 지금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에 있음.
239) 선조(宣祖) 25년(1592)
240) 문묘(文廟)에 봉안한 중국의 다섯 성인(聖人)과 여덟 유현(儒賢)

오욕을 면하게 하여 삼년성서원(三年城書院)에 봉안하였으며[241] 또 작년에는 적이 임박해 와도 문묘(文廟)를 떠나지 않고 있다가 왜적이 고을까지 쳐들어오자 직접 위판을 짊어지고 피난하여 오욕을 면하게 하였으니 그 정성이 매우 가상합니다." 하였다.

〔성균관(成均館) 유생들은 성대하고 많았으나 왜적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두 황급히 도망치고 한 사람도 문묘를 염려하여 돌본 사람이 없었는데 정경추 등은 시골 향교의 고루한 사람으로 난리를 당하여 태연한 자세로 선성(先聖)[242]을 저버리지 않고 배운 바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였으니 후세에 광영이 빛나고 또한 선왕(先王))들이 2백년 동안 배양한 공덕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선조실록 권102 엽15〉

□ 선조(宣祖) 34년(1601) 8월 3일 무진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보은현감(報恩縣監) 박기준(朴耆俊)은 본래 비루하고 용렬한 자로 전에 수령이 되었을 때도 오로지 자신의 배를 살찌우는데 힘쓰고 탐욕과 학대를 자행하여 현저하게 논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보은현감에 임명되고서도 조금도 반성하여 고치지 않고 예전과 같이 수단을 부려 교묘하게 명목을 만들어 끝없이 백성들의 돈을 뜯으며 관아 창고의 물건을 공공연하게 빼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라에서 어려운 백성을 구휼할 때에도 매를 놓아 사냥을 하면서 절을 돌아다니므로 보고 듣는 사람들이 모두 통분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엄중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하고 앞으로 사면하여 복직시키지 말것을 명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권140 엽3〉

□ 선조(宣祖) 35년(1602) 4월 2일 계사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회인(懷仁) 유생 박중진(朴重振)의 상소문을 보건대 황당하기 짝이 없고 주요한 내용도 없으니 그 사

241) 선조(宣祖) 28년(1595) 6월 24일 기록 참조

242) 옛날의 성인(聖人)을 뜻하는 말이나 여기서는 공자(孔子)를 가르킴

람됨을 알 만합니다. 심지어 지엄한 대궐 뜰에서 아무거리낌없이 목을 놓아 울었으니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살펴보면 풍병이 들어 정신을 잃은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가 비록 망녕스런 사람이긴 하나 그래도 유생의 이름을 빌어 상소를 한 사람입니다. 이미 구속하라고 명하셨는데 또 심문하라는 분부를 내리신다면 보고 듣는 이가 모두 지극히 미안스럽게 여길것입니다. 가까이 모시는 자리에 있으면서 끝내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기에 황공하오나 감히 아룁니다." 하였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아뢴 뜻은 그렇긴 하다. 그러나 목을 놓아 운것이 문제이지 상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니 그만둘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권149 엽1〉

□ 선조(宣祖) 35년 4월 4일 을미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회인(懷仁) 유생 박중진(朴重振)이 어떤 사람이며 상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신들이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으나 대궐 안에서 목을 놓아 운 것만 보아도 실성한 사람이 분명한 만큼 그 경망스런 점에 대해 실로 거론할 것도 못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생의 이름으로 상소를 올렸다가 곧바로 체포되었는데 또 심문하여 죄까지 줄 경우 그의 사람됨이 가증스럽기는 하나 말했다고 죄를 주는 것이 될듯 싶고 나아가 백성을 자식처럼 포용해 주는 전하의 도량에도 누가 될 듯합니다. 옥에 가두어 죄를 다스리라는 명을 거두소서."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임금 앞에서 목을 놓아 운 흉악하고 패역한 행동은 임금을 업신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 하였다. 〈선조실록 권149 엽2〉

□ 선조(宣祖) 35년(1602) 4월 5일 병신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유생 박중진(朴重振)은 일개 경망스런 사람입니다. 가깝게 임금이 계시는 궁전 뜰에서는 목을 놓아 울수 없는 곳인데 광패하고 무지한 행동을 한 정상에 대해서는 실로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미 유생이라는 명분으로 와서 상소하였고 또 상소

의 내용에 대해 신들이 그 곡절을 알 수는 없으나 여러 달 동안 가두어 두었다가 다시 심문까지 한다면 보고 듣지 못한 외부 먼 곳의 사람들이 그의 정상을 알지도 못한 채 도리어 백성을 아들처럼 포용하는 전하의 도량을 의심하지 않을까 염려되니 가두어 죄를 다스리라는 명을 거두어주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권149 엽2〉

□ 선조(宣祖) 35년(1602) 4월 6일 정유

사간원(司諫院)에서 박중진(朴重振)의 일을 다시 아뢰니 임금이 "유생이란 공자(孔子)를 배우는 사람인데 대궐 문에 들어갈 적에 몸을 굽히듯 한다는 도리가 이와 같은 것인가? 그가 감히 대궐에 와서 목을 놓아 울다니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가? 이일에 대해서는 신하들도 함께 처벌해야 될 것이다. 지금 만일 다스리지 않는다면 뒷날 흉패한 무리들이 사사로운 원한을 품고 연달아 대궐 뜰에 와서 목을 놓아 울 경우에도 이번 일을 예시하며 다스리지 않을 것인가?

근래에 인심이 좋지 못하고 나라의 체제가 엄하지 않아서 이토록 거리낌 없이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상소한지 며칠뒤에 까닭없이 와서 목을 놓아 운 그 정상은 더욱 이목을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정상을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사간원은 어째서 자꾸 논하는 것인가?" 하였다. 〈선조실록 권149 엽2〉

□ 선조(宣祖) 35년(1602) 4월 8일 정유

사간원(司諫院)에서 앞서 올린 내용을 다시 아뢰기를 "신들이 박중진(朴重振)의 일을 가지고 며칠 동안 논하는 것은 감히 일개 박중진을 아껴서도 아니고 대궐 뜰에서 목을 놓아 운 것이 죄가 아니라고 여겨서도 아닙니다. 그가 무단히 대궐에 들어와 목을 놓아 운것은 진실로 사람마다 모두 죄를 주고 싶어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신들의 뜻은 그가 일단 선비라는 신분을 가지고 상소한 이상, 지금 목을 놓아 운 것을 가지고 죄를 준다고 하면 지방사람들은 보고 듣지 못하여 혹시라도 그가 목을 놓아 울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줄은 모르고 도리어 상소하다가 죄를 받았다고 믿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강개하게 상소하려는 사람들이 혹시 상소하는 것을 두려워할까

걱정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황잡하고 패망스러운 박중진이야 진실로 아까울 것이 없지만 상소장을 가슴에 품고 과감히 상소하는 길이 이로부터 좁아지지 않을까 두려우니 이는 참으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이 점이 신들이 누차 전하의 귀를 번거롭게 하면서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삼가 전하의 답을 보건대 미안한 분부가 계셨기에 신들은 머리를 맞대고 놀라며 두려워 말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들의 망령된 견해는 앞서 아뢴 것에 불과합니다. 그의 죄상을 도외시하고 특별히 포용하는 아량을 보여주신다면 그야말로 어진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의 한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니 이미 내린 명령을 흔쾌히 거두소서."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이미 죄가 있다고 말하면서 어째서 죄를 다스리지 말라는 것인가? 앞으로 이 같은 사람이 또 나오면 그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권149 엽3-4〉

□ 선조(宣祖) 35년(1602) 4월 9일 경자

임금이 박중진(朴重振)의 상소문을 이조(吏曹)에 내렸다. 〈선조실록 권149 엽4〉

□ 선조(宣祖) 35년(1602) 5월 29일 경인

장령(掌令) 권진(權縉)이 와서 아뢰기를 "충청도 보은(報恩)에 사는 여염집 여종 만지(萬之)가 제 어머니 윤지(允之)의 원통한 죽음을 위해 날마다 사헌부(司憲府)에 와서 호소한지 어느덧 넉 달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해 정월 초순에 그의 어머니가 청산(靑山) 사는 박효신(朴孝信)에게 죽음을 당했는데 충청도에서 뒤로 미루고 처결하지 않으면서 2년이나 오래 끌었고 또 박효신의 동생 박효검(朴孝儉)이 사헌부에 진정서를 보낸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양쪽 실상을 이것으로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살인은 중대한 사건이니 마땅히 빨리 처결하여 원한을 풀어줘야 할 것인데 어물어물 처결하지 않고 이같이 오래 끌어 먼 지방의 사람이 원한을 품고 매일 호소하니 몹시 놀라운 일입니다. 충청감사(忠淸監司)로 하여금 조사해 속히 처결하여 원한을 풀어주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권150 엽9〉

□ 선조(宣祖) 37년(1604) 10월 1일 정미

충청도어사(忠淸道御史) 김정일(金鼎一)이 글월을 올려

"보은현감(報恩縣監) 송해(宋垓)는 용렬하고 재능이 없어 자리만 지키면서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권180 엽1〉

□ 선조(宣祖) 37년(1604) 10월 2일 무신

신수기(申守淇)를 보은현감(報恩縣監)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권180 엽4〉

□ 선조(宣祖) 38년(1605) 4월 10일 갑인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회덕(懷德)에서 구속된 살인범 박효신(朴孝愼)에게 살해된 피해자의 딸인 사가집 여종 만지(萬之)의 고소장에 '어머니 윤지(允之)는 박효신에게 살해를 당하였고 그 상전 황승남(黃承男)은 심문하는 관원을 능욕하였다고 하여 조사를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전후의 조사서를 가져다 살펴보니 지난 경자년[243]에 박효신이 황승남의 딸을 강간하려고 무리지어 그 집에 도착하자 황승남이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때 여종 윤지가 구타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가 나중에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집에서 고소장을 올렸는데 여러 사람에게 사실확인을 검증하여 구타를 당해서 죽게 된 것으로 조사서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황승남이 늙고 병든 자기 여종을 때려 죽였다고 하여 마침내는 큰 죄를 다스리는 일이 이루어졌고 또 황승남이 심문장소에 불법으로 들어와 심문관을 만나서 욕설하였다 하여 두 차례나 고문하였습니다.

대체로 사람을 죽인 것은 중대한 사건이므로 연루된 범인과 증인의 진술이 십분 명백한 뒤에라야 비로소 죄를 다스려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효신의 사건은 당초에 심문할 사안을 충분히 심문하지 않고 다만 한 양순한 사람만 심문하여 갑자기 황승남이 무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설사 황승남이 참으로 그 여종 죽인 죄가 있었더라도 사건처리를 헤아려 보면 너무나 소루합니다. 더구나 딸이 하마터면 박효신에게

243) 선조(宣祖) 33년(1600)

강간을 당할 뻔하였으니 황승남이 재판장소에 나와 하소연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설사 황승남이 참으로 심문관을 능욕한 죄가 있더라도 정해진 법률이 있는데 엄한 고문을 두 차례나 하였으니 부당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그 편벽되고 집체하여 마음대로 처결한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때의 심문관인 회덕현감(懷德縣監) 박천서(朴天敍)와 보은현감(報恩縣監) 송해(宋垓)를 모두 파직을 명하시고 충청감사(忠淸監司) 이홍로(李弘老)는 조사하소서."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허락한다." 하였다. 〈선조실록 권186 엽8〉

□ 선조(宣祖) 38년(1605) 4월 16일 경신

충청도안문어사(忠淸道按問御史) 성진선(成晉善)이 보고하기를 "신이 충청도의 주(州)와 군(郡)을 낱낱이 살피면서 수령들이 어질고 거칠음, 그리고 불법에 대한 일을 탐문하였습니다.

보은현감(報恩縣監) 신수기(申守淇)는 다스림이 서툴 뿐만 아니라 집이 보은현(報恩縣)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어 불미스러운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권186 엽13〉

□ 선조(宣祖) 38년(1605) 5월 16일 기축

이인기(李麟奇)를 보은현감(報恩縣監)으로 삼았다.〈선조실록 권186 엽9〉

□ 선조(宣祖) 38년(1605) 5월 22일 을미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보은현감(報恩縣監) 이인기(李麟奇)는 지난 해 접대소(接待所) 낭청(郎廳)으로 있으면서 병을 핑계로 직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직책이 낮은 관원이 일을 회피하려 한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난 번에 낭관(郎官)에 있다가 곧바로 보은현감으로 임명하였으므로 여론이 매우 불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관직을 바꾸소서" 하니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권187 엽12〉

□ 선조(宣祖) 38년(1605) 9월 28일 기해

체찰사(體察使) 한효순(韓孝純)이 아뢰기를

"정유년[244]에 신이 체찰부사(體察副使)로 있었는데 왜적이 전라도에서 충청도로 넘어왔습니다. 이시언(李時言)은 충청병사(忠淸兵使)로서 도내의 군사를 거느리고 보은(報恩)에 주둔하니 내포(內浦)의 군사도 모두 그를 따랐습니다. 이 때 신은 내포에 있었는데 종군하는 군사가 모두 집에 편지를 부쳐 함께 도피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얼마 안 되어 과연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때 군관(軍官)들이 말하기를 '출신자(出身者)[245]들이 모두 제집으로 돌아갔다.'고 하기에 신이 곧 사람을 시켜 '돌아오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 하고 또 조정에서 엄중한 군률로 다스린다는 뜻으로 회유하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되어 어떤 여인이 신에게 호소하기를 '내 아들도 도망친 군졸에 속하는데 지금 듣건대 조정에서 흩어진 군졸을 모두 처벌한다니 내 아들도 의당 법에 따라 처형될 것이다. 쌀콩 5백섬을 관아에 바치고 속죄할 것을 원한다고 하기에 신이 곧 허락하고 상부에 보고한 다음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8일 후에 그는 다시 진정서를 가지고 와서 호소하기를 '서울에 올라가 들어보니 흩어진 군졸은 2섬의 쌀로 속죄한다고 한다. 다른 사람은 2섬으로 속죄하는데 나만이 유독 5백섬으로 속죄하는 것이 어찌 원통하지 않은가? 그리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찾아 왔다고 하였습니다.

무릇 군대는 죽을 땅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2섬의 쌀로 죽을 목숨을 바꿀 수 있다면 누가 군율을 두려워하여 전쟁터로 나가려 하겠습니까? 기율이 없으면 한두 사람도 다스릴 수 없는데 더구나 천만명의 군사를 어떻게 말로만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제 일 중요한 정책은 기강을 확립하고 호령을 엄히 하는데 있고 다른일은 모두 그 다음인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권191 엽15-16〉

□ 광해군(光海君) 즉위년(1608) 2월 21일 무인

소경대왕(昭敬大王)[246]의 행장(行狀)은 다음과 같다.

---

244) 선조(宣祖) 30년(1597) 정유재란(丁酉再亂)
245) 무과(武科)에 급제하고 임관되지 않은 사람
246) 선조(宣祖)의 왕호

세상을 잊고 조용하게 즐기는 선비들을 천거하여 나오게 하는 것을 새로운 정치의 첫 과제로 삼으라고 분부하였다. 이리하여 역말로 징사(徵士)[247] 조식(曺植) 성운(成運) 등을 불러 차례에 구애없이 발탁 등용하였는데 혹 달려올 수 없는 사람은 간절하게 격려하고 권유하였다. 기타 경서(經書)에 밝고 행실(行實)을 닦은 것으로 소문이 나서 전후로 발탁 기용된 사람이 매우 많았는데 과거를 보지 않고 재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기까지 하였다. 〈광해군기(정족산본) 권1 엽30〉

□ 광해군(光海君) 1년(1609) 2월 11일 계해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회인현감(懷仁縣監) 이애남(李愛男)은 왕실과 기까운 일가붙이로 국상(國喪)이 난 초기에 어머니가 죽어 아직 장사도 지내지 않은 여자를 며느리로 맞아 혼례를 행하였습니다. 물정이 매우 해괴하게 여기니 법률에 따라 죄를 주소서."하니 임금이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 〈광해군일기(정족산본) 권13 엽7〉

□ 광해군(光海君) 1년(1609) 9월 3일 신사

충청도 보은현(報恩縣)에서는 8월 16일 오후 10시경에 땅이 한 차례 움직이었다.〔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가면서 소리가 마치 우레 와 같았고 방과 집이 모두 흔들리다가 한참 만에 그쳤다〕 〈광해군일기(정족산본) 권20 엽1〉

□ 광해군(光海君) 2년(1610) 3월 16일 임진

충청도 보은현(報恩縣)에 지진이 발생하였다.〔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였고 소리는 우레소리와 같았는데 집이 모두 흔들리다가 한참 뒤에 멈추었다〕〈광해군일기(태백산본) 권26 엽31〉

□ 광해군(光海君) 3년(1611) 2월 9일 기묘

충청감사(忠淸監司)의 보고로 말마암아 회인(懷仁)과 평택(平澤) 두 현

247) 임금이 명성을 듣고 부른 선비

(縣)을 다시 설치하였다. 백성들의 소원을 따른 것이다. 〈광해군일기(정족산본) 권38 엽1〉

□ 광해군(光海君) 3년(1611) 3월 26일 병오

우찬성(右贊成) 정인홍(鄭仁弘)이 상소를 올렸다. 그 대략에, . . .

"신이 젊어서 조식(曺植)을 섬겨 열어주고 이끌어주는 은혜를 중하게 입었으니 그를 섬김에 군사부(君師父) 일체의 의리가 있고 늦게 성운(成運)의 인정을 받아 마음을 열고 허락하여 후배로 보지 않았는데 의리는 비록 경중이 있으나 두 분 모두가 스승이라 하겠습니다.

신이 일찍이 죽은 찬성(贊成) 이황(李滉)이 조식(曺植)을 비방한 것을 보았는데 하나는 상대에게 오만하고 세상을 경멸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높고 뻗뻗한 선비는 중도(中道)[248]를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장(老莊)[249]을 숭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운(成運)에 대해서는 진암(陳巖)[250]에 비유하여 한 조각의 작은 절개를 지키는 사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신이 일찍이 원통하고 분하여 한번 변론하여 밝히려고 마음을 먹은지 여러 해입니다.

조식과 성운은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뜻이 같고 도가 같았습니다. 태산교악(泰山喬嶽)[251] 같은 기상과 정금미옥(精金美玉)[252]같은 자질에 학문을 독실히 하였으니 작게는 사귀고 주고 거절하고 받는 사이와 크게는 행하고 감추고 나가고 들어앉는 즈음에 돌아가신 분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바르고 바른 규범은 모두 이의 스승이 될만하니 공자(孔子)의 고상한 길을 걷는 사람이며 태평한 시대의 숨은 어진이라고 함이 옳을 것입니다. 단지 한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사이에 부지런히 힘쓸뿐만 아니라 백년 뒤에 듣는 자들도 역시 감동하여 일어날 것이니 구구한 문자의 학문으로 이룰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이황은 두 사람과 한 나라에 태어났고 또 같은 도에 살았습니다만 평생

248) 어느 한쪽으로 지우치기 않는 공정한 도리
249) 노자(老子)와 장자(莊子)
250) 송(宋)나라 때 벼슬하지 않고 은둔한 선비. 자(字)는 청은(淸隱)
251) 높고 큰 산
252) 순금과 졸은 옥

에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한 적이 없었고 또한 자리를 함께 한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결같이 이토록 심하게 비방하였는데 신이 시험삼아 그를 위해 변론하겠습니다. 이황은 과거로 출세하여 완전히 나가지도 않고 완전히 물러나지도 않은채 서성대며 세상을 속여 놀리면서 스스로 중도라 여겼습니다.

조식과 성운은 일찍부터 과거를 단념하고 산림에서 빛을 감추었고 도를 지켜 흔들리지 않아 임금의 부름을 받아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황이 대번에 괴이한 행실과 노자(老子) 장자(莊子)의 도라고 인식하였으니 너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역(周易)』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왕후(王侯)를 섬기지 않고 고상함을 일삼는다.' 라고 하였는데 공자(孔子)가 이에 대해 말하기를 '그 뜻은 법칙이 될만하다.' 하였고 정자(程子)도 이에 대한 증거로 '이윤(伊尹)[253]과 강려상(姜呂尙)[254]과 같은 인물의 시초이고 증자(曾子)[255] 자사(子思)[256]의 무리이다.'고 하였습니다. 이윤이 신(莘)에서 농사짓고 강려상이 바닷가에서 살고 증자와 자사가 벼슬하지 않은 것이 과연 세상을 경멸하고 중도를 지나쳐 노자와 장자처럼 행동한 것이란 말입니까?

더구나 조식과 성운은 비록 세상을 피해 은거했다고는 하지만 선대 조정의 부름을 받아 조정으로 달려가서 한번 임금을 존중하는 뜻을 폈고 누차 상소를 올려 정성을 다해 치안과 시무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과연 괴벽한 도리이며 이상한 행실입니까? 그 때 나이 이미 70이었습니다. 어찌 벼슬을 그만두어야 할 나이인데 벼슬하려고 하겠습니까? 수레를 버리고 산으로 돌아가 자신의 행실을 닦고 삶을 마친 것이 과연 중도에 지나치고 괴이한 행실을 한 것이며 세상을 경멸하는 노자와 장지의 학문이란 말입니까? 신은 의혹스럽습니다.

이언적과 이황이 지난날 가정(嘉靖)[257] 을사년[258]과 정미년[259] 사이에

253) 은(殷)나라의 재상. 탕(湯)의 부름을 받고 재상이 되어 탕을 천하의 왕이 되게 하였음
254) 주(周)나라의 제상. 문왕(文王)을 도와 태평성대를 이룸. 호를 태공망(太公望)이라 함
255) 공자(孔子)의 제자인 증삼(曾參)의 존호
256) 공자(孔子)의 손자인 급(伋)의 자(字)
257) 명(明)나라 세종(世宗)의 연호
258) 인종(仁宗) 1년(1545)
259) 명종(明宗) 2년(1547)

극도로 높은 벼슬을 하였고 청직과 요직을 지냈으니 그 뜻이 과연 벼슬할 만한 때라고 여겨서입니까? 이것은 진실로 논할 것도 못되거니와 만년에 결연히 물러나 나라에서 여러 번 불러도 나가지 않았으니 이 또한 하나의 높고 뻗뻗한 일이며 세상을 경멸하는 행실입니까? 어찌하여 조식과 성운이 행한 바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지나치게 높은 노자와 장자를 본받았단 말입니까?

대저 고상을 지나치다고 하는 말은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황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한 세상을 우롱하고 나 외에는 세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았으니 그의 병통은 현자 지인이 아니라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답하여 혀를 놀리는 자가 너무도 많으니 조식과 성운이 무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옛날 성현에게까지 무함이 미치고 또 장차 후학을 속여 유교의 도리를 해칠 것이니 이는 작은 우려가 아닙니다. 신이 문제를 설명하려고 해도 말과 글로는 다 밝힐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황이 조식과 성운에 대하여 절개요 이단이라고 하여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가 하면 심지어는 시속을 좇아 세력에 붙고 이익을 탐하여 수치가 없으며 시종일관 권력있는 간신의 문객이 되어 맑은 논의에서 버림을 받은 이정(李楨)과 황준량(黃俊良) 같은 약간의 무리들을 도학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성현으로 기대하기도 하면서 그들과 왕복한 편지가 쌓여 책을 이루었습니다. 어찌 앞서서 나가고 앞서서 숨으면서 명분과 이익의 마당에서 늙은 자를 하루 아침에 도학의 공정과 성현의 사업으로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좋아하고 미워함과 취하고 버림이 이처럼 종잡을 수 없는데 이것이 과연 천부적 본심과 올바른 성정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 때문에 신이 더욱 마음에 불만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삼가 선대 조정에서 내리신 비망기(備忘記)[260]를 보니 하나는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도리를 밝혔다고 하였고 하나는 선비가 벼슬에 나아가고 버리는 의리를 바로하였다고 하였으며 또 전에도 후에도 발명하지 못한 바른 의론을 발명하였다 하고는 이어서 무고한 왕자의 사형을 청한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신의 구구한 견해가 대개 이와 같았기 때문에 일찍이 조식과 성운이 무함을 입은 것에 대해 변론하고, 이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언급하여 후학

260) 임금이 명령을 적어서 승지(承旨)에게 전하는 문서

의 의혹을 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당시 사람들의 분노를 사서 무리지어 욕하고 배척하여 팔도에 알림으로써 신으로 하여금 나라 안에 붙어 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비망기의 먹물이 아직도 선명한데도 불구하고 유생이 상소를 올리고 대신이 의논하고 전하께서 들으시어 문묘에 배향함에 높여짐이 지극하고 명성이 매우 성대하여 그 기세가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리하여 조정의 신하와 재야의 유생들이 서로 이끌고 나서서 좌지우지하는데 그들이 추켜세운 자를 전하께서 이미 추켜 세우셨으니 그들이 좌절시킨 자들 역시 전하께서 당연히 좌절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식과 성운의 무함은 더욱 두터워지고 무상한 신을 배척하는 것은 장차 전날에 하던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아, 성현이 도학을 논한 뜻과 후학에게 일러준 의미를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니 하늘의 해처럼 명석하고 손바닥을 보는 것처럼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성현의 교훈을 믿지 않고 이황의 한마디 말에 의혹되어 티를 가리고 옥이라 하여 마치 바람에 쓰러지고 물결에 밀리듯이 하고 있으니 백년 뒤에 어느 누가 다시 이황의 허물을 알 수 있으며 조식과 성운이 노자와 장자의 추종자가 아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이 부득불 입을 열어 할 말을 다함으로써 감히 맹자를 높인 고사의 의의에 따라 다시금 도마 위에 올려 놓고 해방하는 피해 따위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또 신이 지나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문학은 본시 성인 그 자체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을 교체하시고 다시 부르지 마시어 얼마 남지않은 이 목숨으로 하여금 낭패스러움을 면하고 고향에서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는 진실로 천지가 생성해 주는 은혜입니다만 감히 바랄 수 없기에 북쪽의 대궐을 바라보고 단지 벌이 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전하께서는 살펴주소서." 하였다. 이상소가 들어가자 조정과 민간이 크게 놀라고 분개해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정인홍이 이러한 논변을 한 것은 대개 이황이 일찍이 자기의 스승인 조식에 대해 논한 것을 분하게 여겨서이다.

정인홍은 사람됨이 편협하고 사나우며 식견이 밝지 못한데 방자하게 함

부로 지어내어 다시금 돌아보고 거리끼는 것이 없었으므로 세상에서 이르는 현인과 군자치고 그의 비방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일찍이 자기 편의 무리를 사주하여 상소를 올려 성혼(成渾)을 헐뜯었고 또 이이(李珥)를 매우 심하게 비방하더니 이 때에 이르러 다시 이황과 이언적을 이처럼 힘써 공격하였다. 저 정인홍 같은 자는 유학의 쓸데없는 가라지나 선비들을 해치는 좀도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광해군일기(정족산본) 권39 엽14-18〉

□ 광해군(光海君) 3년(1611) 4월 8일 정축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우찬성(右贊成) 정인홍(鄭仁弘)의 상소문을 보건대 선정신(先正臣)[261]인 이황(李滉)이 일찍이 자기 스승인 죽은 징사(徵士)[262] 조식(曺植)의 병통을 논한 일과 죽은 징사 성운(成運)을 단지 진암(陳巖)[263]'이라 칭한 것만 가지고 화를 내면서 당치 않게 헐뜯었다는 등의 말을 하는가 하면 이말 저말을 주워 모아 한껏 지척을 하였고 선정신인 이언적(李彦迪)까지 언급하면서 그를 마치 원수를 보듯 하였습니다.

아, 정인홍은 그의 스승을 추존하려다가 저도 모르게 분에 못이겨 말을 함부로 한 나머지 도리어 그 스승의 수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들이 일찍이 듣건대 이황은 조식과 비록 왕래하며 상종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깨끗한 절개를 이해하고 그의 훌륭한 점을 취한 것이 자못 깊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서찰 가운데 '내가 그와 더불어 정신적으로 사귀어 온지 오래이다.' 하였고 또 '평소 흠모하기를 깊이 한 바이다.' 하였고 또 '오늘날 남인 중 인격이 고결한 선비로는 유독 이 한 사람을 꼽는다.' 하였습니다.

성운에 대해서도 진암(陳巖)[264] 이 훌륭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공경심이 일도록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의 고매한 점을 그다지 알지못하는 것이 애석하다.'고 하였습니다.

---

261) 앞 시대의 어진 신하
262) 임금이 명성을 듣고 불러본 선비
263) 송(宋)나라 때 벼슬하지 않고 은둔한 선비. 자(字)는 청은(淸隱)
264) 송(宋)나라 때 벼슬하지 않고 은둔한 선비. 자(字)는 청은(淸隱)

이 점은 이황의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식도 일찍이 이황에게 서신을 보내 '평소 존경해 온 마음이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만큼 크다.'고 하였습니다. 조식이 이황을 성심으로 흠모한 정도가 이만큼 깊었는데도 정인홍은 그만 '이황이 엉뚱하게 헐뜯었다.'고 하면서 이구(李覯)[265]와 정숙우(鄭叔友)[266]가 맹자(孟子)를 헐뜯고 양웅(揚雄)[267]이 안자(顔子)를 논했던 일에다 비교까지 하였으니 누가봐도 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노장사상(老莊思想)이 학문의 병통이 되었고 중도(中道)로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한 것은 그의 치우친 점과 병통이 되는 점을 논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지 조식이 벼슬을 하지 않은 일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닙니다.

連

예로부터 큰 현인으로 성인에 가까운 백이(伯夷)[268]와 유하혜(柳下惠)[269] 같은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편협하고 공순치 못한 병통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대체로 중용(中庸)[270]의 지극한 덕은 성인이 아니면 잘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옛 선비가 백이를 가르켜 '조금은 노자(老子)와 비슷하다.' 하였고 또 이르길 '주돈이(周敦頤)[271]의 졸부(拙賦)는 황노(黃老)[272]와 비슷하다.' 하였는데 이는 단지 한 부분의 비슷한 점을 말한 것으로서 엉뚱하게 헐뜯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인홍이 만일 이황이 그의 스승과 더불어 서로 좋게 지내지 못한점을 이유로 이렇게 흡족하지 못한 얘기를 하였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겠으나 그는 본래의 뜻이 아닌 것에 스스로 허다한 말을 만들었습니다. 상소문 중에 이른바 '식견이 투철하지 못했다' 또는 '개인적인 감정이 덮어 가리웠다.' 한 것은 정작 자신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체로 그가 한 말을 살펴보건대 결코 화평한 심기에서 나온 말이 아니

265) 송(宋)나라 때의 학자
266) 송(宋)나라 때의 학자 연삼익(連三益)의 오자(?)
267) 전한(前漢)의 유학자
268) 은(殷)나라 제후 고죽군(孤竹君)의 아들로 주(周) 무왕(武王)이 은나라를 치자 수양산에 들어가 은거하다가 죽음
269) 춘추시대 노(魯)나라 사람으로 유하(柳下)에 은거함
270) 어느 한쪽으로 지우침이 없는 올바른 일
271) 북송(北宋)의 유학자 호는 염계(濂溪)
272) 노자(老子)의 허무사상(虛無思想)

라 여염에서 다투고 따지는 사람처럼 화난 김에 분풀이를 하고자 다른 일까지 들먹거렸습니다. 군자로서의 다툼은 이와 같아서는 안 될 듯싶습니다. 그 마음에서 나와 그 정사를 해치는 법이니 한 쪽에 치우친 말이 어찌 몹시 밉살스럽지 아니하겠습니까?

신들이 처음에 한마디 변론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삼가 생각건대 전하의 학문이 고명하여 능히 통찰하시고 명확히 분변하시어 더욱 존상하는 도리를 다하심으로써 좋고 나쁨의 바름을 보이실것이라고 예상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상소문을 들인지 벌써 열흘이 지났건만 명확한 분부가 아직껏 내리지 않고 있으니 선비들은 마음이 아프고 여론은 답답하게 여깁니다. 신들이 외람스레 전하와 가까운 자리에 있어 감히 끝까지 잠자코 있을 수 없으므로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사람은 저마다의 소견이 있는 법이니 굳이 몰아 세워 억지로 자기에게 부화뇌동(附和雷同)[273]할 것은 아니다. 더구나 그 상소문을 아직 내리지 않았는데 승정원에서 글을 올린 것은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하였다. 〈광해군일기(정족산본) 권40 엽2-3〉

□ 광해군(光海君) 3년(1611) 5월 22일 신유

생원 김덕민(金德民)이 상소를 올려 성운(成運)이 이황(李滉)을 존경하고 흠모한 일과 정인홍(鄭仁弘)의 논의가 엉뚱하고 망령스러운 일을 논하였다.

임금에게 바치니 임금이 답하기를 "상소문을 살펴보고 그 뜻을 잘알았다." 하였다. 〈광해군일기(테벡산본) 권41 엽21〉

□ 광해군(光海君) 4년(1612) 1월 16일 신해

충청감사(忠淸監司) 박이서(朴彝敍)가 보고하기를 "보은현(報恩縣)에 죽은 처사 성운(成運)의 무덤을 파헤친 일이 생겼습니다."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이를 임금에게 보고하기를 "세도가 날로 낮아지고 인심이 날로 야박해져서 유현(儒賢)[274]을 멸시하는 등 세상이 날 로 어두워

273) 객관적인 판단없이 남의 말에 무조건 동조하는 일
274) 유교에 대하여 조예가 깊고 행적이 바른 사람

지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존경할 줄을 모르고 죽으면 또 욕하며 헐뜯고 심지어 무덤을 파헤치는 변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성운은 도를 지키는 산림의 선비로 불러도 나오지 않자 선왕(先王)께서 여러 차례 포상하는 은전을 내리셨으니 그의 고상한 풍도와 아름다운 행실은 지금까지도 선비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뜻밖의 치욕이 지하의 썩은 뼈에까지 미쳤으니 비록 그 까닭은 알 수 없으나 듣고서 매우 놀랐습니다. 충청도로 하여금 갖가지 방법으로 수색하여 기어코 범인을 찾아내어 죄를 다스리게 하고 조묘군(助墓軍)[275] 을 헤아려 주어 봉분을 만들게 하소서.

그리고 조정에서도 예사로운 일로 그냥 넘기지 말고 서울에서 향을 내리고 제문(祭文)을 지어 보내 충청도 도사(都事)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고 위안해 나라에서 문인을 숭상하고 현인을 존경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서경덕(徐敬德)의 무덤을 파헤친 사람도 함께 자세히 조사해서 반드시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여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의 법률로 다스려 엄중히 경고하도록 거행하라."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얼토당토않는 비방이 이미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과 퇴계(退溪) 이황(李滉)에게 미쳤고 뜻밖의 치욕이 또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과 대곡(大谷) 성운(成運)에게 미쳤으니 아 장차 도덕이 폐해지려고 그런 것인가? 인심과 세도가 통곡할 만하다고 하겠다〕 〈광해군일기(정족산본) 권49 엽7〉

□ 광해군(光海君) 7년(1615) 12월 1일 계묘

좌의정(左議政) 정인홍(鄭仁弘)이 상소를 올리기를

신이 듣건대 공자(孔子)가 이르기를 '정치를 하는 것은 사람을 얻는데 달려 있다.' 하였고 『주역(周易)』에서는 '띠풀의 연이은 뿌리를 뽑는지라 그 무리와 더불어 가는 것이 이롭다.' 하였고 『서경(書經)』에서는 '널리 뛰

275) 무덤을 조성하는 일꾼

어난 선비를 구하여 뭇 관직에 나열해 둔다.' 하였으며 『논어(論語)』에서 자유(子游)[276]가 고을 원이 되자 공자께서는 사람을 얻었느냐고 물으셨으니 크게는 한 나라로부터 작게는 한 고을에 이르기까지 인재를 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이 먼 데서 인용할 것도 없이 조종조와 선왕 때의 일로써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명종(明宗) 때에 일민(逸民)[277]을 찾아 천거하여 특별히 수령으로 임명하였는데 그 당시 조식(曺植) 성운(成運) 성제원(成齊元) 등 몇 명이 모두 추천서에 올랐습니다. 비록 더러는 벼슬하기도 하고 더러는 벼슬하지 않기도 하였으나 모두 세상에 이름난 현인이 었습니다. 선왕 때에 상감께서는 사람을 취하는 일을 과거에만 국한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별도로 항목을 세워 경서에 밝고 행실을 닦은 사람, 순차를 넘어 선발된 사람, 재주가 수령을 할만한 사람 등 너덧 가지 조목을 설정하였는데 그러고도 번거롭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선비들 중에서 평소에 고상한 취향을 숭상하여 과거로 출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도 있으며 진실하고 소박하여 나라에 몸을 바칠 뜻은 있으나 진취적이지 못한 자도 있으며 재주와 기량은 쓸만하나 여러 번 과거에 떨어져 시골로 물러나 있는 자도 있는데 이러한 인재는 과거로 다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년에는 전혀 이러한 조목이 없어서 선비들이 다투어 과거에 달려가고 다시 선비의 행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 만일 고무시키는 조목으로써 그들의 시야를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무너진 풍조를 진작시키고 인심을 수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조종조의 옛 규례를 생각하시고 인재를 혹 빠뜨렸는가 염려하시어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널리 찾아내어 분류해 적게 하여서 그 재주의 고하에 따라 관직에 임명하소서. 그러면 큰 물을 건널 때의 배나 큰 가뭄의 장마비와 같은 재상의 자질을 지닌 사람을 반드시 얻는다고 장담하지는 못하더라도 오늘날의 여러 집사들과 비교해 볼 때 같은 수준으로 말할 수 없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더

276) 공자(孔子)의 제자
277) 학문과 덕행이 있으면서 시골에 은거하란 사람

구나 관직과 녹봉은 중요하게 등용할 사람을 면려하는 것이니 이로써 규례를 만든다면 제 집에서 행실을 닦아 조정에서 쓰이기를 구하는 자들도 마땅히 지혜가 밝은 임금을 기다려 일어날 것이니 장차 자손을 위한 좋은 계책을 내어서 이루 다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하였다. 〈광해군일기(정족산본) 권98 엽1-2〉

□ 광해군(光海君) 8년(1616) 1월 1일 임신

이조(吏曹)에서 좌의정(左議政) 정인홍(鄭仁弘)이 세상을 잊고 조용하게 즐기는 선비들을 등용하자고 상소한 일에 대하여 아뢰기를 “좌의정 정인홍의 상소문에서 그 첫째 조항에 이르기를 ‘지난 명종(明宗) 때 일민(逸民)[278]을 찾아 등용하여 특별히 수령으로 제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조식(曺植) 성운(成運) 이항(李恒) 성제원(成悌元) 등 몇몇 사람이 천거대상에 올랐는데 벼슬을 하기도 하고 혹 하지 않기도 하였으나 모두 당시에 이름난 현인들이었습니다.

선왕 때 이르러 선왕께서 인재를 가려쓰는 것이 과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따로 명목을 세워 경서에 밝고 행실을 닦은 사람, 순차를 넘어 선발된 사람, 재주가 수령을 할만한 사람 등 4, 5조목을 설정하면서도 이를 번거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개 세상의 선비들 가운데는 평소 고상한 뜻을 숭상하여 과거로 벼슬하기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자도 있고 질박하고 세련되지 못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뜻이 있지만 진출하는 데에는 서투른 자도 있고 재능과 기량이 쓸 만한데도 여러 차례 과거에 낙방하고 시골에 묻혀 지내고 있는 자도 있어서 이러한 인재들은 과거를 통해서는 다 등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경서에 밝고 행실을 닦은 선비를 선조(宣祖)때 했던 대로 거두어 등용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이름과 실제가 들어맞은 후에 발탁하여 등용하는 법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이조에서 등용할 만한 사람을 찾아내어 대신에게 감정하여 보고해서 처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광해군일기(정족산본) 권99 엽1〉

278) 학문과 덕행이 있으면서 은거하란 사람

□ 광해군(光海君) 8년(1616) 3월 9일 기묘

사헌부(司憲府)에서 새로 아뢰기를 “양경리(楊經理)[279]의 관아 문밖에 조정을 헐뜯는 글을 화살에 묶어 투서하였다가 잡혀서 죄를 받은 죄인 조토리(趙吐里)와 한 패인 이춘기(李春起)란 자는 당초에 황주(黃州) 관아에서 포박하여 압송할 때 중도에서 도망하였는 데 현상금을 걸고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잡지를 못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포도청(捕盜廳)에서 누군가의 고발을 받아 보은현감(報恩縣監) 이양휴(李揚休)의 행랑에서 체포하였습니다. 그의 진술에서 ‘그 집에 10여년 동안 숨어 살면서 아들 딸까지 낳아 길렀다고 하였는 바 집주인이 비록 그런 사정을 몰랐다고는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모두 괴이하게 여깁니다. 보은현감(報恩縣監) 이양휴(李揚休)[280]를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였다. 〈광해군일기(정족산본) 권101 엽5〉

□ 광해군(光海君) 8년(1616) 3월 9일 기묘

임금이 사헌부(司憲府)에서 “보은현감(報恩縣監) 이양휴(李揚休)에 대한 일은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 〈광해군일기(태백산본) 권101 엽12〉

□ 광해군(光海君) 9년(1617) 2월 28일 계해

임금이 분부하기를 “황학령(黃鶴齡)과 이춘기(李春起) 등은 바로 선조(宣祖) 때 양경리(楊經理)[281]의 아문에 투서한 죄인이다. 그런데 지금 이미 사형에 처하였으니 선묘(宣廟)[282]에 고사하는 것이 마땅 할 듯하다.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라.” 〈광해군일기(정족산본) 권112 엽21〉

■ 광해군(光海君) 10년(1618) 1월 12일 임신

진사 하인준(河仁俊), 생원 정기(鄭淇), 진사 민심(閔深), 생원 김상하(金

279) 선조 30년 우리나라에 원병을 이끌고 온 명(明)나라 총병(摠兵) 양원(楊元)의 별칭
280) 이양휴(李楊休)는 선조 37년 조지서(造紙署) 별제(別提)로 재임 중에도 인품이 오활하고 졸렬하고 조지서의 일을 태만히 하여 교체된 바 있음.
281) 선조(宣祖) 30년 우리나라에 원병을 이끌고 온 명(明)나라 총병(摠兵) 양원(楊元)의 별칭
282) 종묘(宗廟)에 선조의 위패를 봉안한 방

尙夏)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나라와 임금을 위해 대궐에 엎드려 잇달아 상소장을 올린 것은 화의 근본을 제거 할 목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원궤(元簋)에게 전해진 흉서(兇書)를 얻어 보니 그 속에 저희 네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을 뿐만아니라 예조판서(禮曹判書) 이이첨(李爾瞻), 좌참찬(左參贊) 허균(許筠), 좌부승지(左副承旨) 김질간(金質幹), 부수찬(副修撰) 서국정(徐國楨)의 이름까지 거론하고는 반역을 도모했다고 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흉서를 들여보낸 원궤를 잡아 심문하여 흉서의 출처를 조사하여 신들의 원통함을 씻도록 해 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은 모두 잘 알았다. 대신과 의논해 처리토록 하겠다." 하였다. 〈광해군일기(정족산본) 권123 엽13〉

□ 광해군(光海君) 10년(1618) 1월 20일 경진

보은(報恩)에 거주하는 유학 박률(朴률)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깨비 같은 원궤(元簋)의 죄를 다스려야 일이 일어났는데도 사헌부(司憲府)의 관원 중에 원궤를 심문하지 않으려는 자가 있고 심문관 중에 비암(琵巖)[283]의 이름이 밝히지 않기를 바라는 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균관(成均館)의 많은 선비들까지도 모두 추악한 비난을 받은 만큼 극력 변론해야 마땅한데 이런 오명을 직접 받고서도 다시 서둘러 조사하라고 청하지 않고 있으니 선비의 기풍이 땅을 쓸어 버린듯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죄를 다스리는 일이 흐지부지되면 군왕의 치욕을 어떻게 씻을 것이며 착한 사람들이 당하는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이며 선비들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설욕하겠습니까?

속히 서궁(西宮)[284]을 폐출하는 전형을 행하시어 종묘사직을 편안케 하시고 원궤 등을 엄중히 심문하여 그 흉악한 실상을 알아낸뒤 충성스럽고 곧은 인사가 무함을 당한 것을 분명히 밝혀줌으로써 간악하게 엿보는 조짐이 단절되도록 하소서." 〈광해군일기(정족산본) 권123 엽23〉

283) 원궤의 흉서를 지은 사람의 호

□ 광해군(光海君) 12년(1620) 12월 12일 을묘

우승지(右承旨) 이사경(李士慶)이 아뢰기를 “각 고을의 수령 중에 미처 임명되지 않아서 부임하지 못한 곳으로는 보은(報恩) 같은 고을이 있고 탄핵을 받아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오래도록 처리되지 않은 곳으로는 청송(靑松) 같은 고을이 있습니다.

이번 정사에 특별히 결단을 내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편리하도록 하소서. 신의 직책은 예방승지(禮房承旨)이나 민정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황공하게도 감히 아룁니다.” 하였다. 〈광해군일기(정족산본) 권159 엽2〉

□ 광해군(光海君) 13년(1621) 7월 10일 기유

보은(報恩)에 거주하는 유학 이여주(李汝柱) 등이 상소하여 시국의 폐단과 민정을 아뢰었다. 〈광해군일기(태백산본) 권167 엽13〉

□ 광해군(光海君) 14년(1622) 7월 14일 무신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온양군수(溫陽郡守)와 보은현감(報恩縣監)의 망단자(望單子)[285]는 작년에 올렸고 평강현감(平康縣監)과 종성판관(鍾城判官)의 망단자는 올봄에 올렸는데 모두 결정하여 내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처럼 일이 많은 때에 수령의 자리가 빈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 청컨대 빨리 결정하여 부임하도록 서둘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그러나 결정해 주지 않았다. 〈광해군일기(정족산본) 권179 엽4〉

□ 인조(仁祖) 2년(1624) 1월 6일 신유

지사(知事) 오윤겸(吳允謙)이 아뢰기를 “성운(成運)을 증직하는 일은 전에 이미 아뢰었으나 이제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성운은 은둔한 선비로서 품행이 뛰어나고 일생의 발자취가 산 속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여러 번 임금이 불러도 나가지 않았으므로 유신(儒臣)[286] 이황(李滉)이

284) 광해군 5년(1613) 대북파에서 광해군의 이복동생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역모죄로 몰아 죽이고서궁(西宮) 갇힌 영창대군의 생모인 인목대비(仁穆大妃)를 말함

285) 후보자 세 사람씩 추천한 명단

286) 유학(儒學)에 조예가 깊은 신하

조식(曺植)보다 훨씬 낫다고 하였습니다. 선조(宣祖)께서는 특별히 예우하였고 병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는 의관(醫官)이 문병하러 여러 번 갔으니 선왕이 어진 이를 우대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또 참찬관(參贊官) 이정혐(李廷馦)도 증직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287]. 〈인조실록 권4 엽1〉

□ 인조(仁祖) 2년(1624) 10월 21일 임인

충청도 회인(懷仁)과 보은(報恩)에 새알만한 크기의 우박이 비와 섞여 내려서 벼가 모두 손상되었다고 충청감사(忠淸監司) 윤이지 (尹履之)가 보고를 올렸다. 〈인조실록 권7 엽22〉

□ 인조(仁祖) 3년(1625) 8월 12일 무자

임금이 보은현감(報恩縣監) 서운준(徐雲駿)을 불러 보았다. 〈인조실록 권9 엽47〉

□ 인조(仁祖) 6년(1628) 3월 11일 신미

공청도 보은(報恩)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거위알만큼 컸다. 〈인조실록 권18 엽53〉

□ 인조(仁祖) 6년(1628) 9월 16일 계유

공청도 보은(報恩) 청산(靑山) 옥천(沃川) 태안(泰安) 홍주(洪州) 서산(瑞山) 당진(唐津) 면천(沔川)에 이른 서리가 내렸다. 〈인조실록 권19 엽24〉

□ 인조(仁祖) 13년(1635) 2월 23일 갑진

보은현(報恩縣) 속리사(俗離寺)에 있는 6길이나 되는 부처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고 충청감사(忠淸監司)가 보고를 올렸다. 〈인조실록 권31 엽8〉

■ 인조(仁祖) 14년(1636) 12월 2일

청(淸)나라 태종(太宗)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鴨綠江) 건너 조선

287) 이 때 증직된 벼슬은 승지(承旨)임

을 침입한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났다.

□ 인조(仁祖) 15년(1637) 6월 12일 기유

공청도 임천(林川) 공주(公州) 홍주(洪州) 평택(平澤) 회인(懷仁) 석성(石成) 덕산(德山) 대흥(大興) 은진(恩津) 홍산(鴻山) 직산(稷山) 당진(唐津) 이산(尼山) 고을에 비가 많이 와서 큰 물이 졌다. 〈인조실록 권35 엽3-4〉

□ 인조(仁祖) 16년(1638) 3월 5일 무진

동지(同知) 이경여(李敬輿)가 상소하기를 "문경(聞慶) 북쪽 조령(鳥嶺) 남쪽에 산성(山城) 하나가 있는데 이름을 어류(御留)라고 합니다. 어느 때의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고려 때 임금이 머물렀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세한 유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성 안의 넓이는 남한산성(南漢山城)의 10분의 9나 되며, 형세의 험하고 견고함은 남한산성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동쪽과 남쪽은 만 길이나 되는 절벽이어서 새나 짐승도 넘기가 어려우며, 북쪽은 동쪽이나 남쪽에 비해 조금 낮으나 또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니, 대략 성첩(城堞)을 쌓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서쪽은 긴급함을 방어할 곳이라고 하는데 통할만한 길이 있습니디. 그러나 남한산성의 가장 험한 곳에 비해 몇 배 더 험하고 크고 작은 암석이 흙더미처럼 쌓여 있으니, 공역을 매우 적게 들이고도 또한 범접하기 어려운 형세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 안에는 샘물과 시내가 여러 길로 다투어 흐르며, 수목이 꽉 들어차 있어 취해 써도 다하지 않아 천 칸의 큰 집을 만들 수 있고 몇 년의 땔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만든 험난한 형세가 실로 동남쪽에서 제일이 됩니다. 그 안에는 4, 5만 명의 군사를 수용할 수 있고, 1, 2만호를 둘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만 수축 한다면 집을 경영하고 식량과 마초를 저장하여 영원히 함락되지 않는 기지를 만들 수 있으니, 남쪽과 북쪽에서 비록 준동을 하더라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백만의 군사가 사방에서 진격해 들어와도 성 안의 사람들은 마음놓고 편히 잠잘 수 있을 것이니, 가장 안전한 곳은 이곳 말고는 다른 곳이 없습니다.

이곳은 동쪽으로는 태백산(太白山) 소백산(小白山)과 연결되어 있고 북쪽으로는 월악산(月岳山)과 통하며, 서쪽으로는 백화산(白華山)과 접해

있는데, 그 줄기가 뻗어 속리산(俗離山)을 향하고 또 곧바로 덕유산(德裕山) 지리산(智異山)으로 연결되어 바다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인조실록 권36 엽21〉

□ 인조(仁祖) 22년(1644) 12월 6일 경신

이조판서(吏曹判書) 이식(李植)이 아뢰기를 "전라도 한 고을의 수령이 도적 한 사람을 잡아 심문한 결과 그의 괴수가 거의 30여명에 이르는데 맨 처음에는 죽산(竹山)의 천민천(天民川)에서 모였고 두 번째는 보은(報恩)의 속리산(俗離山) 입구에서 모였으며 세 번째는 운봉(雲峯) 경내에서 모였다고 하니 이는 필시 맥락이 서로 연결되어 뿌리가 깊이 박힌 고질적인 도적들입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은 서로 거느려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일단 흩어진 뒤에는 마침내 도적이 되어버리니 지난 날 호패법(號牌法)[288]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식견있는 이들은 지금도 그것을 한스럽게 여깁니다.

만일 내년부터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한결같이 조종조(祖宗朝)의 고사에 따라 모든 백성을 관활하는 법을 밝게 세우고 그들의 왕래를 살펴서 한 사람도 누락됨이 없게 하여 흩어지지 않게 한다면 그런대로 도적을 방지하는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들으니 강경(講經)[289]에 낙제한 경기도의 유생들도 모두 도망하여 흩어졌다고 합니다."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백성 다스림에는 수령에 우선하는 것이 없으니 만일 수령의 적임자를 얻는다면 백성들이 흩어지는 폐단은 저절로 없게 될 것이다." 하였다.

또 이식이 아뢰기를 "음직(蔭職)[290]으로 대간(臺諫)이 된 사람은 전대의 왕조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명종(明宗) 때에는 조식(曺植) 성운(成運)이 지평(持平)에 임명되었고 선조(宣祖) 때는 남언경(南彦經) 한수(韓脩) 민순(閔純) 홍가신(洪可臣) 등이 임금의 부름을 받고 관직에 임명되자 유신

288) 16세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앞면에 성명 출생간지 등을 새기고 뒷면에 해당 관아의 낙인이 찍힌 호패(號牌)를 의무적으로 차고 다니게 하는 법

289) 과거를 볼 때 시험관이 지정해 주는 경서(經書)의 대목을 외우게 하는 일

290) 할아버지 아버지의 공으로, 또는 천거에 의하여 임명된 관직

(儒臣)[291] 기대승(奇大升)이 아뢰기를 '마땅히 먼저 군수나 현감으로 직무를 시험해보고 관례에 따라 관직을 올려 승진시켜야 나중에 폐단이 없게 된다.'고 하였는데 그때에는 기대승의 말을 그르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후 선조께서 여기에 폐습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 세상을 잊고 조용하게 즐기는 선비 두서너 사람을 거두어 등용했으나 모두 와서 벼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였다. 〈인조실록 권45 엽65-66〉

□ 인조(仁祖) 25년(1647) 12월 29일 을미

이 날은 원종대왕(元宗大王)[292]이 돌아가신 날이다. 임금이 매년 내수사(內需司)를 시켜 제물을 보은현(報恩縣) 속리산(俗離山)에 있는 절[293]에 보내어 중으로 하여금 재(齋)를 베풀고 부처에게 공양토록 하였다.

이 때에 임금이 몰래 내수사의 하인을 절로 보내어 살펴보도록 하였는데 중들은 전혀 재를 베풀려는 뜻이 없었다고 하였다. 이에 임 금이 노하여 중들을 의금부(義禁府)로 잡아다가 죄를 주었다. 〈인조실록 권48 엽46〉

□ 인조(仁祖) 26년(1648) 7월 7일 경오

홍청도에 큰 물이 졌다. 문의(文義) 공산(公山) 정산(定山) 청주(淸州) 은산(恩山) 온양(溫陽) 직산(稷山) 보은(報恩) 청풍(淸風) 태안(泰安) 대흥(大興) 보령(保寧) 진천(鎭川) 서천(舒川) 등 54고을에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퍼붓듯이 폭우가 쏟아져 냇물이 넘쳤고 곡식이 모두 물에 잠겨 썩었으며 산기슭이 무너지면서 깔려죽은 사람이 4명이나 되었다. 임금이 충청도로 하여금 구휼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인조실록 권49 엽24〉

□ 인조(仁祖) 26년(1648) 8월 4일 병신

홍청도 임천(林川) 한산(韓山) 청주(淸州) 보은(報恩) 옥천(沃川) 고을에는 태풍과 폭우가 쏟아졌는데 지붕의 기와가 모두 날아갔다.

---

291) 유학(儒學)에 조예가 깊은 신하
292) 조선 선조(宣祖)의 다섯째 아들 이부(李琈)을 왕으로 부르는 존호
293) 사자암(獅子庵)을 말함 〈영조 5년 10월1일 기사 참고〉

충청감사가 아뢰니 임금이 충청도로 하여금 구휼을 시행하게 하였다. 〈인조실록 권49 엽32〉

□ 효종(孝宗) 1년(1650) 6월 11일 계사

보은현감(報恩縣監) 이하악(李河岳)이 부임인사를 하니 훈시하여 보냈다. 〈효종실록 권4 엽16〉

□ 효종(孝宗) 1년(1650) 7월 3일 갑인

영의정(領議政) 이경여(李敬輿)가 상소하기를

아 옥백(玉帛)[294]의 예의를 갖추어 어진이를 부르는 것은 명철한 임금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조(宣祖) 때 제일 먼저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과 일사(逸士)[295]인 성운(成運) 조식(曺植) 그리고 그 밖에 이항(李恒) 민순 (閔純) 등을 불러서 큰 관직으로 높여 주기도 하고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에 배치하기도 했으니 그들의 뜻을 끝까지 펴도록 해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크게 하려는 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조정의 분위기는 태평시대를 훌륭하게 이룰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할 만합니다.

그러다가 인조(仁祖) 때에 이르러서는 시대사항이 어지러워 온갖 일들에 매여 겨를이 없었습니다만 궁정(弓旌)[296] 하기 위하여 사람을 사방으로 내보내어 지성으로 불러 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초야에서 덕을 기르던 선비인 김장생(金長生) 장현광(張顯光) 같은 이들이 비록 늙은 관계로 서울에 오래도록 있을 수는 없었지만 융숭하신 은총과 특별한 예의는 시종일관 변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언론과 본보기가 되는 규법이나 법도를 조정과 민간에서 법으로 취할 수 있었으니 선조와 인조께서 유사(儒師)[297]를 높이고 도학(道學)[298]을 중히 여기신 뜻이야말로 어찌 후손으로서 마

294) 옛날 중국에서 제후(諸侯)가 황제를 뵐 때 가지고 오는 선물
295) 세상을 숨어사는 선비
296) 활과 깃발을 뜻하나 여기서는 선비를 초빙할 때는 활로 하고 대부(大夫)를 초빙할 때는 깃발로 하였다는 고사로 높은 관직으로 임명하는 일을 말함
297) 유학를 제대로 배우고 똑바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298) 유교의 성리학(性理學) 또는 주자학(朱子學)

땅히 본 받을 바가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효종실록 권4 엽29〉

□ 효종(孝宗) 4년(1653) 3월 3일 기사

암행어사 홍처대(洪處大)와 민정중(閔鼎重)이 수령들 가운데 군정 (軍政)을 포기한 것이 더욱 극심한 자를 글월로 보고하였는데
회인현감(懷仁縣監) 김하현(金夏鉉)이 여기에 해당되어 파직되었다. 〈효종실록 권10 엽37〉

□ 효종(孝宗) 6년(1655) 11월 25일 을사

충청도 회인(懷仁) 문의(文義) 보은(報恩)에 지진이 발생하였다. 〈효종실록 권15 엽29〉

□ 효종(孝宗) 9년(1658) 4월 19일 을유

충청도 보은현(報恩縣)에 서리가 내렸다. 〈효종실록 권20 엽19〉

□ 효종(孝宗) 10년(1659) 윤3월 28일 무자

충홍도 보은현(報恩縣)에 있는 속리사(俗離寺)의 불상에서 땀이 흘러 내렸다.[299] 〈효종실록 권21 엽35〉

□ 현종(顯宗) 1년(1660) 6월 24일 정미

충홍도 보은(報恩) 청안(淸安) 서천(舒川) 고을에 폭우가 계속 쏟아 져 사람과 가축이 무너져 내린 비탈에 깔리거나 벼락을 맞아 죽은 일이 많았으므로 이재민을 구휼하는 규정을 시행할 것을 명하였다 〈현종실록 권3 엽8〉〈현종개수실록 권3 엽51〉

□ 현종(顯宗) 1년(1660) 7월 7일 경신

충청도 보은(報恩) 땅에 크기가 새알만한 우박이 쏟아져 벼와 곡식 들이 피해를 크게 입었다. 〈현종실록 권3 엽14〉〈현종개수실록권4 엽5〉

299) 이 달에 보은 속리사(俗離寺) 불상뿐만 아니라 청주의 불상 그리고 전라도 쌍계사(雙溪寺) 불상에서도 땀이 흘렸음.

□ 현종(顯宗) 3년(1662) 1월 6일 경진

충청도 회인현(懷仁縣)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충청감사(忠淸監司)가 보고하였다. 〈현종실록 권5 엽2〉〈현종개수실록 권6 엽39〉

□ 현종(顯宗) 3년(1662) 6월 11일 임자

충청감사(忠淸監司) 오정위(吳挺緯)가 보고하길 "장마비가 그침없이 마구 내려 하천이 범람한 나머지 진천(鎭川) 보은(報恩) 고을의 집들이 많이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갔다고 하였다. 〈현종실록 권5 엽35〉〈현종개수실록 권7 엽19〉

□ 현종(顯宗) 5년(1664) 윤6월 12 임신

대사간(大司諫) 이홍연(李弘淵)이 징을 치면서 억울람을 호소한 이 승익(李承益)에게 배척을 받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에 앞서 출신(出身)[300] 양사국(梁士國)이 이영(李楹)이라는 자와 노비 문제로 소송하여 이미 두 번이나 처결하였다. 그 뒤 양사국이징을 쳐서 원통함을 하소연하였는데 사간원(司諫院)이 국가에 소속시키자는 뜻으로 예에 따라 회신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분부하기를 "이미 두 번 승소한 송사는 다시 심리 를 허락치 말라는 연신(筵臣)[301]의 건의에 따라 정해진 제도가 있으니 사간원이 마음대로 송사를 판결하는 것은 참으로 지극히 놀라운 일이다. 당상관(堂上官)과 낭청(郎廳)을 모두 먼저 파직한 뒤에 조사하라."하였다.

대사간 이홍연이 일찍이 판결사(判決事)가 되었을 적에 방장(房掌) 이 교대하기를 기다린 뒤에 조처하자는 뜻으로 또한 회신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만 파직되어 조사 받음을 면하게 된 것을 불안하게 여긴 것이다.

또한 황간(黃澗)의 유학 이승익이 보은(報恩)사람 김득수(金得洙)와 선산 문제로 소송을 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이홍연이 충청감사(忠 淸監司)로 형조(刑曹)의 회신에 따라 조사해 처결한 일이 있었다. 그 뒤에 이승익이 징을 두들겨 말하기를 '김득수는 감사 이홍연의 6촌 손자사위로 충청도

300) 무과(武科)에 급제하고 임관되지 않은 사람
301) 경연(經筵)에 관계하는 관원

에서 조사해 처결한 것은 사사로운 감정을 따른 데서 나왔다'고 비방하고 헐뜯기를 극도로 하였다.

그러므로 이홍연이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종이에 가득 여러 말을 하였지만 말이 대부분 비루하고 속되며 소송하는 자리에 서 시끄럽게 다투는 듯한 말이 있어 사간원의 체모를 잃으니 여론 이 그를 비웃었다. 〈현종실록 권8 엽47〉〈현종개수실록 권11 엽 18〉

□ 현종(顯宗) 6년(1665) 12월 23일 갑술

공산(公山) 전의(全義) 이산(尼山) 문의(文義) 천안(天安) 연기(燕 岐) 은진(恩津) 석성(石城) 회인(懷仁) 고을에 지진이 발생하였다. 〈현종실록 권11 엽27-28〉

□ 현종(顯宗) 7년(1666) 1월 7일 무자

보은(報恩) 사람 이환(李換)의 집에 명화적(明火賊)[302]이 돌입하여 이환을 죽이려 하니 그의 큰 아들 이창경(李昌慶)은 23세이고 둘째 아들 이원경(李元慶)은 17세이고 막내아들 이명경(李鳴慶)은 15세인데 세 아들이 칼날을 무릅쓰고 뛰어 들어가 몸으로 아버지가 누워있는 이불 위에 엎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죄가 없다. 차라리 나를 죽이고 아버지는 죽이지 말라."하니 명화적이 죽이려 하였다. 그런데도 형제가 서로 다투어 죽으려 하면서 형이 말하기를 "내가 죽겠다."하니 두 아우도 말하기를 "내가 죽겠다." 하면서 서로 애걸하니 명화적이 의롭게 여겨 모두 살려줬는데 세 아들이 모두 중상을 입었으나 아버지는 끝내 죽음을 면하였으므로 고을사람들이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충청감사(忠淸監司)가 이를 보고하니 임금이 예조(禮曹)에 명하여 모두 정표하고[303] 그들이 장성하기를 기다려 재능에 따라 관직을 주게 하였다. 〈현종실록 권11 엽32-33〉〈현종개수실록 권14 엽27〉

---

302) 떼를 지어 돌아다니는 강도

303) 이창경(李昌慶) 이원경(李元慶) 이명경(李鳴慶) 3형제의 정려각이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에 있다.

□ 현종(顯宗) 8년(1667) 7월 15일 정사

충청감사(忠淸監司)가 보고하기를 "보은(報恩)에 사는 양반집 여인 이 여종의 사내와 간통하고 몰래 자신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하니 고문으로 다스려 처형하였다. 〈현종실록 권14 엽10〉〈현종개수실록 권17 엽49〉

□ 현종(顯宗) 12년(1671) 2월 18일 경자

충청도 보은향교(報恩鄕校)에서 증자(曾子)의 위판을 잃어버렸다가 하루가 지나서 찾았다. 이 일을 임금에게 아뢰자 태상시(太常寺)에 명하여 위판을 다시 만들어 보내게 하고 충청도로 하여금 그날 수직한 교생(校生)과 전복(典僕)의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근래 인심이 거칠고 사나워져서 수령을 원망하는 간사한 백성과 교생에게 죄를 받은 전복이 번번이 이러한 변을 일으키니 어찌 비통하지 않겠는가? 〈현종실록 권19 엽9〉〈현종개수실록 권23 엽45〉

□ 현종(顯宗) 13년(1672) 12월 19일 경신

충청도의 수재를 살피러 간 어사(御使) 유상운(柳尙運)이 상소를 올려 아뢰기를 "신이 관활하고 있는 18개 고을 중에 영춘(永春) 단양(丹陽) 청풍(淸風) 연풍(延豊) 청산(靑山) 황간(黃澗) 회인(懷仁) 보은(報恩) 등 고을은 산이 높고 들이 좁습니다. 그래서 목화가 제대로 선 밭이 적고 벼의 이삭이 패지 못한 논이 많은가 하면 심지어 기장 조 콩도 거의 다 말라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8개 고을의 모든 가포(價布)[304]와 신역(身役)[305]을 적당하게 감면시키고 죽어버린 포병(砲兵)의 보인(保人)들도 마땅히 가포를 감해 주어야 이웃과 일가붙이가 보전키 어려운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그 상소를 비변사(備邊司)에 내리니 비변사에서 회신하기를 "다른 도 재해 고을의 예대로 포병 보인의 군포(軍布)는 3필 중 1 필을 감해 주고 모든 가포와 신역은 3분의 1을 감해 주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304) 부역(賦役)에 나가지 않는 대신 군포(軍布)로 바치는 베
305) 몸으로 치루는 노역(勞役)

따랐다. 〈현종실록 권20 엽58〉〈현종개수실록 권26 엽37〉

□ 숙종(肅宗) 7년(1681) 8월 9일 기축

보은현(報恩縣)에 날마다 서리가 내려 산골짜기 사이에 눈처럼 두 껍게 쌓여 곡식이 손상된 것이 많다고 충청감사(忠淸監司)가 보고 하였다. 〈숙종실록 권12 엽10〉

□ 숙종(肅宗) 8년(1682) 11월 17일 경신

사간(司諫) 신양(申攘))이 과거를 강행하여 실시한 일이 실로 훗날 끝없는 근심거리를 된 것인데도 능히 말 한마디 꺼내어 다투지 못하고 한갓 명령을 받들기에만 급급하였던 것을 혐의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 처분을 기다렸다.

정언(正言) 김만길(金萬吉)이 공홍도사(公洪都事) 강석규(姜錫圭)가 다시 심문하는 일로 출장을 나가 영소전(永昭殿)의 제삿날 속리산 (俗離山)에 들어가 논 것을 말하고 파직하여 앞으로 사면하여 복직 시키지 말기를 청하였다.

이어서 조치하여 신양을 교체시키고 말하기를 "말과 행동이 다르 고 앞뒤가 모순되는 사람입니다."하니 임금은 모두 그대로 따랐다. 〈숙종실록 권13하 엽22〉

□ 숙종(肅宗) 11년(1685) 2월 4일 갑오

보은(報恩)의 유학 이진안(李震顔)이 상소를 올려 말하기를 "문성공(文成公) 율곡(栗谷) 이이(李珥)는 도덕과 학문이 진실로 동방의 정자(程子) 주자(朱子)로 일컬을 만한 분이요 영원히 모범이 될 분입니다.

그런데 채진후(蔡振後)와 유직(柳稷) 등이 구태여 율곡이 젊었을 적에 산에 들어갔던 것을 지적하여 흠만 잡으니 올바른 것을 추하게 만드는 형상이 참혹합니다. 주자(朱子) 같은 아성(亞聖)[306]도 초년에는 오히려 이와 같았으니 율곡의 젊었을 때 일이 어찌 논의 할 단서나 되겠습니까? 선현을 무고하고 욕되게 한 말이 또 다시 선비로 이름하는 자의 입에서 나

306) 성인(聖人)에 버금가는 현인(賢人)

와서 훗날 구실을 삼을 자료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해 윤증(尹拯)이 어떤 이에게 준 편지에 말하기를 '지금 강화도(江華島)의 일을 가지고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307]가 잘못한 것으로 지적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곧 율곡이 '허망된 것으로 슬픔을 막으려고 하였다'[308]의 상소를 가리켜 스스로 자기의 도리를 다하였다고 이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나 율곡이 산에 들어갔던 잘못은 씻을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죽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이치가 없는 것이 어찌 하나같이 이에 이르렀습니까?

윤증의 아버지 윤선거(尹宣擧)가 병자년[309]과 정축년[310]의 호란 (胡亂)에 죽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장에서 말하기를 '벗들이 모두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이 같이 죽지를 못하여서 아내가 자결을 하고 자식이 버렸는데도 홀로 노예가 되어 구차스럽게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하였으니 이는 윤선거 스스로가 부끄러워하며 자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증은 자기 아버지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으니 그 또한 이상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과오가 없다고 하면서 율곡을 끌어다 견주어서 하나의 이유로 삼은 것도 잘못된 것인데 율곡은 과실이 있었다고 이르고 자기 아버지는 죽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자기 아버지는 과실이 없는데 율곡은 과실이 있다고 하였으니 율곡을 모욕하고 업신여겨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채진후 등이 바르지 못한 말을 부르짖어 무릇 시비하는 날이 있게 된 것을 뉘라서 마음 아파하며 변명하고자 하지 않겠습 니까? 요사이 학유(學儒) 김성대(金盛大) 등이 통문으로 그들의 죄를 성토하여 서울과 지방에 널리 알린 것은 오늘날의 사기가 오히려 볼만한 것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봉교(奉敎) 김홍복(金洪 福) 등이 윤증을 위하여 원수를

307) 병자호란 때 강화도로 피난하여 성문을 지키다가 호병이 쳐들어오자 부인은 자결하엿는데 혼자 도망하여 목숨을 건진 윤증의 아버지 윤선거(尹宣擧)

308) 젊어서 불교에 귀의하였다고 탄핵을 받은 이이(李珥)가 사직상소에서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허망된 것으로 슬픔을 막으려고 마침내 불교에 빠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을 다 쏟아도 더러움을 씻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한 것을 말함

309) 인조(仁祖) 14년(1636)

310) 인조(仁祖) 15년(1637)

갚으려 하였기에 정거(停擧)[311]하는 처벌을 내리는데 이르렀습니다. 인심의 괴벽함과 사설의 잘못됨이 어찌 이에 이르렀습니까?" 하였다.

상소가 승정원(承政院)에 전달되었다. 윤증의 무리가 승지(承旨) 윤 이도(尹以道) 등을 부추켜서 임금에게 아뢰게 하여 윤증(尹拯)을 구제하도록 매우 힘써 말하기를 "어찌 털끝만큼도 선현을 모함할 뜻이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은 윤증이 이이를 무함하는 것이 일반 이치로는 미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서 비망기(備忘記)[312]를 내려 말하기를 "이제 이진안의 상소문을 보니 윤증의 오래 된 사사로운 편지를 들춰내어 선현을 멋대로 모함하였다는 죄를 덮어씌워서 은연 중에 현란한 계획을 날조하였으니 참으로 놀라움을 이길 수가 없다. 사람들의 마음의 투박함과 선비들의 풍습의 불미함이 한결같이 이 지경이 되었구나. 만일 이러한 위험스러운 말이 행해지면 곧 하류의 폐단은 장차 나라가 나라답지 못한데 이를 것이니 좋고 나쁜 것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이진안은 정거하고 이 상소문은 도로 내주어라." 하였다.

대교(待敎) 심권(沈權)과 검열(檢閱) 유상재(柳尙載)은 김홍복(金洪福)이 선비에게 벌 준 일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이진안에게 배척을 받은 일로 상소를 올려 스스로 변명하였다. 임금이 또 두터운 은혜로 답을 내리었다. 〈숙종실록 권16 엽4-5〉

□ 숙종(肅宗) 11년(1685) 2월 4일 갑오

보은(報恩)의 유학 이진안(李震顔)이 상소하여 윤증(尹拯)을 무욕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지난 해부터 김수항(金壽恒)등이 송시열(宋時烈)과 윤증의 사사로운 편지로 옳고 그름을 굳이 정한 뒤에 송시열의 제자들이 윤증에 대한 원한이 뼈 속까지 사무쳐서 온갖 계책으로 중상하였다. 그래서 윤증이 지난 해 그의 아버지 윤선거(尹宣擧)를 위하여 사국(史局)[313]에 보낸 편지 가운데의 한 구절의 말을 가지고 선정신(先正

311) 유생에게 일정기간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는 형벌
312) 임금이 명령을 적어서 승지(承旨)에게 전하는 문서
313) 사관(史官)이 사초(史草)를 꾸미는 곳

臣)[314] 인 이이(李珥)를 무욕하였다고 하니 이진안이 때를 골라 상소를 올린 것이다. 윤증의 편지는 진실로 실언한 것이지만 그의 뜻이 어찌 이이를 무욕하는 데에 있었겠는가? 다만 이를 빙자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려고 한 것뿐이다. 그러나 윤선거가 강도(江都)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일은 비록 반드시 죽어야 할 의리는 없었다 하더라도 김익겸(金益兼)과 권순장(權順長) 등이 자기 몸을 죽여서 어진 것을 이루었던 일에 견주어 보면 끝내 서운함이 없을 수 없었다. 그러기에 그 뒤에 그가 자처한 것과 학문의 공은 끝내 속일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윤증은 어버이를 나타내려는 효심으로 반드시 처음 절개와 지조까지 순수하여 하자가 없는 데로 돌리려 하였으므로 이것이 당파 무리들에게 구실을 대주어서 나중에 시끄러운 사단을 불러오게 되었으니 진실로 애석한 일이다. 그러나 윤증이 이미 송시열을 배반하였고 송시열은 사람을 물어뜯기 좋아하니 설사 윤증에게 이러한 말이 없었더라도 어찌 그가 독하게 쏘는 것을 면하였겠는가? 아! 송시열은 어찌 그리 심하게 하였는가? 〈숙종실록 보궐정오 권 16 엽1〉

□ 숙종(肅宗) 11년(1685) 2월 6일 병신

정거(停擧)[315]된 이진안(李震顔)을 사관(史官)의 직위에서 파면시켰으니 이는 영상(領相) 김수항(金壽恒)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이에 앞서서 『현종실록(顯宗實錄)』을 개수할 때 이단하(李端夏)가 사람을 시켜 '윤선거(尹宣擧)가 강화도(江華島)에서 도망한 일의 전후를 그 아들 윤증(尹拯)에게 물었더니 윤증이 이에 이이(李珥)가 산에 들어갔다는 비방을 끌어다가 증거를 대었는데 그 편지에 말하기를 "이제 강화도의 일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헐뜯는 이가 있으니 이는 곧 이이의 이망색비(以妄塞悲)[316] 상소를 가리켜 자신의 도리를 다했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나 이이는 산에 들어갔던 잘못은 있었지마는 돌아

314) 앞 시대의 어진 신하

315) 유생에게 일정기간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는 형벌

316) 젊어서 불교에 귀의하였다고 탄핵을 받은 이이(李珥)가 사직상소에서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허망된 것으로 슬픔을 막으려고 마침내 불교에 빠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을 다 쏟아도 더러움을 씻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한 것을 말함

가신 우리 아버지에게는 처음부터 죽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하였다.
참판(參判) 이선(李選)이 그 편지를 간직하여 두었다가 이 때에 와서 처음으로 내놓았다. 윤증을 좋지않게 여기는 자들이 이를 가지고 이이를 무욕한 것이라고 여기어 학유(學儒) 김성대(金盛大) 등을 시켜 전국에 통문을 돌리니 경기도와 충청도의 귀신같은 무리들이 다투어 덩달아 지지하는 의견들을 말하였다. 옥천(沃川)의 금명하(琴鳴夏)와 보은(報恩)의 이명익(李命益) 등이 서로 잇달아 글을 올려 윤선거(尹宣擧)를 나쁘게 욕하는 것이 김성대(金盛大)보다 더 심하자 대교(待敎) 김홍복(金洪福) 심권(沈權)과 검열(檢閱) 유상재(柳尙載) 등이 통문을 돌려 김성대를 정거시켰었다. 그러한지 며칠이 지나서 이진안의 상소가 뒤를 이어 나왔는데 승지(承旨) 윤이도(尹以道) 등이 이를 임금에게 올리면서 변명하여 설명한 것이 분명하였다.
임금의 대답이 처음에는 매우 엄하게 물리쳤으나 김수항이 뒤따라 임금을 만날 때 뒤따라 들어와서 이진안을 위하여 자세히 설명한 것이 매우 힘차서 마침내는 정거한 것을 풀게 하였다. 벼슬하기 전의 일을 조정에까지 끌어올려서 사관(史官)을 처벌하라고 청하고 집안끼리의 일이 조정에까지 올라왔으니 이는 과연 누구의 허물인가? 아! 통탄할 일이다. 〈숙종실록 보궐정오 권16 엽1〉

□ 숙종(肅宗) 12년(1686) 6월 11일 계해

공홍도(公洪道)에 5월28일 밤에 비가 많이 내려서 평지가 바다를 이루고 회인(懷仁) 등의 여덟 고을의 가옥이 산사태로 묻히고 물에 떠내려 가다가 죽은 사람이 50여명이라고 보고하니 임금이 이재민 을 구휼하는 규정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숙종실록 권17 엽28〉

□ 숙종(肅宗) 12년(1686) 10월 5일 병진

회인현감(懷仁縣監) 최신(崔愼)이 상소하여 재해를 입은 고을의 참혹한 정상을 상세히 진술하고 여러 해의 각종 신포(身布)[317]를 감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비변사(備邊司)에서 다시 아뢰기를 “회인현 이 입은 재해는

317) 부역(賦役) 대신으로 바치는 무명이나 베

참혹하기가 충청도에서 가장 심합니다. 현감의 상소만 그러할 뿐만이 아니라 듣고 본 것으로 참작하더라도 그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별도의 구휼책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술년[318] 전라도 운봉현(雲峰縣)의 예에 의거하여 회인현의 여러 가지 신역을 일체 탕감해 주고 기병(騎兵) 보병(步兵)에 대한 과거의 신포(身布)[319]를 거두지 못한 것도 모두 탕감해 주는 한편 금년 것도 당분간 미루어 두고 한 필을 감봉하고 충청감사(忠淸監司)로 하여금 별도로 구제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숙종실록 권17 엽45〉

□ 숙종(肅宗) 20년(1694) 8월 6일 신축

충청도 유학(儒學) 윤채(尹寀) 등이 송시열(宋時烈)을 회덕(懷德)의 숭현서원(崇賢書院), 옥천(沃川)의 창주서원(滄洲書院), 보은(報恩) 의 상현서원(象賢書院)[320] 등에 배향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예조(禮曹)에서 아뢰어 처리하도록 명했다. 〈숙종실록 권27 엽33〉

□ 숙종(肅宗) 27년(1701) 9월 17일 신축

충청도 보은현(報恩縣)에 지진이 발생하였다. 〈숙종실록 권35 엽 11〉

□ 숙종(肅宗) 27년(1701) 10월 23일 병자

충청도 옥천(沃川) 회인(懷仁) 고을에 이달 15일에 천둥이 울렸다. 이어서 우박이 내렸는데 그 크기가 새알만 하였다. 〈숙종실록 권35 엽65〉

□ 숙종(肅宗) 29년(1703) 1월 6일 임자

시강관(侍講官) 권상유(權尙游)가 아뢰기를 "병오년(丙午年)[321] 무렵 보은(報恩)에 사는 선비 이환(李換)의 집에 명화적(明火賊)[322] 이 밤을 이

317) 부역(賦役) 대신으로 바치는 무명이나 베
318) 중종(中宗) 8년(1682)
319) 부역(賦役) 대신으로 바치는 무명이나 베
320) 광해군(光海君) 2년(1610)에 삼년산성 안에 세운 충암(冲庵) 김정(金淨), 대곡(大谷) 성운(成運)을 봉안한 삼년성서원(三年城書院)을 사액한 이름. 광해군(光海君) 4년(1612) 보은 장안면 서원리로 옮김
321) 현종(顯宗) 7년(1666)

용하여 갑자기 뛰어들어 왔는데 이환은 마침 잠을 자고 세 아들 이창경(李昌慶) 이명경(李鳴慶) 이원경(李元慶)은 20세거나 겨우 15세였는데 곁에서 글을 읽다가 도적이 바로 그 아버지에게 가는 것을 보고 이창경 등이 몸으로 아버지를 덮어 가로막으며 흉악한 칼날 아래 죽음으로 싸우다가 상처를 입고 거의 죽게 되었으나 이환은 아무런 탈이 없었습니다. 그 때의 충청감사(忠淸監司)가 이를 보고하니 현종(顯宗)께서 특별히 정려(旌閭)를 허락하시고 또 관직을 주도록 명하셨습니다.[323]

예조(禮曹)에서 세 사람이 모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관직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 30여년이 지난 지금 이창경과 이명경은 이미 죽었고 홀로 이원경만 살아 있으나 아직까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또 정려하는 일도 비록 명령은 있었으나 이창경 등이 겸손하고 사양하여 그들 생전에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했으니 그 뜻도 칭찬 할만합니다. 이원경에게 빨리 관직을 주시고 죽은 이창경 이명경 에게도 관직을 추증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허락하였다. 이원경은 관직을 받아 나중에 옥과현감(玉果縣監)에 이르렀다. 〈숙종실록 권38 엽1〉

□ 숙종(肅宗) 35년(1709) 12월 16일 임자

청주(淸州) 청천(靑川) 강물이 말랐다. 청천 강물은 곧 속리산(俗離山)의 하류이자 달천(達川)의 상류로 물의 발원지가 멀어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는데 이 날은 5리가량이나 물이 말랐다. 〈숙종실록 권47 엽50〉

□ 숙종(肅宗) 39년(1713) 5월 26일 임인

지평(持平) 권엽(權熀)이 사직상소를 내면서 편안도 백성들의 폐해와 최근의 일을 겸하여 아뢰고 끝머리에 관원의 허물을 탄핵하기를

"무주부사(茂朱府使) 한배하(韓配夏)는 일찍이 충청감사(忠淸監司) 로 있을 때 법을 어긴 일이 많았고 사헌부(司憲府)로 부임하고 나서는 고을 기생들을 많이 데리고 금지된 고기 등을 가득 싣고서 멀리 속리산(俗離山)으로 유람하는 행차를 하였습니다. 전임 충청 감사를 빙자해 역마를 징

322) 떼를 지어 돌아다니는 강도
323) 현종(顯宗) 7년(1666) 1월7일

발시켜 악기와 기생을 싣고서 산골집에 오랫동안 머물며 음식과 거마를 여러 고을에 요구하였습니다. 방자하여 꺼리는 바가 없었으니 마땅히 그 죄를 물어 조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한배하는 파직시키는 것이 옳다" 하였다. 〈숙종실록 권53 엽41-42〉

□ 숙종(肅宗) 41년(1715) 4월 14일 기묘

충청도 보은현(報恩縣)에 지진이 발생하였다. 〈숙종실록 권56 엽3〉

□ 숙종(肅宗) 45년(1719) 11월 10일 무인

보은(報恩)의 유학(幼學) 구이극(具爾極)을 효행으로 정려하였다.[324] 〈숙종실록 권64 엽〉

□ 경종(景宗) 1년(1721) 4월 30일 경신

집의(執義) 임형(任泂)이 상소를 올렸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지방의 인심을 수습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놀라게 하는 것은 석성현감(石城縣監)이 돌팔매질로 곤욕을 당한 것과 회인현감(懷仁縣監)이 멱살을 잡혀 질질 끌려다니는 모욕을 당한 것과 태인(泰仁)의 관아 문앞에 모여 통곡한 변고와 낙안현감(樂安縣監)이 구타를 당한 일입니다.

난동을 부리는 백성을 가르쳐서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가로 막는 폐단이 이처럼 조짐이 나타났는데도 두 도의 감사(監司)는 즉시 보고하지 않고 대충 조사관을 보내 심문만 하였으며 난동을 일으킨 자는 극형을 피하였으니 오늘의 인심이 흉악하고 교활한 자가 극형을 면하는 것을 본다면 장차 무엇이 두려우며 감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두 도의 감사로 하여금 그 주범을 찾아내어 관아의 문에 베인 목을 메달고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각 도에 알리도록 명령하고 앞으로 이런 변괴가 있으면 즉시 임금에게 보고하여 엄중히 징벌로 다스림을 강화하게 하소서."하였다.

임금이 대답하기를 "수령들이 봉변을 당한 것을 기강이 무너졌기 때문이

324) 구이극(具爾極)의 효자각은 지금 보은군 산외면 아시리에 있음.

라고는 하지만 군수(郡守)나 현감(縣監)을 적임자로 임명한 다면 도적이 선량한 백성으로 변한 일은 옛 역사에 환하게 기록되 어 있다. 지금은 어진 관리를 뽑아 고을을 잘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주범의 목을 베어 매달라고 하는 것은 과중한 듯 하다." 하였다. 〈경종실록 권3 엽18〉

■ 경종(景宗) 1년(1721) 6월 5일 을미

임금이 대신과 비변사(備邊司)의 당상관(堂上官)을 불러 만났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나라의 기강이 풀어지니백성들의 습성도 흉악해져서 고을 수령에게 욕을 보임이 다만 태인(泰仁)과 회인(懷仁) 두 고을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영천(榮川)에도 이런 변고가 생겼는데 그 곳 토백이인 이태익(李台翊) 이무익(李茂翊) 등이 한 고을에 통문(通文)을 돌려 조곡(租穀)을 받치지 못하게 하고 건달들을 이끌고 몽둥이를 갖고서 창고마당에 갑자기 뛰어들기도 하며 향소(鄕所)[325]의 직원을 쫓아냈다 합니다. 현감이 감영(監營)에 보고하여 바야흐로 법인을 수색 중이라 합니다.

대개 재판에서 패소한 원한을 품고 그랬다고는 하지만 태인이나 회인 두 고을 백성들의 죄질에 비한다면 훨씬 심한 점이 있습니다. 비록 목을 베는 법률을 적용한다 하여도 조금도 지나칠 것이 없으니 청컨대 감사(監司)에게 경고하여 기어코 잡아서 각별히 중죄로 다스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경종실록 권4 엽5〉

■ 경종(景宗) 2년(1722) 3월 27일 임자

목호룡(睦虎龍)이란 자가 변란을 고발하기를 "역적으로서 전하를 해치려는 자가 있는데 칼로 혹은 독약으로 살해한다고 하며 또는 임금의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모의한다고 합니다. 나라가 생긴 이래 없었던 역적입니다. 청컨대 급히 역적을 토벌하여 종묘사직(宗廟社稷)[326] 을 안정시키소서." 하였다. 〈경종실록 권6 엽16〉

325) 수령의 자문기관인 유향소(留鄕所)의 준말
326) 본래는 종묘와 사직을 말하나, 여기서는 나라를 뜻함

□ 경종(景宗) 2년(1722) 8월 5일 무오

국청(鞫廳)[327]에서 심문을 받던 죄인 이상건(李尙建)이 죽었다. 이 상건은 곧 백운산인(白雲山人) 이태화(李泰華)라고 일컫는 자이다.

처음에 목호룡(睦虎龍)이 진술한 말에 이르기를 "하루는 가랑비가 내리는데 어떤 사람이 문 밖에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속리산(俗離山)의 석굴 가운데에서 왔다.'고 하므로 나가 보았더니 이태화였는데 스스로 둔갑술(遁甲術)[328]에 능숙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뒤에 정인중(鄭麟重)이 은화를 내지 못하여 여러 도적이 찾아나섰으나 별다른 계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태화를 불러 요술로 은화를 만들도록 하니 말하기를 '귀신을 불러 은화를 얻으려면 관청의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홍의인(洪義人)이 선공감(繕工監) 봉사(奉事)로 있어 마침 선공감 도장을 그의 집에 갖고 있어 두꺼운 종이에 10여장에 도장을 찍어 주었더니 이태화가 그것으로 호조(戶曹)의 둔전별장첩(屯田別將帖)[329]을 위조하여 철원(鐵原)에서 팔아 먹었습니다. 그 곳 수령이 그 도장을 알아보고 그 별장(別將)을 잡아 가두고 이태화(李泰華)를 급히 찾으니 이태화가 크게 두려워한 나머지 도망하여 사실을 홍의인(洪義人)에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홍의인이 수령에게 편지를 보내어 무사하게 되었으니 요술로 은화를 모으는 일은 한 바탕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였다. 〈경종실록 권9 엽8〉

□ 경종(景宗) 2년(1722) 12월 1일 임자

"충청도 보은현(報恩縣)에 사는 권홍(權泓)의 아내 김씨(金氏)는 집에 불이 났을 때 10여세 된 딸이 미처 피하여 나오지 못하자 김씨가 그 딸을 구출하기 위해 불 속으로 들어가니 22살 된 큰 딸과 20살 된 아들 권계풍(權啓豊)도 어머니를 뒤따라 불 속으로 들어갔다가 모두 불에 타 죽었습니다."라고 충청감사(忠淸監司)가 보고하니 임금이 이재민을 구휼하는

327) 역적(逆賊)을 심문하는 곳
328) 귀신을 부리어 변신하는 술법
329) 군사적 요충지에 상주하여 군량을 생산하는 둔전(屯田)을 관리하는 별장(別將)의 사령장

규정을 시행하고 정문을 세워 포상을 더하게 하였다. 〈경종실록 권10 엽 30-31〉

□ 경종(景宗) 2년(1722) 12월 18일 기사

충청도 회인현(懷仁縣)에 지진이 발생하였다. 〈경종실록 권10 엽 38〉

□ 경종(景宗) 3년(1723) 7월20일 정유

이 가을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홍수가 났다. 충청도 문의(文義) 회인(懷仁) 청주(淸州) 단양(丹陽) 영춘(永春) 공주(公州) 고을에서 가옥 1천여호가 떠내려 갔고 물에 빠져죽은 사람이 수천명이다. 〈경종실록 권13 엽3〉

□ 영조(英祖) 1년(1725) 6월 16일 임오

회인(懷仁) 진잠(鎭岑) 음성(陰城) 문의(文義) 석성(石城) 다섯 고을을 그대로 두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충청감사(忠淸監司) 송인명(宋寅明)이 아뢰기를 "이 다섯 고을에 군액(軍額)[330]은 많고 백성은 적어서 온 고을이 거의 텅 비어 버릴 폐단이 있으니 고을을 개혁하소서."한 바 있는데 이때에 이르러 충청감사(忠淸監司) 홍호인(洪好人)이 다시 아뢰기를 "이미 설치된 고을을 갑자기 폐지할 수는 없으니 군액만 다른 고을로 옮겨 배정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조실록 권6 엽32〉

□ 영조(英祖) 2년(1726) 1월 24일 정사

지평(持平) 이근(李根)과 한계진(韓啓震) 등이 아뢰기를

"보은현감(報恩縣監) 정윤선(鄭潤先)은 문경(聞慶) 땅에 큰 농장을차지하여 물자를 실어 옮기고 곡물을 많이 풀어 아전들을 시켜 백성들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붙혀 거두어 들이게 하여 이익을 챙기고 있으니 수령의 자리에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청컨대 감사(監司)로 하여금 심문하여 처벌케 하소서."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영조실록 권9 엽9〉

330) 군인 또는 군인들에게 먹일 식량의 수

□ 영조(英祖) 3년(1727) 6월 12일 정유

사헌부(司憲府)에서 전일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고 또 계사를 올려 아뢰기를 “보은현감(報恩縣監) 김득대(金得大)는 소나무의 도벌을 금지한다고 빙자하여 백성의 널판을 억지로 빼앗았으니 파직하고 앞으로 사면하여 복직시키지 마소서.”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영조실록 권11 엽46〉

■ 영조(英祖) 4년(1728) 3월 15일 을축

역적 이인좌(李麟佐)가 청주성(淸州城)을 함락하고 절도사(節度使) 이봉상(李鳳祥)과 토포사(討捕使) 남연년(南延年)을 죽었다. 이인좌는 자칭 대원수(大元帥)라 하고 권서봉(權瑞鳳)을 청주목사로, 신천영(申天永)을 충청병사로, 박종원(朴宗元)을 청주영장으로 삼아 여러 고을에 격문을 보내 반란군을 불러 모아 이인좌난(李麟佐亂)[331]을 이르켰다. 〈영조실록 권16 엽7〉

■ 영조(英祖) 4년(1728) 3월 24일 갑술

도순무사(都巡撫使) 오명항(吳命恒)이 역적들을 격파하고 반역자의 괴수 이인좌(李麟佐) 등을 잡아 함거(檻車)[332]에 실어 서울로 보냈다. 〈영조실록 권16 엽25〉

□ 영조(英祖) 4년(1728) 3월 26일 병자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직접 심문하였다. 이인좌(李麟佐)를 곤장을 치면서 심문하니 이인좌가 진술하기를 “청주(淸州)에서 변란을 일으킬 때 부원수(副元帥)는 정행민(鄭行旻) 이계윤(李季胤)이 함께 거사하였는데 충청병사(忠淸兵使)는 이배(李培)가 죽였으며 영장(營將)은 목함경(睦涵敬)이 죽였습니다.

권서봉(權瑞鳳)을 청주목사로 삼아 안성(安城)에 왔고 충청병사는 신경제(申慶濟) 손천영(孫天永)으로 정했습니다.

331) 일명 무신난(戊申亂)이라 함
332) 죄인을 호소하는 수레

군사는 양성(陽城)에 있을 때 2초(哨)였는데 지시서를 보내어 병사를 모집했더니 청안현감(淸安縣監)과 진천현감(鎭川縣監)은 도주하고 그 곳 장교가 군사를 이끌고 왔으며 회인현감(懷仁縣監) 역시 도주했는데 장교가 군사 15명을 이끌고 오니 박종원(朴宗元)이 투항하였습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16 엽31〉

■ 영조(英祖) 4년(1728) 3월 27일 정축

여러 관원이 군기시(軍器寺) 앞 길에 차례로 서 있는 그 앞에서 역적의 괴수 이인좌(李麟佐)의 목을 베고 가족과 재산을 법대로 처리 하였다. 〈영조실록 권16 엽34〉

□ 영조(英祖) 4년(1728) 4월 6일 병술

군문(軍門)에서 이인좌난(李麟佐亂) 때 도주한 회인현감(懷仁縣監) 김도응(金道應)과 황간현감(黃澗縣監) 이정휘(李挺徽)를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두라고 명령하였다. 역적의 지시서가 도착하였을 때 고을을 지키지 않고 도주하여 신하의 절개와 지조를 잃었기 때문이다. 〈영조실록 권17 엽7〉

□ 영조(英祖) 4년(1728) 4월 9일 기축

대사헌(大司憲) 이하원(李夏源)이 아뢰기를 “역적의 지시서를 받들어 군사를 이끌고 역적의 진영으로 달려간 죄는 청안(淸安) 진천 (鎭川) 회인(懷仁) 세 고을이 처음부터 똑 같습니다.

그런데 전 진천현감 임상극(林象極)과 전 회인현감(懷仁縣監) 김도 응(金道應)은 모두 반역에 가담한 죄로 처형되었지만 전 청안현감 이정열(李廷說)만은 홀로 죄를 모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을에서 일어난 의병을 자기의 공적으로 가로 챘으니 그 정상이 참으로 절통합니다. 청컨대 전 청안현감 이정열을 임상극 김도응의 예에 의거하여 처형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조사를 시작했으니 결과를 기다려서 조치 하겠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17 엽13〉

□ 영조(英祖) 4년(1728) 4월16일 병신

조세추(曹世樞)를 심문하였다. 조세추는 이인좌(李麟佐)의 외사촌 동생으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는데 충주목사(忠州牧使) 김재로(金在魯)가 체포하여 취조한 다음 서울로 올려 보냈다. 한 차례 고문하면서 심문하니 조세추가 진술하기를,

"2월 13일에 청주반란군의 군관이 이인좌의 집에 와서 '평안병사(平安兵使) 이사성(李思晟)이 사신 이가(李哥)와 함께 올라온다.'고 했는데 그가 사신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명언(李明彦)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평안도의 군대는 호병(胡兵)처럼 꾸며가지고 올라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미(海美)의 영장(營將)이 군대 3천명을 이끌고 올라온다고 했는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신석영(申錫永)은 여주(驪州)에 사는데 우윤(右尹)을 지내다가 귀양가서 죽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과 동작진(銅雀津)에 살다가 문경으로 이사를 간 이세주(李世舟)란 사람도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보은현감(報恩縣監) 조문보(趙文普)가 중들을 이끌고 온다고 했습니다. 이능좌(李能佐)가 가서 권구(權榘)를 만났더니 처음에는 허락했다가 뒤에 등불을 밝히고 앉아서 얼굴을 본 다음에 '형세를 보아 가면서 하자.'고 했고 권덕수(權德修) 김민행(金敏行) 유몽서(柳夢瑞)도 역시 형세를 보아 가면서 하겠다고 하자 이능좌가 화를 내며 유몽서를 꾸짖기를 '유독 우리들만 죽을 곳으로 들어가야 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역적들 가운데는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한 자이고 같이 모의하고서 자신이 아들과 함께 가지 않은 사람은 세 번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같이 모의하고서 자신이 스스로 간 사람은 한 번 생각한 자이고 같이 모의하고서 자기의 아들을 보낸 사람은 세 번 생각한 자입니다. 이는 충주의 의논이요, 경상도의 말이 아닙니다. 반역을 도모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였다. 목을 베어 처형하고 가족과 재산은 법대로 처리하였다. 〈영조실록 권17 엽22-23〉

□ 영조(英祖) 4년(1728) 5월 10일 경신

호서안무사(湖西安撫使) 김재로(金在魯)가 보고하기를 "역적 민백효(閔

百孝)의 종 말종(末從)이 진술하기를 3월17일에 민원보(閔元普)가 밀봉한 서찰 하나를 주면서 말하기를 '보은현감(報恩縣監) 조문보(趙文普)가 괴산(槐山)에 머물러 있으니 이 글을 급히 전하고 답장을 받아 오라'고 하여 괴산에 갔더니 보은현감이 향교동 이생원 집에서 권진사 등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고 답장을 받아 밤에 돌아왔는데 그 때 닭이 울었습니다.

민원보가 답장을 보고 종 만재(萬才)를 데리고 노새를 타고 날이 밝기 전에 괴산으로 달려갔다가 그 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청주 (淸州)에서 패전한 뒤에 불러서 조총을 주며 말하기를 '이 고을의 하인들과 대소관원을 막론하고 불시에 들어오는 자는 다 쏘아 죽이라' 하고 밤낮으로 큰 사랑에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18 엽10-11〉

□ 영조(英祖) 4년(1728) 5월 16알 병인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직접 죄인을 심문하였다. 전 보은 현감(報恩縣監) 조문보(趙文普)를 심문하니 진술하기를 "3월에 돌로 물건을 만드는 일 때문에 음성(陰城)에 갔는데 15일에 소요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관원은 한가한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서둘러 돌아오다가 직산(稷山) 아래에 말마리(秣馬里)에 이르러 이도문(李道聞)의 집에서 말에게 먹이를 준 일은 있으나 민원보(閔元普)의 글은 전한 일은 없고 민원보도 찾아온 일이 없으며 곧바로 관아로 갔으므로 머물러 잔 일도 없습니다. 21일에 차원(差員) 으로서 보은(報恩)을 떠났는데 보은에 있을 때도 종 만재(萬才)가 온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18 엽15〉

□ 영조(英祖) 4년(1728) 5월 16알 병인

이도문(李道聞)을 심문하였다. 이도문이 진술하기를 "3월 16일에는 신이 집 뒷산에서 피란하였는데 18, 19일쯤에 보은현감(報恩縣監) 조문보(趙文普)가 찾아 왔습니다. 각방에서 잤는데 조문보가 아침에 일어나 말하기를 '밤 사이에 조원보(趙元普)의 편지가 왔다.' 하더니 아침밥을 먹을 때에 조원보가 왔습니다. 조문보가 신에게 말하기를 '반역이 막 일어났으므로 이제 관아로 돌아가 군사를 모으려 하나 영장(營將)이 이미 죽었으므로 넘겨 줄 곳이 없다. 이러한데도 군사를 모으면 군사를 일으킨다

는 의심을 받게될 듯하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영문(營門)에서 군사를 징발하기를 기다린 뒤에 동원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조원보의 편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조원보가 온 뒤에 조문보가 군사를 징발하는 일을 물으니 조원보가 말하기를, '그대는 속리산(俗離山)에 피해 있으면서 좌수(座首) 아전(衙前)에게 지시하여 군사를 모으면 병사(兵使) 영장(營將)이 살해될 걱정을 면할 수 있을것이다.' 하니 조문보가 옳게 여겼습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 18 엽15〉

□ 영조(英祖) 5년(1729) 3월 22일 병인

박래익(朴來翊)[333]을 장령(掌令)으로 임명하였다.

□ 영조(英祖) 5년(1729) 4월 6일 경진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당(備堂)[334]을 불러 『서정록(西征錄)』[335]을 올리라고 명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태좌(李台佐)가 아뢰기를 "조정에서 이인좌란(李麟佐亂) 때 공을 세워 상을 준 것이 충분한데도 장교들이 모두 별 도의 공적명단에 들지 못한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으니 포상을 바라는 것이 너무 지나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별도의 공적명단은 갑자년[336]과 경신년[337]의 전례에 따라 만들어 군사들의 불만을 위로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이어 조현명(趙顯命) 이삼(李森) 이수량(李遂良)에게 나가서 초록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들어오라고 명하였다.

이태좌가 초록한 군사들의 공적명단을 올리니 임금이 열람하고 나서 승지(承旨)에게 받아 쓰라고 명하고서 이르기를 .

"회인(懷仁)의 선비 박내익(朴來翊)에게는 정3품 이상의 관직을 주

333) 이인좌난(李麟佐亂) 때 공을 세운 회인의 선비〈영조 5년 4월6일 기사 참조〉
334) 비변사(備邊司)의 정3품 이상의 관원
335) 인조(仁祖) 때 이괄(李适)의 난을 평정한 사실을 기록한 책
336) 숙종(肅宗) 10년(1684)
337) 숙종(肅宗) 26년(1700)

고[338] 보은(報恩)의 관노 이직(李直)과 이인번(李仁蕃) 그리고 보은(報恩)의 출신(出身)[339] 주도흥(周道興)과 한량 박진흥(朴震興) 등에게 등급을 나누어 베를 나누어 주라.“ 하였다. 〈영조실록 권 22 엽2-6〉

□ 영조(英祖) 5년(1729) 10월 1일 임인

사간(司諫) 박필기(朴弼琦)가 상소하기를 “보은(報恩) 땅을 지나가 고 있는데 사자암(獅子庵) 중이 하는 말이 ‘사자암이 원종(元宗)[340]의 원당(願堂)[341]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 절옆에 1칸짜리 누추한 건물에다 신위(神位)를 봉안하고 있는데 불결하고 불경스러움이 이보다 더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상감님 조상의 영혼이 어찌 이런 예가 아닌 제사를 흠양하시겠습니까?

조선왕조에서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여 만고에 빛이 나게 하였는데 이 일 한 가지는 어떤 까닭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착하면 복을 받는 것이 본래의 이치인데 어찌 중들의 축원으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아마도 조정에서 시킨 것이 아닐 것이니 명예를 더럽히고 무례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청감사(忠淸監司)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여 철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일이 매우 놀랍고 해괴하다. 내수사(內需司)로 하여금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24 엽 26〉

□ 영조(英祖) 9년(1733) 3월 19일 경자

영의정(領議政) 심수현(沈壽賢)이 아뢰기를 “보은(報恩)에서 체포한 도적은 보통 절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홍감사(公洪監司) 이형좌 (李衡佐)가 공문으로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해 왔고 또 도적의 조서를 보내 왔는데 그 내용이 매우 놀랍습니다.

이는 보은현(報恩縣)에서 다스릴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단서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국청(鞫廳)[342]을 설치하는 것은 너무 놀래고

338) 박래익은 상직(賞職)으로 이미 장령(掌令)으로 임명된 바 있음.
339) 무과(武科)에 급제하고 임관되지 않은 사람
340) 조선 선조(宣祖)의 다섯째 아들 이부(李琈)을 왕으로 추대한 존호
341) 죽은 사람의 영정(影幀)이나 위패(位牌)를 봉안하고 그 원주(願主)의 명복을 비는 법당(法堂)

시끄러울 것이니 포도청(捕盜廳)에서 잡아다가 다스 리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조실록 권33 엽28〉

□ 영조(英祖) 9년(1733) 3월 19일 경자

풍원군(豊原君) 조현명(趙顯命)이 상소하기를 "대신(大臣)이 보은 (報恩)의 도적을 포도청(捕盜廳)으로 하여금 잡아오게 했는데 신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진술은 갑자기 일어난 변고에 관계된 것이니 조정에서 국청을 차려 다스리는 도리는 의금부(義禁府)에서 당연히 행해야 하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의금부의 도사(都事)를 보내어 주야를 가리지 말고 잡아오게 해야 하는데 도리어 포도청으로 하여금 대신 행하게 함으로써 구차스럽게 무신년[343]의 말단적인 잘못된 전례를 따랐습니다만 신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리하여 의금부로 하여금 즉시 거행하게 하였다. 〈영조실록 권33 엽29〉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1일 임인

임금이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보은의 도적으로 잡혀온 죄인 이 제동(李濟東)의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보은(報恩)사람 이귀흥(李貴興)과 그의 형 이공형(李 公衡) 이인관(李仁寬) 이인기(李仁器) 이인복(李仁福), 이인기의 아들 이둘로미(李老味), 이제동(李濟東) 이현동(李顯東) 김두병(金斗柄) 박진좌(朴震佐) 구준좌(具俊佐) 구이후(具爾垕) 등 10여명이 흉년이 들자 무리를 모아 사람들을 협박하여 강도질을 하려고 했는데 소문이 많이 나자 이공형이 일이 누설될까 두려워하여 자기의 아우 이귀흥을 살해하여 증언할 사람을 없애버렸다.

이 때 마침 김두병이 도둑질을 하다가 보은현(報恩縣)에서 체포되었는데 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그 내용이 탄로가 났다. 그래서 공충감영(公忠監營)에 보고하였는데 공충감사(公忠監司) 이형좌(李衡佐)가 순

342) 중요한 죄인을 심문하기 위하여 임시로 마련한 장소
343) 영조 4년(1728)의 이인좌난(李麟佐亂)

행차 이곳에 왔을 때에 병사(兵使) 윤택정(尹宅鼎) 과 함께 여러 죄수들을 심문하였다.

그 조서에 이르기를 “이귀흥과 이인관의 무리가 장곡서당(獐谷書堂)[344]에 모여 모의했는데 명부에 성명을 나열하여 기록했습니다. 이귀흥의 말이 ‘우리의 동조자가 서원(西原) 황간(黃澗) 영동(永同) 문의(文義) 등지에 있는 자가 1백여명인데 함께 서울로 올라가기로 하였고 무신년의 일[345]처럼 같이 할 것을 약속했다.’ 하였고 또 도원수(都元帥)와 부원수(副元帥)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인관 이귀흥이 지난 겨울 문경(聞慶)의 노동(蘆洞)을 가보고 여기가 도둑질한 물건을 숨길 굴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공충감사 이형좌가 공문을 의정부(議政府)로 보내고 이어 죄수들의 조서를 올렸다. 조정에서는 이것이 보통 도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신(大臣)이 급히 임금을 만나 포도청(捕盜廳)으로 하여금 잡아오게 할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런데 풍원군(豊原君) 조현명(趙顯命)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죄인들의 진술한 말에는 급한 변고이니 마땅히 의금부(義禁府)로 하여 금 시행하게 해야 합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 마침내 국청(鞫廳)[346]을 설치하라는 명령이 있게 되었다.

이제동은 여러 도적들 가운데 가장 간사하고 교활한데다가 문필에도 재능이 있었는데 마침 서울에 와 있었기 때문에 포도청에서 체포하여 먼저 심문하게 된 것이다. 이 날 영의정(領議政) 심수현(沈壽賢), 좌의정(左議政) 서명균(徐命均), 우의정(右議政) 김흥경(金興慶),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김취로(金取魯) 등이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죄를 다스리게 되었다. 〈영조실록 권33 엽29〉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1일 임인

이제동(李濟東)을 심문하기를 “보은현(報恩縣)에서 가두어 놓고 조사한 죄인들의 정상은 충청감사(忠淸監司)와 병사(兵使)가 같이 앉아 엄중히

344) 원문 獐谷書院은 장곡서당(獐谷書堂)의 오자가 분명하여 여기서 바로 잡았음.
장곡서당은 지금의 보은군 보은읍 장속리 노루실에 있었던 서당

345) 영조(英祖) 4년 이인좌난(李麟佐亂)

346) 중요한 죄인을 심문하기 위하여 임시로 마련한 장소

심문한 데에서 다 드러났다.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은밀히 보낸 편지도 수색하여 압수되었다.

그 편지에 이른바 '그 일'은 어떤 일을 가리킨 것이며 '급히 와서 선처하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 있기에 어떻게 선처하라는 것인가? 너의 아우 이태동(李台東)도 이미 진술을 마쳤고 너의 형제가 도적 무리들의 집을 왕래 하였다는 것이 이미 다른 죄수들의 진술에서 확인되었으니 모의한 정상을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라." 하였다.

이제동이 진술하기를 "신이 정월에 선산(善山)에 있는 외삼촌 김주섭(金周燮)의 집에 갔다가 2월 초순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서울에 사는 선비 신흡(申嗡)이 서한을 보내어 알성과(謁聖科)[347]를 보이기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보내왔기 때문에 같은 고항에 사는 일가 붙이 이공형(李公衡)에게 노자돈를 얻어서 서울로 올라왔다가 그저 께 체포되었습니다.

신의 아버지의 편지내용의 '그 일'은 신이 이공형에게 판 조상의 위토(位土) 때문에 일가들이 장차 관아에 고소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 일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신이 같은 고을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이공형과 안흡 (安潝) 두 사람뿐인데 이공형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농토 때문에 소송을 하다가 패소하자 등창이 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임종할 때 아들을 경계하여 신에게 대신 소송하게 하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그 일로 서로 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노비를 추쇄(推刷)[348] 할 일이 있어서 문경(聞慶)에 갔었으나 방색령(防塞令)[349] 때문에 헛되이 되돌아왔습니다. 신의 아우 이태동은 본성을 잃은 부랑배로서 장기와 바둑 그리고 술 먹는 일로 집에 있은 적이 없었으므로 그가 악당들의 집을 내왕한 것은 신은 진실로 모릅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3 엽29-30〉

347) 임금이 문묘(文廟)에 참배한 뒤 성균관(成均館)에서 실시한 과거

348) 부역(賦役)이나 군역(軍役)을 기피한 사람. 또는 자기의 상전(上典)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지방으로 몸을 피한 노비(奴婢) 등을 찾아 내어 본 고장으로 돌려보내는 일

349)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1일 임인

심문관이 다시 이제동(李濟東)에게 묻기를 “다른 도적이 이미 사실대로 말한 진술의 내용을 어찌하여 감히 숨길 수 있겠는가? 너의 아버지의 편지 가운데의 ‘그 일’은 논밭을 매매한 것이라고 핑계대었으나 이것은 네 동생 이태동(李台東)의 진술과 서로 어긋난다. 그것이 매매하였다면 무엇을 숨겨야 될 일이 있어 ‘그 일’이라고 전말을 숨기는 말을 만들어 썼단 말인가?” 하니 이제동이 진술하기를 “신의 아버지는 글자를 모르는데다가 풍병까지 앓고 있는 처지이니 만약 이태동이 대신 쓰지 않았다면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 쓴 것일 것입니다. 필적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공형(李公衡) 등이 만약 도적이 되었다면 그 무리들과 대질시키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공형의 아우 이귀흥(李貴興)은 본디 허랑방탕한 사람으로 신의 아우 이태동과 함께 어울려 노는 사이인데 이귀흥은 상인(喪人)으로서 그 형의 소를 훔쳐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의 종 두화(斗化)가 그일을 퍼뜨렸는데 얼마 안 있어 이귀흥이 죽었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공형이 음해하였다고 했습니다. 마을사람 성이집(成爾潗) 등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태동이 이런 말을 발설했기 때문에 신이 상경하는 길에 이공형을 만나서 물어 보았더니 대답하기를 ‘내 아우는 어느 날 밤 갑작스레 병을 앓다가 마침내 죽기에 이르렀다.’ 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내 아우가 집안의 물건을 훔쳐 낸 것이 수 없이 많은데 심지어는 소까지 훔쳤으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 그리고 너의 아우 이태동도 소를 잡는 일에 참여했다고 한다.’ 했습니다. 이귀흥이 도적질을 했다는 것은 온 고을에 전해진 이야기이고 그의 형도 그 아우를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이태동의 무리가 이귀흥과 서로 친했기 때문에 신의 아버지가 전에 종아리를 때리면서 훈계한 적이 있었습니다. 편지의 ‘그 일’은 아마도 이것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였다.

심문관이 다시 이제동을 심문하기를 “판부(判付)[350] 안에 네가 이 공형과 친하다고 했고 너의 아우 이태동도 이귀흥과 친하다고 했으니 난형난제(難兄難弟)[351]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네 명 가운데 유독 너만 빠졌단

350) 임금이 결재한 보고서

말인가? 형제 사이에는 극악한 경우가 아니면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공형이 이미 도적들과 뜻을 같이했다면 이런 말을 한 것이 또한 매우 모순되는 것이다. 이른바 도적질을 한 것에도 반드시 그 종류가 있을 것이다." 하고 엄중한 형벌을 가하여 사실을 말하도록 문초 하였다.

이제동이 한 차례 고문을 받고 다시 진술하기를 "신이 가서 이공형을 만났을 때 이공형이 말하기를 '내 아우 이귀흥이 나의 망아지를 훔쳐 팔아먹었고 도적들과 엮어져 명부를 만들었다. 누구의 집 에 돈이 있으니 약탈해야 하고 대동미(大同米)[352]가 올라올 때에도 약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뒤에 이공형이 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또 말하기를 '이귀흥이 도적으로 마을사람인 성가(成哥) 송가(宋哥)등 여러 사람들과 작당하여 명부를 만들어 성명을 기록했는데 용천리(龍川里)에 사는 나이 17, 8세 된 이흥득(李興得)이란 사람은 양반의 자손인데 이 사람이 그 명부를 빼앗아 불에 태워버렸다고 한다. 비록 형제 사이이기는 하지만 장차 관아에 고발하려 한다.' 했습니다. 이 때 성이집도 같은 자리에 있다가 그 말을 들었는데 신이 대답하기를 '이는 돈을 훔친 도둑에 불과한 것이다. 관아에 고발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알 바 아니다.' 하니 이공형 이 이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습니다. 도적의 종류로 보면 명화적(明火賊)[353]에 불과합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3 엽30〉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3일 갑진

충청감영(忠淸監營)에서 압송하여 온 죄수 홍원창(洪元昌) 이공형(李公衡) 유후봉(劉厚奉) 이흥득(李興得) 이현동(李顯東) 이인관(李仁寬)을 심문하였다.

심문관이 홍원창을 심문하기를 "네가 이귀흥(李貴興)과 수작하였다는 것은 처음에 이미 충청감영(忠淸監營)에서 진술을 바쳤으니 이 미 이귀흥과 용의주도하게 문답했다면 그 사정을 전혀 몰랐을 리가 없다. 함께 서

351) 형 아우를 구별할 수 없이 친한 사이
352) 납세(納稅)로 바치는 쌀
353) 떼를 지어 돌아다니는 강도

울로 올라오기로 약속한 사람은 누구인가? 무신년[354]에 했던 것처럼 한다는 것은 이미 너무도 흉악하고 참혹스러운 것이었다. 이른바 신참례(新參禮)[355]에는 어떠한 등류의 사람들이 참여하였으며 관아에 고발한 사람인 이돌동(李乭同)의 상전인 임가(任哥)는 그 이름이 과연 무었인가?" 하니 홍원창(洪元昌)이 진술하기를 "신과 이돌동은 임가(任哥)의 보은(報恩)집의 묘직이로 있었는데 지난해 10월 신이 밭도지를 콩으로 받기 위해 이공형의 집에 갔더니 이공형은 그 아버지의 병을 고치려고 다른 집으로 옮겨갔고 이귀흥만이 혼자 빈집에 있었습니다. 그가 울타리 곁에서 신을 불러 말하기를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올라오라고 한다.' 하기에 신이 그에게 어떤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이귀흥이 말하기를 '어쨌든 나와 함께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 소를 끌어내어 같이 잡아서 신참례에 써야 한다.' 했기 때문에 신이 깜짝 놀라서 이돌동을 데리고 임가(任哥)의 집으로 가서 알렸지만 임가의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가의 아버지가 일찍이 보은군수(報恩郡守)를 지낸 적이 있고 또 인천부사(仁川府使)도 역임했는데 지금은 서울에 있으며 아들은 시골에 농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다고 합니다. 임가가 듣고서 마땅히 관아에 고발하여야겠다고 하였습니다. 3일이 지나자 관아에서 과연 신을 체포하였기 때문에 들은 것을 갖추어 낱낱이 관아에 고발했습니다만 무신년의 일[356]은 신이 처음에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신년의 신참례와 같게 한다는 것은 이귀흥의 말에 의하면 군대에도 신참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다시 이흥득(李興得)을 심문하기를 "명부를 불태운 것은 매우 수상 하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던 성명과 그 밖의 내용을 낱낱이 말하여 라." 하니 이흥득이 진술하기를 "신이 일찍이 이귀흥과 서로 친했었기 때문에 연포회(軟泡會)[357]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이 장곡서당(獐谷書堂)[358] 으로 갔

354) 영조 4년(1728)의 이인좌난(李麟佐亂)
355) 새로 들어온 사람이 베푸는 잔치
356) 영조 4년(1728)의 이인좌난(李麟佐亂)
357) 벗들이 모여 꼬챙이에 두부를 꿰여 닭국에 익인 연포를 먹는 놀이
358) 지금의 보은군 내북면 장속리 노루실에 있었음

었는데 연포는 준비하지 않고 술만 사서 같이 마셨습니다. 그 때 이인복(李仁福)과 이귀흥이 함께 좌석에 있었는데 이귀흥이 말하기를 '내가 너와 계(契)를 하고 싶다.' 하기에 거절했더니 이귀흥이 말하기를 '이 계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신이 물어 보았더니 이귀흥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1백여명이 모여 도당을 이루고 있는데 별로 할 일이 없으면 명화 적이 될 수도 있고 많이 모일 경우에는 큰 도적이 될 수 있다. 너의 이름도 우리 명부에 써 넣어야겠다.' 하고 이귀흥이 신의 손을 잡았으며 이인복은 붓대를 잡고 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나는 비록 시골에서 콩서리하는 도둑질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네가 무엇 때문에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기록하는 것인가?' 하니 이귀흥이 말하기를 '우리의 무리는 황간(黃澗) 영동(永同) 청주(淸州) 문의(文義) 등지에 있는데 청주(淸州)의 신필대(申必大) 같은 이도 여기에 들었다. 네가 우리의 수효가 적은 것을 보고 업신여기는 것인가?' 하였습니다. 신이 그 명부를 보니 나열하여 기록된 것이 4, 5명에 불과했는데 앞에 기록한 것은 김두병 (金斗柄) 이인복(李仁福) 이인관(李仁寬)이었고 그 나머지 3명은 신이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알 수 없었는데 하나는 박가(朴哥)였고 또 하나는 구가(具哥)였습니다. 막 쓰려고 할 즈음에 안면이 없는 사람이 마침 들어왔기 때문에 이귀흥이 명부를 소매 속에 숨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흩어져 가버린 뒤에 신이 이귀흥에게 '너의 집에는 부모형제가 있으므로 일이 생길까 두려우니 우리 집에다 숨겼으면 한다.' 했더니 이귀흥이 명부를 신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에 가지고 갔습니다. 다음날 이귀흥이 왔길래 신이 책망하기를 '비록 굶어 죽는한이 있더라도 네가 어떻게 차마 도적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명부는 당초 가지고 올 필요가 없었지만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불태워 버렸다.' 하니 이귀흥이 말하기를,'네가 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둘 것이지 어찌 다른 사람까지 막을 필요가 있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이 일을 이공형에게 말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이런 동생은 죽어도 아까울 것이없다.' 했습니다." 하였다.

유후봉(劉厚奉)에게 심문하기를 "네가 이미 충청감영에서 진술서를 바쳤는데 처음 진술에서는 '약속을 어길까 두려워했다.'고 하였고 두 번째의 진술에서는 '그것이 수상하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전파시켰다.' 했는

데 그 곡절을 낱낱이 말하여라.” 하니 유후봉이 진술하기를 “이인관과 이귀흥이 신의 집에 와서 빚돈을 주겠다고 꾀기에 신이 기뻐서 나갔더니 빚돈을 주는 일이 아니고 곧 저들 무리에 동참하기를 요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문에 신이 놀랍고 두려워서 미처 상세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단지 ‘나 같은 늙은이를 끼워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했습니다. 그 뒤 또 연락하기를 ‘이제 빚돈을 주겠다.’했으나 신은 그것이 수상한 짓인 줄 알고 끝내 가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이공형에게 심문하기를 “충청감영에서 문초할 때 너의 아우 이귀흥이 도적질한 내용은 이흥득과 유후봉의 진술에 상세히 거론되었고 또 너의 진술에 의하면 이인관이 너의 집에 와서 이귀흥과 비밀한 말을 나눌 때 도원수(都元帥) 부원수(副元帥)라는 말을 한 것을 너의 7세 된 아우가 이를 듣고서 너에게 전하여 주었다고 했다. 이인관이 또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초(楚) 한(漢) 때 태어났더라도 마땅히 군졸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했고 또 너의 아우 이귀흥이 이인관과 함께 문경(聞慶)의 노동(蘆洞)에 간 것이 만약 살 곳을 살펴보기 위한 뜻에서 간 것이라면 네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책망하기까지 했겠는가? 너의 진술에 의하면 양반으로서 도적의 무리에 낀 사람이 근 1백명이나 되는데 필시 시골의 도적떼일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귀흥의 시장(屍帳)[359]에는 상처가 낭자하여 피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장본인을 살해하여 증언할 사람을 없애려는 자취가 너무도 명백하여 숨기기가 어렵다. 형제간에 무엇 때문에 살해하였는가? 여러 가지 정상 여지없이 탄로되었으니 사실대로 말하여라.” 하니 이공형이 진실하기를신참례에 대한 이야기는 신이 홍원창(洪元昌)에게서 들었고 군졸 50명을 얻어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한 말은 신이 이현동(李顯東)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귀흥이 매양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신이 그 때마다 단속을 시켰습니다. 이인관이 비밀히 한 말은 신의 7세 된 아우가 들었는데 어린아이가 전한 것은 이와 같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인관과 이귀흥이 문경(聞慶) 노동(蘆洞)에서 왔을 적에 신이 책망하기를 ‘나의 아우는 본디 허랑방탕한 사람인데 네가 무엇 때문에 함께 가서 농지를 샀는가? 또 듣건대 네가 원수(元帥)라는 말을

359) 시체를 검사한 증명서

했다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니 이인관이 말하기를 '나는 말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무리는 만약 초(楚) 한(漢)나라 시대에 태어났더라도 반드시 군졸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책망까지 했다는 일은 신의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부터 이귀흥이 수상한 짓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의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안되어 다시 그전과 같아졌기 때문에 신이 형제의 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시골의 도적떼에 대한 일은 신이 이흥득이 불태운 명단에 대한 말을 듣고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귀흥이 2월 10일에 병을 앓았는데 다음 날에 갑자기 죽었기 때 문에 의혹스럽다는 비방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형제간에 어떻게 차 마 서로 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맞아 죽었다면 또한 어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시장에 상처의 흔적이 있다고 기록된 것은 실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인관에게 심문하기를 "너는 이귀흥의 스승으로서 음흉한 일을 지시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장곡서당에서 모였을 때 너의 아우 이인복이 명부를 썼고 네가 또 함께 노동에 갔었고 또 이공형의 집에 갔었으며 원수(元帥)이니 초(楚) 한(漢)이니 하는 등의 말이 있었다. 이공형의 진술에서도 너와 김두병(金斗炳)이 괴수가 되었다고 했다. 용의주도하게 했던 정황을 낱낱이 말하여라." 하니 이인관이 진술하기를 "신이 이귀흥에게 가르쳐 준 것은 59수(首)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공형이 명화적을 만나 관아에 고발하면서 그 죄를 신에게 돌렸습니다만 신은 실로 억울한 일입니다. 이인복이 명부에 쓴 일은 이귀흥이 죽은 뒤에 이흥득이 비로소 말했습니다. 원수(元帥)이니 초(楚) 한(漢)이니 하는 이야기는 이공형이 물었기 때문에 신이 말하기를 '네가 어디서 들었는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하니 이공형이 말하기를 '어린 아우에게서 들었다.' 했습니다. 유후봉이 어암곡(漁巖谷)에 이르러 성이집(成爾潗)에게 말하기를 '어암곡의 이생(李生)과 이상인(李喪人)이 우리 집에 와서 명화적에 대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이내 크게 전파된 것이다.' 했습니다. 김두병이 도적의 괴수라고 한 일에 대해서는 이공형의집에서 명화적을 당한 뒤로 김두병의 아들 김빈흥(金彬興)이 보은(報恩)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적에 이공형이 그가 명화적임을 밝힐 수 없게 되자 그의 죄를 무겁게 하기 위

하여 시골의 도적떼라고 떠들고 다니데서 연유된 것입니다." 하였다.
김두병에게 심문하기를 "네가 도적의 괴수가 된 것과 이공형의 집에서 도적질을 하고서 증언할 사람을 죽여 없앴다는 이야기들이 이미 이공형의 진술에서 나왔다. 너의 아들 김빈흥이 도둑질한 장물이 포도청에 압수되었다. 이공형이 너에게 묻기를 '수북(水北)수상(水上)의 양반 가운데 도적이 된 자가 많다지?' 하니 너의 얼굴이 붉어졌다고 했다. 이귀흥과 한 패가 된 정황이 모두 탄로가 났으니 너의 뿌리를 모두 사실대로 말하여라." 하니 김두병이 진술하기를 "이공형이 갇혀 있으니 대질시키면 분명히 해명할 수 있습니다. 이공형이 신의 아들을 잡아가지고 놋그릇을 훔쳤다고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이 아이는 이제 막 열병을 앓고 났는데 어떻게 놋그릇을 훔칠 수 있겠는가?' 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고 하는 등의 말은 전혀 근거없는 날조된 말입니다. 저의 뿌리는 대대로 보은(報恩)에 살았고 일찍이 파총(把摠)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하였다. 이현동은 병이 위독하다는 이유로 심문하지 못하였다.
다시 이공형을 심문하니 이공형이 진술하기를 "신의 아우가 서울사람과 서로 약속하기를 무신년[360]과 같이 하자고 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신이 들어 알지 못했던 말입니다. 지난해 5월 무렵에 이귀흥이 신의 말을 훔쳐가지고 도망했는데 서울에서 돌아와서 말하기를 '이번 걸음에 보은에서 상경한 이름도 모르는 구생(具生)의 집에서 하루 먹고 잤으며 또 병사(兵使) 김수(金洙)의 집에서 여러차례 먹고 잤다.'고 했는데 김수는 신에게 8촌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다시 이인관 유후봉 이흥득 홍원창을 심문했으나 앞의 진술과 같았다. 〈영조실록권33 엽31-33〉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4일 을사

고문하면서 심문하였다. 김두병(金斗柄)과 이공형(李公衡)을 대질시키니 이공형이 말하기를 "이귀흥이 날마다 술을 사서 너와 함께 취하도록 마셨으니 네가 어찌 도적의 괴수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귀흥(李貴興)이 우리집의 여러 물건을 훔쳐내어 너와 나누어 먹은 것이 거의 20냥이

360) 영조 4년(1728)의 이인좌난(李麟佐亂)

나 된다."하니 김두병이 말하기를 "설사 너의 말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어찌 도적의 괴수라 하는가?" 하였다.

이공형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만나 묻기를 '근래 수북(水北)의 양반들 가운데 도적이 된 자들이 많다.'고 하니 네가 얼굴을 붉히면서 말하기를, '어찌 수북(水北)에 있는 양반들만 도적이 되었을 뿐이겠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니 김두병이 말하기를 "내가 수북에 살기 때문에 듣기 싫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이공형이 말하기를 "이귀홍 이인관 형제가 소를 훔쳐 술을 사가지고 항상 너의 집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로써 네가 도적의 괴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하니 김두병이 말하기를 "이인복은 내가 본디 모르는 사람이니 너의 말이 허망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네가 늘 너의 누이동생을 박대하면서 그의 음탕한 행동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일찍이 준절히 꾸짖은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네가 항상 나를 살해하려고 했었다." 하였다.

이공형이 말하기를 "마땅히 스스로 변명할 뿐이다. 무엇 때문에 이런 긴요하지 않은 말을 하는가? 네가 우리 집 소를 훔쳐다가 잡아서 도적들의 회합과 사람들을 모으는 데에 쓰려고 했다는 것을 야장(冶匠) 입선(立善)의 아내가 말했는데 네가 어찌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니 김두병이 말하기를 "도적이 회합하는 데 대한 일을 네가 분명히 말하지 못하면 네가 도적이 된다." 하였다.

이공형이 말하기를 "이귀홍이 소를 훔친 것이 어찌 도적들의 회합에 쓰려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니 김두병이 말하기를 "너의 아우가 스스로 소를 잡아서 먹은 일은 과연 있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3 엽33〉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4일 을사

다시 이공형(李公衡)을 심문하니 이공형이 진술하기를 "신의 아우가 보은(報恩) 이인기(李仁基)의 아들 이둘로미(李乭老味)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으니 약속한 일은 이인기 부자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귀홍의 무리로 같은 고을에 사는 양반은 구시화(具時華) 구이후(具爾厚) 구준흥(具俊興) 등인데 신은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한 차례 고문을 가했다. 〈영조실록권33 엽33〉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4일 을사

다시 이인관(李仁寬)을 심문하였다. 곤장 19대를 치니 기절하였다. 〈영조실록 권33 엽33〉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4일 을사

다시 이제동(李濟東)을 심문하기를 "서울 사람과 약속한 일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보은(報恩) 고을에서는 모두 너를 의심하고 있고 이공형의 진술에서도 또한 이귀흥이 너와 함께 동시에 서울로 올라 갔다고 했으니 모의한 자취를 낱낱이 말하여라." 하니 이제동이 진술하기를 "신이 과연 역모할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같은 패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귀흥이 무리를 모은다는 말을 듣고 만나려고 했 으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어 서울로 올라와서 명화적(明火賊)[361]이 된다는 말을 식당주인 구정신(具廷臣)에게 시험삼아 말했더니 구정신이 듣고서는 신을 꾸짖어 쫓아냈습니다. 양근(楊根)의 이호인(李好仁)은 신이 일찍이 모르던 사람인데 무신년[362] 가을 무렵에 만나서 대과(大科)[363]의 정초(正草)[364]를 써 줄 것을 요구했으나 먼저 다른 사람에게 써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써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시험장에서 신이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불러주는것을 보고서 신의 재주가 일을 감당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다음해에 양근(楊根)에 가서 이호인을 방문하고 서한을 청하여 노비를 추쇄(推刷)[365]하게 해 달라고 했더니 이호인이 말하기를 '너의 인품이 아깝다. 하필이면 이런 일에 시달리고 있는가? 만약 나의 말을 따른다면 좋은 시절이 올 때가 오고 그 때 너를 병사(兵使)로 삼겠다.' 하고 또 말하기를 '모쪼록 병서(兵書)를 읽어보고 오라.'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무신년의 일[366]을 가지고 살펴보건대, 그대들의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자 이호인이 말하기를 '무신년에는 천운이 불리했던 까닭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그들

361) 떼를 지어 돌아다니는 강도
362) 영조 4년(1728)
363) 문관(文官)을 선발하는 과거(科擧)
364) 과거(科擧)의 시험지
365) 부역(賦役)이나 군역(軍役)을 기피한 사람. 또는 자기의 상전(上典)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지방으로 몸을 피한 노비(奴婢) 등을 찾아 내어 본 고장으로 돌려보내는 일
366) 영조 4년(1728)의 이인좌난(李麟佐亂)

의 무리와 장수(將帥)에 대해 물어보니 이호인이 말하기를 '장수는 내가 하고 나의 사촌으로 일찍이 선전관(宣傳官)을 역임한 적이 있는 이흥인(李興仁)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신이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귀흥에게 동조자를 모으게 하면서 이호인과 서로 약속한 일을 말하지 않은 것은 서울사람들은 반드시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감히 발설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3 엽33〉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4일 을사

다시 이공형(李公衡)을 신문하니 이공형이 진술하기를 "이귀흥(李貴興)이 서울에 올라가 이제동(李濟東)을 만났더니 이제동이 말하기를 '네가 모쪼록 동조자를 모아서 무신년[367]에 한 것처럼 서로 호응하게 하라.' 했기 때문에 신이 듣고서 크게 놀라 이 사람이 비록 동생이긴 하지만 장차 국가에 화를 끼칠 인물이니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과연 비상을 먹여 독살했습니다." 하였다.〈영조실록 권33 엽33〉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4일 을사

다시 이공형(李公衡)을 심문하였다. 이공형이 진술하기를 "신의 아우가 보은(報恩) 이인기(李仁基)의 아들 이둘로미(李乭老味)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으며 약속한 일은 이인기 부자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귀흥의 무리로 같은 고을에 사는 양반은 구시화(具時華) 구이후(具爾垕) 구준흥(具俊興) 등인데 신은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한차례 곤장을 치면서 심문하였다.〈영조실록 권33 엽33〉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4일 을사

다시 이제동(李濟東)에게 심문하기를 "서울사람과 약속한 일이라는 말은 보은(報恩)의 고을사람들 모두가 너를 의심하고 있고 이공형(李公衡)의 진술에서도 이귀흥이 너와 함께 동시에 서울로 올라갔다고 했으니 모의한 자취를 또한 낱낱이 실토하라."하였다.

이제동이 진술하기를 "신이 반역을 도모할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동조하는

367) 영조 4년(1728)의 이인좌난(李麟佐亂)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귀흥이 동조자를 모은다는 말을 듣고 만나려고 했으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어 서울로 올라와서 명화적(明火賊)[368]이 되겠다는 말을 식당주인 구정신(具廷臣)에게 시험삼아 말했더니 구정신이 듣고서는 신을 꾸짖어 쫓아냈습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3 엽33〉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5알 병오

고문하면서 심문을 행하였다.

다시 이인관(李仁寬)을 심문하면서 곤장 3대를 치니 이인관이 진술하기를 "신이 성이집(成爾潗)의 말을 듣건대 황간(黃澗)에 있는 도적 최(崔)라는 자는 대포를 잘 쏘고 괴수는 청주(淸州)사람 신필대(申必大)라고 하였습니다. 이귀흥(李貴興)이 모은 사람은 모두 50여명인데 그 가운데 서로 만나는 사람은 김두병(金斗柄) 구이후(具爾垕) 이순채(李順采) 등 4, 5인이었습니다. 이항춘(李恒春)이 신에게 말하기를 '나도 무리에 들어갔는데 무리가 많아지면 관아를 약탈할 것이다. 장수는 신필대 김두병 구이후 이순채이다.' 했는데 신은 사환군(使喚軍)에 해당될 뿐입니다. 이귀흥이 신에게 말하기를 '듣건대 이제동(李濟東)의 말에 의하면 이호인(李好仁)이 서울에 가까이 있으면서 도당 1백여 명을 모았다고 한다.' 했는데 시골은 이순채 이귀흥이 주관했습니다. 보은(報恩)에 사는 김형섭(金亨涉) 김유섭(金윤燮)도 신과 함께 의논하여 도당을 모았습니다. 정월에 이공형의 집에서 회합했는데 그 때 마침 심귀령(沈龜齡)이 와서 북경(北京)에 소요가 있다고 전하면서 이어 말하기를, '네가 초(楚) 한(漢) 때에 태어났다면 또한 초관(哨官)[369]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나는 군졸이 되는 일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초 한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도 여기에서 연유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귀령은 한패가 아닙니다." 하였다. 〈영조실록권33 엽34〉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5알 병오

다시 이흥득(李興得)을 심문하니 이흥득이 진술하기를 "명부에 읶는 구

368) 떼를 지어 돌아다니는 강도
369) 군영(軍營)의 종9품의 장교

(具) 박(朴) 3인은 감옥에 있을 때 죄수들을 점고하는 소리를 듣고서 비로소 박진좌(朴震佐) 구준석(具俊碩) 구이후(具爾垕)인 줄 알았습니다. 명부를 불태워 버렸다는 일은 그 자취를 숨기려 했다면 신이 무엇 때문에 이공형(李公衡)에게 언급했겠습니까? 신이 도망간 노비를 추적하여 율지촌(栗枝村)에 갔었는데 그 때 이인관(李仁寬) 김두병(金斗柄)과 만났습니다만 이른바 회의에 대한 일은 전연 몰랐습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3 엽34〉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5알 병오

다시 김두병(金斗柄)을 심문하였다. 한 차례 고문을 가하였는데 진술은 전과 같았다. 〈영조실록 권33 엽34〉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5알 병오

죄인 구이후(具爾垕)를 포도청(捕盜廳)에서 체포하였으므로 구이후를 심문하렸다.

구이후가 진술하기를 "비록 김두병(金斗柄) 이공형(李公衡)과 안면은 있으나 모여서 의논하거나 뜻을 같이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였다.

이흥득(李興得)과 이인관(李仁寬)을 대질시켰는데 이인관이 말하기를 "네가 나와 함께 김두병의 집 앞에서 모여 술을 마시지 않았는가?" 하니 이흥득이 말하기를 "내가 과연 참으로 술을 마셨는가?" 하였다.

이인관이 말하기를 "네가 술을 마실 줄 모르기 때문에 밥을 주었다. 구이후 이귀흥 이순채와 함께 모이지 않았는가?" 하니 이흥득이 말하기를 "내가 김두병의 집 앞에서 너를 만나 죽 한 사발을 얻어먹었지만, 이순채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3 엽34〉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5알 병오

다시 구이후(具爾垕)를 심문하면서 엄포를 놓으니 구이후가 진술하기를 "이인관(李仁寬) 등과는 애당초 안면이 없었기 때문에 대질 시킨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함께 모의했다고 한다면 장차 옥석이 함께 불에 타는 격이 될 것이므로 반드시 공평한 증인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3 엽34〉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5일 병오

다시 김두병(金斗柄)을 심문하였다.

곤장 17대를 치니 김두병이 진술하기를 “일찍이 이귀흥 이공형 이인복 이인동 이제동 이둘로미 이흥득 이현동 등 여러 사람이 장곡서당(獐谷書堂)[370]에 모여 있었는데 이귀흥(李貴興) 이인복(李仁福)이 먼저 말하기를 ‘지금은 무리를 모아 도적질을 하다가 조금 많이 모여진 뒤에는 무신년[371]에 했던 것처럼 하려고 한다.’ 했습니다. 이는 이공형(李公衡)의 형제가 먼저 제안한 의논입니다. 이인복이 또 큰 소리로 말하기를 ‘먼저 전라도 부안(扶安) 땅으로 들어가 무리를 모아 서울로 갈 계획이다. 그리고 부안의 남면(南面) 에 사는 최흥세(崔興世)가 비장(裨將)을 하려고 일을 꾸미다가 되 지 못하자 이제동(李濟東) 등의 무리에 합세하기로 약속하였다.’ 했습니다. 종곡(鍾谷)[372]의 죽은 통제사(統制使)의 손자인 김희능(金喜能)과 그의 육촌인 김희공(金喜功), 같은 마을에 사는 성은 김(金)이고 이름은 옥(玉)자 옆에 담(覃)자를 쓴 사람이 있는데 신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상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모두 모의에 참여 하였으며 이제동은 서울에 머문지 여러 해인데 약속한 사람들이 무신년에 했던 것처럼 하려고 한다 했습니다. 신들은 일이 너무 환히 드러나 체포되기 쉬울까 염려했기 때문에 시급히 이제동에게 편지를 보내어 내려오게 해서 상의하여 선처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3 엽34〉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6일 정미

고문하면서 심문을 행하였다.

이호인(李好仁)을 심문하니 이호인이 진술하기를 “신은 이제동(李濟東)과 두 번 만난 데 불과했습니다. 신이 재혼을 진천(鎭川)의 최제극(崔齊極)의 딸과 하였는데 최제극이 무신년[373] 봄에 재판때문에 도동(桃洞)의 민가에 와서 임시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동이 그 사랑에 있으면서 비리재판을 좋아하는 두서너 사람들과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가 집주인을

370) 원문 長谷書堂은 獐谷書堂의 오자가 분명하여 여기서 바로 잡았음.
371) 영조 4년(1728)의 이인좌난(李麟佐亂)
372)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 북실

통하여 신이 누구라는 말을 듣고 무엇을 요청하려고 하였습니다. 손님들이 그의 글씨를 자랑하는 것 때문에 과거시험장에서 글씨를 써주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요구했더니 그가 도망간 노비를 찾는 일 때문에 당시 전주판관(全州判官) 으로 있던 신의 사촌에게 서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했으나 신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기유년[374] 봄에 이제동이 갑자기 양근(楊 根)으로 찾아왔는데 식전이라 밥은 주지 않고 단지 상대하여 한가한 이야기만 하다가 갔습니다. 그 뒤 5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신이 설령 반역을 도모할 마음을 품었다고 하더라도 어찌 두 번 만난 사람과 모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근래에는 각기 사색당파(四色黨派)[375]가 있어서 설사 이제동의 말과 같다고 할지라도 어찌 신판서(申判書)의 집을 왕래하는 사람과 같이 모의했겠습니까? 이흥인(李興仁)은 바로 신의 팔촌인데 무신년에 회령(會寧)으로 귀양가 있었고 정유년[376]에 한번 만나본 뒤에는 서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인관(李仁寬)은 평생 성명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일찍이 듣건대 이제동의 5촌인 이인기(李仁基)라는 사람이 있어 비리재판을 좋아하였다고 하니 아마도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였다.

구이후(具爾垕)와 이흥득(李興得)을 대질시켰는데 서로 말싸움만 하였을 뿐 확실한 증명이 없었다.

이인관(李仁寬)과 구이후를 면질시키니 구이후가 말하기를 "네가 나를 율지촌(栗枝村)에 갔었다고 했다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가?"하니 이인관이 말하기를 "청주(淸州)의 감옥에 있을 적에 김두병(金斗柄)에게 묻기를, '서울로 끌려가 심문을 당할 경우 나무라고 지적하기도 곤란하고 돌이라고 지적하기도 곤란하다'고 했더니 김두병이 아무아무가 함께 모여 말했다고 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3 엽35〉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6일 정미

이호인(李好仁)을 이제동(李濟東)과 대질시켰다.

373) 영조 4년(1728)
374) 영조 5년(1729)
375) 당쟁을 일삼는 노론(老論) 소론(少論) 남인(南人) 북인(北人)
376) 숙종 43년(1717)

이호인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처가집에서 만났는데 네가 전주(全州)에 보낼 편지를 부탁했으며 이어 과거시험장에서 글씨 쓰는 일 때문에 언급이 있었다. 그 뒤 양근(楊根)에 와서 만났을 때는 안부를 물은 것에 불과했는데 네가 어떻게 차마 남을 모함하는가?” 하니 이제동이 말하기를 “무신년 봄 서로 만났을 때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은 감사(監司)의 아들인데 육촌인 이흥인(李興仁)이 지금 선전관(宣傳官)으로 있다. 앞으로 마땅히 대장(大將)이 될 것이다.’라고 했었다.” 하였다.

이호인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그런 말을 했겠는가?” 하니 이제동이 말하기를 “양근으로 가서 방문했을 적에 내가 ‘네가 대과(大科)[377]를 보려고 하는가?’ 하니 네가 ‘나는 과거에 응시하고 싶지 않다.’고 했었다. 무신년 이후 네가 무엇 때문에 과거를 포기했는가?” 하였다.

이호인이 말하기를 “무신년 가을의 과거에는 내가 이미 응시했으니 내가 어찌 과거를 포기할 뜻이 있었겠는가?” 하니 이제동이 말하기를 “처음 도동(桃洞)에서 만났을 때 네가 ‘이흥인이 마땅히 대장(大將)이 될 것인데 너도 병서(兵書)를 읽는다면 마땅히 추천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였다.

이호인이 말하기를 “초면에 어찌 그런 말을 했겠는가?” 하니 이제동이 말하기를 “양근에 갔을 적에 네가 어찌 나와 함께 자면서 은밀히 말하지 않았는가?” 하였다.

이호인이 말하기를 “네가 어찌 내가 주는 밥을 먹었다는 것인가?” 하니 이제동이 말하기를 “내가 급히 오촌의 집으로 갔기 때문에먹고 자지는 못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흥인이 이미 귀양을 갔으니 관리로 추천되는 일은 틀려 버렸다.’고 하니 네가 나에 게 ‘너는 10년 동안 신가(申家)집에서 글씨 쓰는 노릇을 했지만 지금까지 가난에 시달리고 있으니 어찌 한스러움이 없겠는가? 일이 한번 실패하였더라도 절로 좋은 시절이 한번 올 때가 있게 될 것이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 말로도 네가 역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하였다.

이호인이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이런 허망한 말을 하는가? 너는 모쪼록 나의 무슨 일과 무슨 말이 역적질을 한 정상인지를 말하라.”하니 이제

377) 소과(小科)에 급제한 생원(生員) 진사(進士)가 응시하는 문과(文科)

동이 말하기를 “사람이 진실로 많은데 내가 무엇 때문에 유독 너만을 거론하겠는가?” 하였다.

이호인이 말하기를 “내가 과연 역적이라면 반드시 분명한 증거를 끌어대야 한다. 기유년 이후 네가 나를 만났는가?” 하니 이제동이 말하기를 “만나지 못했다.” 하였다.

이호인이 말하기를 “과연 공모를 같이했다면 5년 동안이나 서로 만나지 못했는가? 병서를 읽으라 했다느니 추천한다느니 하는 등의 말은 너무도 허망한 것이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3 엽35〉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6일 정미

박진좌(朴震佐)를 심문하니 박진좌가 진술하기를 “만일 모임이 있었다면 이흥득(李興得)이 어찌 신의 이름자를 모르겠습니까?” 하였다.

구준석(具俊碩)을 심문하니 구준석이 진술하기를 “신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가난하게 향곡(鄕曲)에서 살고 있었으므로 동리사람도 서로 모르고 지내는 처지인데 20리 밖에 사는 이흥득이 어떻게 신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서당에 모였다는 것은 전혀 허망한 말입니다. 보은현(報恩縣)에 수감되어 있을 때 이흥득이 장방(長房)[378] 에 구속되어 있었으므로 신이 관아의 뜰을 오르내릴 때 훔쳐 보고서 모습으로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3 엽35〉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6일 정미

다시 이인관(李仁寬)을 문초하였다.

곤장 20대를 치니 이인관이 진술하기를 “김형섭(金亨涉) 김유섭(金曺涉) 이순채(李順采) 이항춘(李恒春) 등은 신이 고문을 견딜 수 없어 무고하였습니다만 구이후(具爾垕)의 경우는 역모에 참여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3 엽35〉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6일 정미

구준석(具俊碩)과 이흥득(李興得)을 대질시켰다.

378) 관아에서 서리(胥吏)가 근무하는 방

이흥득이 말하기를 “만약 함께 가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너의 모습을 알고서 관아에 고발했겠는가?” 하니 구준석이 말하기를 “너의 말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가 따져 분명하게 가리고 싶지도 않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3 엽35〉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6일 정미

박진좌(朴震佐)와 이흥득(李興得)을 면질시켰다.
박진좌가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지적하여 고발하지 않았느냐?” 하니 이흥득이 말하기를 “명부 가운데에 비록 너의 이름이 있었으나 내가 글을 하지 못해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습으로 관아에 고발하였다.” 하였다.
박진좌가 말하기를 “모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가 말을 할 수 없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3 엽35〉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6일 정미

구이후(具爾垕)와 이인관(李仁寬)을 대질시켰다.
구이후가 말하기를 “내가 너와 더불어 보은감옥에 함께 있을 때 네가 나에게 무슨 일로 잡혀 왔고 사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와서 갑자기 이런 말을 나에게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이인관이 말하기를 “네가 아무리 무죄를 변명하려 한들 되겠는가?” 하였다.
구이후가 말하기를 “보은감옥에 있을 때 무엇 때문에 나에게 묻기를 ‘그대가 구좌수(具座首)의 아우인가, 형인가?’ 했는가?” 하니 이인관이 말하기를 “내가 본디 너를 알고 있는데 마침 같이 수감되어 있었고 구가(具哥)와 모습이 닮았기 때문에 물었던 것이다. 재작년에 너를 어사대(御史臺) 앞에서 만나 술과 떡을 낭자하게 먹을 때 네가 술을 사다가 나에게 먹이지 않았는가?” 하였다.
구이후가 말하기를 “너를 처음 만났는데 내가 너를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또 무슨 인정이 있어서 길에서 술을 먹이는 짓을 했겠는가?” 하였다.
〈영조실록 권33 엽35-36〉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6일 정미

다시 이제동(李濟東)을 심문하기를 "이호인(李好仁)이 이미 '좋은 시절이 올 때가 있을 것이니 병서(兵書)를 읽으라.' 하는 말이 있었는데 대질할 때 끝내 명백하게 질문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함께 모의했다면 기유년[379] 이후 5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말이 조리에 맞지 않는다." 하고 곤장 네 대를 치니 이제동이 진술하기를 "대질할 때 말하지 않은 것은 신이 죄를 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유년 이후에는 과연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호인이 장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다시 대질시켜 주시면 마땅히 바로 대답하겠습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3 엽36〉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6일 정미

다시 구이후(具爾垕)를 심문하였으나 진술이 전과 같았으므로 한 차례 고문을 가하였다. 〈영조실록 권33 엽36〉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8일 기유

고문하면서 심문을 행하고 이제동(李濟東)과 이호인(李好仁)을 대질시켰다.

이제동이 말하기를 "어제 끝까지 다 말하지 않았던 것은 혹시 조정에서 나를 살려줄까 싶어서 그런 것이고 너를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네가 '나와 함께 일을 하면 어찌 좋은 시절이 올 때가 없겠느냐?'고 어찌 말하지 않았는가?" 하니 이호인이 말하기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말이다.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아는데 무엇을 스스로 폭로시키겠는가? 설령 반역을 모의할 마음을 품었더라도 어찌 충청도 사람과 함께 작당하겠는가?"하였다.

이제동이 말하기를 "내가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 네가 말하기를 '스스로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를 '네가 일을 주관한다면 나도 일을 주관할 수 있다.' 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을 물으니 네가 이흥인(李興仁)을 지적하지 않았는가?" 하니 이호인이 말하기를 "이흥인은 무신년에 멀리 귀양가 있었으니 이것이 과

379) 영조 5년(1729)

연 조리에 맞는 말이겠는가?" 하였다.

이제동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귀양살이에서 풀려났다면 어찌 재상이 되고 대장이 될 날이 없겠는가? 기유년 이후 4, 5년 동안 가서 만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이렇게 하면 내가 역모에 동참했다는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고 너만 반역에 모의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때 내가 큰 일을 어느 시기에 이룰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네가 '10여년 경영한다면 좋은 시절이 올 날이 어찌 없겠는가?'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하니 이호인이 말하기를 "너의 말은 절대로 근거가 없는 것이다." 하였다.

이호인이 또 말하기를 "만일 내가 너와 친밀한 사이라면 식전인데도 왜 밥을 주지 않았겠는가?" 하니 이제동이 말하기를 "점심 때 너에게 가서 한 잔 술을 마셨다." 하였다.

이호인이 말하기를 "과연 막걸리를 구하여 너에게 먹였다." 하니 이제동이 말하기를 "경술년 9 · 10월 무렵에 너를 종현(鍾峴)에서 만났는데 그 때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 물었다." 하였다.

이호인이 말하기를 "그 말은 맹랑하기 짝이 없다. 경술년 4월에는 내가 양근(楊根)에 있으면서 병이 들었다. 따라서 8월 이전에는 서울에 올라간 일이 없었다. 마지막에 반역을 모의하는데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서로 어긋난다. 식전에 와서 만났다는 이야기를 이제 바꾸어 오전이라고 했으니 너의 말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하니 이제동이 말하기를 "네가 처음에 같이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내가 고발할까 염려해서 그랬을 것이다." 하였다.

이호인이 말하기를 "만약 네가 고발할 것을 염려했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동지라고 했겠는가?" 하였다. 〈영조실록 권33 엽36〉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8일 기유

다시 이호인(李好仁)을 심문하기를, "술을 먹인 정상은 스스로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동의 말에 의하면 경술년 9 · 10월 무렵에 종현(鍾峴)에서 만났다는데 너의 말이 8월 이전에는 서울에 올라온 일이 없었다고 했으니 그것이 과연 무죄를 변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되겠는가?" 하니 이호인이 진술하기를 "일찍이 과거보는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술을 사다가 먹여 보낸 것이며 종현에서 서로 만났던 것은 곧 무신년의

과거가 있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경술년 한 해 동안 나는 열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서울에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대질했던 탓으로 정신이 헷갈려서 8월 이전에는 다만 신이 병을 앓느라고 자리에 누워있던 때에 의거하여 말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대답하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3 엽36〉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8일 기유

다시 구이후(具爾垕)를 심문하였으나 진술이 전과 같았으므로 한 차례 고문을 가하였다. 〈영조실록 권33 엽36〉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9일 경술

고문하면서 심문을 행하였다. 이호인(李好仁)을 심문하여 한 차례 고문을 가하였으나 진술이 전과 같았다. 〈영조실록 권33 엽37〉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9일 경술

구이후(具爾垕)를 신문하였는데 진술이 전과 같았으므로 한 차례 고문을 가하였다. 〈영조실록 권33 엽37〉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9일 경술

이공형(李公衡)을 심문하니 이공형이 진술하기를 "이귀흥(李貴興)이 서울에서 내려온 뒤로 이제동(李濟東)의 말을 들으니 서로 약속한 사람은 곧 이호인(李好仁)과 그의 사촌인데 4, 5년만 경영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큰 일은 곧 반역을 말합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3 엽37〉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9일 경술

다시 김두병(金斗柄)을 문초하였으나 진술에 다른 내용이 없었다. 〈영조실록 권33 엽37〉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9일 경술

다시 이제동(李濟東)을 심문하였다.

세 차례 고문하니 이제동이 진술하기를 “이공형(李公衡)이 신에게 말하기를 ‘이귀흥(李貴興)의 말에 의하면 성가(成哥) 송가(宋哥)도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시골에서 명망이 있기 때문에 동조자의 위상을 높히기 위한 계책으로 한 것이다. 나는 형제의 정 때문에 차마 관아에 고발하지 못하겠으니 네가 고발하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동참을 약속한 사람들의 일이란 장통교(長通橋)에 사는 역관(譯官) 김정우(金鼎禹)가 안국동(安國洞)의 신판서(申判書) 집을 왕래했기 때문에 신이 서로 알고 지냈는데 신이 어렵고 군색한 것을 불쌍하게 여겨 나로 하여금 무리를 모아 은전(銀錢)을 약탈하게 하였으며 만일 어려운 때를 만나면 반역을 할 수 있으니 모쪼록 아무튼 무리를 모으라고 했습니다.” 하고 이어 집안의 내력을 진술하였다.〈영조실록 권33 엽37〉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9일 경술

다시 이호인(李好仁)을 심문하여 1차의 고문을 가하였으나 진술은 전과 같았다. 〈영조실록 권33 엽37〉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9일 경술

역관(譯官) 김정우(金鼎禹)를 심문하니 김정우가 진술하기를 “이제동(李濟東)이 와서 말하기를 ‘나에게 북도(北道)의 노비가 있었는데 조정에서 구휼자금에 보충하기 위해 방면하여 종량(從良)[380]시켰으니 이제 진청(賑廳)에 가서 그 돈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겠는가?’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나로서는 그에 대한 계책이 없다.’ 하였습니다. 주고 받은 이야기는 이와 같은 데 지나지 않습니다.” 하였다.
김정우와 이제동을 대질시켰다. 이제동이 말하기를 “네가 나에게 ‘만약 용사를 모아서 은전을 약탈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라도 도모할 수가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니 김정우가 말하기를 “그 때의 주고 받은 이야기는 노비의 일에 불과했을 뿐이다. 내가 비록 역관(譯官)이지만 연경(燕京)에 가는 사신도 따라가지 않고 또 승진도 구하지 않고 있는데 어찌 흉계를 품겠는가?” 하였다.

380) 노비와 천민에게 돈을 받고 양민이 되게 하는 일

이제동이 말하기를 “내가 북도의 노비 때문에 가서 만났을 때 네가 홍감보(洪鑑輔)에게 청탁하겠다고 하였고 그 뒤 너의 아들 김욱 성(金勗成)이 또 정가(鄭哥)에게 청하겠다고 하였다. 신해년[381] 봄에 나의 외가집 사람이 어사(御史) 이흡(李翕)의 행차에 아랫사람으로 말에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가서 청탁한 적이 있었 다.” 하니 김우정이 말하기를 “너는 단지 이흡이 어사가 되었다는 것만 알 뿐 그 날자를 알지 못하니 너의 말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하였다. 〈영조실록 권33 엽37〉

□ 영조(英祖) 9년(1733) 3월 29일 경술

이인관(李仁寬)이 심문을 받다가 죽었다. 〈영조실록 권33 엽37〉

□ 영조(英祖) 9년(1733) 3월 30일 신해

고문하면서 심문을 행하였다.

이인기(李仁器)에게 심문하기를 “너의 아들 이둘로미(李乭老味)가 이귀흥(李貴興)과 함께 서울에 올라가 이귀흥이 너에게 말하기를 ‘이제동(李濟東)의 말이 이호인(李好仁)이란 자가 있는데 서울 근방에서 무리를 모으고 있다고 했다’고 하였다. 너의 부자가 서울과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뜻을 같이하여 도둑질한 실상을 낱낱이 말하여라.”하니 이인기가 진술하기를 “신은 장례원(掌隷院)에 계류된 소송사건이 있어 서울에 머물고 있은 지가 3년이나 되었습니다. 신의 아들이 지난해 봄에 이귀흥의 꾐을 받아 서울로 올라왔기에 신이 준절히 나무란 다음 입고 있던 옷가지를 팔아서 돌아가면서 먹을 양식을 준비하여 보냈습니다. 아들을 곧바로 돌려보낸 일의 상황이 이와 같은데 무슨 의심스런 단서가 있겠습니까? 이제동은 오촌이라 해도 서로 싸운 일이 있어서 10년동안 만나지 않았는데 이 때 갑자기 와서 신을 보고 말하기를, ‘이귀흥 이둘로미가 장차 서울로 올라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무슨 일 때문인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그것을 네가 어떻게 아는가?’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이 지나자 과연 올라왔습니다만 그 사이의 곡절은 신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이 고향으로 내려간 것은 바로 지난해 11월이었고 이호인의 이름은 당초 들

381) 영조 7년(1731)

은 적이 없습니다." 하였다.〈영조실록 권33 엽37〉

□ 영조(英祖) 9년(1733) 3월 30일 신해

죄인 김형섭(金亨涉)의 이름은 형섭(亨燮)이고 김유섭(金㻋涉)의 이름이 유섭(㻋燮)인데 체포되었다.

김형섭과 김유섭을 심문하니 진술하기를 "상현서원(象賢書院)[382]의 원적(院籍)을 고칠 때 이인관(李仁寬)이 '불(不)'자를 김유섭의 이름 아래에 썼기 때문에 신의 7촌이 이인관을 크게 꾸짖었는데 그 때문에 늘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금년 봄에 이인관이 도적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서 집안사람과 동내사람들이 이인관의 이름을 원적(院籍)에서 삭제시켰는데 아마도 이 때문에 원한을 품은 것 같습니다." 하였다.〈영조실록 권33 엽38〉

□ 영조(英祖) 9년(1733) 3월 30일 신해

이제동을 심문하니 이제동이 진술하기를 "신은 역적을 모의했으니 장차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발한 사람 가운데 억울한 사람은 살려주고 죄가 있는 사람은 처벌하소서. 김정우(金鼎禹)는 중인(中人)이고 서로 친했던 사람은 이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무고했습니다." 하였다.〈영조실록 권33 엽38〉

□ 영조(英祖) 9년(1733) 4월 1일 임자

고문하면서 심문을 행하였다. 죄인 장규소(張奎紹) 김희능(金喜能) 김희공(金喜功)이 체포되어 사정을 하소연하니 이제동(李濟東)과 장규소를 대질시키고 이제동과 이공형(李公衡)을 대질시켰다.〈영조실록 권34 엽1〉

□ 영조(英祖) 9년(1733) 4월 1일 임자

다시 이제동(李濟東)을 다섯 차례 곤장을 치면서 심문하였다.

382) 광해군(光海君) 2년(1610) 삼년산성 안에 세운 충암(冲庵) 김정(金淨), 대곡(大谷) 성운(成運)을 봉안한 삼년성서원(三年城書院)을 사액한 이름. 광해군(光海君) 4년(1612) 보은 장안면 서원리로 옮김

이제동이 진술하기를 “반역을 꾀했던 무리는 이시만(李時萬) 이시림(李時霖) 김세옥(金世鈺)과 보은(報恩)에 사는 서울사람 중인中人) 장규소(張奎紹)와 장규소의 사촌처남 김심(金鐔)이었습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4 엽1〉

□ 영조(英祖) 9년(1733) 4월 1일 임자

이인기(李仁器)에게 두 차례 고문하면서 심문하였으나 진술이 전과 같았다.〈영조실록 권34 엽1〉

□ 영조(英祖) 9년(1733) 4월 1일 임자

이순채(李順采)를 심문하니 이순채가 진술하기를 “신이 관군(官軍) 으로 대동(大同)[383]을 독촉할 때 이인관(李仁寬)의 칠촌에게 죄를 받았는데 이번에 신의 아버지가 장교로서 이인관의 무리를 붙잡아들였기 때문에 필시 이 까닭으로 원한을 품고 신을 무함하였을 것입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4 엽1〉

□ 영조(英祖) 9년(1733) 4월 1일 임자

장규소(張奎紹)를 심문하였다.

장규소가 진술하기를 “이제동(李濟東)은 본래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입니다. 신해년[384] 3월 전옥(典獄)에 갇혀 있었는데 아내의 사촌 오빠 김심(金鐔)이 신을 위해 점을 칠 때 이제동을 점장이 집에서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봄에 이제동이 한번 찾아왔기에 도망간 노비를 징계하여 다스리는 일로 이제동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반역을 모의하여 수작했다는 것은 실로 애매합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4 엽1〉

□ 영조(英祖) 9년(1733) 4월 1일 임자

김희능(金喜能)을 국문하니 김희능이 진술하기를 “신은 김두병(金斗柄)의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김두병이 그 어머니를 굶주리게 내버려두

383)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부과하는 무명이나 베
384) 영조 7년(1731)

고 날마다 방탕하게 놀기에 신이 일찍이 꾸짖었고, 변란이 일어난 후에는 신이 마을의 어른으로 한 번도 돌보지 않았다고 하여 김두병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유감스레 여기는 말이 많았다 합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4 엽1〉

□ 영조(英祖) 9년(1733) 4월 1일 임자

김희공(金喜功)을 심문하니 김희공이 진술하기를 "지난해 3월 신이 나무를 벌채해 팔 때 김두병이 목상(木商)을 소개하는 자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신이 한번도 찾아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 때문에 유감을 품었습니다. 또 금년 봄에 집에 있는 곡식 약간을 인근마을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김두병은 이웃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무함을 당한 것입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4 엽1〉

□ 영조(英祖) 9년(1733) 4월 1일 임자

구준석(具俊碩)을 심문하여 한 차례 고문을 가하고 박진좌(朴震佐)를 심문하여 20번의 곤장을 치니 기절하였다. 진술은 모두 전과 같았다. 〈영조실록 권34 엽1〉

□ 영조(英祖) 9년(1733) 4월 1일 임자

영의정(領議政) 심수현(沈壽賢)과 우의정(右議政) 김흥경(金興慶)이 심문관을 인솔하고 대궐로 들어와 아뢰기를 "죄인을 심문하여 사실을 밝히는 일은 마땅히 더 따져서 밝혀야 하겠으나 국청(鞫廳)의 죄수에게 고문을 더하기는 곤란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굶주림으로 무리를 모아 작은 도적질에서 시작하여 큰 역적으로 변하였으니 그 본심은 무신년의 역적[385]과는 같지 않다. 이번 죄인을 다스리는 일은 심하게 우려할 것이 없으나 앞으로 닥쳐 올 걱정이 끝이 없을 것이니 조용히 생각하건대 잘 처리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4 엽 1〉

385) 무신난(戊申亂)을 이르킨 이인좌(李麟佐)

□ 영조(英祖) 9년(1733) 4월 2일 계축

고문하면서 심문을 행하였다.

최세흥(崔世興)을 심문하니 최세흥이 진술하기를 "김두병(金斗柄)과는 본래 알지 못하는 사이고 이제동(李濟東)은 10년전에 만나 본 사람이긴 하나 신은 병든 몸으로 본디 출입을 못하였으니 모여서 모의했다는 말은 천만 애매합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4 엽2〉

□ 영조(英祖) 9년(1733) 4월 2일 계축

김심(金鐔)을 심문하니 김심이 진술하기를 "김두병은 지난해에 처음으로 얼굴을 알았고 이공형(李公衡) 이귀흥(李貴興) 이인복(李仁福)은 모두 본래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4 엽2〉

□ 영조(英祖) 9년(1733) 4월 6일 정사

김두병(金斗柄)이 고문으로 죽었다. 〈영조실록 권34 엽3〉

□ 영조(英祖) 9년(1733) 4월 6일 정사

고문하면서 심문을 행하였다.

이둘로미(李乭老味)를 심문하니 둘로미가 진술하기를 "지난해 이귀흥(李貴興)의 꾐에 빠져 서울에 올라갔는데 신의 아비가 나무랐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내려갔으니 실제로 서울과 시골을 분주하게 다니면서 모의하는 일을 전달한 사실이 없었으며 홍원창(洪元昌)과는 본래 모르는 사이입니다. 이귀흥은 충주(忠州)에 부자가 있어 식량을 빌린다면서 갔고 신은 용인(龍仁)에서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서울 간 것은 이제동(李濟東)의 아버지만 아니라 신의 아버지도 구금을 당한 까닭에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받고 서울을 갔다가 청주(淸州)에 도착하여 보은현 장교에게 붙잡혔습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4 엽3〉

□ 영조(英祖) 9년(1733) 4월 6일 정사

다시 이제동(李濟東)을 심문하기를 "서울사람과 서로 약속했다는 것은 단지 이호인(李好仁)이 말한 것뿐이고 반역을 모의하는 것은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데 이호인의 패거리는 한 사람도 고발하지 않으니 간

악하기 그지없다. 친밀하게 모의할 때 어찌 4년이 되도록 한 번도 서로 접촉함이 없었느냐?" 하니 이제동이 진술하기를 "신은 이호인의 졸개였으니 이호인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기절하여 고문을 중지하였다. 〈영조실록 권34 엽3〉

□ 영조(英祖) 9년(1733) 4월 7일 무오

의금부(義禁府) 지사(知事) 이정제(李廷濟)가 아뢰기를 "보은의 도적 이제동(李濟東)이 서울과 시골에 출몰하여 잘못된 보은(報恩) 사람들이 많았는데 근처에 양반도적이 많다는 말을 11월 대궐에 문안을 드리는 자리에서 훈련대장(訓練大將)이 그 단서를 발설하였고 잇따라 금산(錦山) 등 고을에 무관(武官)으로 임명해 보내라는 뜻을 누누이 말하니 좌의정(左議政)이 인심을 두렵게 할까 염려하 여 다만 옥천(沃川)에만 무관을 군수로 보내고 또 덕유산(德裕山) 이 도망자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포도청(捕盜廳)으로 하여금 호남과 영남의 병영(兵營)에만 공문을 보내어 도망자를 잡아다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신의 좁은 생각으로는 떼를 지어 모인 무리들을 수색해 다 잡을 수는 없는 것이오니 청컨대 백성을 동요케 하지 말라는 뜻을 충청 경상 전라 3도의 감사(監司)에게 지시하여 수령을 경고하여 오로 지 백성들이 안심하고 정착생활하는데 힘쓰도록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건의한 내용이 참 좋다. 수령을 가려서 임명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4 엽3〉

□ 영조(英祖) 9년(1733) 4월 10일 신유

고문하면서 심문을 행하였다.

죄인 이제동(李濟東)은 일곱 차례나 고문하였으나 불복하였다. 이 둘로미(李乭老味)도 한 차례 고문하였는데 불복하였고 이공형(李公衡)을 세 차례 고문하니 진술를 바쳤다.〈영조실록 권34 엽3〉

□ 영조(英祖) 9년(1733) 4월 16일 정묘

심문을 계속하여 죄인 이공형(李公衡)을 세 차례 고문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구이후(具爾垕) 박진좌(朴震佐) 이인기(李仁器) 이호인(李好仁)을 다시 심문하였다.

이제동(李濟東)이 진술하기를 "이호인과는 본래 혐의나 원한이 없었는데 신이 고문을 이기지 못하여 무고하였습니다. 이호인은 남인(南人)이 그의 말을 쉽게 믿는 까닭에 끌어들여 말하였습니다. 김정우(金鼎禹)는 중인(中人)입니다. 중인 중에는 단지 김정우만 알기 때문에 무고했습니다. 장규소(張奎紹)는 서울사람인데 늘 왕래 할 때 식사를 자주 하면서 서로 안 까닭에 무고했습니다." 하였다.

국청(鞫廳)[386]의 대신(大臣) 이하가 급히 임금을 만나 영의정(領議政) 심수현(沈壽賢)이 아뢰기를 "죄인을 심문한 조서는 이미 왕세자의 열람을 거쳤으나 사건은 끝내 그 실정을 알아 내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우의정 김흥경(金興慶)이 아뢰기를 "이번 사건의 중요한 점은 서울 사람과 서로 약속하고 올라왔다는 말에 있기 때문에 비록 국청은 설치하였으나 처음부터 군사를 일으켜 대궐을 침범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동은 요사하고 간악하여 앞뒤에 걸쳐 수없이 거짓을 약속하였고 이호인과 이공형의 모든 실상은 여러 번 고문한 끝에 무고한 것으로 진술하여 사건의 내용이 의혹스럽고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당초에 무신년의 일[387]의 난과 같다는 말 때문에 국청을 설치하기에 이르렀으나 심문한 내용을 보건대 결실이 없을 듯하다." 하였다.

영의정 심수현이 다시 아뢰기를 "이번 일에 무신년과 서울사람 등의 말만 없었다면 하나의 명화적(明火賊)[388]에 불과한 사건입니 다." 하고 또 의금부(義禁府) 판사(判事) 송인명(宋寅明)이 아뢰기를 "이제동이 본디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결말이 날 기약이 없고 또 보은(報恩)의 도적으로 말하더라도 반드시 서로 얽혀 모인 자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또 정언(正言) 안상휘(安相徽)가 아뢰기를 "이제동이 비록 흉악하더라도 무신년 운운한 것은 곧 모반을 도모한 것입니다. 이호인의 일은 늘 말하기를 '부하 졸병이다.'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무고했다고 말을 하니 진실

386) 중요한 죄인을 심문하기 위하여 임시로 마련한 장소
387) 영조 4년(1728)의 이인좌(李麟佐)

로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고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야만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 국청은 체면을 손상한 것이 많다. 매일 역모한 죄인으로 심문하여 조서를 써오다가 이제 갑자기 사람을 속인 무고죄로 사형을 시킨다면 서울과 지방에서 보고 듣는 자가 반드시 놀랄 것이다. 마땅히 다시 엄하게 신문해야 하겠는데 세상의 도의가 괴상한 탓인지 어찌 오늘날에 다시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는가?"하였다. 〈영조실록 권34 엽4〉

□ 영조(英祖) 9년(1733) 4월 16일 정묘

임금이 죄인을 심문한 대신과 관원을 불러 만났다. 영의정(領議政) 심수현(沈壽賢)이 말하기를 "이제동(李濟東)을 오늘 사형을 결정하였는데 그것은 이미 반역을 모의했다고 승복하였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무고로 모함했다고 자백했으니 그 말의 성실함이 없음이 이와 같습니다. 극형을 가하는 것은 살피지 못한 우려가 있을 듯합니다."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제 입으로 말하기를 마음 속으로 무신년의 반역을 본받았다고 했으니 곧 이것이 반역이다. 극형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할 것이 없겠으나 그 근거가 나타나지 않아서 군사를 일으켜 대궐을 침범하려는 역적과는 차이가 있으니 참작하여 형벌을 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여러 신하들에게 묻고 난 뒤에 임금이 다시 이르기를 "역적으로 다스리는 형벌은 너무 무거우니 '임금에 대한 도리를 어겨 무함하고 여러 사람을 죽음에 빠뜨렸다'는 죄명으로 형벌을 적용하되 사형은 그의 한 몸에만 그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심수현이 말하기를 "그 나머니 죄인 중에 박진좌(朴震佐) 이귀흥 (李貴興) 이공형(李公衡) 이둘로미(李乭老味)는 도적이고 역적이 아니니 포도청(捕盜廳)으로 이관시켜 처벌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홍원창(洪元昌) 같은 자는 무고가 명백하니 곧바로 석방하는 것 이 좋겠습니다."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여러 죄수 중에서 무고로 끌려온 자가 어찌 홍원창에만 그치겠는가? 이호인(李好仁) 김정우(金鼎禹) 장규소(張奎紹) 이순채

388) 떼를 지어 돌아다니는 강도

(李順采) 김형섭(金亨燮) 김유섭(金胄燮) 등 7인도 곧바로 석방하고 그 나머지 죄인들은 모두 포도청으로 이송하여 안옥대신(按獄大臣)에게 결제를 받아 처벌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4 엽6〉

□ 영조(英祖) 9년(1733) 4월 18일 기사

국청에서 심문을 받아온 죄인 이제동(李濟東)에게 사람을 죽음에 빠뜨리게 하려고 무고한 죄로 사형을 언도하였다.

그 판결문에 이르기를 "흉악한 계획은 경술년[389] 봄에 있었으나 당초에야 어찌 감히 전하를 해칠 계획을 했겠습니까? 무리가 점차 많아지면서 두서너 고을을 공략하고 이어서 전하를 해치려고 하였 습니다. 그러나 무신년[390] 여러 역적들의 마음을 생각하거나 그리워하는 뜻은 두지 않았으며 단지 무리를 모아 군사를 일으킨 것이 무신년의 일과 같은 데 불과하였습니다. 이귀흥(李貴興)은 한낱 용렬한 사람이니 어떻게 먼저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음에 빠뜨리게 하려고 모함한 것인데 흉악한 마음을 지녔으나 미쳐 무리를 모으기 전에 발각되어 붙들렸으므로 지적하여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까닭에 티없는 사람을 감히 무고했던 것입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4 엽6〉

□ 영조(英祖) 9년(1733) 4월 20일 신미

사헌부(司憲府)에서 앞서 아뢴 것을 거듭 아뢰고 또 아뢰기를 "국청(鞫廳)에서 다룬 죄인 이제동(李濟東)의 진술에 관련된 여러 죄 수들을 전부 석방해서는 안될 것이니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진실을 밝히게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영조실록 권34 엽8〉

□ 영조(英祖) 9년(1733) 6월 4일 계축

고문을 하면서 최두징(崔斗徵)[391]을 심문하니 승복하지 않으므로 신필대

389) 영조 6년(1730)
390) 영조 4년(1728)
391) 최두징(崔斗徵)은 남원(南原)의 괘서사건(掛書事件)으로 구속된 죄인

(申必大)를 심문하였다.

처음에 신필대는 보은 이제동(李濟東)의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자인데 도적의 무리를 모두 포도청(捕盜廳)으로 옮긴 뒤에 신필대를 잡아다가 엄하게 고문하면서 비로소 무신년 이인좌(李麟佐)의 역모에 가담하였다가 도망하여 숨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신필대에게 신문하기를 "안성(安城)에서 도적을 따라갔던 정황과 보은(報恩)에서 무리를 모았던 일을 이미 포도청(捕盜廳)에서 승복하였으니 거기에 대한 정상을 일일이 똑바로 말하라."하니 신필대가 진술하기를 "재작년 가을에 이귀흥(李貴興)이 신에게 말하기를 '흉년에 살아갈 길이 없어 무리를 모아 도적이 되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들어오라.'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나는 많이 가난하지 않아서 같이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더니 이귀흥이 놓아주지 않고 동조자가 누구 누구라고 말하는데 청주(淸州)의 양반 이만종(李萬宗)과 이흥득(李興得)이 그 가운데 있었고 나머지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귀흥이 또 말하기를 '다가오는 가을에 보은(報恩) 산 속에 있는 절에서 회의를 할 것이니 너도 꼭 참석하라.'고 하였으나 신은 병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신이 서로 얼굴을 아는 관계로 끌려가서 그들과 이름을 기록하는데는 허락하였으나 모의하는데 참여할 수 없었고 그들을 따라 안성까지 갔던 일에 대하여는 이미 포도청에서 진술을 할 때 다 낱낱이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이만종은 청주(淸州)에서부터 군졸에게 음식을 배풀어 위로하는 일을 주관하였는데 인품이 몹시 사나 웠는데 그것은 안성까지 따라가서 신이 도적들과 있을 때 익히 알아 보았습니다." 하였다.

또 신필대를 심문하니 신필대가 진술하기를 "이귀흥이 신에게 말하기를 '무리를 모아 군졸이 많아서 서울로 몰려 간다면 도성이 반드시 허물어질 것이니 너는 당연히 병조판서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해마다 청주에 있는 농장에 가면 이귀흥 이흥득 이제동이 번번이 와서 보았는데 이흥득 이귀흥 등이 말하기를, '보은에 사는 구이후(具爾厚)는 글을 잘하고 용맹하고 지략이 있으니 추대하여 우두머리를 삼을 만하며 이인관(李仁寬)도 또한 그 무리들에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다시 이흥득(李興得)과 구이후(具爾厚)를 잡아다가 심문하니 이흥득이 진술하기를 "신필대는 처음부터 서로 보지도 못했고 서로 알지도 못합니

다.” 하고 구이후도 진술하기를 “신필대의 성명과 얼굴을 일찍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므로 이흥득과 신필대를 대질시키니 둘이 서로 다투며 힐난하다가 신필대가 말하기를 “네 나이 열여덟 살이 아니었느냐? 내가 이귀흥을 통하여 들었다. 지금은 스물 한 살이 되었을 것이다.” 하니 이흥득이 말하기를 내가 계사생(癸巳生)이다.”하였다.

이흥득과 구이후에게 모두 한 차례 고문을 가하고 또 이만종을 잡아다가 심문하니 이만종이 진술하기를 “신필대가 신을 무고한 것은 까닭이 있습니다. 신이 일찍이 면임(面任)[392]을 지내 신필대의 얼굴을 알고 있으나 다른 사람은 그가 여러 번 이름을 바꾸었던 까닭에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것도 역시 신이 가리켜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신에게 깊은 감정을 품고 보복하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다시 신필대를 심문하니 신필대가 진술하기를 “이만종이 가리켜 알렸다는 혐의도 꾸며댄 것이고 이흥득도 신을 그의 진술 속에 끌어댄 것도 무고이니 없는 일을 꾸며내어 사람을 모함한 죄는 스스로 면하지 못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뒤에 신필대의 사형판결문에 이르기를 “신천영(申天永)이 이인좌(李麟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은밀히 수작할 때 신이 자리를 같이 하였는데 신천영이 신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미 참석하여 들었으니 일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하기로 신이 허락하였습니다. 청주성(淸州城)이 함락되던 날 박종원(朴宗元)이 신을 군관(軍官)의 명단에 기록하고 이어 칼과 말을 주면서 안성에 따라가도록 하므로 신이 결국 같이 갔었는데 반란이 실패한 뒤에는 몸을 빼나와서 도망하여 이름을 고치고 숨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이제동과 이귀흥이 신에게 같이 들어가기를 요구하면서 ‘네가 이미 역적을 따랐으니 우리와 일을 같이 함이 옳다. 군졸이 많아지고 식량이 풍족하게 마련되기를 기다려 강물이 얼 때 서울을 침범한다면 반드시 함락될 것이니 너는 당연히 병조판서가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명부 속에 직접 썼습니다. 이만종과 이흥득에 이르러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무고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반역에 함께 참여하였고 사람을 무함한 극악한 행위를 한 것을 늦게나마 인정합니다.” 하니 법률에 따라

392) 동리(洞里)에서 공무를 말아보던 사역(使役)

목을 베게 하였다. 〈영조실록 권34 엽25〉

□ 영조(英祖) 9년(1733) 6월 7일 병진

공홍도(公洪道) 서원현(西原縣)과 회인현(懷仁縣)에 크게 천둥하여 벼락을 맞아 죽은 사람이 있었다. 〈영조실록 권34 엽27〉

□ 영조(英祖) 9년(1733) 7월 12일 신묘

수찬(修撰) 윤경룡(尹敬龍)을 좌천하여 보은현감(報恩縣監)으로 보냈다. 윤경룡이 홍문관(弘文館)에서 근무하다가 왕비(王妃)의 수두(水痘)로 조회할 때 후반(候班)[393]에 참여하였는데 임금이 곧바로 불러서 책망하기를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사리와 체통이 엄격하다. 어찌 내의원(內醫院)에서 모두 숙직하는 것과 숙직을 철폐하는 것에 차이가 있겠는가?"하고 명령이 내렸다.

그 날 아침나절에 보은현감(報恩縣監) 이하귀(李夏龜)를 불러 만났을 때 임금이 묻기를 "보은(報恩)은 도적 이제동(李濟東)이 살던 곳이다. 만약 또 이제동 같은 도적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 겠는가?" 하니 이하귀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임금은 소신이 분명하지 못함을 책망하고 얼마 안되어 윤경룡을 보은현감으로 좌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영조실록 권35 엽5〉

□ 영조(英祖) 9년(1733) 11월 15일 임진

공홍도의 문의(文義) 청산(靑山) 보은(報恩) 연기(燕岐) 등 여러 고을에 지진이 동쪽에서 일어나 서쪽으로 가서 멈추었는데 집이 크게 흔들리고 소리가 우뢰와 같았다. 〈영조실록 권36 엽14〉

□ 영조(英祖) 10년(1734) 4월 18일 계해

이 때 윤경룡(尹敬龍)이 죄를 지어 보은현감(報恩縣監)으로 좌천되었는데 휴가를 받아 서울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보은으로 돌아가지 않으니 충청감사(忠淸監司)가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393) 신하들이 품계(品階)의 순서에 따라 임금을 뵙는 일

임금이 엄중한 지시를 내려 서둘러 보은으로 돌아가게 하고 드디어 서울에서 근무할 관원후보로 추천하는 분부를 중지시켰으며 이어서 앞으로 특별히 임명된 군수나 현감은 절대로 휴가를 허락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다. 〈영조실록 권38 엽7〉

□ 영조(英祖) 16년(1740) 9월 24일 임진

임금이 춘당대(春唐臺)에 나아가 시사(試射)[394]한 군병들에게 상을 하사하였다. 이 날 임금이 우수상을 받은 박춘우(朴春遇)를 수령에 임명하려고 이조참판(吏曹參判) 신만(申晩)을 불러 비어있는 수령의 자리가 있는냐고 물으니 신만이 기장현감(機張縣監)과 사천현감(泗川縣監)의 자리가 비었다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화를 내어 말하기를 "신만이 멀고 험한 곳만 골라서 대답하는구나. 벼슬을 위하여 사람을 가릴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을 위하여 벼슬을 가리려는 것이 아닌가?"하고 특별히 수령들의 근무평 가를 실시하게 다음 좋은 곳의 수령후보로 추천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박춘우가 보은현감(報恩縣監)에 임명되었는데 그 때 나이 겨우 20여세였다. 〈영조실록 권52 엽24〉

□ 영조(英祖) 16년(1740) 9월 27일 을미

좌의정(左議政) 김재로(金在魯)가 아뢰기를 "지난번 박춘우(朴春遇)를 보은현감(報恩縣監)에 임명할 때 사람을 위하여 벼슬을 가린다하여 이조참판(吏曹參判) 신만(申晩)을 책망하셨습니다만 도리어 전하께서 사람을 위하여 벼슬을 가리는 것을 면하지 못하셨습니다. 박춘우는 나이도 어린 사람인데 단지 무예가 있다하여 수령의 직책을 주었으니 이것이 처음있는 일입니다.

보은(報恩)은 그가 감당할 만한 고을이 아니고 또한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반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발령은 하셨지만 마땅히 다른 고을로 바꾸어 보내셔야 합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조실록 권52 엽25〉

394)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선발하는 일

□ 영조(英祖) 17년(1741) 8월 1일 계사

임금이 충청감사(忠淸監司)의 서원(書院)에 대한 조사보고를 읽고 분부하기를 "보은현(報恩縣)에서 공자(孔子)와 주자(朱子)를 송시열(宋時烈)의 영당(影堂)[395]에 추가로 봉안한 것은 그 경중이 뒤짚혀졌다. 어떻게 선성(先聖)인 공자와 선사(先師)인 주자를 강등해서 선정신(先正臣)[396] 송시렬의 영당에 모실 수가 있는가?

그 당시의 충청감사(忠淸監司) 김시형(金始炯)은 파직하고 보은현감(報恩縣監) 권의형(權義衡)은 잡아들여 조치하며 그 일을 주창했던 윤봉구(尹鳳九)는 임명장을 회수하고 관원명단에서 그 이름을 삭제하라.

그리고 공자와 주자의 영정은 보은향교(報恩鄕校)에 봉안하고 그위판은 보은군수가 직접 향교 뒤 정결한 땅에 공경히 묻도록 하라." 하였다. 〈영조실록 권54 엽10〉

□ 영조(英祖) 19년(1743) 12월 20일 기사

사과(司果) 윤봉구(尹鳳九)가 상소하였다. 대략 이르기를,

"보은(報恩)의 춘추사(春秋祠)에 공자(孔子)의 영정을 봉안하고 주자(朱子)를 배향한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기유년[397] 춘추사의 규모가 좁고 허술한 까닭에 선정신[398] 송시열(宋時烈)의 영당인 산앙사(山仰祠)[399]로 옮겨 봉안하려고 하였는데 의논이 간혹 어긋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주자의 창주정사(滄洲精舍)에 송조칠현(宋朝七賢)을 안자(顔子)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孟子)에게 낮추어 배향한 사례와 성주(星州) 천곡서원(川谷書院)에 정자(程子) 주자(朱子)를 주향으로 삼고 한훤당(寒喧堂) 김굉필(金宏弼)을 낮추어 배향한 사례가 있어 공자와 주자의 영정을 산앙사(山仰祠)로 옮겨 봉안하고 송시열을 낮추어 배향한 까닭으로 산앙사를 춘추사(春秋祠)로 편액을 고쳤습니다.

---

395) 지금의 보은군 삼승면 서원리에 있었던 산앙사(山仰祠)
396) 앞 시대의 어진 신하
397) 영조 5년(1729)
398) 앞 시대의 어진 신하
399) 보은 삼승면 서원리에 송시열(宋時烈)과 권상하(權尙夏)의 영정을 봉안했던 사당

전하께서 특별히 엄한 분부를 내리신 것은 큰 성인(聖人)을 지위가 낮은 유현(儒賢)의 영당에 낮추어 봉안한 까닭인데 그렇게 옮겨 봉안하게 된 절차가 신의 말로 비롯된 것이오니 그 허물은 실로 신에게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지난 일을 어찌 다시 끌어낼 필요가 있는가?" 하였다. 작년에 사당을 철폐하였을 때 그 일로 윤봉구(尹鳳九)는 임명장을 회수당하고 관원명단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는 처벌을 받았는데 이 때에 이르러 임명장을 되돌려주고 복직시키니 상소의 말이 이 와 같았다. 〈영조실록 권58 엽36〉

□ 영조(英祖) 22년(1746) 윤 3월 5일 신축

장령(掌令) 이홍직(李弘稷)이 상소하기를 "전라감사(全羅監司) 이경철(李景喆)은 윗 사람을 잘 섬겨 출세하였는데 오직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하며 무리하게 남의 재산 빼앗기를 일삼고 있으며 보은현감(報恩縣監) 신후성(愼後成)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경기전(慶基殿) 참봉(參奉) 하용익(河龍翼)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이경철은 파직하고 신후성은 관원명단에서 삭제시키 고 하용익은 영원히 관원명단에서 삭제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이경철의 일은 지나치다. 다른 일은 아뢴대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영조실록 권63 엽12〉

□ 영조(英祖) 22년(1746) 10월 1일 계해

어머니를 죽인 죄인 악지(惡只)를 사형시켰다.

악지는 공홍도 보은현(報恩縣) 사람인데 스스로 말하기를 "일찍이 병중에 악몽을 꾸었는데 배 안에 갇혀 있던 중, 어떤 관원이 곁에 있는 뱃사공을 가리키며 '이 사공을 죽여야 네가 살 수 있다.'고 하기에 칼로 찔렀습니다. 잠을 깨어서 보니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하였다.

공홍감사 홍봉한(洪鳳漢)이 사유를 갖추어 보고하였는데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어 조사하여 사실을 알아낸 다음 의금부(義禁府)로 잡아올려 의정부(議政府) 사헌부(司憲府) 의금부(義禁府)의 관원이 공동으로 심문하여 유죄를 결정하고 법대로 사형을 집행한 것이었다. 〈영조실록 권64 엽15〉

□ 영조(英祖) 22년(1746) 12월 11일 임진

호서안핵어사((湖西按覈御使) 이태중(李台重)을 파면하고 병조정랑(兵曹正郎) 권숭(權崇)으로 교체하였다.

처음 보은(報恩)에 정치문제로 다룰 만한 법죄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태중을 어사(御使)로 차출하여 자세한 사실확인하게 하였는데 아산(牙山)에 또 간통사건이 발생하여 함께 사실을 확인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태중이 본래 시골에 있으면서 관직을 받지 않음으로 여러번 권고를 하여도 올라오지 않자 특별히 파면하고 권숭으로 교체하였다. 이는 병조판서(兵曹判書) 원경하(元景夏)가 일찍이 권숭이 사리를 잘 판단한다고 칭찬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조실록 권64 엽27〉

■ 영조(英祖) 24년(1748) 5월 21일 갑진

임금이 의금부(義禁府) 도사(都事)를 충청도로 보내어 요상한 흉적 이지서(李之曙) 등을 체포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대궐에 투서한 흉적은 끝내 체포하지 못했는데 여름에 청주(淸州) 문의(文義) 사이에 이상한 문서가 나도는 괴변이 발생하여 이웃 고을에 계속하여 소요가 일어나 짐을 싸서 집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마을이 모두 텅 비었다. 이지서를 충청감영(忠淸監營)에서 체포하였는데 그 집의 문서를 수색하니 이지서가 지은 시에 '고사리를 캐 먹던 백이(伯夷) 숙제(叔齊)[400]가 되어 은(殷)나라 백성들을 보호하고 싶다.[欲作採薇保殷民]'는 말이 있었으며 또 비기(秘記)의 '순(順)'자를 교묘하게 풀이하여 조선왕조의 연수(年數)를 3백80년이라고 하는 등 말의 뜻이 흉악스러웠다.

충청감사(忠淸監司) 이창의(李昌誼)가 보고하자 임금이 의금부로 하여금 서울로 압송케 하였다. 이지서는 곧 무신년[401] 의 역적 이지시(李之時)의 6촌이고 이지경(李之璟)의 8촌이며 이만춘(李萬春)의 조카였다. 〈영조실록 권67 엽32〉

---

400)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殷)나라를 치려는 것을 만류하다가 듣지 않자 수양산에 들어가 굶어 죽은 은나라 처사. 백이는 동생이고 숙제는 형임

401) 영조 4년(1728)

□ 영조(英祖) 24년(1748) 5월 23일 병오

임금이 금상문(金商門)에 나아가 충청도 죄인을 직접 심문하였다.

이지서(李之曙)를 심문하기를 "충청감사(忠淸監司)의 보고서를 살펴보니 고사리를 캐먹으면서 은(殷)나라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시는 음흉하고 망측한 것이어서 더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기타 수상하고 의심스러운 자취가 한둘이 아니다. 비기(秘記)의 글자를 가지고 연수(年數)를 손가락을 꼽아서 가리켰으며 감사가 심문할 때 혀를 깨물고 말하지 않은 것은 더욱 음흉하다. 전하가 직접 심문하는 자리에서 감히 숨길 수 있겠는가? 사실대로 말하여라."하니 이지서가 진술하기를 "신의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문자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집에서 압수하여 가지고 온 책 중에는 사위 신치(申淄)의 책도 있는데 그 책의 아래쪽에 실린 잡기에는 음흉한 말이 없습니다. 고사리를 케먹는다는 시는, 신이 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망발한 것이지 어찌 역심이 있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또 '뜻을 펼 수 있다'는 말은 과거에 급제하여 의기를 펴고 싶다는 뜻입니다. 첫 구절은 망발이었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어디로 귀의하겠는가?' 하기가 미안했기 때문에 고친 것입니다. 나무꾼과 목동들도 모두 시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이는 모두 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인데 어떻게 감히 숨기겠습니까? 전하께서 여러 당파 사람을 고루 기용하고 계신데 신이 어찌 털끝만큼인들 나라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신은 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를 본 적도 없었고 아들이 다섯이므로 과거를 관광하기 위해 왕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의 아들들도 아직 서울에서 보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지시(李之時)가 사형을 받은뒤에 있었던 토역과(討逆科)를 신 또한 어찌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막에 내리라고 명하였다.

박철택(朴哲澤)을 신문하기를 "충청도에서 심문할 때 일절에 대해 서는 자백했지만 지금 전하께서 직접 심문하는 자리인만큼 상세히 말하여라." 하니 박청택이 진술하기를 "신의 어미가 지난해 3월 사망했기 때문에 금년 소상(小祥)에 제수를 준비하기 위해 신이 직접 조탄장(鳥灘場)으로 가는 길에 형강(荊江)을 건너게 되었는데 배가 고파 요기하는 즈음에 갑자기 박민추(朴敏樞)를 만났습니다. 박민추가 말하기를, '도선비기(道詵秘記)[402]가 있는데 용두(龍頭)와 사미(蛇尾)에 대해 운운한 것이 있다. 용

두는 곧 무진년 정월(正月)이고 사미는 곧 기사년 12월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왜인(倭人)같지만 왜인이 아닌 것이 남쪽에서 올라오는데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닌 궁궁(弓弓)이 이롭다고 했다. 그러나 이른바 궁궁은 무슨 뜻 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그에게 들은 것은 이것뿐이고 이를 관아에 알렸습니다. 그 뒤에 괘서의 변고가 있었으므로 본 고을의 이방과 감영의 군관(軍官) 이필관(李必寬)이 수사하기 위해 박민추에게 가서 물어 보았습니다만 그 뒤 이방이 신을 불러 관아 로 데리고 갔으며 또 박민추도 불러서 시문을 받았습니다. 그 뒤 신이 장터에 갔더니 박민추가 신에게 말하기를 '지난번 조탄에서 말한 것은 옛날 이야기인데 네가 누구에게 말했는가?'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관아에 알렸다.' 하니 박민추가 두려운 빛을 지으면서 말하기를 '앞으로는 다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자 임금이 막을 내리라고 명하였다.

김재형(金再炯)을 신문하니 진술하기를 "신은 곧 관리입니다. 이방(吏房) 홍천범(洪天範)이 괘서(掛書)를 가지고 와서 보였는데 그 때가 곧 4월18일이었습니다. 신이 병방 이방과 함께 같이 보았는데 그 글에 '문의 고을의 백성들이 내달 15일에 모두 결딴날 것이니 알아서 피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회덕(懷德)도 그들의 동아리이고 회인(懷仁)도 그들의 동아리며 병사(兵使)도 그들의 동아리이다. 왜인 같지만 왜인이 아닌 것이 남쪽에서 오는데 물도 이롭지 않고 산도 이롭지 않고 궁궁(弓弓)이 이롭다. 이 고을에 대인(大人)과 명장(名將)이 있다.'고 운운하고서 '이 고을에서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밖에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글은 5, 6행이었는데, 신이 박철택에게 비기(秘記)에 대해 장의(掌議) 박민추에게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자 임금이 막에 내리라고 명하였다.

오수만(吳遂萬)을 신문하기를 "박민추가 너에게 '남방의 봉화가 제대로 올려지지 않고 북쪽 변방의 성책을 물렸으니 오래지 않아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너는 어디로 피할 것인가?'라는 등등의 말을 한 것이 사실인가?" 하니 오수만이 진술하기를 "과연 있었습니다. 신이 박민추의 말을 듣고 답하기를 '무신년 난리[403]에도 내가 피하지 않았는데 지금 어디로 피하

402) 신라시대 선각국사(先覺國師) 도선(道詵)이 지었다는 예언서

겠는가?' 하였습니다. 박민추가 말하기를 '방문(榜文)[404]에 대해 들었는가?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관아에서 방문을 내건 일이 있기는 하지만 양반이 어떻게 방문을 내건 일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하였습니다. 박민추가 말하기를 '궁궁이 이롭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궁궁은 활의 허리를 가리키는 것 같다. 따라서 구부러진 곳에 숨으라는 말이다.〔궁요(弓腰)를 속음인 열(劣)자의 뜻으로 해석한 것과 같다〕하였고 봉화에 대한 일은 '청주(淸州)의 봉화는 사천(泗川)에서 들어온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또 말하기를 '문의(文義)의 동쪽은 농토가 좋고 회인(懷仁)의 북쪽은 산수가 좋아 그리로 옮겨가 살려고 한다.' 하였으며 신의 아들 오명후(吳命垕)가 비기(秘記) 베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지서(李之曙)의 아들 이항연(李恒延)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은 신의 아들이 일찍이 그의 처남인 박세렴(朴世濂)에게서 빌려 온 것이었습니다. 이지서가 또 신에게 이르기를 '장차 난리가 일어날 것인데 노인은 어떻게 피할 터인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피하여 갈 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자 임금이 막에 내리라고 명하였다. 〈영조실록 권67 엽33-34〉

□ 영조(英祖) 24년(1748) 5월 25일 무신

의금부(義禁府)에서 죄인을 심문하였다.

이지서(李之曙)를 고문하여 곤장 세 대를 치니 진술하기를 "신은 비기(秘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신의 육촌 이지목(李之穆)을 지난 봄 길에서 만났는데 그가 신에게 말하기를, '나라에 반드시 변란이 있게 될 것이다. 비기에 왜인(倭人) 같지만 왜인이 아닌 것이 남쪽에서 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부자 사이에도 말할 이야기가 아니니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말라.'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세상에 혹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자 이지목이 말하기를, '세상에 어찌 아는 사람이 없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니 이지목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말하였는데 그 이름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하였습니다. 이

403) 영조 4년(1728)의 이인좌난(李麟佐亂)

404)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거리에 내건 글

지목의 형 이지양(李之陽)은 문의(文義)에 사는데 일찍이 무신란(戊申亂)[405]전에 안엽(安熀)과 속리산(俗離山)을 왕래한 일이 있습니다. 안엽은 곧 이지양의 처갓집 어른입니다. 박민추(朴敏樞)의 말에 의하면 괘서(掛書)[406]가 나오기 전후하여 자주 이지양 이지목의 집에 갔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67 엽37〉

□ 영조(英祖) 24년(1748) 5월 25일 무신

임금이 금상문(金商門)에 나아가 죄인을 직접 심문하였다. 이지서(李之曙)와 이지억(李之億)을 대질시키게 하였다. 이지억이 이지서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대궐 문에 투서한 사람이라고 했다는데 네가 누구의 말을 듣고 그런 말을 했는가?" 하니 이지서가 말하기를 "너의 형이 분명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종당에는 알게 된 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심한 것이다." 하였다.

이지억이 다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떠한 일인데 나의 형이 말하지 않은 것을 네가 전하가 심문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하니 이지서가 말하기를 "나도 모르게 너라고 대답했다. 무신년[407] 초봄에 네가 속리산(俗離山)에 들어가 있으면서 왕래할 때 문의현감(文義縣監)이 의논하여 보고하려 하자 애걸하여 겨우 면하였다. 너의 형 이지양은 역적의 소식을 듣고서 기뻐하면서 손뼉을 치며 말하기를 '어찌 광주(光州)나 나주(羅州)의 목사(牧使)가 될수 없겠는가?' 하였다." 하였다.

이지억이 다시 말하기를 "네가 지금 죽을 지경에 빠져 살아나려고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무신년 2월에 회시(會試)[408]의 준비 때문에 보은(報恩)의 절에 가 있으면서 보름 동안 글을 읽었었다. 3월 6일에는 절이 텅 비고 공부하던 선비들이 모두 떠났기 때문에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하였다. 죄인을 잡아 오는 동안 신문을 정지한다고 명하였다. 〈영조실록권 67 엽39〉

405) 영조 4년(1728)의 이인좌난(李麟佐亂)
406) 이름을 밝히지 않고 벽에 부치거나 나무에 걸어놓은 글
407) 영조 4년 (1728)
408) 초시(初試) 급제자가 서울에 모여 다시 보는 복시(覆試)

□ 영조(英祖) 25년(1749) 8월 2일 무인

사헌부(司憲府)에서 건의를 거듭 아뢰고 또 아뢰기를 “회인현감(懷仁縣監) 이종원(李宗遠)은 성질이 본래 추악하고 어지러워 전혀 사무를 보지 않습니다. 청컨대 파직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조실록 권70 엽4〉

□ 영조(英祖) 33년(1757) 4월 28일 기축

홍경해(洪景海)를 단양(丹陽) 회인(懷仁)의 안집어사(安集御史)[409]로 삼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대신(大臣)이 아뢴 것을 들어보니 단양(丹陽)과 회인(懷仁)의 백성들 사정이 민망하게 여길 만하다고 한다. 어사(御史)를 즉시 내려 보내어 두 고을의 굶주리는 주민으로 집을 떠나 흩어진 자들을 형편에 맞추어 다시 돌아와 정착도록 하고 충청도의 저치미(儲置米)[410] 3백섬을 지급하게 할 것이다. 길에서 만 약 단양과 회인의 백성들을 만나면 임금의 뜻을 먼저 전하고 데리고 가서 구휼하도록 하라.” 하였다. 〈영조실록 권89 엽18〉

□ 영조(英祖) 33년(1757) 6월 3일 계해

단양(丹陽)과 회인(懷仁)의 금년 전조(田租)를 감해 주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두 고을에서 굶주려 흩어진 백성들 3분의 2가 넘게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아끼고 보호하는 도리를 깊이 생각하여 회양(淮陽)과 김성(金城)의 전례에 의거하라는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다. 〈영조실록 권89 엽27〉

□ 영조(英祖) 33년(1757) 7월 2일 임진

임금이 통명전(通明殿) 여차(廬次)에 나아가 충청도 안집어사(安集御史) 홍경해(洪景海)와 회장관(會葬官)인 이천부사(伊川府使) 채제공(蔡濟恭)을 불러 만났다.

승지(承旨)에게 명하여 어사(御史)의 보고서를 읽게 하고 임금이 묻기를

409) 굶주려 집을 떠난 농민을 제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임무를 맡은 임금의 특사
410) 나라에서 비축한 쌀

"굶주려 집을 떠난 농민을 어떻게 제집으로 돌아오게 하였느냐?" 하니 홍경해가 대답하기를 "단양(丹陽)과 회인(懷仁) 두 고을의 빌어먹던 농민이 비록 많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소가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고을에서 돈을 빌려 경상도로 가서 소를 사 가지고 단양에 23마리, 회인에 13마리를 소가 없는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 농사를 짓게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승지에게 지시를 받아 쓰라고 명하였다.

지시에 이르기를 "어사는 정성을 다하여 집을 떠난 농민들을 제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으니 비록 가상하기는 하나 두 고을에 돌아오지 않은 자가 아직도 1백명이 넘는다고 하니 아 저 단양과 회인의 백성은 곧 나의 백성들인데 비록 한 사람이 못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어찌 내가 밥을 달게 먹겠는가? 어사는 감히 일을 다 끝내고 돌아왔다고 하겠는가? 홍경해의 죄를 엄중히 경고하여 다시 내려가도록 하라." 하였다. 〈영조실록 권90 엽1〉

□ 영조(英祖) 33년(1757) 7월 16일 병오

청주(淸州)의 주안면(周岸面)[411]을 회인현(懷仁縣)의 관할로 귀속 시켰다.

우의정(右議政) 신만(申晩)이 아뢰기를 "단양(丹陽)과 회인(懷仁)의 안집어사(安集御史)[412]의 보고에 '회인현(懷仁縣)은 가장 후미져서 인구는 적은데 부역은 많아서 살 곳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청주의 주안면은 회인의 남쪽에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있고 청주와는 이어진 곳이 없으니 청주에서 떼어서 회인현에 보태여 쇠약해지는 고을의 폐단을 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충원(忠原)의 율곡(栗谷)도 일찍이 음죽(陰竹)으로 떼어 붙힌예가 있으니 청컨대 충청감사(忠淸監司)로 하여금 피차의 형편을 자세히 헤아려 아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어서 신만이 말하기를 "단양과 회인 두 고을의 흩어진 백성으로 돌아와 사는 자가 이미 많습니다. 반드시 옛날 호적에 있던 주민들 전부가 돌

411) 청주 동남쪽 60리 지금의 충남 회덕군 주안면

412) 굶주려 집을 떠난 농민을 제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임무를 맡은 임금의 특사

아오기를 기다린다면 안집어사가 돌아올 시기만 멀어져서 공연히 먹고 잠자는 비용만 허비합니다. 청컨대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분부하기를 서울로 돌아오라고 하였다. 〈영조실록 권90 엽6〉

□ 영조(英祖) 33년(1757) 8월 19일 무인

좌의정(左議政) 김상로(金尙魯)가 말하기를 "여러 도에서 아직 거 두지 못한 조세(租稅)를 지금 이미 보류하였으니 단양(丹陽) 회인(懷仁) 두 고을도 마땅히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하니 우의정(右議政) 신만(申晩)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회양(淮陽) 금화(金化) 두 고을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하다."하고 지시를 쓰라고 명하고 이르기를 "단양 회인 회양 금화 네 고을의 전조(田租)나 정포(丁布)[413] 중에 백성들이 가져다 쓴 것이 있거든 모두 면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영조실록 권90 엽10〉

□ 영조(英祖) 33년(1757) 8월 23일 임오

임금이 명정전(明政殿)에 나아가서 단양(丹陽)과 회인(懷仁)의 백성 들을 불러 보았다. 이 때 두 고을 백성들이 대궐 문 밖에 많이 모 여 있었다.

임금이 불러 묻기를 "어사(御史)가 이미 편안하게 살도록 하였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 곳에서 편안히 살며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올라왔느냐?" 하니 백성들이 일제히 같은 소리로 대답하기를 "신등이 전하의 은혜을 입어 고향에 돌아와 모여서 처자식들과 서로 대면하고 조상의 무덤을 돌보게 되니 하늘같은 은덕을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가난하게 떠돌아 다니다가 한 번이라도 대궐에 와서 고마운 인사를 올리기를 바란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양식을 주어 내려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영조실록 권90 엽11〉

□ 영조(英祖) 34년(1758) 8월 7일 경신

임금이 충청도 단양(丹陽)과 회인(懷仁) 두 고을에서 을해년[414] 에 바치

413) 군정(軍丁)이나 공역(公役) 대신에 바치는 무명이나 베
414) 영조 31년(1755)

지 못한 대동(大同)[415]과 군포(軍布)[416]는 탕감하도록 특별히 명하였다. 〈영조실록 권92 엽8〉

□ 영조(英祖) 34년(1758) 7월 9일 계사

교리(校理) 이담(李潭)이 글을 올렸다. 대략 이르기를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와 수찬(修撰)의 선임은 그 법이 지극히 엄격한데 신사운(申思運)은 천박하고 우둔하며 안표(安杓)는 어리석고 미련한데 대신(大臣)의 일가사람이라고 또는 대제학(大提學)의 가까운사돈이라고 하여 후보자에 올라 있습니다. 이경옥(李敬玉) 이수훈(李壽勛) 이기건(李耆建)은 본래 지체와 문벌 그리고 명망이 없는데다가 비굴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온 세상에서 다 알고 있는 바인데도 느닷없이 후보에 올라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바 큽니다.

심지어 홍억(洪檍)같이 글로 이름이 났거나 재능이 있는 몇 사람에 비하여 볼 때 자신이 아주 뒤떨어지는데도 또 홍문록(弘文錄)[417]에 올랐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발탁되었고 그 연좌된 죄를 용서 받았습니다. 불과 몇 년전의 한 글에서는 '이는 장려할 만하므로 죄를 줄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바로 혐의스러움을 무릅쓰고 권점(圈點)[418]할 때를 반드시 사람을 뽑고나서야 겨우 그만둡니다. 바로 이러한 한 가지 일에서 그 사사로운 뜻을 함부로 행하여 사람을 취하고 버리는 것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이 삼가 보건대 대신들의 건의문과 여러 신하들이 자문을 구하는 글에서 '참하록(參下錄)[419]에서 권점을 무산시킨 일을 가지고 각기들 변명만 하고 반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러한 권점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나라의 체면에 있어서 죄를 가볍게 처분한 것을 말로써 물어보고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서는 권점에 참여한 여러 당상관(堂上官)들을 견책하고 파면하는 벌을 마땅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

415)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부과하는 무명이나 베
416) 군정(軍丁)을 대신하여 바치는 무명이나 베
417)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 수찬(修撰) 후보자명단

영의정(領議政) 이천보(李天輔) 우의정(右議政) 신만(申晩)이 이담 이 올린 글 때문에 의금부(義禁府) 문 밖에서 왕명을 기다렸다.

임금이 사관(史官)을 보내어 회유하기를 "이담의 처분을 이미 지시 하였다. 그대들이 어찌 이와 같이 하는가? 더구나 영의정이 이를 듣고서 괴로워하니 그대들의 번민이 우의정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담은 이미 그대들을 배척할 뜻이 없었는데 더욱이 어찌하여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가?" 하고 같이 돌아 오게 하였다.

이담을 불러 올린 글을 읽고서 아뢰게 하였다. 임금이 그가 논한 여러 사람들을 물어보니 이담이 낱낱이 탄핵하여 아뢰었다.

임금이 이담을 좌천시켜 보은현감(報恩縣監)에 임명하고 이석표(李錫杓)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갈 때 말을 준 전례에 따라 이담에 게도 타고 갈 말을 주도록 명하였다. 〈영조실록 권92 엽3〉

□ 영조(英祖) 35년(1759) 2월 6일 정사

충청도 경상도의 백성들에게 임금의 담화문을 내려 보냈다.

대략 이르기를 "백수(白首)로 복최(服尸)하는 중[420]에 감사(監司)와 경차관(敬差官)이 올린 글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곤란을 받은 것이 여기에까지 이른 것을 자세히 알았다. 지난 해에 특별히 징족(徵族)[421]하는 무명이나 베를 경감해 주었는데 지금은 징족하는 세포(稅布)가 이보다 배나 된다고 했다. 그리고 일가사람들에게 대납시키는 것도 부족하여 또 이웃사람에게 대납을 요구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또 호수(戶首)[422]에게 대납을 요구 한다고 하니 그 상심되고 측은함을 어떻게 다 말하겠느냐?

지난 해에 강원도의 회양(淮陽) 금성(金城)과 충청도의 단양(丹陽) 회인(懷仁) 청주(淸州)는 어사(御史)에게 명하여 집을 떠난 농민들을 돌아와 편히 살도록 포세를 줄여 구휼하게 하였는데 지금 이보고를 듣고서도 만약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는 한갓 백성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418) 관원 후보자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의 이름 밑에 찍는 둥근 점
419) 7품 이하의 관원명단
420) 영조 33년 3월 26일 승하한 대행대왕대비의 복상(服喪) 중임을 말함
421) 수납하지 못한 세포(稅布)를 일가사람에게 대신 수납케 하는 일
422) 땅 8결 단위로 공물(供物)과 부세(賦稅)를 바치는 책임자

역대 임금의 영혼을 저버리는 것이다.내 비록 정성이 얕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차마 이렇게 하겠느냐? 충청도와 경상도의 감사는 이미 적임자를 보냈기 때문에 어사를 따로 보내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홍문관(弘文館)의 관원을 특별히 비장(裨將)으로 임명하여 함께 그 일을 마치게 하였다. 그리고 아뢰야 할 것은 특별히 왕래하여 보고케 하였으니 그것이 어찌 암행어사와 다르겠느냐? 너희들은 '전에 강원와 충청도는 다섯 고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포세를 줄여주는 시책과 돌봐주는 혜택을 임금이 뜻을 다하여 시행하였지마는 지금은 많은 군과 현에 적용해야 하는 사안이니 어찌 다섯 고을에 베푼 것과 같기를 바라겠느냐?' 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밤낮 돌보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앞뒤 가 다르다면 그것이 어찌 휴양하는 중에 부지런한 뜻이겠느냐? 더구나 지금 이 약속는 나의 은혜가 아니고 곧 우리 열조(列祖)의 혜택이다. 아! 우리 자성(慈聖)[423]께서는 50년 동안 모후(母后)로 계시면서 베푸신 덕행이 백성에게 흠뻑 젖어 있다. 나의 얕은 효성으로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상복을 입었으니 지금에 이르러 만약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다면 이 또한 위로 효소전(孝昭殿)[424]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하물며 상월(祥月)[425] 이 가까이 있어 마음의 회포를 억제하기 어려운 중에 이러한 보고를 듣고 너그러운 은전을 베풀지 않는다면 무슨 낯으로 자성을 뵈옵겠느냐? 특별히 효소전 가까운 곳에 앉아 승지를 불러 써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결코 백성을 속이지 않을 것이니 살고 있는 자는 반드시 안심하고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와 모여서 농사에 전념해 묵은 땅을 일구어 다섯 고을이 다시 소생한 것과 같게 된다면 나는 마음을 펴고 잠을 편히 자겠다. 또 감사와 도사는 결코 나를 저버리지 않고 반드시 수령을 감독하고 경계할 것이다. 백성들은 모두 이 말을깊이 유념하도록 하라." 하였다.

〈영조실록 권93 엽5-6〉

423) 숙종(肅宗)의 계비(繼妃)인 대행대왕대비를 말함
424) 대행대왕대비의 당호

□ 영조(英祖) 35년(1759) 윤6월 16일 갑오

임금이 "지난번에 옛 청풍부사(淸風府使) 성천주(成天柱)의 말을 들으니 '청풍부(淸風府) 백성들이 단양현(丹陽縣)과 회인현(懷仁縣)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는데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다.

이와 같다면 현재의 청풍부사(淸風府使)도 동일한 시종신(侍從臣)[426] 인데 어찌하여 하나는 듣고 하나는 듣지 못하였겠는가? 지금 들으니 청풍과 단양은 경계가 붙었다고 하는데 만약 동등하게 행정을 하지 아니하면 청풍의 백성들이 어찌 좋은 때를 만나지 못한 탄식이 없겠느냐? 충청감사(忠淸監司)로 하여금 옛 관아의 물건을 낭비한 수량의 많고 적음과 그 동안의 행정의 실적에 따라 보고한 뒤에 만나 아뢰어 처리케 하라." 하였다. 〈영조실록 권93 엽 28〉

□ 영조대왕(英祖大王) 행장(行狀)

즉위 33년 4월에 어사(御史)를 보내어 단양(丹陽) 회인(懷仁)에서 굶주려 흩어진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여 저치미(儲置米)[427]로 구휼하게 하였다. 〈영조실록 권127 엽66-67〉

□ 정조(正祖) 2년(1778) 1월 10일 신미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이 아뢰기를 "홍청감사(洪淸監司) 서유린(徐有隣)의 보고에 영춘(永春) 등 31고을은 주민은 적은데 군사가 많아 폐해가 있고 보은(報恩) 등 16고을의 여러 절에 소속된 노비로 도망했거나 죄인으로 죽은 자에게 조세(租稅)를 물리는 폐해를 들어 말을 했고 봉수군(烽燧軍)을 양인(良人)과 사노(私奴)를 뒤섞어 배정하는 일을 거론한 말에 의거한 것이 있는 것이며 감고(監考)[428]는 품관(品官)[429]이 담당하는 업무는 『속대전(續大典)』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니 글월로 아뢴대로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정조실록 권5 엽3〉

426) 왕을 모셔 시종하는 신하
427) 나라에서 비축한 쌀
428) 관아에서 금전이나 불품의 출납을 담당하는 관원
429) 품계(品階)를 가진 관원

□ 정조(正祖) 3년(1779) 3월 27일 신해

호서암행어사(湖西暗行御史) 박우원(朴祐源)이 돌아와서 복명서를 올리기를

보은현감(報恩縣監) 서퇴수(徐退修)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정에 대해 그 허물을 탄핵하였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하기를 "보은(報恩)의 선비 송재적(宋載績)의 아내 홍씨(洪氏)는 남편을 따라 죽은 정절(貞節)이 있음으로 칭송 하여 널리 알리기에 합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열녀 송재적의 아내 홍씨가 사는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우게 하였다. 〈정조실록 권7 엽38〉

□ 정조(正祖) 3년(1779) 5월 29일 임자

충청도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구휼을 실시하였는데 정월부터 시작하여 이때에 끝마쳤다.

〔충청도는 단양(丹陽) 충주(忠州) 청산(靑山) 영동(永同) 평택(平澤) 청풍(淸風) 영춘(永春) 황간(黃澗) 보은(報恩) 제천(堤川) 청안(淸安) 옥천(沃川) 회인(懷仁) 음성(陰城) 서원(西原) 연풍(延豊) 괴산(槐山) 회덕(懷德) 등 고을과 율봉(栗峯) 연원(連源)등 역(驛)에서 구휼을 받은 백성은 모두 1만2천38명이고 이들에게 지급한 곡물은 8천9백30섬이다〕〈정조실록 권7 엽45〉

□ 정조(正祖) 5년(1781) 2월 29일 임신

이조판서(吏曹判書) 이연상(李衍祥)이 아뢰기를 "보은현감(報恩縣監) 권제응(權濟應)은 불법한 죄를 졌으니 잡아다 처리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정조실록 권11 엽26〉

□ 정조(正祖) 7년(1783) 3월 12일 계묘

보은현(報恩縣)의 동몽(童蒙) 안월성(安月城)이 잠두(蠶頭)[430]에 불을 질러 금위영(禁衛營)에서 그를 잡아 백사장에서 목을 베자고 청하였다.

임금이 좌의정(左議政) 홍낙성(洪樂性)에게 이르기를 "시골의 어리석은

430) 비녀머리

백성들이 국법을 모르고 망령되이 지은 죄이니 어찌 딱하지 않는가?" 하자 홍낙성이 아뢰기를 "분명하게 국법을 시행하여 후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국법이 엄중하기는 하나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모르고 망령되이 저지른 것이니 지금 극형을 시행하더라도 어떻게 후일의 폐단을 막을 수 있겠는가? 포도청(捕盜廳)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라."하였다. 〈정조실록 권15 엽35〉

□ 정조(正祖) 10년(1786) 4월 20일 계사

훈련대장(訓練大將) 구선복(具善復)이 말하기를 "속리산(俗離山)은 호남과 영남의 사이에 있는데 균역(均役)을 실시한 뒤에 중들의 역사가 무거워지면서 절들이 온통 비었다고 하였습니다. 속리산은 명산일 뿐만 아니라, 산 뒤에 선유동(仙遊洞)과 용유동(龍遊洞)이 있고 그 밑에 또 송면현(松面峴)이 있습니다. 즉 무신년(戊申年)[431] 에 역적들이[432] 모여서 전입한 곳이니 이는 아주 한적한 지대가 아니니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청도로 하여금 제일 좋은 방 안에 찾아 변통하여 중들의 부역을 줄여서 중들이 다시 절로 모여 들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평소에야 어찌 다른 염려가 있겠는가? 속리산의 절들은 본디 명승의 구역이었는데 이제 와서 황폐해졌다니 매우 무의미한 일이다. 조정에서 비록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높이 믿지는 않지만 옛날의 경관을 닦아 회복하고 중들을 모집해 두는 것이 실로 명산을 수호하는 옛날의 제도와 합치될 것이다. 충청감사(忠淸監司)에게 지시하여 기어코 황폐해진 절들을 소생시키게 하라." 하였다. 〈정조실록 권21 엽37〉

□ 정조(正祖) 14년(1790) 1월 27일 무신

충청감사(忠淸監司) 권엄(權嚴)이 글월을 올려 아뢰기를 "회인(懷仁)에 사는 박팽령(朴彭齡) 우호득(禹好得) 이육섭(李六燮) 세 아이는 자기 부모가 병이 들었을 때 모두 다리살을 베어 먹인 결과 병이 즉시 완쾌되었습니다.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뜻에서 마땅히 그 선행을 포상하는 일이

431) 영조 4년(1728)

432) 이인좌(李麟佐)의 무리

있어야 하겠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회인에 사는 세 효자동의 탁월한 행실 또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충청감사(忠淸監司)로 하여금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도록 하라." 하였다. 〈정조실록 권29 엽8〉

■ 정조(正祖) 14년(1790) 6월 18일 정묘

신시(申時)에 창경궁(昌慶宮) 집복헌(集福軒)에서 원자(元子)가 태어났으니 후궁 유빈박씨(綏嬪朴氏)의 소생이다. 이날 새벽 대궐 숲에서 붉은 광채가 있어 땅에 내리비쳤고 해가 한낮이 되자 무지개가 종묘(宗廟)의 우물 속에서 일어나 오색광채를 이루었다. 백성들은 앞을 다투어 구경하면서 이는 특이한 상서라 하였고 모두들 뛰면서 기뻐하였다. 〈정조실록 권30 엽60〉

□ 정조(正祖) 14년(1790) 6월 18일 정묘

원자(元子)로 칭호를 정하고 산실청(産室廳)을 설치하였다.
약원(藥院) 도제조(都提調) 홍낙성(洪樂性)이 아뢰기를 "약원의 세제조(提調)가 이미 숙직하고 있으나 보은현감(報恩縣監) 박준원(朴 準源)과 의빈도사(儀賓都事) 박종보(朴宗輔)도 함께 숙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분부하기를 "보은현감 박준원[433] 에게 숙직 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조실록 권30 엽60〉

□ 정조(正祖) 14년(1790) 6월 24일 계유

산실청(産室廳) 도제조(都提調) 이하 여러 관원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내리고 보은현감(報恩縣監) 박준원(朴準源)은 품계를 올리었다.[434] 〈정조실록 권30 엽62〉

□ 정조(正祖) 14년(1790) 7월 6일 갑신

원자(元子)의 태봉길지(胎封吉地)를 보은현(報恩縣) 속리산(俗離山) 아래

433) 수빈(綏嬪) 박씨(朴氏)의 친정 아버지이고 태어난 원자(元子)의 외할아버지임.
434) 호조참의(戶曹參議)로 승진하여 궁중에 들어가 원자를 보살피는 직책을 맡겼음.

에 있는 을좌신향(乙坐辛向)의 자리로 정하였다.[435] 〈정조실록권30 엽74〉

□ 정조(正祖) 14년(1790) 7월 7일 을유

원자(元子)의 태(胎)를 묻을 날을 정하였다. 예조(禮曹)는 경술년(庚戌年) 8월 12일 진시(辰時)에 태를 묻되 같은 달 4일에 태를 옮겨갈 것으로 아뢰었다. 〈정조실록 권30 엽74〉

□ 정조(正祖) 14년(1790) 8월 17일 을축

안태사(安胎使) 오재순(吳載純)이 원자(元子) 태를 묻고 돌아와 보고하니 임금이 불러 위로하고 상을 내렸다.

안태사 오재순과 도차사원(都差使員)인 보은현감(報恩縣監) 김재익(金載翼)은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진시키고 배태관(陪胎官) 조헌택(趙憲澤)은 품계에 걸맞는 관직에 임명하고 충청감사 정존중(鄭存中)에게는 호피(虎皮) 1장을 하사하였다. 〈정조실록 권31 엽9〉

□ 정조(正祖) 16년(1792) 5월 30일 정묘

충청도 옥천(沃川) 연산(連山) 예산(禮山) 청안(淸安) 정산(定山) 문 의(文義) 회인(懷仁) 회덕(懷德) 석성(石城) 이성(尼城) 등 10고을에 홍수가 나서 가옥 4백여호가 물에 떠내려갔거나 땅에 묻혔다. 〈정조실록 권35 엽28〉

□ 정조(正祖) 17년(1793) 5월 24일 을묘

충청도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구휼을 실시하였는데 정월부터 시작 하여 이 때에 이르러 끝마쳤다.

〔사진(私賑)[436]으로 공주(公州) 충주(忠州) 청주(淸州) 홍주(洪州)청풍(淸風) 한산(韓山) 면천(沔川) 서산(瑞山) 직산(稷山) 옥천(川) 대흥(大興) 단양(丹陽) 임천(林川) 천안(天安) 서천(舒川) 예산 (禮山) 황간(黃澗) 니성(尼城) 제천(堤川) 연풍(延豊) 영춘(永春) 문의(文義) 태안(泰安) 음성(陰城) 청안(淸安) 회덕(懷德) 진잠(鎭岑) 연산(連山) 청양(靑陽) 진천(鎭川)

435) 지금 속리산 복천암(福泉庵) 뒤편에 있음
436) 개인의 구휼미

결성(結城) 전의(全義) 보은(報恩) 회인(懷仁) 영동(永同) 목천(木川) 덕산(德山) 해미(海美) 당진(唐津) 등의 고을과 안흥(安興) 소근(所斤) 평신(平薪) 등의 진(鎭)과 연원(連原) 율봉(栗峯) 금정(金井) 이인(利仁) 등 역(驛)에서 구호를 받은 백성은 모두 25만5천8백51명이고 이들에게 지급한 곡물은 2만9천6백18섬 남짓이었다〕〈정조실록 권37 엽40〉

□ 정조(正祖) 17년(1793) 6월 11일 임신

호서암행어사(湖西暗行御史) 윤노동(尹魯東)이 복명서를 올리니 임금이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명하여

보은현감(報恩縣監) 심공저(沈公著)는 고을을 잘 다스려지지 못하였다 하여 파출하였다. 〈정조실록 권37 엽52〉

□ 정조(正祖) 18년(1794) 11월 4일 무자

임금이 호서위유사(湖西慰諭使) 홍대협(洪大協)을 불러 보았다. 이어서 봉서를 내려 이르기를 "충청도는 천리나 되는 경기지역과 인접하고 있으므로 내 크게 근심하는 바이다. 비록 풍년이 든 해라도 돌봐주는 바가 다른 지역보다 배나 되는데 하물며 근래에 드문 올해 같은 흉년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가을부터 겨울까지 내가 나랏일에 부지런히 힘쓰는 가운데서도 충청도 지역을 가장 근심하며 잊지 못해 왔다.

대개 가까운 이들이 능히 편안한 뒤에야 멀리 있는 이들이 감싸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까이 있는 자가 기뻐한 뒤에야 멀리 있는 자가 그리워하는 법이다. 만일 경감해주고 돌보아주는 정사와 구제해주는 방도가 도리어 경상도 전라도만 못하다면 이는 가까운 이를 버리고 멀리 있는 이를 취하며 소원한 이를 귀히 여기고 가까운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상례에서 벗어난 특별한 조항을 두어 다른 고을에까지 아울러 미치게 한 것이다.

가장 심한 곳은 태안(泰安) 등 20고을이고 그 다음이 부여(夫餘)임천(林川) 홍산(鴻山) 보령(保寧) 결성(結城) 덕산(德山) 온양(溫陽) 청주(淸州) 음성(陰城) 진잠(鎭岑) 회덕(懷德) 청풍(淸風) 청안(淸安) 영춘(永春) 연산(連山) 청산(靑山) 보은(報恩) 대흥(大興) 홍주(洪州) 연풍(延豊) 문의(文義) 목천(木川) 옥천(沃川) 충주(忠州) 평신(平薪) 등 24개 고을과 진

(鎭) 한 곳이다.

조정에 바치는 봉물을 중지할 것과 공물(貢物)과 부세(負稅)를 너그럽게 면제해줄 것에 대해서는 지시하는 글 아래에 기록해 두었다. 너는 모쪼록 정성과 힘을 다해 모든 백성들에게 상세히 알려서 그들이 사는 곳에서 안정되게 하여 한 사람이라도 살 곳을 잃었다는 탄식이 없게 하라." 하였다. 〈정조실록 권41 엽33-34〉

□ 정조(正祖) 19년(1795) 5월 21일 신미

충청도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구휼을 실시하였는데 정월부터 시작 하여 이 때에 이르러 끝마쳤다.

〔사진(私賑)으로 구휼한 지역은 연산(連山) 청산(淸山) 연풍(延豊)등 고을과 병영(兵營)으로 굶주린 백성은 모두 2만1천9백95명인데 이들에게 지급한 곡물은 1천4백89섬 6말8되1홉이었다.

응급구제한 지역은 충주(忠州) 공주(公州) 단양(丹陽) 온양(溫陽) 괴산(槐山) 문의(文義) 음성(陰城) 진잠(鎭岑) 청안(淸安) 영춘(永春) 청양(靑陽) 정산(定山) 전의(全義) 진천(鎭川) 회인(懷仁) 황간(黃澗) 제천(堤川) 등 고을과 평신진(平薪鎭)과 이인역(利仁驛) 금정역(金井驛) 연원역(連原驛) 등에서 구휼을 받은 백성은 모두 8만 4백 84명이고 이들에게 지급한 곡물은 4천9백77섬이었다〕 〈정조실록 권42 엽69〉

□ 정조(正祖) 22년(1798) 10월 22일 임자

보은현감(報恩縣監) 윤제동(尹悌東)이 임금의 명령서에 대하여 상소하면서 보은현의 고을 폐단을 아뢰었다.

이어 공진창(貢津倉)의 일에 대해 논하기를 "아산(牙山)의 공진창 역시 일곱 고을에 큰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 일곱 고을의 경계가 바다에 붙은 것도 아니고 또 깊은 산골도 아니고 보면 전세(田稅)로 거두는 곡물을 모두 공진창으로 집결시키지 않을 수 없기는 합니다.

다만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서 멀리는 수백리나 떨어져 있고 가깝다고 해도 1백리를 밑돌지 않기 때문에 곡물을 등에 지고 운반하려면 다른 고을 백성들에 비해 몇 배나 고초를 겪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근년 이래로 전에 없이 폐단이 더욱 심해져서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한 실정인데 이

에 대해 모두들 말하기를 '운반을 관리하는 차원(差員)을 아산(牙山)에서 전적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일곱 고을 백성들이 거의 살아남지 못하게 되었다.' 고 합니다.

배를 대는 부두가 아산에 있고 보면 곡물을 바치고 운반하는 배를 관리하는 일은 형세상 당연히 해당 현감이 주관해야 마땅한데도 돌려가며 하지 않고 몇년 동안 아산에서 계속 그 일을 주관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급관리들이 위협하며 공갈치는 것이 상급 관리와 다름없이 되었는데 곡물장부에 농간을 부려 이익을 노리는가 하면 방납(防納)[437] 하며 재차 징수하는 등 그 폐단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약과입니다. 먼저 묵은 나쁜 쌀로 세곡(稅穀)을 바꿔 채운 다음에 비싼 값으로 여러 고을 백성들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한편 소위 세미(稅米)에 대해서 아무리 성실하게 바친다 해도 모두 퇴짜를 놓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소리가 떼로 일어나며 가산을 탕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니 아 저 잔약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 남겠습니까?

충주(忠州) 가흥창(可興倉)의 경우는 여러 고을 수령들을 교대로 정해 세곡의 납부를 관리하게 하기 때문에 해당 고을에서 전적으로 주관하지 않게 되어 바치는 일이 자연히 균일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진창 역시 이 예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 할 듯합니다." 하였다.

이에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공진창의 폐단이야말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만 충주(忠州)의 예를 따른다고 해서 완전히 폐단이 없어질지는 아직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생각건대 조곡을 바다로 운반하는 것은 강으로 운반하는 것과는 다른데 하루 아침에 제도를 변경하는 일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온당할 듯합니다. 그런데 가령 각 고을의 수령들이 곡식 한 알 한 알이 모두 백성의 피와 고름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묵은 나쁜 쌀을 옮겨다 채우고는 비싼 값으로 강제 징수하는 이런 일을 어떻게 차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감사에게 엄히 경고하여 먼저 만든 법령을 다시 밝히는 동시에 감찰하는 정책을 펼치게 하고 만약 옛날 그대로 잘못을 답 습하는 폐단이 있거든 짐을 꾸려 출발시키는 때를 당했다 하더라도 이를 자세히 열거하여 급히 보고하게 함으로써 통렬히 징계할 수

437) 세곡(稅穀)을 미리 납부해 주고 나중에 그 배를 징수하는 일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속읍(屬邑)의 수령으로 말하더라도 백성을 거느리고 가서 수납 할 때 성심껏 거행한다면 아문이 본래부터 서로 대등하니 어찌 고개 숙여 차원(差員)의 명령대로 따를 수가 있겠으며 또 차원도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각 고을의 죄로 차원보다 그 죄가 덜하다고 할 수가 없으니 이런 내용으로 똑같이 분부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정조실록 권49 엽〉 47 집 128 면

□ 정조(正祖) 22년(1798) 11월 30일 기축

농사를 권장하고 농사에 관한 책을 구하는 임금의 뜻을 전국에 내렸다.

“내가 일찍부터 근본을 돈독히 하고 실제적인 데 힘쓰는 정사에 뜻을 두고 농서(農書)를 편찬하여 여러 주와 군에 반포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옛날과 지금은 사정이 서로 다르고 풍토가 똑같지 않으며 가난하고 부유함을 고르게 하기 어렵고 일과 힘이 미치지 못하여서 획일적으로 정하여 놓고 그것만을 지키게 할 수가 없었다. 대궐은 만리나 떨어져 있지만 사람마다 각자 좋은 방책을 진달하라. 그러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 절충해 쓸 것이니 그런즉 농가(農家)의 대전(大典)이라고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무릇 농삿일이란 위로 중성(中星)[438]에 속하고 겉으로는 기운과 잘 맞아야만 하는 법이다. 12월의 중간은 대한(大寒)의 절기로서 흙의 기운이 처음으로 생겨나고 6월의 중간은 대서(大署)의 절기로서 흙을 축축하게 하는 태음(泰陰)의 기운이 비로소 생겨나니 12월이 6월과 더불어 상대되어서 흙이 비로소 힘을 쓰는 것이다. 그런즉 이미 지나간 일은 뒤쫓기 어려움을 개탄하고 앞으로의 도움이 있기를 기대함으로써 다가오는 새해를 일으키고 농부들을 격려하는 바이다. 중요한 것은 일찍 서두르는 것이니 어찌 새봄이 오기를 기다려 교서를 내리겠는가. 오늘은 축일(丑日)이고 내일이면 12월이 된다. 오후 2시 정각에는 절기가 교대로 이르니 흙으로 소를 빚어놓고 풍년을 기원하기에는 지금이 바로 알맞은 시기이다. 더구나 이전의 공적을 일으키기를 도모하고 그 때의 날과 달을 따르는 것이 실로 내가 선왕의 뜻을 우러러 이어받는 한 가지 일이 되는 것이다.

438) 28수(宿) 중 해가 지고 뜰 때 하늘 정남쪽에 보이는 별

아, 서울과 지방의 대소 관료와 백성들은 모두 다 모름지기 잘 듣고 알도록 하라. 농삿일에 도움이 될 만한 자신의 견해가 있으면 상소를 올리거나 책으로 엮거나 하여 서울은 홍문관(弘文館)에 바치고 지방에서는 감사에게 바치라. 그리고 다른 풍속에 빠지거나 예전 방법에 구애되지 말고 바닷가와 산골, 기름진 땅과 메마른 땅에 맞추어서 각자 마땅한 방법을 아뢰어라

사람들의 계책이 진실로 훌륭하면 능히 하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늘이 풍년을 내려 곡식을 많게 하여 우리 백성들이 쌀밥을 먹고 태평세월을 누리게 된다면, 이것은 우러러 우리 선왕께서 백성들을 편안케 하고 농정에 힘쓴 훌륭한 덕과 지극한 사랑에 부응하는 것이 될 것이며 또 나는 백성들이 씨 뿌리고 수확하는데 대한 지극한 정성과 애달픈 마음을 돕는 것이 될 것이다. 내가 권농정책을 일으키고 농서(農書)를 한 곳으로 모으려고 하는 것은 농부들이 가을 수확을 고대하는 것보다도 더 간절하다.

내가 즉위한 지 22년 째 되는 해 12월이 되기 하루 전날인 기축 일(己丑日) 오후 2시(未時) 정각에 이 교서를 내린다." 하였다.

농사에 관한 책을 올린 사람은 보은(報恩)의 유학 이동응(李東膺) 등 40인이다. 〈정조실록 권50 엽16-18〉

□ 정조(正祖) 23년(1799) 5월 9일 병인

충청도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구휼을 실시하였는데 정월부터 시작하여 이때에 이르러 끝마쳤다.

사진(私賑)으로 구휼한 곳은 공주(公州) 니성(泥城) 옥천(沃川) 면천(沔川) 문의(文義) 연산(連山) 영동(永同) 황간(黃澗) 대흥(大興) 홍산(鴻山) 청안(淸安) 보은(報恩) 등의 읍,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의 영(營), 이인역참(利仁驛站))이었다.

긴급구제한 곳은 괴산(槐山) 진천(鎭川) 청양(靑陽) 남포(藍浦) 비인(庇仁) 회인(懷仁) 청산(靑山) 제천(堤川) 등의 읍과 금정역참(金井驛站)인데 굶주린 백성은 50만9천7백22명이고 그들에게 지급한 곡식은 4만5천8백10섬이다〕 〈정조실록 권51 엽60〉

□ 순조(純祖) 6년(1806) 10월 20일 계사

보은현(報恩縣)에서 현 임금의 태실(胎室)을 가봉(加封)[439]하는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고 아뢰니 감동관(監董官) 이하 여러 관원에게 차등있게 상을 내리고 보은현(報恩縣)을 보은군(報恩郡)으로 승격 시켰다. 〈순조실록 권9 엽42〉

□ 순조(純祖) 8년(1808) 7월 4일 무진

공충좌도(公忠左道) 암행어사(暗行御史) 홍희준(洪羲俊)이 글월로 아뢰기를 회인현감(懷仁縣監) 김완(金錹) 등이 잘 다스리지 못한 실상을 보고하니 임금이 죄의 크고 작음에 따라 심문하여 처벌케 하였다. 〈순조실록 권11 엽18〉

□ 순조(純祖) 10년(1810) 5월 25일 무인

보은현(報恩縣)을 보은군(報恩郡)으로 승격시켰는데 그것은 태실(胎室)을 가봉(加封)한 후에 관례에 따라 승격시킨 것이다. 〈순조실록 권13 엽23〉

□ 순조(純祖) 12년(1812) 3월 13일 을유

예조(禮曹)에서 '각 식년(式年)[440]에 서울과 지방의 충신 효자 열 녀의 조사서를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니 등급을 나누어 선정하여 임금에게 아뢰었다.

충신으로 정려된 보은(報恩)의 죽은 부호군(副護軍) 이명백(李命百)은 문렬공(文烈公) 조헌(趙憲)의 문인으로 임진왜란 때 창의(倡義)하여 보은을 지키다가 적암(赤巖)[441]의 전투에서 죽었다.[442] 〈순조실록 권15 엽28〉

□ 순조(純祖) 14년(1814) 9월 5일 임진

예조(禮曹)에서 각각 식년(式年)[443]마다 서울과 지방에서 의정부(議政

439) 왕자의 태실(胎室)을 임금의 태봉(胎封)으로 격상하는 것
440) 정시적으로 과거를 실시하는 해. 태세(太歲)가 자(子) 묘(卯) 오(午) 유(酉)가 드는 해로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옴
441) 지금의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에 있는 새목이고개
442) 이명백의 정려문은 지금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에 있음.

府)에 보고한 충신 효자 열녀에 대하여 등급을 나누어 선정하여 임금에게 아뢰었다.

보은(報恩)의 죽은 첨지(僉知) 황우하(黃遇河), 죽은 사인 송보상(宋保相)을 효자로 증직하였다. 〈순조실록 권17 엽55〉

□ 순조(純祖) 19년(1819) 9월 28일 정해

보은(報恩)의 죽은 학생 김도명(金道明)과 아들 김한붕(金漢鵬) 손자 김성덕(金成德) 삼대의 효행에 대하여 김도명과 김한붕에게는 모두 정려하고[444] 김성덕에게는 증직하였다. 〈순조실록 권22 엽26〉

□ 순조(純祖) 22년(1822) 7월 11일 계미

충청좌도암행어사(忠淸左道暗行御史) 서좌보(徐左輔)가 글월을 올려 보은군수(報恩郡守) 김영석(金永錫) 등의 다스리지 못한 정상을 거론하니 모두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처벌하게 하였다. 〈순조실록 권25 엽12-13〉

□ 순조(純祖) 24년(1824) 3월 19일 임오

예조(禮曹)에서 유생(儒生)들의 상소에 의거하여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순절한 진천(鎭川)의 죽은 주부(主簿) 김경세(金景世)의 처 안씨(安氏)에게 정려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445] 〈순조실록 권27 엽4〉

□ 순조(純祖) 26년(1826) 7월 18일 무술

충청감사(忠淸監司) 김학순(金學淳)이 보은군(報恩郡)에 폭우로 가옥이 떠내려 가거나 무너진 것이 1백11호이고 물에 빠져죽은 사람이 6명이라고 아뢰었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충청도에 비가 지나치게 많이 와서 걱정스러움을 견딜 수 없었는데 보은(報恩) 한 고을이 치우치게 재해를 입어서 무너지거나 떠내려 간 집이 1백호를 넘고 물에 빠져죽은 사람이 6명이나 된다고 하니 더욱 몹시 참담하다. 가을 곡식이 미처 익지도 않아서 피해가 이와

443) 정시적으로 과거를 실시하는 해. 태세(太歲)가 자(子) 묘(卯) 오(午) 유(酉)가 드는 해로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옴

444) 김도명의 정려문은 지금 보은군 탄부면 평각리에 있음.

같으니 급속히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편으로는 사람을 구휼하고 한편으로는 집을 지어 주어야 하며 그런 연후에야 머물 곳을 잃고 떠도는 근심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무릇 정착시켜 위안하는 방도에 관계되는 것을 각별히 시행하고 원래의 이재민을 구휼하는 규정 외에 돌보아 도와주는 것은 전례 에 구애 받지 말 것이며 물에 빠져죽은 사람이 생전에 바치지 못한 신포(身布)[446]가 있으면 모두 탕감해 주라." 하였다. 〈순조실록 권28 엽13〉

□ 순조(純祖) 29년(1829) 11월 30일 경신

공청도암행어사(公淸道暗行御史) 홍원모(洪遠謨)가 글월을 올려 회인현감(懷仁縣監) 이시학(李時學) 등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상항을 거론하니 임금이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조치하도록 분부하였다. 〈순조실록 권30 엽59-60〉

□ 순조(純祖) 33년(1833) 6월 12일 신해

공충좌도암행어사 김기만(金箕晩)이 글월을 올려

보은군수(報恩郡守) 이윤식(李允植)이 고을을 잘 다스린 실상을 말하니 승급시켜 주었다. 〈순조실록 권33 엽17-18〉

□ 헌종(憲宗) 6년(1835) 1월 3일 갑오

보은군(報恩郡)의 불탄 집에 이재민을 구휼하는 규정을 적용하라고 명하였다. 〈헌종실록 권7 엽1〉

□ 헌종(憲宗) 8년(1842) 6월 26일 을해

충청감사(忠淸監司) 이겸재(李謙在)가 "공주(公州) 청주(淸州) 석성(石城) 문의(文義) 연기(燕岐) 정산(定山) 보은(報恩) 청안(淸安) 예산(禮山) 천안(天安) 등 고을에 내린 큰 비로 가옥이 무너지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보고하였다.

445) 안씨(安氏)의 정려문은 지금 보은군 산외면 산대리에 있음.
446) 부역(賦役) 대신으로 바치는 무명이나 베

임금이 분부하기를 “충청도의 수재가 여러 해 연달아 치우치게 극 심한 것이 늘 마음에 잊혀지지 않았었는데 지금 또 10여 고을에서 떠 내려가고 허물어진 집이 5백호에 가깝고 심지어 물에 빠져 죽은 사람까지 있으니 생각할수록 놀랍고 측은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충청도에서 품계가 높은 수령으로 하여금 재해를 입은 여러 고을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불러 유시하여 각각 그 지방에 안착하도록 하고 응당 행해야 하는데 관계된 것 이외에 집을 지어 살 수 있는 방도를 감사(監司)와 충분히 상의해 확정하여 소상히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헌종실록 권9 엽9〉

□ 헌종(憲宗) 13년(1847) 5월 22일 계묘

임금이 충청좌도암행어사(忠淸左道暗行御史) 김익현(金翼鉉)을 불러 만났다.

현 보은군수(報恩郡守) 윤정호(尹定鎬) 등에게 죄를 주고 전 보은 군수(報恩郡守) 송정희(宋正熙)에게는 포상을 베풀어 승진시킬 것을 건의하였기 때문이었다. 〈헌종실록 권14 엽7〉

□ 고종(高宗) 4년(1867) 4월 20일 계묘

임금이 공충도(公忠道) 암행어사(暗行御史) 홍철주(洪澈周)를 대궐로 불러 만났다. 홍철주가 공청도를 다녀온 보고서를 바치니 임금이 보고는보은군수(報恩郡守) 김낙균(金樂均)은 옥새(玉璽)가 찍힌 글과 옷감 을 하사하라“ 하였다. 〈고종실록 권4 엽21〉

□ 고종(高宗) 5년(1868) 11월 1일 갑술

임금이 공충좌도(公忠左道) 암행어사(暗行御史) 한경원(韓敬源)을 대궐로 불러 만났다. 그리고 서면보고에 근거하여

보은군수(報恩郡守) 조동순(趙東淳) 등에게 표창으로 벼슬을 올려 주었다. 〈고종실록 권5 엽51〉

□ 고종(高宗) 7년(1870) 12월 20일 신사

임금이 분부하기를 “수령(守令)으로 교묘하게 아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과연 어떠하였는가?

듣자니 보은군수(報恩郡守) 이동순(李東淳)은 은그릇을 만들어 운현궁(雲峴宮)[447] 에 바쳤다고 한다. 백성들과 고을의 일들이 많은 이 때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직책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런 잔재주를 부리고 있다. 조정의 경고를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보는 이런 도리가 어디에 있겠는가? 매우 통분하고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지각없는 따위가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겠는가?

우선 파면시킴으로써 보은의 백성들을 안착시킬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고종실록 권7 엽40〉

□ 고종(高宗) 7년(1870) 12월 24일 을유

임금이 분부하기를 "전날 보은군수(報恩郡守)에 대해서 이미 조치 하였지만 이러한 일을 금지하기 위하여 앞뒤로 얼마나 엄격하게 경고하였는가?

그런데도 종종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참으로 한탄할 노릇이다. 그 전해에 평안도에서 나는 좋은 담배 200근의 문제 때문에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규탄이 있었다. 오늘날 백성들과 나라는 수령들이 조심해서 부지런히 일함으로서 그 안정이 있는 것이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각 도에 공문을 띄워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고종실록 권7 엽40〉

□ 고종(高宗) 11년(1874) 2월 9일 임오

충청도 보은(報恩)의 유생 조영표(趙榮杓) 등이 글을 올려 만동묘 (萬東廟)[448]를 복구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비답하기를 "너희들은 물러가서 공부나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고종실록 권11 엽13〉

■ 고종(高宗) 30년(1893) 3월 18일 경자

의정부(議政府)에서 건의하기를 "지난 번에 각 도(道)의 어리석은 백성들

447)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거처하는 곳

448)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에 명나라 신종(神宗)과 의종(毅宗)의 위패를 모신 사당. 고종 2년(1874) 대보단(大報壇)과 첩설(疊設)이라는 이유로 철폐되었음

이 망녕스럽게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말미암아 전하의 지시를 받고 각 도에 공문을 띄워 경고한 만큼 감사(監司)와 수령(守令)들은 마땅히 조심하며 지시를 잘 받들어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 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전라도와 충청도에 종종 나쁜 무리들이 모인다는 소문이 여간 자자하지 않습니다. 도 안에서 일어난 일을 어찌 감사가 알지 못할 수 있습니까? 조정의 지시를 허술히 대하고 백성의 일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기를 어찌 이렇게까지 심할 수 있습니까? 놀랍고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전라도와 충청도의 감사에게 우선 편지로 그 죄를 추궁하는 법조 문을 적용하고 불량한 무리들이 패거리를 모으는 까닭과 내막 그리고 지금 어느 고을 경내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즉시 보고하도록 공문을 띄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승인하였다. 〈고종실록 권30 엽〉

■ 고종(高宗) 30년(1893) 3월 23일 정미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건의하기를 "연이어 전라도와 충 청도 감사의 전보를 보고 또 계속하여 충청감사(忠淸監司) 조병식 (趙秉式)과 이용복(李容復)의 보고서 사본을 보니 허망한 무리들이 날로 더욱더 많은 무리를 모아서 전라도와 충청도에 깃발을 세우고 서로 호응하고 있으니 그들의 자취가 심히 헤아릴 수 없으므로 타일러서는 결코 옳은 길로 둘려세울 수 없는 자들입니다. 비록 각 도의 감사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우환을 미리 막을 대책에 대해 그럭저럭 날짜만 끌어갈 수 없으며 오직 단속하고 방비하는데 달렸으니 다시 공문을 띄워 알려서 며칠 내로 해산시켜 보낸 후에 보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이것은 틀림없이 미련하고 지각이 없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참으로 매우 통탄할 일이다. 같은 패거리들을 끌어들여 무리를 모으고 있으니 그 의도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은 심상하게 여기며 이럭저럭 날만 보내서는 안될 것이니 총리대신(總理大臣)이 현임 장수와 전임 장수, 병조판서(兵曹判書)와 더불어 의논하여 빨리 제거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또 분부하기를 "요즘 동학당(東學黨)의 소란은 몹시 놀랍고 통분할 일이다. 지난 번에 이 무리들이 글을 올린다고 할 때에 즉시 엄하게 징계하였

으면 오늘같이 창궐하는 폐단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심순택(沈舜澤)이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패거리를 모아 한 곳에웅거하고 여러 날이 지나도록 흩어지지 않고 있으니 극히 통탄스럽습니다." 하니 좌의정(左議政) 조병세(趙秉世)가 말하기를 "지난번에 설사 엄하게 징계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오늘 패거리들을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제멋대로 탐오를 하여 그 고통스러운 침해와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라고 하고 우의정(右議政) 정범조(鄭範朝)가 말하기를 "소란을 일으키는 근본은 탐욕스러운 관리들에 기인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지금의 형편에서 장차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물었다,
영의정 심순택이 말하기를 "어윤중(魚允中)이 도어사(都御史)로 지시를 받고 내려 갔는데 잘 타일러서 그들이 나쁜 마음을 버리고 순종하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찌 죽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좌의정 조병세가 말하기를 "죽이는 것은 타일러 준 다음에 할 일입니다." 하자 우의정 정범조가 말하기를 "타일러도 나쁜 마음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시를 거역하는 것이니 그 때에는 죽여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전에 어사(御史)를 보내라고 한 지시는 바로 그런 의도에서였다."라고 하였다.
조병세가 말하기를 "타이르는 글을 선포하는 조치가 없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하고 심순택이 말하기를 "비록 어사가 내려가 있더라도 지난 번의 관례대로 특별히 선무사(宣撫使)를 파견하였으니 이번에도 특별히 선유사(宣諭使)를 파견하여 타일러 깨닫게 하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을 듯합니다."하고 정범조가 말하기를 "지난 번 임술년[449]에 소요를 진정시킬 때도 특별히 윤음(綸音)[450]을 내리고 선무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특별히 선유사를 파견하여 윤음을 내리면 이는 곧 거듭 타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도 오히려 소요를 일으킨다면 죄악에 대한 성토와

449) 임금의 발표문
450) 임금이 백성에게 알리는 발표문

엄한 처벌을 미루어 서는 안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그러면 선유사를 임명해 보내야 하겠는가? 어윤중이 이미 내려 갔으니 그에게 그냥 그 임무를 맡기는 것이 좋겠는가? 다른 사람을 임명하여 보내는 것이 좋겠는가" 하니 심순택이 말하기를, "임술년에는 선무사라는 명칭으로 임명해 내려보냈으니 이번에도 지난번 관례대로 선무사라고 칭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고 정범조가 말하기를 "중앙에서 다른 사람을 임명하여 보내는 것이 원칙상 합당하지만 지금은 시일을 끌 수 없으니 단지 전하의 처분에 달렸을 뿐 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내려간 사람에게 그냥 그 임무를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였다.

심순택이 말하기를 "행호군(行護軍) 어윤중을 충청도 전라도 선무사로 임명하여 내려가서 지시를 선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승인하였다. 〈고종실록 권 엽〉

□ 고종(高宗) 30년(1893) 3월 30일 임자

충청도 전라도 선무사(宣撫使) 어윤중(魚允中)이 보은(報恩) 포장회(布帳會)에 모인 동학(東學)의 무리를 잘 타일러서 모두 흩어지게 하였다고 급보를 올렸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지금 이 보고를 보니 민심이 지난 날의 잘못된 버릇을 버리고 새롭게 고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돌아가서 직업에 안착하도록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지시를 받아 다시 타이르는 지시를 내리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고종실록 권30 엽20〉

□ 고종(高宗) 30년(1893) 4월 5일 정사

현직 전직 대신(大臣)들을 불러들여 만났다. 그들이 접견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말하기를 "충청병사(忠淸兵使) 이용복(李容復)의 전보를 보니 보은군(報恩郡)에 모였던 동학(東學) 무리의 괴수는 도망치고 무리들은 다 해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속하고 방비하는 일은 조금이라도 미룰 수 없으므로 선무사(宣撫使)의 보고를

기다려서 다시 지시를 받아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혹 속임수에 넘어가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혹 화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 어리석은 백성들이 양심을 잃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반역의 길에 빠지고 스스로 죄를 범한데 불과합니다.

그 정상을 따져 본다면 참으로 불쌍합니다. 지금 깨우쳐 주고 가르 쳐서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때에 똑 같은 법으로 처리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조정에서 그들이 스스로 개진할 길을 열어 주는 뜻에 어긋납니다. 각 지역 감사(監司)와 수령(守令)들도 들뜬 민심을 안정시키는 윤음(綸音)[451] 의 취지를 체득하고 그 종적을 탐색하여 과연 다 각기 제 고장에 돌아갔을 경우에는 다시 더 깨우쳐서 허망한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고 직업을 잃은 사람은 직업에 전념하게 하고 농사를 망친 사람은 농사에 힘쓰도록 권고하여 각자 안착하고 의심을 품지 않게 하는 것으로 다시 공문을 띄워 경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각별히 경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고종실록 권30 엽21-22〉

□ 고종(高宗) 30년(1893) 4월 10일 임술

의정부(議政府)에서 건의하기를 "지금 충청도와 전라도의 선무사(宣撫使) 어윤중(魚允中)의 보고에 의하면 '윤음(綸音)[452]을 선포한 후에 보은(報恩)에 모였던 불량한 동학(東學)의 무리는 이미 다 귀순하고 해산하였으며 무리가 보은에 모인 원인은 이미 서병학(徐丙鶴)의 입에서 드러났습니다. 내돌린 통문(通文)과 내붙인 방문(榜文)에는 원래 이름이 있지만 정황을 헤아릴 수 없으니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충청도의 서병학(徐丙鶴)과 전라도의 김봉집(金鳳集) 서장옥(徐長玉)은 모두 각각 해당 도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잡아다가 감영(監營) 옥에 가두고 엄하게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며 전 충청감사(忠淸監司) 조병식(趙秉式)은 아주 높은 품계의 관원으로 감사의 직책을 맡은 만큼 그 위임한 책임은 남달리 특별하므로 동학무리가 모인 사유를 늦게 보고한 잘못은 이미 어사(御

451) 임금이 백성들에게 알리는 담화문
452) 임금의 발표문

史)의 규탄이 있음으로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우선 그 이름을 관원대장에서 빼버리는 법조문을 적용할 것입니다. 탐오하고 불법행위를 한 관리들에 대해서는 미처 탐문하지 못하였다고 하니 선무사로 하여금 사실대로 잘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것입니다. 전 영장(營將) 윤영기(尹泳璣)가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한 죄는 이미 동학무리들의 구실이 되었으니 심상하게 처리할 수 없으니 의금부(義禁府)에서 잡아다가 심문하고 죄를 주게 할 것입니다.

또 보은군수(報恩郡守) 이중익(李重益)은 동학무리들이 고을 경내에 모여 들었으나 오래도록 사실조사를 지체시킴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한 죄가 드러났으니 용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을 형편으로 보아 서투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기 어렵다는 것은 어사의 보고와 같으니 죄를 진 채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고종실록 권30 엽23〉

□ 고종(高宗) 31년(1894) 2월 15일 임술

전라도 고부(古阜) 백성들의 소란이 곧 이른바 동학란(東學亂)의 시초였다. 원래 경주(慶州) 견곡면(見谷面) 용담리(龍潭里) 사람인 최제우(崔濟愚)는 어릴 때 이름은 복술(福述)이고 호(號)는 수운재(水雲齋)인데 순조(純祖) 갑신년[453] 에 태어나서 무명장사를 직업으로 삼고 경주(慶州)와 울산(蔚山)를 왕래하였다.

하루는 하늘에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지내고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주문을 만들어 퍼뜨리기를 "나의 종교를 믿는 사람은 재난을 면할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천도교(天道敎)를 포교한 첫 해이다.

이 때 천주교(天主敎)가 점점 성해지자 포덕문(布德文)을 지었는데 이르기를 "천주교(天主敎)는 우리의 옛 풍속과 오랜 습관을 파괴하므로 만일 그것이 퍼지도록 내버려둔다면 장차 나라를 잃고 백성이 장차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빨리 막아야 하겠는데 유교(儒敎)는 힘이 약하니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종교뿐이다."라고 하여 이름을 동학(東

453) 순조 24년(1824)

學)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서학(西學)에 상대하여 붙힌 이름이다.

고종(高宗) 광무(光武) 9년[454]에 종교의 이름을 천도교(天道敎)로 고쳤는데 그 교리는 유교(儒敎) 불교(佛敎) 도교(道敎) 세 교리를 대충 취하여 부연하고 또 하느님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기독교(基督敎)의 주장을 취하여 하느님이 인간의 화복을 실제로 맡고 있다고 한 것으로써 시골백성들이 많이 믿었다. 그 종교의 교인들은 밤이면 반드시 맑은 물을 떠놓고 나라를 돕고 백성들을 편안히 한다는 보국안민(輔國安民)을 빌었으며 밥을 지을 때에는 쌀 한 숟가락씩 덜어 내어 '성미(誠米)'라고 하면서 교주에게 바쳤다.

몇 해 사이에 교인이 점점 많아지니 정부에서는 그것이 이단이고 간사한 주장이라고 해서 금지하였다. 철종(哲宗) 계해년[455]에 최제우(崔濟愚)를 체포하여 대구부(大邱府)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듬 해 고종 갑자년[456]에 저자에서 목을 베었다.

그의 제자 최시형(崔時亨)이 그 뒤를 이어 제2세 교주가 되어 교리를 선전하는데 힘쓰면서 『동경대전(東經大全)』이라는 책을 찍어 냈다. 그 후 그의 제자 손병희(孫秉熙)가 최시형의 뒤를 이어 제3세 교주가 되었다.

이 때에 고을에서 동학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때때로 그들을 박해하고 못살게 구니 교도들이 분노하여 모여 글을 올려 교조(敎祖)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은 일을 하소하고 탐오하는 관리들의 포학상을 상소하였는데 여기서 그들은 더욱 굳게 단합되고 교인이 더욱 많아져서 곳곳에서 소동을 피웠다.

정부에서는 전라감사(全羅監司) 김문현(金文鉉)과 경상감사(慶尙監司) 이용직(李容直)에게 타일러 해산시키도록 지시하였으며 또 어윤중(魚允中)을 전라도 충청도의 선무사(宣撫使)로 임명하여 충청북도 보은군(報恩郡)에 달려가서 그 교인을 모아놓고 임금의 지시를 선포하였으나 모두 따르지 않았다.

고종(高宗) 갑오년[457] 2월 전라북도(全羅北道) 고부(古阜) 백성들이 군

454) 1895년
455) 철종 14년(1863)
456) 고종 1년(1864)
457) 고종 31년(1894)

수(郡守) 조병갑(趙秉甲)의 탐오와 횡포에 견딜 수 없어 모여서 소란을 일으키니 정부에서는 장흥부사(長興府使) 이용태(李容泰)를 안핵사(按覈使)로 임명하여 민심을 진정시키고 무사하게 하였으니 이용태는 그 무리가 많은 것을 꺼려서 아프다는 핑계로 머뭇거리면서 도리어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니 민심이 더욱 격화되었다. 고부사람 전봉준(全琫準)이 떨쳐 일어나 동학(東學)에 들어가니 각지의 폭도들이 소문만 듣고도 호응하였으며 김해(金海)백성들은 부사(府使) 조준구(趙駿九)를 내쫓았다. 〈고종실록 권31 엽8〉

□ 고종(高宗) 31년(1894) 6월 14일 기미

충청감사(忠淸監司) 이헌영(李憲永)을 불러들여 만났다.

이헌영이 말하길 "이른바 동학무리라는 것이 작년 봄에 보은(報恩)에서 소란을 피운 이후에도 그 잔당들이 아직도 대중없이 모였다 흩어졌다 합니다. 충청도에서는 전라도처럼 창궐하지는 않았지만 회덕(懷德) 진잠(鎭岑) 고을에서는 침해를 면치 못하였고 전 도내가 자연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지금은 그들을 위로하여 생업에 안착 시키는 것이 급선무인데 용렬하고 어리석은 신으로서는 실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근래에 지방부호들의 행패가 충청도에서 특히 심하니 각별히 엄하게 조사하여 고약한 버릇을 징계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헌영이 다시 말하기를 "요즘에는 조금 잠잠해졌다고 하지만 마땅히 나타나는 대로 단속하여야 할 것입니다."라 하였다.

임금이 다시 분부하기를 "대체로 큰 문제가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하고 작은 것은 의정부(議政府)에 알리며 스스로 처결할 수 있는 것은 편리한 대로 할 것이다" 하였다. 〈고종실록 권31 엽32〉

□ 고종(高宗) 31년(1894) 10월 20일 계해

양호도순무영(兩湖都巡撫營)에서 보고하기를 "죽산부사(竹山府使)이두황(李斗璜)은 군사를 거느리고 보은(報恩) 관내를 지나가다가 청산(靑山) 이천(利川) 안성(安城)의 동학군 이태우(李泰友) 등 20명을 잡아서 모두 죽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고종실록 권32 엽 55〉

□ 고종(高宗) 31년(1894) 11월 4일 병자

양호도순무영(兩湖都巡撫營)에서 아뢰기를 “방금 교도소(敎導所) 영관(領官) 이진호(李軫鎬)의 보고서를 보니

대관(隊官) 이민굉(李敏宏)이 한 부대가 군사를 거느리고 보은(報恩) 청안(淸安) 등지를 정찰하다가 동학군의 접사(接司) 안무현(安武玄) 등 4명을 잡아 모두 그 자리에서 쏘아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고종실록 권32 엽60〉

□ 고종(高宗) 32년(1895) 5월 26일 병신

칙령 제98호「지방 제도의 개정에 대하여」를 비준하여 반포하였다. 각 부(府)의 관할 구역은 아래와 같다.

○ 공주부 공주군 연기군 은진군 연산군 석성군 부여군 노성군 옥천군 문의군 회덕군 진잠군 평택군 보은군 회인군 영동군 청산군 황간군 청주군 전의군 목천군 천안군 직산군 안성군 진위군 양성군 진산군 금산군 〈고종실록 권33 엽61〉

□ 고종(高宗) 광무(光武) 2년(1898) 7월 18일

법부대신(法部大臣) 조병직(趙秉稷)이 건의하기를 “고등재판소의 문의서를 보니 피고 최시형(崔時亨)이 진술은 ‘병인년[458]에 간성(杆城)에 사는 필묵장사 박춘서(朴春瑞)에게 동학(東學)의 정당한 도리와 병을 치료하는 내용이 실린 주문을 받아 가지고 여러 고을과 각 도에 귀신을 내리도록 하면서 여러 고을을 두루 돌아 다녔습니다.「하늘의 조화를 받들어 영원토록 잊지 않으면 만사를 알 수 있다」[459] 라는 주문과「지극한 기운이 지금 이르렀으니 크게 내리게 하여 주기 바란다」[460] 라는 강신문(降神文) 그리고 동학(東學)의 원문인 제1편 포덕문(布德文) 제2편 동학론(東學論) 제3편 수덕문(修德文) 제4편 불연기연문(不然其然文)과 궁궁(弓弓)과 을을(乙乙) 글자를 새긴 부적으로써 백성들을 현혹시켰으며 무리를 결속시켰습니다.

458) 고종 3년(1866)

459) 원문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460) 원문 至氣今至願爲大降

또한 잡혀죽은 최제우(崔濟愚)의 「만년토록 뻗어있는 가지에 천송 이의 꽃이 피고 온 세계의 구름 속에 달이 한 번 비친다」[461]는 시구를 숭상하고 사모하여 법형(法兄) 법제(法弟)의 칭호를 법헌(法軒)이라는 칭호로 바꾸어서 불렀으며 해월(海月)이라는 도장을 새겨서 쓰고 직급을 교장(敎長) 교수(敎授) 집강(執綱) 도집(都執) 대정(大正) 중정(中正)으로 나눈 두목을 각 지방에 나누어 두었습니다. 또한 포장회(布帳會)를 설치하였는데 모인 무리들이 수천 수 만 명을 헤아릴 정도였으며 최제우의 원통함을 푼다고 하였습니다.

지난해 계사년[462]에 따르는 무리 수천 명과 함께 대궐 앞에 나가 상소문을 올리고 곧 해산하였으며 또 보은(報恩)의 포장회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는 순무사(巡撫使)의 타이름에 의하여 각각 스스로 흩어져 갔습니다.

갑오년[463] 봄에 피고 전봉준(全琫準)은 고부(古阜) 지방에서 패거리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기회를 타서 관리를 살해하고 성(城)과 진(鎭)을 함락하는 바람에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이 결딴이 나고 뒤 흔들어 놓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피고가 호응하도록 지시한 일은 없지만 그 변란이 일어나게 된 근원을 연구해 보면 피고가 주문과 부적으로 백성들을 현혹시킨 데 있습니다. 피고 최시형은 『대명률(大明律)』의 '제사편(祭祀編)'에 '무당의 간교한 술책을 금지한다'는 조문의 일체 간사한 교리로 바른 도를 어지럽히는 술책과 초상을 숨기고 향을 피워 사람들을 모으고 밤에 모였다가 새벽에 흩어지며 거짓 착한 것을 닦는다는 명목으로 백성들을 현혹시킨 우두머리는 법조문에 비추어 교수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인 최시형(崔時亨)은 원래의 법조 문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고종실록 권37 엽42〉

□ 대한제국(大韓帝國) 광무(光武) 7년(1903) 3월19일

장례원경(掌禮院卿) 김세기(金世基)가 건의하기를 "5악(五嶽) 5진(五鎭)

461) 원문 萬年枝上花千朶 四海雲中月一鑑
462) 고종 30년(1893)
463) 고종 31년(1894)

4해(四海) 4독(四瀆)으로 봉해야 할 산천을 참작해서 정하 여 따로 상세히 기록해서 들여오기는 하였으나 나라의 제사(祭祀)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 장례원(掌隷院)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문의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첨부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 5진(五鎭)의 중진(中鎭)은 백악산(白岳山)〔서울〕
동진(東鎭)은 오대산(五臺山)〔강원도 강릉군〕
남진(南鎭)은 속리산(俗離山)〔충청북도 보은군〕
서진(西鎭)은 구월산(九月山)〔황해도 문화군〕
북진(北鎭)은 장백산(長白山)〔함경북도 경성군〕

〈고종실록 권43 엽14〉

□ 순종(純宗) 융희(隆熙) 2년(1908) 1월 30일

총리대신(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과 법부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이 융희(隆熙) 원년(1907) 11월 18일에 받은 분부에 따라 『죄인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들의 죄명을 벗겨주고 다시 작위(爵位)와 시호(諡號)를 회복시키는 안을 내각관제(內閣官制) 제7조 제 7항으로 토의하여 보고하니[464] 임금이 "좋다."고 하였다. 〈순종실록 권2 엽4〉

□ 순종(純宗) 융희(隆熙) 2년(1908) 4월 30일

내각 총리대신(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아뢰기를 "지난해 11월 18일의 분부를 받들어 『죄인대장』에 올라있는 사람들의 죄명을 벗겨주는 문제를 여러 번 비준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관작(官爵)이 있는 사람은 응당 벼슬을 회복시켜 주는 은전을 베풀어야 하겠는데 문제가 오래되다 보니 한꺼번에 모조리 조사해낼 수 없습니다.

우선 죽은 좌의정(左議政) 한효순(韓孝純) 외 77명의 관작을 회복 시키는데 토의할 문건으로 회인현감(懷仁縣監) 김도응(金道應) 등을 보고합니다."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순종실록 권2 엽12〉

464) 이 안에 전 회인현감(懷仁縣監) 김도응(金道應)도 포함되었다.

□ 순종(純宗) 융희(隆熙) 4년(1910) 8월 19일

임금이 분부하기를 "죽은 현감(縣監) 성제원(成悌元), 죽은 시정(寺正) 성운(成運)은 문장과 경서에 대한 학문으로 세상 사람들이 높이 우러러보는 바로 되었다.

마땅히 조정에서 표창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니 다같이 정2품의 품계를 주고 규장각(奎章閣) 제학(提學)의 벼슬을 추증하는 동시에 시호(諡號)를 내리는 특전을 베풀도록 할 것이다." 하였다. 〈순종실록 권4 엽12〉

□ 순종(純宗) 융희(隆熙) 4년(1910) 8월 20일

임금이 성제원(成悌元)에게 청헌공(淸憲公)이라는 시호를, 성운(成運)에게 문각공(文恪公) 이상수(李象秀)에게 문간공(文簡公), 어윤중(魚允中)에게 충숙공(忠肅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순종실록 권4 엽 12〉

㉱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

□ 보은현(報恩縣)

본래 신라의 삼년산군(三年山郡)인데 경덕왕(景德王)이 삼년군(三年郡)으로 고쳤고 고려 때에 보령군(保齡郡)으로 고치어 현종(顯宗) 9년(1018)에 상주(尙州)의 속한 현으로 붙이었다가 〔뒤에 소리가 변하여 보령(報令)으로 되었다〕명종(明宗) 임진(1172)에 처음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 태종(太宗) 16년(1416)에 보령현(保寧縣)의 음과 서로 같음을 피하여 보은현(報恩縣)으로 고쳤다. 딸린 부곡(部曲)이 하나이니 임언(林偃)이다.〔언(偃)을 단(壇)으로 잘못 썼다〕

명산(名山)은 속리산(俗離山)이다.〔신라 때에는 속리악(俗離岳)으로 일컫고 중사(中祀)로 하였다〕

사방경계는 동쪽으로 상주(尙州)에 이르기 32리, 서쪽으로 회인(懷 仁)에 이르기 10리, 남쪽으로 옥천(沃川)에 이르기 20리, 북쪽으로 청주(淸州)에 이르기 26리이다.

호수가 3백27호요, 인구가 1천4백57명이다.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64명, 수성군(守城軍)이 1명이요, 선군(船軍)이 1백36명이다.
토성(土姓)이 셋이니, 이(李) 최(崔) 김(金)이요, 망성(亡姓)이 둘이니 손(孫) 박(朴)이요, 망래성(亡來姓)이 둘이니 송(宋) 한(韓)이요, 망촌성(亡村姓)이 하나이니 방(方)이요, 임언(林偃)의 성이 둘이니 홍(洪) 석(石)이다.
땅은 메마르며 간전(墾田)이 5천2백29결이요, 〔논이 3분의 1에 좀 넘는다〕토의(土宜)는 오곡과 조 팥 메밀 배나무 뽕나무 닥나무이다. 토공(土貢)은 꿀 밀 느타리 석이 종이 칠 지초 대추 족제비털 호도 잣 노루가죽 삵괭이가죽이요, 약재(藥材)는 연꽃술 인삼 오가피(五加皮) 백복령(白茯苓) 승검초뿌리 수뤼나물 북나무진이요, 토산(土産)은 송이 신감초(辛甘草)와 은돌이 현의 동쪽 널은이에서 난다. 〔우리 나라 모든 고을에서 나는 은돌을 시험해 보면 많이 쓸데에 맞지 아니한다〕 도기소(陶器所)가 하나이니 현의 동쪽 외임리(外任里)에 있다. 〔하품이다〕
오항산석성(烏項山石城)이 현의 동쪽 5리에 있다. 〔둘레 1천2백20보이나 험조하다. 안에 샘 6이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르지 아니하며 군창(軍倉)이 있다〕
역(驛)이 둘이니 원암(元巖) 함림(含林)이요, 봉화(烽火)가 한 곳이니 현의 남쪽 금적산(金積山)에 있다.〔남쪽으로 청산(靑山)의 박달라산(朴達羅山)과 연락하고 북쪽으로 회인(懷仁)의 용산점(龍山岾)과 연락한다〕
속리사(俗離寺)가 속리산(俗離山)의 서쪽에 있다.〔교종(敎宗)에 붙이고 논밭 20결을 주었다〕
월경지(越境地)로 청산(靑山) 관내의 주성부곡(酒城部曲)이 현(縣)북면(北面)에 터무니 없이 들어와 있다.

□ 회인현(懷仁縣)

본래 백제의 미곡현(未谷縣)인데 신라가 매곡현(昧谷縣)으로 고쳐 연산군(燕山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가 회인(懷仁)으로 고치어 현종(顯宗) 9년(1018)에 청주(淸州)에 속한 현으로 붙였다가 뒤에 회덕현(懷德縣) 감무(監務)로써 회인을 겸임하였는데 홍무(洪 武) 16년(1383) 계해에 비로소 따로 감무(監務)를 두었고 조선 태종(太宗) 13년(1413)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현감으로 고쳤다.

매곡성(昧谷城)〔봄과 가을에 현감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한다〕대천(大川)은 화인진(化仁津) 하류가 남쪽 지경으로 들어와서 주안현(周岸縣)으로 흘러간다.

사방경계는 동쪽으로 보은(報恩)에 이르기 20리, 서쪽으로 문의(文義)에 이르기 12리, 남쪽으로 주안(周岸)에 이르기 22리, 북쪽으로 청주(淸州)에 이르기 22리이다.

호수는 1백46호요, 인구가 6백33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12명이요, 진군(鎭軍)이 18명, 선군이 37명이다.

토성(土姓)이 둘이니 이(李) 홍(洪)이요, 망성(亡姓)이 둘이니 장(張) 신(辛)이요, 속성(續姓)이 하나이니 최(崔)이다.〔지금 향리(鄕吏)가 되었다〕

땅은 메마르며 기후가 많이 차다. 농토는 1천1백46결이요,〔논이 9분의 1이다〕토의(土宜)는 기장 피 콩 조 팥 메밀 보리 뽕나무 닥나무 배나무이다. 토공(土貢)은 꿀 밀 느타리요, 약재(藥材)는 백부자요, 토산(土産)은 석철〔현의 남쪽 노성산(老聖山)에서 난다〕과 상수정석〔현의 북쪽 마산(馬山)에서 난다〕이다. 도기소(陶器所)가 하나이니 현의 서쪽 둔안리(芚安里)에 있다.〔하품이다〕

호점산석성(虎岾山石城)이 현의 남쪽 9리에 있고〔둘레가 8백 58보이나 험조하고 오래 되어 무너져 있다. 안에 샘 하나가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르지 아니한다〕봉화가 한 곳이니 현의 서쪽 용산점(龍山岾)에 있다.〔동쪽으로 보은(報恩)의 금적산(金積山), 북쪽으로 청주(淸州)의 상령성(上嶺城)과 연락한다〕〈세종실록 권 148〉

▣ 평전(評傳)

□ 홍윤성(洪允成)

홍윤성의 자(字)는 수옹(守翁)이고 회인현(懷仁縣) 사람이다.[465] 경태(景泰) 경오년(1450)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 부정자(副正字)로 선발되었고 무재(武才)가 있다 하여 특별히 사복직(司僕職)을 겸하

였다. 신미년(1451)에 한성참군(漢城參軍)으로 승진하고 통례문(通禮門) 봉례랑(奉禮郎)과 사복시(司僕寺) 주부(注簿)를 역임하였으며 세조(世祖)가 수양대군(首陽大君) 시절에 문종(文宗)이 명령으로 진서(陣書)를 편찬할 때 홍윤성은 낭좌(郎佐)로 참여하였다. 문종이 돌아가시자 세조(世祖)는 단종이 젊어 나라가 위태함을 걱정하면서 홍윤성을 보고는 기이하게 여기어 은밀한 뜻을 나타내니 홍윤성이 제일 먼저 권람(權擥)에게 천거되었다. 계유년(1453)에 세조가 정난(靖難)할 때 공을 세워 수충협책정난공신(輸忠協策靖難功臣)의 시호를 내려주고 본시판관(本寺判官)으로 승진시켰으며 갑술년(1454)에 또 소윤(少尹)에 오르고 얼마 있다가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으로 옮겼다. 을해년(1455)에 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가 되었다가 세조(世祖)가 즉위하면서 통정대부(通政大夫) 예조참의(禮曹參議)에 임명되고 또 좌익공신(佐翼功臣)의 시호를 내렸다. 병자년(1456)에 품계가 가선대부(嘉善大夫) 참판(參判)으로 올라 인산군(仁山君)으로 책봉되었고 얼마 있다가 병조(兵曹)로 옮겼다가 가정대부(嘉靖大夫)에 올라 다시 예조(禮曹)에 임명되었다. 천순(天順) 정축년(1457)에 자헌대부(資憲大夫) 판서(判書)에 오르고 이 해에 모친상을 당하였는데도 기복출사(起復出仕)[466]하여 경상우도(慶尙右道) 도절제사(都節制使)로 나갔다.

기묘년(1459)에 다시 예조판서(禮曹判書)에 임명되었고 경진년(1460)에 정헌대부(正憲大夫)를 더하였다. 당시에 모린위(毛憐衛) 낭보군(浪甫軍)[467]이 반란하니 세조(世祖)가 신숙주(申叔舟)를 장수로, 홍윤성을 부장으로 삼아 토벌하게 하였으며 돌아오자 숭정대부(崇政大夫)를 더하였다. 갑신년(1464)에 인산군(仁山君) 겸 예조판서(禮曹判書)를, 성화(成化) 정해년(1467)에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議政府) 우의정(右議政)에 임명하였다. 기축년(1469)에 좌의정(左議政)에 오르고 예종(睿宗)이 고명(誥命)을 받음에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중국 북

465) 원문 '회인인(懷仁人)'을 본관(本貫)으로 본 경우도 있으나 홍윤성(洪允成)의 본관(本貫)은 남양(南陽)〔당홍계〕이고 특히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홍윤성을 회인현(懷仁縣)의 인물로 수록된 것으로 보아 회인사람으로 번역하였다.

466) 부모의 상중(喪中)에 벼슬에 나가는 일

467) 세조 6년(1460) 두만강변 모란위(毛憐衛)에 침입한 여진족의 군대

경에 갔다가 돌아와 영의 정(領議政)에 올랐다. 경인년(1470)에 인산부원군(仁山府院君)으로 다시 책봉되고 신묘년(1471)에 순성명량경제홍화좌리공신(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의 시호를 내려 주었는데 이에 이르러 발에 종기를 앓다가 사망하니 나이는 51세이다.

시호는 위평(威平)이니 용맹하여 강인한 결단력이 있음이 위(威)이며 능히 화란을 평정함이 평(平)이다. 홍윤성은 용모가 웅위(雄偉) 하고 체력이 남보다 뛰어났으며 젊어서는 가난하였는데 힘써 배워서 급제하니 사람들이 재능이 있는 웅걸로 기대하였다. 세조를 만나게 되자 총애하여 돌봄이 매우 융숭하였고 홍윤성이 본시 빈궁 하였음을 알고 많은 농토를 내려 주었다. 홍윤성이 재화를 늘리는데 힘써 홍산농장(鴻山農莊)에 쌓인 곡식은 거만(鉅萬)이었고 그의 노복은 홍윤성의 세도를 믿고 함부로 방자하여서 조금이라도 어기고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때려 죽이기도 하였다.

세조가 목욕하러 온양(溫陽)에 거둥하였을 때 양반집 부인 윤씨(尹氏)가 남편이 홍윤성의 종에게 살해되었음을 호소하니 사헌부(司憲府)에 조사를 지시하여 그 종을 환형(轘刑)하였으나 홍윤성은 조사하지 않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탄핵하여 아뢰기를 “홍윤성의 거칠고 광망(狂妄)한 태도와 교만하고 제 마음대로 날뛰는 형상을 성감(聖鑑)은 통조(洞照)하소서.” 하니 당시에 이르기를 “그의 잘못을 똑바로 맞추었다.” 하였다.

첩이나 종이 조금이라도 뜻을 어기고 거슬리면 용서하지 않고 무기를 쓰기까지 하였으며 아내 남씨(南氏)가 아이를 못 낳자 같은고을의 양반 김자모(金自謀)의 딸을 강제로 데려다가 장가들었다. 〈성종실록 권59 엽4-5〉

□ 성제원(成悌元)

성제원의 자(字)는 자경(子敬)이다. 의기가 뛰어나고 기상이 굳세었다. 가정에서는 효제를 극진히 하였고 친구를 대함에는 한결같이 성실과 믿음으로 하였으며 농담을 잘하고 온화하였다.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면 반드시 하루 종일 거닐었다. 평상시 남과 지낼 적에는 현인이거나 어리석은 자거나 거스름이 없이 모두 적절히 대하니 다른 사람들은 그의 가슴속을 헤아릴 수 없었다. 사건이 생겨 여론의 시비가 있으면 한결같이 옛

의리를 따르고 나머지 의논은 개의하지 않으므로 의연하여 범할 수가 없었다. 명종 때 세상을 잊고 조용하게 즐기는 선비로 보은현감(報恩縣監)에 임명되었는데 벼슬살이를 욕심없이 하면서 오직 술로써 즐기니 교활한 아전은 위엄을 두려워하고 간사한 백성은 덕에 감복하였다. 임기가 끝난 뒤에는 곧 옛집으로 돌아갔는데 임금의 부름을 받고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가 죽었다. 〈명종실록 권25 엽39〉

□ 성운(成運) ①

성운의 자는 건숙(健叔)인데 학자들이 대곡선생(大谷先生)이라고 일컬었다. 성씨(成氏)는 본래 서울에 살던 번성한 종족인데 성운은 젊을 적에 세상을 피해 살 뜻이 있어 겨우 성균관(成均館)에 들어 갔다가 즉시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처가인 보은(報恩)에 가서 살았다. 그의 집에서 몇 리 떨어진 곳에 경관이 수려한 계곡이 있었는데 그 안에다 작은 집을 짓고 소를 타고 오가면서 거문고를 타고 시를 지으며 스스로 즐거워하였다. 착함과 의로움을 좋아할 뿐 사람들과 다투는 일이 없었고 집에 양식이 자주 떨어졌으나 태연하였다. 말엽에 종종 대신(大臣)의 천거로 두 번이나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명종 말년에는 경서(經書)에 밝고 행실(行實)을 닦은 선비로 천거되어 역마로 불러 서울에 갔으나 만나자는 임금의 어명을 받자 병으로 사양하였고 재차 관직에 임명하였으나 모두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선조도 여러 번 관직을 주었지만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고 직급을 높혀 시정(寺正)에 임명하고 특별히 부른 것이 세 번이었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이에 임금이 그의 풍도와 기절을 높이 평가하여 전후로 먹을 것과 의복을 하사하였으며 또 사냥매를 하사하였다.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의원을 보내어 구휼하게 하였고 사망하자 장사지내는데 필요한 여러 물품을 관아에서 도우라고 명하였다. 그의 당질인 성혼(成渾)이 그의 묘비(墓碑)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선생은 40년간 산림 속에서 사셨다. 선생이 문을 닫고 들어앉아 뜻을 구한 것은 반드시 그만한 학문이 있어서일 것이고, 겸손히 물러나서 확고하게 지킨 것은 반드시 그만한 소견이 있어서일 것이 며 배고픈 것도 잊고 구경을 하며 늙어가는 것도 모른 것은 반드시 그만한 낙이 있어서일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산간 계곡에서 노닐며 거문고와 책에 묻혀 스스로 즐거워하는 것만을 보았을 따름이지 그의 내면에 간직된 것에 대해서는 엿보아 헤아린 이가 적었다. 그리고 선생은 평생 남들에게 칭송되고 싶어하지 않았기에 그 남긴 뜻을 어길 수 없어 감히 묘비명을 입언지사(立言之士)에게 청하지 않은 것이다."

성운은 학도들을 모아 강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 일이나 나랏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식(曺植) 성제원(成悌元)과 더불어 서로 벗하면서 친밀하게 지냈는데 조식은 성품이 강개하여 여러 번 상소를 올려 요즘 일어난 일을 말하였고 성제원은 큰 재기가 있고 학식도 높았으며 방달(放達)하였다. 당세에 세상을 잊고 조용하게 즐기는 선비로 부름을 받은 자들 이 모두 세상의 의논을 면치 못했으나 성운만은 담박하고 충퇴(黜退)하여 찾을 만한 자취가 없었으므로 조식(曺植)이 매양 탄식하고 부러워하였다. 어떤 사람은 '그의 형 성우(成遇)가 을사년[468]에 화를 당했으므로 깊은 상처를 받았는데 이는 그의 시와 문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였다. 〔성운은 아들이 없어서 처형의 아들을 길렀는데 형의 딸과 결혼을 시켜 자기의 제사를 맡기었다. 이황(李滉)은 그의 학문이 노자(老子)와 장자(莊子)에 가깝지 않은가 의심하였다〕 〈선조수정실록 권13 엽7〉

□ 성운(成運) ②

자(字)는 건숙(健叔)이다. 어려서부터 힘써 배웠으며 삼산현(三山縣) 대곡(大谷)에 은거하면서 여러 번 임금의 부름을 받았으나 끝내 벼슬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향년은 83세였다. 학자들이 대곡선생(大谷先生)이라 불렀다. 임금이 예관(禮官)을 보내어 사제(賜祭)하였는데 그 제문(祭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화하고 공손한 사람은 덕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대는 일찍 학문에 뜻을 두었고 장성해서는 더욱 생각이 정밀하였다. 그리하여 성균관(成均館)에 나아가게 되었고 사람들은 노성한 이에 비교했으니 화락한 군자요 나라의 정간(楨幹)이었다. 과거의 급제로 재능을 자랑하는 것을 그대가

468) 명종 즉위년(1545)의 을사사화(乙巳士禍)

어찌 깨끗이 여겼겠는가? 숨어 살면서 평소에 품었던 뜻을 지키는 것이 실로 그대가 즐기는 것이었다. 산골에서 지내면서 구학(舊學)에 더욱 힘썼으므로 충신(忠信)이 안에 쌓였고 영화(英華)는 밖으로 반출되었다. 그 마음은 가을 달처럼 맑았고 그 지조는 흰눈처럼 깨끗하였다. 하늘이 낸 드문 인재로 문장을 여사(餘事)로 여겼으므로 시문(詩文)을 번거롭게 다듬지 않았으나 샘에 물 솟듯 산이 공중에 치솟듯 하였다. 겸손을 스스로 간직함은 여러 착함의 모임이었고 언행이 진실하여 안팎이 한결 같았다. 출세할 생각을 이미 끊어버렸으므로 자신의 뜻대로 유유자적하였다. 거친 음식도 잇대지 못하였고 초가집은 무릎을 움직일 정도였다.

나의 선왕께서 선인(善人)을 좋아하는 정성이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몸을 굽히셨고 관사(館舍)을 비워놓고 문 열어 시골에 묻힌 인재를 맞아 등용하고 침체되었던 이를 기용할 때 그대도 소명(召命)을 받았었다. 그대는 학문하는 데에 바탕이 있고 6조(六條)를 잘 행했으며 희디 흰 백발로 금마문(金馬門)에 나아왔으나 병 때문에 등대(登對)하지 못하고 슬픈 사정을 들어 여러번 사직하였다. 선왕께서는 정녕한 하서(下書)로 온화하게 효유하면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의원을 보내고 약을 계속 내리셨으니 특수한 예우였고 특별한 거조였다. 이토록 선왕의 사랑이 융숭했으나 그대의 병세 또한 깊어 드디어 해골(骸骨)을 빌어 고향으로 돌아갔으므로 선왕의 마음이 섭섭하기 그지없으셨다. 어진이를 붙잡기 어려워 흰 말이 저 산골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유충(幼冲)한 몸으로 덕 있는 사람을 몰라볼까 걱정하여 선왕 의 뜻을 추모해서 작은 관질(官秩)을 더해 주었는데 이는 감히 벼슬을 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음을 보이기 위한 것 이었다. 병이 나으면 혹 와서 대양(對揚)할 수 있기를 바랐으나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근력(筋力)이 강건하기 어려워 산골에 누워 있을 뜻이 더욱 굳어졌으니 무슨 계책으로 나오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선인(善人)을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알고 있는 바이니 비록 함께 다스리지는 못하였으나 또한 완부(頑夫)를 청렴(淸廉)하게 만들기에는 족하였다. 그러나 한 세대에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으니 나의 탄식이 간절하지만 심정을 표현할 길이 없었는데 어찌 오늘날 영원히 유명(幽明)을 달리할 줄을 생각이나 했겠는가? 부음(訃音)을 듣고는 놀랍고 슬퍼서 멍하니 무엇을 잃은 듯

하다. 하늘이 한 늙은이를 억지로 남기지 않으니 백부(百夫)로도 속(贖)하기 어려웠다. 의원을 보냈으나 헛걸음으로 돌아왔고 탕제(湯劑)를 내렸으나 제때에 미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실상 정성을 다하지 못한 탓이다. 부끄럽고 슬픈 마음 어찌 끝이 있겠는가? 아, 슬프다! 본래 지란(芝蘭)은 무성하지 않으나 잡초는 쉬 무성해 지는 법이다. 나라가 불행해서 숙유(宿儒)가 조진(凋盡)되니 시골에 좋은 풍속이 없어 사람들이 점점 야박하게 되었다. 외람되어 어렵고 큰 자리에 있으므로 내가 민망하게 여기고 있다. 내가 종신(從臣)을 인하여 다시 풍치(風致)를 들으니, 만년에 고요히 수양하여 조예가 더욱 깊어져 먼지 없는 거울 같고 물결 없는 물 같아서 보는 자마다 스스로 취하고 듣는 자마다 감탄한다고 하였으므로 내가 비록 민첩하지 못하지만 실로 마음속으로 감동하였다. 저 속리산(俗離山)을 바라보니 산은 높고 물은 깊어 군자가 사는 곳이다. 전형(典刑)이 남아 있으니 백대(百代)가 지난 후에도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 높일 것이다. 멀리서 보잘것없는 제수를 보내어 제를 올리지만 이것을 어찌 보답하는 나의 정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영령(英靈)은 모르지 않을 것이니 내려와 한번 흠향하길 바란다."

〈선조실록 권13 엽8〉

戶口總數

????

부록

戶 口 總 數

㉾ 보은현(報恩縣)

10개면 2백6개리이다.

호수는 4천7백59호이고 인구는 1만4천8백1명인데 그 중 남자가 7천3백74명이고 여자가 7천4백27명이다.

ㅁ 외북면(外北面)

어온동리(於溫洞里) 가고리(加古里) 오대리(五臺里) 원평리(元坪里) 여동리(汝洞里) 동장중리(洞長中里) 백돌리(白乭里) 동하목리(東下目里) 문암리(門巖里) 아시방리 (牙時方里) 상신곡리(上新谷里) 하신곡리(下新谷里) 율지리(栗枝里) 함림리(含林里) 팔유정리(八柳亭里) 상동한리(上東汗里) 강산사리(江山寺里) 하동한리(下東汗里) 산직리(山直里) 주지목리(注之目里) 안량리(安良里) 종곡서변리(鐘谷西邊里) 종곡동변리(鐘谷東邊里) 성족리(聲足里) 내동리(內洞里) 누저리(樓底里) 백인리(百忍里) 와평리(瓦坪里) 보종리(洑宗里) 구티리(龜峙里) 굴어리(屈於里) 읍동변리(邑東邊里)

○ 호수는 8백16호이고 인구는 2천3백58명인데 그 중 남자가 1천1백85명이고 여자가 1천1백73명이다.

ㅁ 내복면(內北面)

천산리(天山里) 중티리(中峙里) 이원리(泥院里) 양동리(陽洞里) 길동리(吉洞里) 산대리(山臺里) 서지리(西枝里) 웅장리(熊獐里) 유령리(柳嶺里) 궁평리(宮坪里) 노티리(老峙里) 하초포리(下草浦里) 수남리(水南里) 중초

포리(中草浦里) 상초포리(上草浦里) 구리목리(九里目里) 산성리(山城里) 내동용암리(內洞龍巖里) 소지동리(小池洞里) 사례동리(射禮洞里) 교동리(校洞里) 하장곡리(下獐谷里) 오정리(五亭里) 사막리(舍幕里) 읍내서변리(邑內西邊里)

○ 호수는 7백12호이고 인구는 2천1백96명인데 그 중 남자가 1천1백15명이고 여자가 1천81명이다.

▫ 수한면(水汗面)

은로리(隱路里) 평포리(坪浦里) 오정리(梧亭里) 마문리(馬門里) 질곶리(秩串里) 신기리(新基里) 어리광리(於里光里) 양기동리(陽基洞里) 문티리(文峙里) 거현한평리(巨峴汗坪里) 우항리(牛項里) 말곶리(末串里) 거현리(巨峴里) 중리(中里) 묘동리(畝洞里) 성리(星里) 거묵동리(巨墨洞里) 괴정리(槐亭里) 병원리(并院里) 후평리(後坪里) 발산리(鉢山里) 인평리(仁坪里) 장승리(長承里) 신촌리(新村里) 장선리(長善里) 수변리(水邊里)

○ 호수는 5백25호이고 인구는 1천5백24명인데 그 중 남자가 6백89명이고 여자가 8백35명이다.

▫ 서니면(西尼面)

우진평리(右陳坪里) 송죽리(松竹里) 사각리(思角里) 황산리(黃山里) 서와동변리(西瓦東邊里) 서와서변리(西瓦西邊里) 상곡리(上谷里) 양지리(陽地里) 상하둔덕리(上下屯德里) 등산리(登山里) 뉴항리(杻項里) 상천곡리(上泉谷里) 하천곡리(下泉谷里) 홍개평리(洪介坪里) 두지동리(斗之洞里) 구량리(九良里) 연촌리(硯村里) 금굴리(金掘里) 은사평리(隱士坪里) 내수정리(內水井里) 외수정리(外水井里) 찬곡리(瓚谷里) 죽전리(竹田里)

○ 호수는 3백61호이고 인구는 1천6백55명인데 그 중 남자가 7백98명이고 여자가 8백57명이다.

▫ 삼승면(三升面)

내망월리(內望月里) 외망월리(外望月里) 석남리(石南里) 삼승리(三升里) 각동리(角洞里) 온야리(溫夜里) 서원리(西院里) 이목동리(梨木洞里) 탄금대리(彈琴臺里) 신기리(新基里) 상가습리(上可習里) 중가습리(中可習里)

하가습리(下可習里) 원암리(元巖里) 달산리(達山里)

○ 호수는 4백21호이고 인구는 1천2백65명인데 그 중 남자가 6백24명이고 여자가 6백41명이다.

□ 마로면(馬老面)

흘여지리(屹汝只里) 한중리(閑中里) 세동리(細洞里) 하둔리(下屯里) 증산리(甑山里) 갈전리(葛田里) 내동리(內洞里) 세중동리(細中洞里) 묘동리(畝洞里) 신기리(新基里) 모동리(牟洞里) 점동리(店洞里) 오천리(梧川里) 성지리(城地里) 대양리(大陽里)

○ 호수는 3백20호이고 인구는 7백66명인데 그 중 남자가 3백94명이고 여자가 3백72명이다.

□ 탄부면(炭釜面)

소여리(所余里) 기질대리(其叱大里) 관리(館里) 장산리(長山里) 구암리(龜巖里) 벽지리(碧池里) 지덕리(至德里) 덕동리(德洞里) 북암리(北巖里) 경상리(京祥里) 석화리(石花里)

○ 호수는 3백20호이고 인구는 7백66명인데 그 중 남자가 3백94명이고 여자가 3백72명이다.

□ 왕내면(旺來面)

임곡리(壬谷里) 신기리(新基里) 적석리(赤石里) 갈평리(葛坪里) 송현리(松峴里) 수영동리(水永洞里) 여리(余里) 관기리(館基里) 삼거리(三巨里) 수문동리(水門洞里) 사창리(司倉里) 방하곡리(方下谷里) 임한리(林閑里)

○ 호수는 2백80호이고 인구는 8백99명인데 그 중 남자가 4백44명이고 여자가 4백55명이다.

□ 속리면(俗離面)

사비양리(沙比良里) 애평리(艾坪里) 황곡리(荒谷里) 장내리(帳內里) 서원리(書院里) 오룡동리(五龍洞里) 장재평리(壯才坪里) 오심리(悟心里) 삼거리(三巨里) 갈목리(葛目里) 사내동리(舍乃洞里) 봉항리(鳳項里) 상판근리(上板斤里) 중판근리(中板斤里) 하판근리(下板斤里) 북암리(北巖里) 산성

리(山城里) 가좌동리(加佐洞里) 상동리(上洞里)

○ 호수는 4백54호이고 인구는 1천1백79명인데 그 중 남자가 5백94명이고 여자가 5백85명이다.

ㅁ 사각면(思角面)

광석리(廣石里) 대야리(大也里) 길상리(吉祥里) 구인리(求仁里) 관동리(館洞里) 신동리(新洞里) 상평각리(上坪角里) 하평각리(下坪角里) 나부리(羅浮里) 매화리(梅花里) 매실리(梅實里) 운현리(雲峴里) 용평리(龍坪里) 사직리(社稷里) 고승리(高升里) 월송리(月松里) 주교리(舟橋里) 어암리(漁巖里) 용천리(龍川里) 만지리(晩旨里) 탁동리(濯洞里) 성저리(城底里) 신기리(新基里) 상이평리(上梨坪里) 하이평리(下梨坪里)

○ 호수는 4백75호이고 인구는 1천6백73명인데 그 중 남자가 8백31명이고 여자가 8백42명이다

㉾ 회인현(懷仁縣)

6개면 54개리이다.

호수는 1천1백90호이고 인구는 4천4백68명인데 그 중 남자가 2천3백32명이고 여자가 2천1백36명이다.

ㅁ 읍내면(邑內面)

사직동(社稷洞) 마근동리(馬斤洞里) 둔리(遯里) 벌리(伐里) 눌곡리(訥谷里) 황평리(黃坪里) 향교동리(鄕校洞里) 개동리(介洞里) 용상동리(龍床洞里)

○ 호수는 2백33호이고 인구는 8백78명인데 그 중 남자가 4백95명이고 여자가 3백83명이다.

ㅁ 동면(東面)

오동리(梧洞里) 신문리(新門里) 계암리(桂巖里) 능암리(能巖里) 만지동리(晩旨洞里) 법주리(法注里) 용흥동리(龍興洞里) 관평리(官坪里) 세촌리(世村里) 고초천리(高草川里) 보고곡리(甫古谷里) 애티리(艾峙里) 건천리(乾川里) 입석리(立石里) 산척동리(山尺嵩里) 노성산리(老城山里)

○ 호수는 3백76호이고 인구는 1천3백71명인데 그 중 남자가 6백99명이고 여자가 6백72명이다.

□ 서면(西面)

가정자리(佳亭子里) 명곡리(鳴谷里) 용두리(龍頭里) 거교리(巨橋里) 남대문리(南大門里) 거구리(巨九里) 신읍리(新邑里) 탕중지리(湯中旨里) 염티리(鹽峙里) 묘암리(妙巖里) 동막동리(東幕洞里) 마구리(馬九里)

○ 호수는 2백32호이고 인구는 8백71명인데 그 중 남자가 4백59명이고 여자가 4백12명이다.

□ 남면(南面)

신대리(新垈里) 추동리(楸洞里) 조곡리(鳥谷里) 판장리(板莊里) 도요목리(都要目里) 분제곡리(分諸谷里) 음중지리(陰中旨里) 사탄리(沙灘里) 송포리(松浦里) 서당평리(書堂坪里)

○ 호수는 1백68호이고 인구는 6백46명인데 그 중 남자가 3백31명이고 여자가 3백15명이다.

□ 강외면(江外面)

사음동리(舍音洞里) 매산리(梅山里) 법수리(法水里)

○ 호수는 76호이고 인구는 2백96명인데 그 중 남자가 1백45명이고 여자가 1백51명이다.

□ 북면(北面)

수곡리(首谷里) 계산리(桂山里) 등곡리(登谷里) 지경동리(地境洞里)

○ 호수는 1백5호이고 인구는 4백6명인데 그 중 남자가 2백3명이고 여자가 2백3명이다.

색인

ㄱ

가아악(嘉阿岳) 19
경　종(景　琮) 30
공　직(龔　直) 28, 29, 30
구이극(具爾極) 189
권의형(權義衡) 236
권제응(權濟應) 250
권　홍(權　泓) 처 김씨(金氏) 191
금적산(金積山) 275, 276
김경세(金景世) 처 안씨(安氏) 260
김낙균(金樂均) 262
김덕민(金德民) 166
김덕민(金德民) 처 신씨(申氏) 151
김도명(金道明) 260
김도응(金道應) 194, 273
김득대(金得大) 193
김성덕(金成德) 260
김성원(金聲遠) 138
김수경(金守經) 61, 67
김수익(金受益) 151
김승필(金承弼) 108, 110, 111, 112
김영산(金永山) 73, 78
김영석(金永錫) 260
김재익(金載翼) 253
김　정(金　淨) 79, 81, 82, 83, 86, 87, 88, 89, 90, 91, 92, 95, 96, 103, 104, 106, 132, 133, 143
김하현(金夏鉉) 178
김한붕(金漢鵬) 260
김　완(金　錹) 259

ㄴ

나덕준(羅德峻) 144
내은동(內隱同) 46
노성산(老成山) 276

ㄷ

동평(東坪) 59

ㅁ

마　산(馬　山) 276
매　곡(昧　谷) 27, 30
매곡성(昧谷城) 30, 42, 276
매곡성묘(昧谷城廟) 43
매곡현(昧谷縣) 19, 28, 275
미곡현(味谷縣) 19, 27, 275

ㅂ

박기준(朴耆俊) 152
박득상(朴得祥) 151
박래익(朴來翊) 197
박　률(朴　嶵) 171
박막동(朴莫同) 69
박운손(朴雲孫) 64
박준원(朴準源) 252
박중진(朴重振) 152, 154, 155
박진흥(朴震興) 198
박춘우(朴春遇) 235
박팽령(朴彭齡) 251
박　훈(朴　薰) 88, 89, 90, 91, 92
법주사(法住寺)
병풍송(屛風松) 59
보　령(報　令) 26, 28, 35
보령군(報令郡) 18,29
보령현(報令縣) 26, 27

보은포장회(報恩布帳會) 266
보은향교(報恩鄕校) 143, 181, 236, 272
복천사(福泉寺) 46, 49, 50, 52, 53, 54, 60, 62, 64, 70, 71, 72, 76, 88, 114, 116

ㅅ

사자암(獅子庵) 73, 198
산앙사(山仰祠) 236
삼년군(三年郡) 18, 27
삼년산군(三年山郡) 16, 18, 21, 27
삼년산서원(三年山書院) 143
삼년산성(三年山城) 15, 18, 25
삼년성(三年城) 77
삼년성서원(三年城書院) 152
상현서원(象賢書院) 187, 224
서 간(徐 簡) 40
서운준(徐雲駿) 173
서퇴수(徐退修) 250
성계성(成繼姓) 63
성 운(成 運) 119, 121, 122, 123, 126,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59, 160, 161, 162, 163, 164, 166, 167, 168, 169, 172, 175, 177, 274, 279, 280
성제원(成悌元) 116, 117, 120, 168, 169, 274, 278
속리사(俗離寺) 25, 31, 37, 59, 66, 77, 173, 275
속리산(俗離山) 18, 25, 27, 52, 60, 95, 97, 135, 139, 140, 141, 143, 147, 175, 176, 182, 188, 191, 197, 242, 251, 253, 273, 274, 275
속리악(俗離岳) 19, 27
손어화(孫於火) 41
송보상(宋保相) 260
송정희(宋正熙) 262
송재적(宋載績) 처 홍씨(洪氏) 250
송 해(宋 垓) 156, 157
송호래(宋好禮) 91
순조태봉(純祖胎封) 259
신대홍(辛帶紅) 42
신 미(信 眉) 46, 52, 59, 61, 65, 67, 68, 76
신수기(申守淇) 156, 157
신후성(愼後成) 237
심공저(沈公著) 254
심 헌(沈 巘) 137

ㅇ

안월성(安月城) 250
어윤중(魚允中) 265, 266, 267, 269, 274
연구령(延九齡) 80, 82
열 기(裂 起) 17, 20
오항산석성(烏項山石城) 275
와 산(蛙 山) 15
와산성(蛙山城) 13, 14
왕래원(王來院) 94
왕 탱(王 竀) 31
용산점(龍山岾) 275, 276
우호득(禹好得) 251
우흥범(禹興範) 43
웅현성(熊峴城) 16
원암역(元岩驛) 26, 59
원암역(猿岩驛) 28
윤경룡(尹敬龍) 234
윤여익(尹汝翼) 138

윤정호(尹定鎬) 262
윤제동(尹悌東) 255
이극창(李克昌) 83
이 담(李 潭) 246, 247
이동순(李東淳) 263
이동응(李東膺) 258
이명경(李鳴慶) 180, 188
이명백(李命百) 259
이수산(李壽山) 56
이시학(李時學) 261
이애남(李愛男) 159
이양휴(李揚休) 170
이여주(李汝柱) 172
이원경(李元慶) 180, 188
이육섭(李六燮) 251
이윤식(李允植) 261
이은려(李殷礪) 113
이인기(李麟奇) 157
이인번(李仁蕃) 198
이 정(李 楨) 101
이제동(李濟東) 199, 200, 202, 203, 210, 211, 212, 214, 215, 216,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7, 228, 229, 230, 231, 232, 234
이종원(李宗遠) 243
이중익(李重益) 268
이 직(李 直) 198
이진안(李震顔) 182, 184, 185
이 질(李 質) 69
이창경(李昌慶) 180, 188
이하악(李河岳) 177
임대성(任大成) 151
임언부곡(林偃部曲) 274

ㅈ

장곡서당(獐谷書堂) 200, 204, 214
장현광(張顯光) 144, 149, 177
적 암(赤 巖) 138, 139, 143, 148, 150, 259
정경추(鄭景樞) 151
정 윤(鄭 倫) 70
정윤선(鄭潤先) 192
정인겸(鄭仁謙) 79, 81
조동순(趙東淳) 262
조문보(趙文普) 195, 196
조영표(趙榮杓) 263
조 헌(趙 憲) 135, 136, 137, 138
주도흥(周道興) 198
주성부곡(酒城部曲) 275

ㅊ

최경린(崔景麟) 102
최 신(崔 愼) 186
최청강(崔淸江) 44
춘추사(春秋祠) 236

ㅎ

한유문(韓有紋) 37, 38, 41, 43
함림역(含林驛) 28, 59
해괴제(解怪祭) 54, 56, 57, 58
혜 등(惠 登) 59
호점산석성(虎岾山石城) 276
홍윤성(洪允成) 68, 276
홍 응(洪 應) 73
황우하(黃遇河) 260
황 징(黃 憕) 119
회인군(懷仁君) 25

報恩郡古蹟錄 〈비매품〉

印　刷：2009年 12月　　日
發　行：2009년 12月　　日
発行者：金　建　植

編譯者：　金　榮　振
發　行：　報恩文化院
印　刷：　日光

*이 책은 보은군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음